

발 간 등 록 번 호

74-4500000-000079-10

2025. 8.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세부지침

본 기준은 공주시 예산의 체계적·효율적 편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 세부기준입니다.



공 주 시

목 차

2026년도 공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부지침

Contents

공 주 시

I 2026년도 공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부지침

1. 2026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3
2. 2026년도 예산편성 추진일정 7
3. 예산편성 세부지침 9
4.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 및 서식 30
5.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자료 43

행정안전부

II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171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85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89
-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 211
- 별표 9. 세출예산 과목구분 219

III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360
2. 예산운용 실무 370
3.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429
4.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488

I . 2026년도 공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부지침

1.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2. 예산편성 추진일정
3. 예산편성 세부지침
4. 요구서 작성 및 서식
5. 운영기준 참고자료

I. 2026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재정운용 여건

1 국가 재정운용 여건

□ (세계경제) 무역 긴장 고조, 정책 불확실성 등 성장세 둔화 지속

- 전세계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통화긴축 완화 기조에도 주요국 통상·산업정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 관세 부과, 주요품목 수출입 제한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성장·교역 위축, 인플레이션 자극 등 하방리스크 확대
- 이 과정에서 AI·반도체 등 국가 간 첨단·주력 사업 주도권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구도 변화 가속화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4) 5.4 → ('25) 3.8 → ('26) 3.0

□ (국내경제) 경기 하방위험 속 민생 어려움과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

- 주요국 정책전환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리스크 확대
-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향상 장기간 지연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 반도체 등 IT 중심 수출산업 확대 및 내수 회복에 따른 경기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 '25.2.) >

	'24년	'25년	'26년
경제성장률	2.0	1.5	1.8
민간소비	1.1	1.4	1.8
재화수출	6.3	0.9	0.8
물가상승률	2.3	1.9	1.9

2 우리 시 재정운용 여건

□ 세입전망

□ (자체수입)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세수 기반 악화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지방세) 부동산 거래 저조에 따른 재산세·취득세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정세 등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 -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세외수입) 징수 체계 정비를 통한 체납 관리 강화 및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정부 세제 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변화 양상에 따른 이전수입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정부 세제 개편 등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향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 전망
- 다만, 최근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도 상충하여 존재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예산액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세 입 총 액	11,516	10,853	-5.8 %	12,856	18.4 %	
지 방 세	917	916	-0.1 %	892	-2.6 %	
세 외 수 입	313	368	17.6 %	392	6.5 %	
교 부 세	5,172	4,019	-22.3 %	4,384	9.1 %	
조 정 교 부 금	360	325	-9.7 %	347	6.7 %	
보 조 금	3,904	4,037	3.4 %	4,935	22.2 %	
보 전 수 입 등	850	1,188	39.8 %	1,906	60.4 %	

□ 세출전망

□ 대규모 현안사업 등 단계적 투자 및 경기 부양 지원 확대 전망

-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극한 호우 등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지출 증가 요인 심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굴 사업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노인부양 등에 따른 복지 의무지출 확대 예상
- (지역경제 회복) 인구감소 및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한 민생재정 지원으로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 확대
-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첨단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업 지방이전 지원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현안과제 이행) 민선8기 공약, 지역 현안 등 우리 시 중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마무리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 필요
- 한편, 한정된 자원 내에서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설정은 불가피하며, 미래지출 수요 대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원배분 효율화 필요
-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 수립, 재정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투자 필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회)	비 고
세 출 총 액	9,789	11,516	10,853	12,425	10,704	
행정운영경비	1,039	1,053	1,077	1,143	1,209	
재 무 활 동	1,094	2,139	607	829	435	
국도비보조금	3,662	3,904	4,037	5,149	3,836	
시비부담금	1,723	1,916	1,916	2,108	1,767	
자체재원	2,271	2,504	3,216	3,196	3,457	

2. 재정운용 기본방향

(목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안정,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본방향)

- ① 시 주요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
- ② 저출산극복 전환점 마련으로 인구구조변화와 미래성장기반 마련
- ③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과제1) 재정 운용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1-① 건전재정 운용 내실화
- 1-② 세입 기반 확대 노력
- 1-③ 효율적·합리적인 재원 배분

(과제2)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 2-① 민생 체감 지역경기 안정
- 2-②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
- 2-③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수행

(과제3)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대

- 3-①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원
- 3-② 공공기관·기업 유치 기반 조성
- 3-③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

(과제4) 맞춤형 복지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4-① 수혜대상별 복지서비스 지원
- 4-②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 4-③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II. 예산편성 추진 일정

1. 자체 일정

사 항 별	일 정	비 고
① 2026년 예산편성 방침결정 20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8. 29.	계획보고 예산편성 교육
② 사업예산 구조화	8. 18. ~ 9. 12.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추진
③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1차 요구> - 시 자체사업 - 분야별 통합검토 사업 * 정수물품,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의 등 - 세입예산	9. 1. ~ 9. 4.	(1차) e-호조 입력 자체사업, 기본경비 등 담당 부서별 자체 수요조사 해당부서 입력
<2차 요구> - 기준인건비, 교육보조금, 경로당,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정수물품 등	9. 22. ~ 9. 24.	(2차) e-호조 입력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先 공문, 後 e-호조 입력)
<3차 요구> - 국·도비보조사업	10. 14. ~ 10. 16.	(3차) e-호조 입력 가내시 공문 등 참고
④ 예산요구서 실무심사 및 조정 - 자체사업예산 - 기준경비, 행정운영경비 - 국·도비 예산 검토	10. 1. ~ 10. 24.	문제사업 별도보고 기준경비 편성보고 분할반영 등 조정
⑤ 예산안 중간보고(1차)	10. 30.	재원전망 보고 등
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1. 5.	보조금, 투자심사 등
⑦ 예산안 최종보고(2차) 및 확정	11. 10.	사업조정 등 최종 검토
⑧ 예산안 인쇄 및 의회제출	11. 18.	시 의회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지방보조금편성계획,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계획 ☞ 일정 및 방법 별도 안내

2. 예산안의 심의 · 확정

1. 2026년도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시의회 제출기한 : 2025. 11. 21. (회계연도개시 40일전)
 - 예산안 총괄제안 설명 : 2025. 12.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
 - 예산안 제출내용
 -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
- ※ 수정예산안 - 상황에 따라 적의 판단하여 추진

2.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안설명
 - 총괄·세출총괄 기획감사실장, 세입총괄 세무과장
 - 부서별 실장·과장·사업소장 (읍면동은 기획감사실장 설명)
 - 준비내용
 - 사업별 예산안 제안설명
 -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 설명자료
 - 예상 질의 답변자료
- ※ 예년 경우 12월 초 ~ 중순 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3. 예산의 확정

- 2026년도 예산의결
 - 의결시한 : 2025. 12. 21.까지 (회계연도개시 10일전)
 - 의결내용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사항
- 2026년도 예산 이송 · 고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 이송시한 : 의결 후 3일 이내(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장)
 - 보고 및 고시 : 이송받은 즉시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및 고시

Ⅲ. 2026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1. 주요 변경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개정사항

연번	분야	제 목	구분	내 용
1	기준 경비	기준경비 협의 규정 등 신설	신설	•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 지자체 신설·폐지·통합·분리 등 필요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개선	• 전담조직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 대한 단서 규정 명료화 • 납세자보호관 지급여부 명확화, 특사경활동비 과장까지 확대
3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총액한도 변경 명시	신설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준수 및 사후조치 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증액하거나 동결 하도록 하는 규정 명시
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변경	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
5		행사 차출 지급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개선	• 행사 차출 지급경비를 실비성격으로 구체화하고, 본연의 업무인 경우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확화 등 규정 보완
6	세입· 세출 예산 과목	세입과목 중 보조금 반환수입의 '전년도' 용어 명확화	개선	• 보조금 반환수입의 '전년도'를 직전년도와 그 이전 연도를 모두 포함하는 '지난연도'로 변경하여 용어 명확화
7		법정잉여금 편성기준 세분화	개선	• 순세계잉여금 중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특교세 등 사용목적이 분명한 재원이 혼재되어 재원관리를 위해 법정잉여금 통계목 세분화
8		사무관리비 내 일반·관리용역비 개념 보완	신설	• 행사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사무관리비 내 일반용역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명시 • 관리용역비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비 예시 추가
9		행사실비지원금 설정 명확화	개선	• 장시간 진행되는 대규모 재난 훈련 등 '훈련'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내용과 통일을 위해 해당 문구와 동일하게 보완 및 실비 명시

연번	분야	제 목	구분	내 용
10	세입·세출 예산 과목	법정 절차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관련 시설비 설명 보완	개선	• 조정, 소송 등 법정 절차·결과에 따른 보상금 (도로·하천용지 보상 등) 증액분을 시설비 목 설정에 명시
11		공사·공단 용자금 등 목 설정 명료화	개선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구에 대한 용자 재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요건을 삭제하여 목 설정 명료화
12		예비비 변경 제한 명시	신설	• 예비비(801) 편성목 내 통계목 상호 간에 융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명시
13	기타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철저 명시	신설	• 최근 지자체 이·불용률 증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불용 관리가 필요하여 관련 규정 명시 및 집행을 하위 통계목 안내
1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예산편성 제한 명시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25년)으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따른 보조·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 수준 강화 내용 명시
15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규정 명시	신설	• 회계·기금 상 여유재원은 원칙적으로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하여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명시
16		재난안전예산 입력항목 변경사항 명시	개선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행 및 국가 재난 안전예산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예산’ 속성 입력항목 변경사항 명시
17		예산의 이월 집행 명시	신설	• 이월액 확정후 집행된 예산은 이월액 정정이 아닌 이월예산의 집행으로 보고 출납폐쇄기한 처리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
18		예산안 첨부서류 양식 설정	개선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위한 첨부서류 공통양식 마련 및 표준화·시스템화 추진
19		예산편성 참고자료 현행화, 기타 용어 정리 등	개선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064 ‘문화재’→‘국가유산’으로 변경, 예산편성 참고자료의 5. 예비비 ‘긴급재해대책’ → ‘긴급재난대책’으로 변경 등 현행화 • 공기업과목 신설·변경에 따른 내부거래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수정

2. 예산편성 사전절차

-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반영 불가

구 분	대상 및 검토사항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대상사업 (☞ 47페이지 참조)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 (☞ 48페이지 참조) - 계획기간·작성대상 : '26년~'30년(5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1억원 이상, 민간단체보조 3억원 이상 -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심사 불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및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 사전 검증) (☞ 49페이지 참조)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3억원 이상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이행 필요
지방보조금심의 (지방보조금법 제26조)	○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타당성, 과목별·사업별 규모 등 사전심의 - 적용대상 :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자본보조 (☞ 50페이지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참조)
신규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심사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 및 예산반영 (☞ 52페이지 참조)
용역과제 사전심의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 1천만원 이상 용역과제 사전심의 - 심의 제외 : 조례 제3조 참고 (☞ 53페이지 참조)
공유재산심의회·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의회심의) ○ 의회 승인대상 (☞ 58페이지 참조) -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기준면적 2천㎡ 이상 - 사업목적 또는 위치 변경,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
물품 정수승인	○ 정수승인 대상 목록 확인 (☞ 122페이지 참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정보화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중복투자 방지 등 사전협의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사업 (☞ 59페이지 참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사업 (☞ 61페이지 참조)
의회의결	○ 출자·출연금 편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 민간위탁사무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60페이지 참조)
사업계획 수립	○ 재정합의 / 기획감사실장(5천만원 이상), 예산팀장(전액)

3. 세입예산 편성

1 지방세수입

-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평균 신장률, 202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전액 계상
 - ※ 2024년 세입결산, 2025년 결산전망 고려하여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
- 관행적인 보수적 세입예산 편성으로 연말 과도한 초과 세수 발생 사전관리 강화
- 지난년도수입은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 징수가능액 반영

2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상, 기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상
- 사용료, 수수료 및 사업수입
 - 사용료,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동안의 징수실적과 2026년도의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적정액 계상
 - 사업수입은 '25년도 사업실적, '26년도 사업 확충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정 수입예상액 계상
- 징수교부금
 - 2026년도 도세 및 사용료·점용료 목표액을 기준으로
 - 도세 징수교부금 : 징수목표액의 3/100
 - 사용료·점용료 징수교부금 : 개별법규에서 정한 교부액
 -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정산액 반영

○ 재산매각수입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승인받은 재산의 수입 예상액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배제되는 손실보상 수입액 계상
- 재산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받을 경우는 당해 연도의 납부계약액 계상

○ 기부금수입

- 기부금은 기탁자가 기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를 거쳐야 함

3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내국세의 19.24%(정률) 총액의 97%)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준 확보를 위하여 보전해 주는 재원
※ 지자체 통계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각 부서에서 해당통계 관리 철저

○ 특별교부세 (내국세의 19.24%(정률) 총액의 3%)

- 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지역현안, 재난안전, 국가지방협력)를 보전해주는 재원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총액)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

4 조정교부금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공동시설세 제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충남도 조례

- 일반조정교부금(총액 90%) : 일반재원 배분(인구수, 재정력지수 등)
- 특별조정교부금(총액 10%) : 특별한 재정수요 배분

5 국·도비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역(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해당부처에서 내시한 금액 및 도비 부담액이 통보되는 사업비 계상
- 국·도비보조가 확실시되나 보조내시가 없는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예상액으로 요구 (1회 추경 시 조정)
 - ※ 사업별 세입요구액(국·도비)과 세출요구(국·도·시비 중 국·도비)액 일치

6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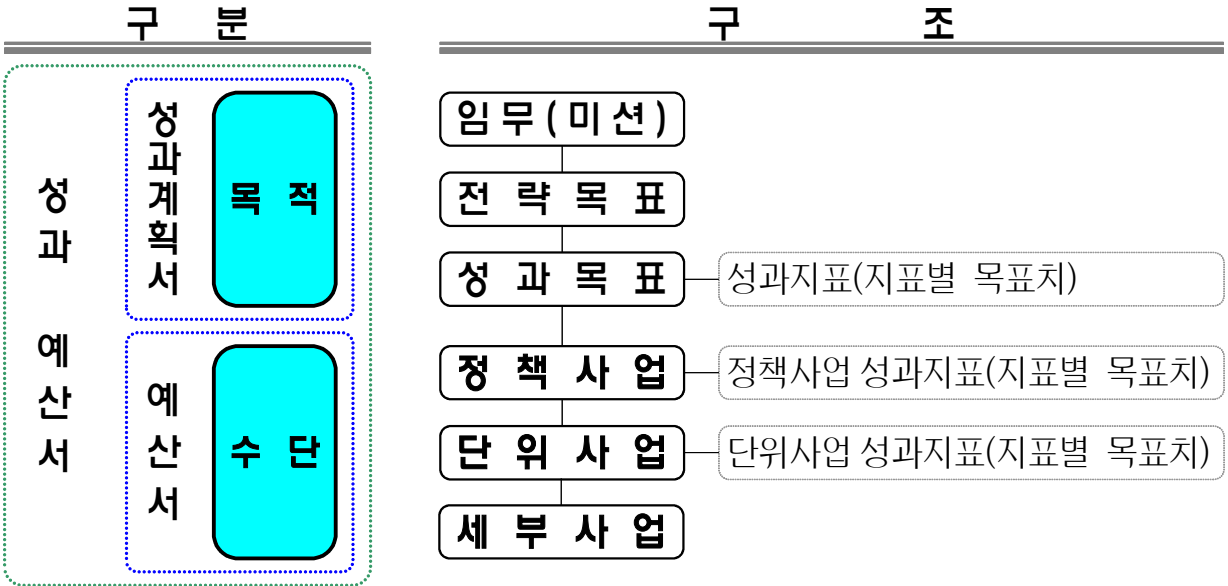
- 지방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채 수입은 202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상
 - ※ 우리 시 '26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601억원 ('25년 620억원)
 - ※ 한도액 = 【경상일반재원 - (일반채무+BTL임차료+우발채무50%)】 × 10%
 -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 + 경상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채무부담행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내에서 운영
- 무리한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예산편성 지양

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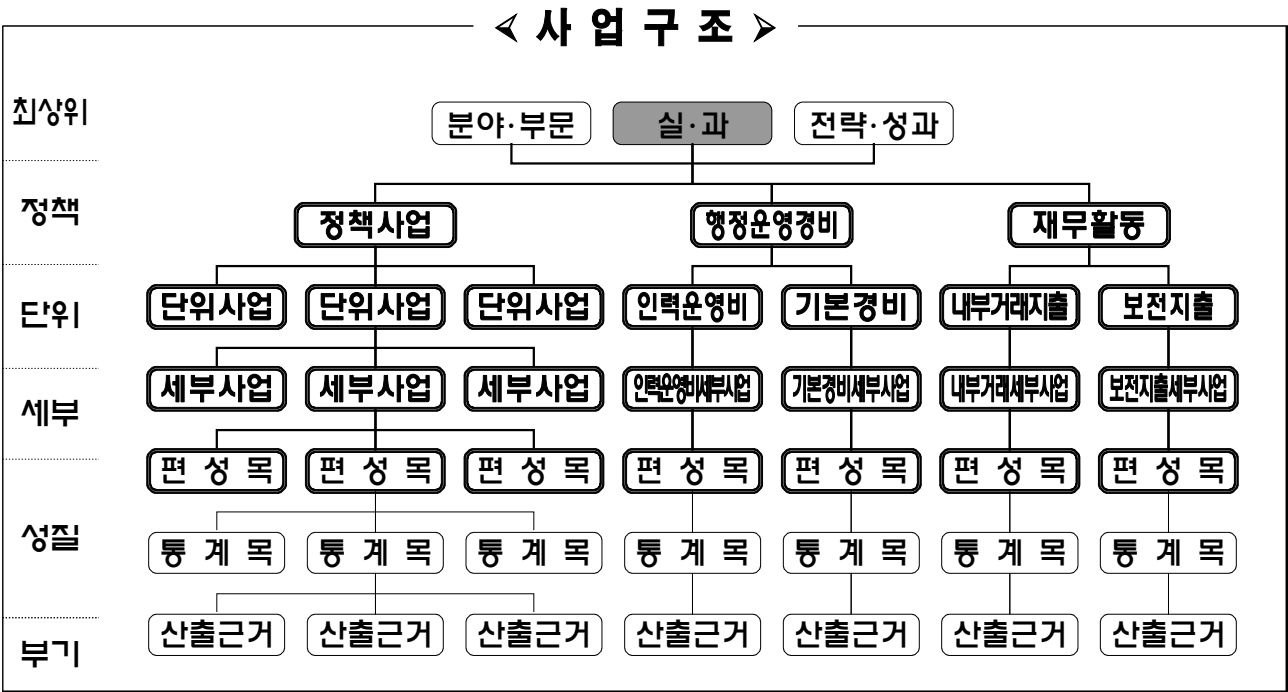
- 순세계잉여금
 -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전망치 계상
 - ※ 사업별 불용사업 판단 검토 후 적정범위 산출, 결산 후 추경 반영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후 추경 예산편성 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 결산 결과 반영

4. 세출예산 편성

✓ 기준 경비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1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요구

① 근거법령 :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개별법령

② 대상사업 : 일반국비, 기금, 지특, 도비

③ 2026년도 국·도비 사업지원 대상사업 예산요구

○ 각 중앙부처 및 道 관련부서 보조내시에 의거 요구

○ 매년 지원되거나, 국·도비 보조가 확실시되나 보조내시가 없는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예상액으로 요구 (1회 추경 시 조정)

④ 사업구조화(세부사업 관리)

○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반드시 구분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국비보조사업(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및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세부사업을 말함
- 자체재원사업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1:1설정, 합병불가)하여 사업간 연계성 유지
- 다만, 중앙부처 또는 도의 보조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나 하나의 보조사업을 여러 개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 설정 가능

- 중앙부처의 동일사업이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 2개로 분리 시, 우리 시도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 세부사업 분리
-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정률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의 추가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 하나로 설정 가능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목에 편성한 후 지출원인 행위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 국·도비 보조사업에 기준인건비 항목(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력운영비 내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자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자체재원 인력운영비와 국·도비지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구분
 - ※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정책사업에 편성(기준인건비 항목 아님)
- 지특회계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입력 시, '전환사업' 속성정보 표기)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 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한정하여 구성 편성
 - ※ 세부사업 내, 전환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전환사업 예산편성 예시>

'21년 기준(이양 전)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부기사업	A신중년사회공헌	(국고 보조 사업)
	B신중년사회공헌*	(자체 사업)

* 순수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업



'23년 기준(이양 후)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 전환사업(2-1)
정보관리사업	A신중년사회공헌(전환)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 전환사업
정보관리사업	B신중년사회공헌(자체)	

○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소모성경비 '25년 수준 유지
- 출연금, 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경비 증액 최소화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

-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요구 제외
- 시급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시찰, 연수, 세미나 등 사업요구 제외
- 자산형성적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도시 계획결정, 투자심사 등) 반드시 이행

○ 계속 사업은 연차별 계획과 마무리 위주 요구

- 전년도 이월액 등을 감안,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요구
- 토지보상 80% 미만 또는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요구 제외
- 총사업비 증가 사업은 타당한 증액요인 제시(요구 전 사전협의)
- 총사업비 기준 완공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대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금 예산삭감, 사업폐지 등 조치
- 집행을 70% 미만인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검토
-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통폐합
 - ※ (유형1) 국고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유형2)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1 기준경비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요하는 경비

1)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203-01), 정원가산(203-02), 시책추진(203-03), 부서운영(203-04) : 부서에 편성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특정업무경비(204-02) : 회계과에 편성

2) 지방보조금 [6개 통계목 총액한도 운영]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별도한도운영)(205-09)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01-07]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행사 차출 지급경비

가. (한도적용) 지방보조금 운영

○ 보조금 지원대상

- (운영비) 법령*에 명시적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편성
 - *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사업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 2026년도 보조금 총액한도 : 25,981백만원('25년대비 1.8% 증)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비*, 전환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세부사업명 앞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절차 흐름도

단계별 업무		업무 내용
예산 편성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지방보조금법 제5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 신청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법 제6조)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
	보조금 예산 심의·확정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자체 및 의회 등의 예산심의를 통해 보조금 예산 확정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지방보조금법 제7조)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법 제7조)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금 사업부서에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법 제8~12조)	· 보조사업의 타당성, 자기부담금 능력 등을 검토 후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 · 사정의 변경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집행 및 사후 관리	보조금 집행 (지방보조금법 제13~16조, 제21~22조, 제24조)	· 수행 상황 보고(보조사업자 → 지자체) -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위반시 수행 명령(지자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 용도 외 사용금지, 내용 변경·인계 시 승인(지자체), 별도 계정 설정, 재산 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공시 및 부기등기
	보조금 정산·검사 (지방보조금법 제17~20조, 제29조)	·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3억원이상) 실적보고서 검증, (10억원이상) 회계감사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부서는 실적보고서 토대로 집행 적정성 등 검토 - 심사결과 적합 시 금액 확정, 미흡 시 시정명령
	사후관리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제30~40조)	· 사후평가 실시: 3년 일몰제 적용(원칙) ·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발견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 반환, 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강제징수 등 제재, 중요재산 사후관리

나. (한도적용)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4개 통계목을 총액한도로 운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 매년 한도 설정

*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등락률(출처 KOSIS, 소비자물가조사)

* 단, 한도 증가율은 전전전년도 결산기준 대비 전전년도 결산기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내 자율 편성 (의원수 × 5백만원)

○ 2026년도 총액한도 : 242,664천원('25년대비 2.1% 증)

다. (기준액)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리장) 기본수당 월 400천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 (반 장) 연 50천원

라. 업무추진비 * 기준경비 편성보고 후 일괄조정 / (부서) '25년 수준 요구

○ (한도적용)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기 준 액) 부서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일반직, 기타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정원 기준('25.10.1.) 편성

마. (기준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5년 기준액(147만원) × (1 +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 통합 운영

- 출산축하 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

바. (기준액) 일·숙직비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우리시) 일·숙직비 : 60천원 / 재택비 30천원

사. (기준액) 행사 차출 지급경비

○ 행사·축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 해당 행사·축제 관련 예산편성(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 시설비)이 되어 있는 경우로 지급대상 행사·축제의 범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반일(4시간 이하) 근무 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본연의 업무로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 대체휴무 및 관리업무수당과 병행 불가 / 급량비 지급 불가

※ 국가 단위 행사를 위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

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준용) 교육강사수당

○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 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40	30(20*)
			(이동시간 보상 30)	
특 2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이동시간 보상 20)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25	12
			(이동시간 보상 12)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5급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이동시간 보상 8)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	5
			(이동시간 보상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이동시간 보상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이동시간 보상 3)	
기타	시민을 상대로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상시, 정례적으로 출강하는 강사		시간당 2~4만원 (예산범위 내)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초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 주)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 주) 3.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 주)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주)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주)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 급 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주)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주)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2 기타단가

1) 위원회 참석수당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구 분	단 가	지급기준	비 고
집 합	기본수당 10만원 초과수당 5만원	· 기본수당) 2시간 이내 지급 · 초과수당)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	· 읍면동 운영위원회는 7만원 · 다수위원 단순참가 2만원 이내
사이버 (영 상)	기본수당 7만원 초과수당 3만원		

※ 다만, 개별법령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계상

2) 심사수당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 등)
-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분	단 가	비 고
서면 심의	1회 10만원	· 서면심의 중 도시계획, 개발행위 등 전문적 심의
	1회 5만원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
재정분야심사	1회 20만원	· 투자심사 등
발표(면접)심사	시간당 6만원	· 각종 경진대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 등
안전검토	1건당 3만원 (10만원 범위 내)	·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안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전문가 기술검토	1회 20만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법심의 및 이에 준하는 기술검토 등

3)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예산편성 요구 시 자치행정과 사전심사 승인 사업만 반영
- 생활임금보전수당(통상임금대비 차액분) 별도 편성

사 업 유 형 별	단가(원)		비 고
	시간	월 환산	
정부 최저임금('26년 기준)	10,320	2,156,880	
공주시 생활임금('25년 기준)	11,900	2,487,100	'26년 기준 : '25. 9. 고시예정(경제과)
제조사업(예초기 사용)	27,000원/100m ²		권장기준(4대보험 등 제경비 포함)
국도비사업 인부	지침		보조사업지침 적용

※ 간식비 : 현장근로자 1일 3천원 범위 내 계상 가능(현금지급 불가)

※ 자격증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 사역은 일반근로사업의 150%범위 내 부서 판단하에 결정

4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①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정책사업에 편성 (기준인건비 항목 아님)

가. 예산편성 방향

- 기준인건비제도 시행으로 '26년 한도액 내에서 편성
 - ('24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통계목 변경 ⇨ 101-01(보수) 편성
- 자치단체 자율결정 인건비의 합리적 운영
 -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 인사·복무·노사협력 담당부서(자치행정과)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관련 통계목 일원화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편성목 〉

101-03.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 기본급, 수당(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만 편성
 201-01. 피복비, 급량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2-01. ~ 05. 여비
 304-04.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나. 2026년 예산편성 절차

- '26년 한도액 통보(행정안전부)후 자율결정 인건비 기준액 결정
- 인건비 자료 작성(자치행정과) → 각 부서 확인(9월 중순, 별도통보)
- '26년 최종자료 제출 : 9. 24.까지 자치행정과 → 기획감사실
- ※ 인건비는 2차 e호조 입력기간에 입력 : 회계과 등

② 기본경비 :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 성 목	통 계 목	기 본 경 비 의 내 용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식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재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 (사업소, 읍·면·동) · 일·숙직비 (사업소, 읍·면·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 범용S/W구입비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01 국 내 여 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02 월 액 여 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국·도비)는 정책사업에 편성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FAX,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기 준 성 경 비 예 산 부 서 편 성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 원 가 산 업 무 추 진 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 서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04 직무수행경비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 책 급 업 무 수 행 경 비	

가. 사무관리비 (201-01)

-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비, 특근급식비 등
 - 총액예산으로 편성 운영, 지출의 탄력성 부여
 - 부서 인원수에 비례하여 편성 (단, 부서 특성 일부 반영)
-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급식비(1식 9,000원 이내)
 -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 정규 근무시간 이전은 비상소집, 훈련, 재난상황 등에 한함
- 당직수당은 산출기초에 의거 별도부기

경 비 명	단 가	비 고
당직수당	1회당 6만원	※ 1일 5만원 이내(20%범위 자율조정)
재택당직수당	1회당 3만원	※ 지자체 자율 판단 / 1일 3만원 초과 불가

나. 공공요금 및 제세 (201-02)

- 총액예산으로 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관리비)
-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과 청사 전기요금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정책사업으로 편성 (읍·면·동)
- 자동차 유지관리비는 부서별 균형유지 (부서 특성 일부 반영)

다. 국내여비 (202-01)

- 부서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일괄 총액 편성
 - 인원수와 업무특수성을 감안하여 배분
 - 총액 범위 내에서 부서장 자율적으로 운영

라. 월액여비 (202-02)

-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구 분	대 상	기준액(원)	비 고
읍·면·동 및	■ 읍·면·동 근무 공무원	160,000	· 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직원 제외
보건지소	■ 읍·면 보건지소	160,000	· 진료보조원·치위생업무 종사자 제외
진료소	■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160,000	

※ '20년부터 본청 실과 월액여비 폐지(국내여비 대체)

마. 주요물품 예산요구(단가)

품 목	요구단가	품 목	요구단가
자동차량	회계과	TV	1,500천원
냉난방기	회계과	냉장고(대)	1,000천원
프로젝터	회계과	냉장고(소)	500천원
복사기	회계과	세단기	1,000천원
컴퓨터	홍보미디어실	의자	250천원
프린터	홍보미디어실	선풍기	70천원
무인민원발급기	조달단가	탁자	300천원
통합발급기	10,000천원	접의식의자	100천원
수동발급기	2,500천원	※ 특수한 경우 조달단가 참조	

5 재무활동 예산편성

① 내부거래 지출 : 기관 내 회계 간 전출·입금

- 사업구조화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내부거래세부사업」
- 예산 요구 : 산출기초에 부기하여 요구

구 분	편 성 목	내 용 (통계목)
내 부 거 래 지	기 타 회 계 전 출 금(701)	기타회계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 금 전 출 금(702)	기금전출금
	예 탁 금(704)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705)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② 보전지출 : 채무상환, 국도비 반환금 등

- 사업구조화 : 「재무활동 - 보전지출 - 보전지출세부사업」
- 예산 요구 : 산출기초에 부기하여 요구

구 분	편 성 목	내 용 (통계목)
보 전 지 출	차입금이자상환(31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지방채증권이자 상환, 기타 차입금이자 상환
	차입금원금상환(6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원금 상환, 차관 상환, 기타 해외채무 상환
	예 치 금(602)	예치금
	반 환 금 기 타(802)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2025년 회계결산 후 2026년 추경에 반영

IV.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 및 서식

1 예산요구서 작성(입력) 제출 요령

① 사업담당자

○ 예산요구서는 본 지침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e-호조매뉴얼 참고

○ 작성요령(이호조 입력시)

- 세입 작성요령 (세입목 선택 후)

○ xx지원사업
1,000,000,000원

- 세출 작성요령 (세출목 선택 후)

○ △△위원회 운영
70,000원×20명×10회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산출근거 입력방법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월)×비율(%)

- 단가(원)×1식×비율(%)

- 세입·세출요구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 산출기초 단위는 “원”

○ 전년 답습, 통계목 편성 오류로 인한 전용 및 변경 최소화 노력

② 회계담당자

○ 부서원이 세입·세출 입력 작업이 끝나면 회계담당자가 세입예산 요구서와 세출예산요구서 둘의 **재원별**(511-01국고보조금, 521-01시도비 보조금 등, 시비를 제외한 외부재원)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부기명 산출서식 오류, 오타 등 전체적으로 확인

○ 예산요구서 내려받기하여 공문(한글·엑셀설명서 함께) 제출

③ 기타 참고

- (엑셀설명서) 1차 e-호조 끝난 후 별도서식으로 제출안내 예정
- (한글설명서)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예산요구 사유 작성 철저
- 입력기간 마감 후 추가 요구사업은 사업설명서와 함께 공문 제출
- 국별 주무부서에서는 국 예산요구내역 취합 국장 보고

2 분야별 통합검토 사업

- 분야별 통합검토 사업은 관련부서로 예산요구

유 형 별	사 업 명	전담부서	비 고
시민안전사업	재난안전예산, CCTV 설치 및 통합 운영	안 전 총 괄 과	
사무실 환경조성	냉난방기, 차량, 프로젝션 등 정수물품 ※ 정수물품 외 부서요구 (복사기, 책상, 의자 등)	회 계 과	
학교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경비	교 육 체 육 과	
공공시설물관리	마을회관, 노인회관 관리(신·증축 포함), 경로당 물품지원	경 로 장 애 인 과	
	어린이놀이터 관리	여 성 가 족 과	
	가로(보안)등 신설·보수	도 로 과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상 하 수 도 과	
기타 경상사업	공무원 국외여비, 교육여비 및 민간인 해외여비	자 치 행 정 과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금품(개인)	자 치 행 정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홍 보 미 디 어 실	

3

예산안 첨부자료 작성

첨 부 서 류		비 고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기획감사실
	1-2. 통합부채	
	1-3. 우발부채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1-8. 지방세지출현황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3. 계속비사업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해당부서
4.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기획감사실
5. 지방세 지출보고서		세무과
6.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기획감사실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자치행정과
10. 명시이월 명세서		해당부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획감사실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회계과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기획감사실
1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5. 전전년도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		회계과
16.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세무과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대한 발행 및 상환실적 등		기획감사실
18.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조서		
19.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관련 서류		
20.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투자심사 결과 관련 서류		
21.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자치행정과
2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해당부서

4 서식

(서식 제1호) - 투자사업, 경상사업 모든 사업 작성 (행사 축제성경비 포함)

사업명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경상사업 예시)

조 직	지역활력과 새마을자치팀	담당자	홍길동 (☎2027)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구분	☒ 공약 ☐ 현안 ☐ 지시 ☐ 순방건의 ☐ 기타()			통 계 목	201-01 (사무관리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1월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산출기초 : 주민참여 위원회 총회 1회, 분과 4회, 지역회의 32회, 예산학교 2회
- 100,000원 * 위원 0명 * 회의 5회 = 0000천원

단기(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월)×비율(%) /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사업량 정확히)

○ 추진계획 :

- 4월 ~ 6월 : 예산학교 운영 2회, 읍면동 책임예산제 운영 교육 2회
- 7월 ~ 10월 : 주민제안 수집 및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총회 개최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전절차이행 대상 목록(붙임)을 참고하여 누락 없이 체크, 미이행시 예정일 기입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수물품 사전승인	정보화 타당성	신규 행사성	연구용역 사전심의	민간위탁 동의안	출자·출연	조례(안) 제정 등
-	-	○	-	-	'26.00월 예정	-	-		-

□ 예산요구 사유

2026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심의회 운영예산

민선 8기 공약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의거 참여위원회 운영강화

※ 25년 2회 → 26년 4회 증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심의에 참고할 만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유 작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본예산	2025년 최종예산	2025년도 본예산	증감(최종예산 대비)
계	50,000	30,000	25,000	20,000
재원별	국비	0	국비	0
	도비	0	도비	0
	시비	50000	시비	20,000

<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부사업 단위 작성(x) / 사업(부기)별 작성 작성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9월 현재)
당해예산액(이월예산액)			
당해집행액(이월집행액)			

사업명 — 사곡 계실리 도로포장 (시설사업 예시)

조 직	도로과 도로계획팀	담당자	홍길동 (☎2027)	세부사업	복합연수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구분	☐ 공약 ☒ 현안 ☐ 지시 ☐ 순방건의 ☐ 기타()			통 계 목	401-01 (시설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도 ~ 2026년도 (3년간)
- 총사업비 : 90억원 (국 40억원, 도 10억원, 시 40억원 / 기투자 45억원)
- 요구액 : 45억원 (국 20억원, 도 5억원, 시 20억원)
- 사업규모 : 도로 확장 L=2km, B=8m, 교량 1개소 신설 L=500m, B=8m
- 사업위치 : 사곡면 계실리 723 일원
- 추진현황 : 현공정 70% (설계, 보상, 착공 등)
 - 2024. 10. 실시설계 실시 (2024. 12. 완료)
 - 2025. 7. 사업 착공
 - 2026. 12. 사업 준공

□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사항 이행 시 중복체크 가능, 모두 해당없을 시 미해당 체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실시설계용역				매입 등 부지확보			
미해당	여	부	예정일	미해당	여	부	예정일	미해당	여	부	예정일	미해당	여	부	예정일
	○				○				○				○		

□ 예산요구 사유

2026년 총액 90억 원 중 3차년도 사업비 45억원 (균특 보조분) 예산요구
※ 사업완료 최종예산투입 ☞ 심의에 참고할 만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유 작성

□ 소요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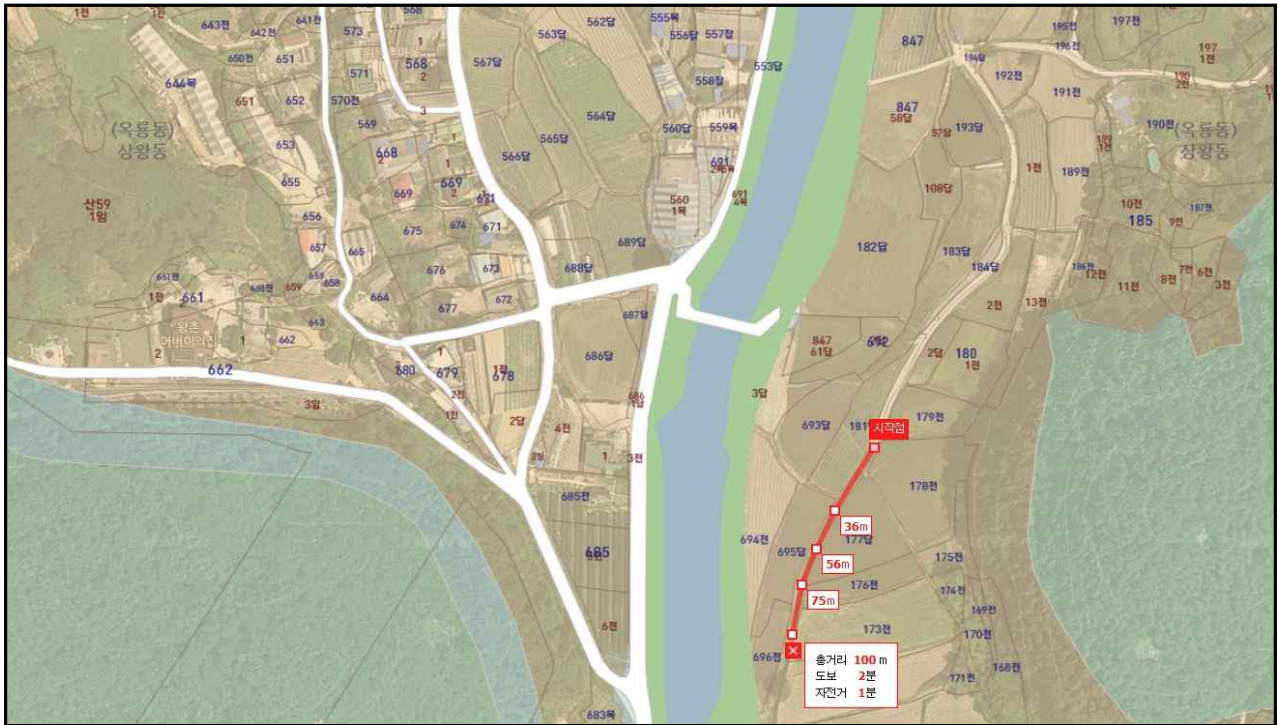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본예산	2025년 최종예산	2025년도 본예산	증감(최종예산 대비)
계	4,500,000	2,750,000	1,600,000	1,750,000
재원별	국비 2,000,000	국비 1,500,000	국비 1,000,000	국비 500,000
	도비 500,000	도비 250,000	도비 100,000	도비 250,000
	시비 2,000,000	시비 1,000,000	시비 500,000	시비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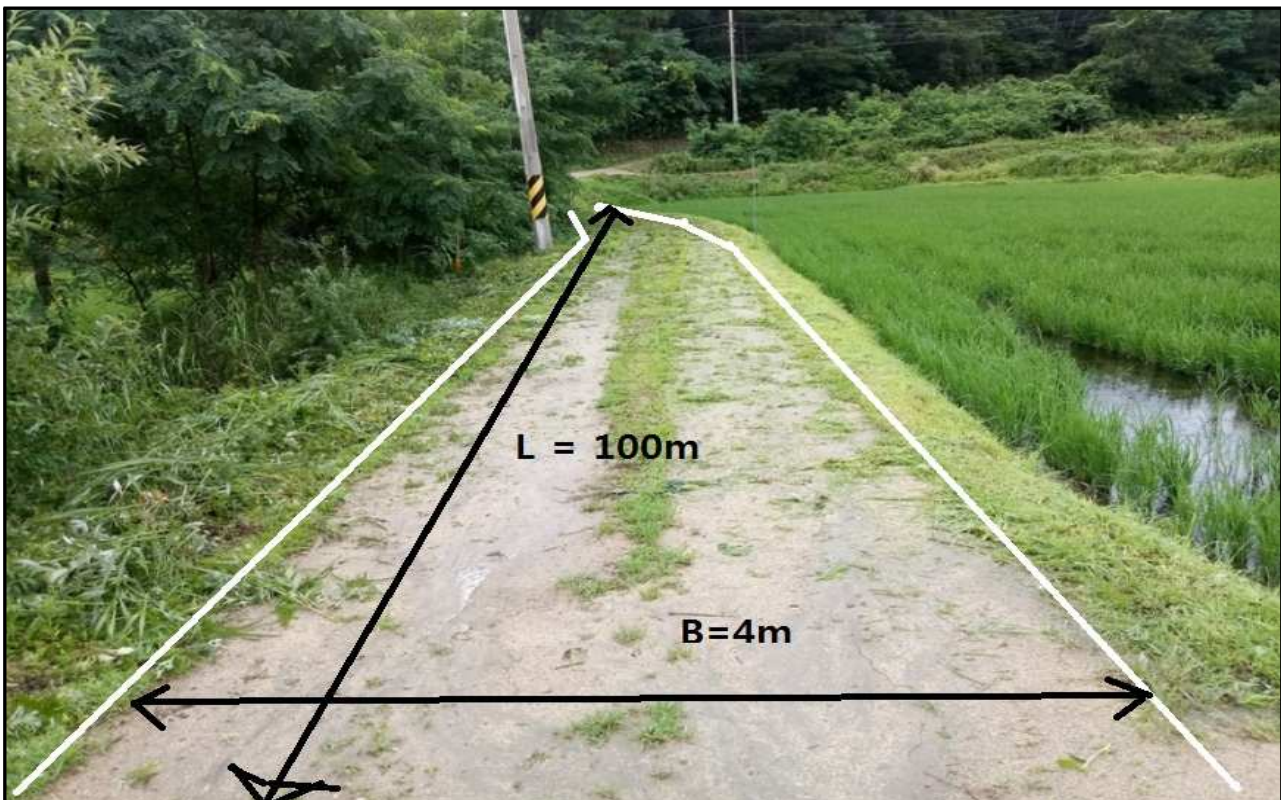
<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세부사업 단위 작성(x) / 사업(부기)별 작성 작성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9월 현재)
당해예산액(이월예산액)			
당해집행액(이월집행액)			

□ 위치도



□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에 사업량이 나타나도록 표시

사업명 | — ○○리 농로 포장

조 직	○○면 총무팀	담 당 자	홍길동 (☎2028)	세부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사업구분	☒ 현안 ☐ 순방건의 ☐ 민원 ☐ 기타()			통 계 목	401-01 (시설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도 3월 ~ 6월
- 사업위치 : 00면 00리 00-0번지
- 사업비 : 15,500천원
- 산출기초 : 콘크리트 포장 L=100m, B=4.0m, 400㎡ (4A)
- 추진계획 :
 - 2026. 02. : 토지사용 협의, 실시설계 발주
 - 2026. 04. : 착공
 - 2026. 06. : 준공

※ 위치도 현장사진에 사업구간, 사업량이 표시되도록 작성

□ 예산요구 사유

○○면 □□리와 연결되어 있는 농로
미포장에 따른 농업용 기계 진출입시 불편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건의

□ 소요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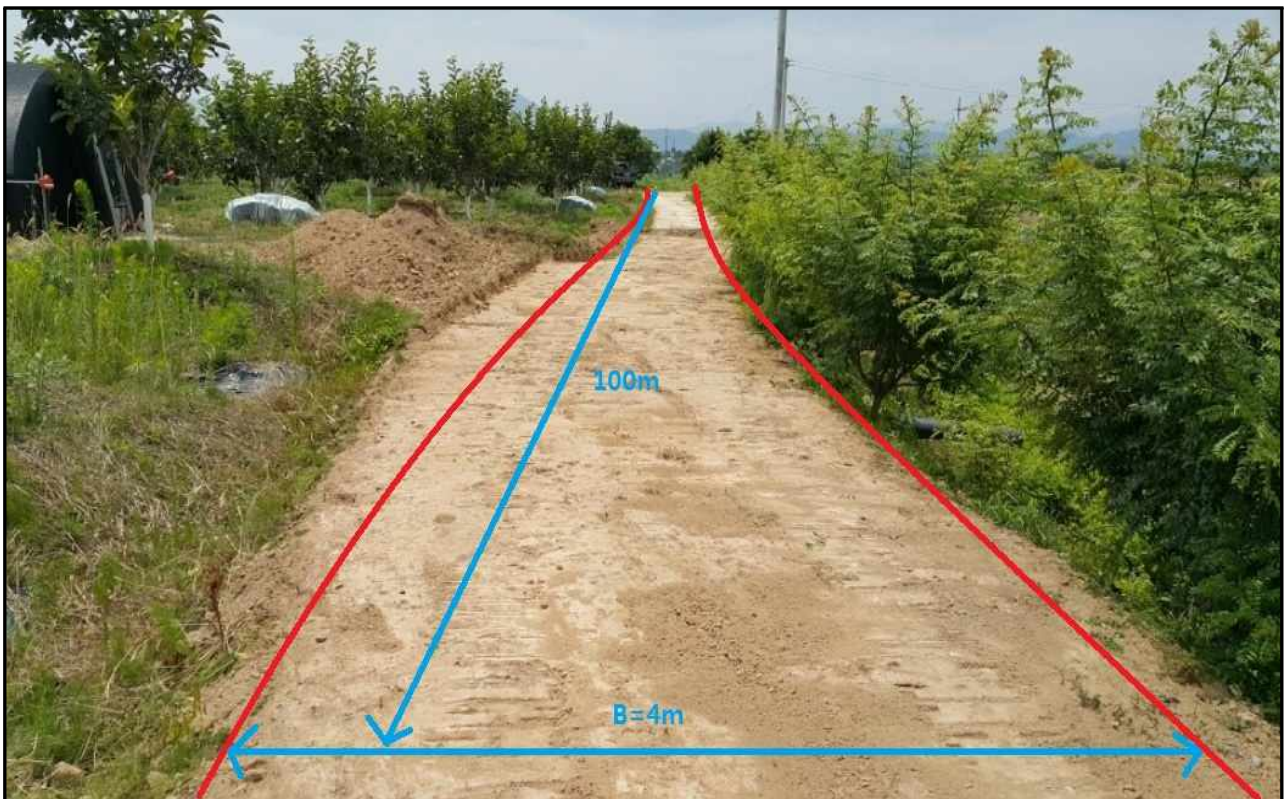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총 감	
계	15,500		0		15,500	
재원별	국 비	0	국 비	0	국 비	0
	도 비	0	도 비	0	도 비	0
	시 비	15,500	시 비	0	시 비	15,500

□ 위치도



□ 현장사진



※ 위치도 현장사진에 사업구간, 사업량이 표시되도록 작성

1. 지방보조금 심의서 (아래 순수시비 보조금 통계목 해당, 국도비 사업은 일반설명서 사용)

☞ 307-02, 307-03, 307-04, 307-09, 307-10, 307-11, 402-01, 308-08, 308-09, 308-10, 403-03, 403-04

사 업 명 — [부기명]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조 직	문화체육과 예술팀	담 당 자	홍길동 (☎2028)	세부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사업구분	☐ 공약 ☒ 현안 ☐ 지시 ☐ 순방건의 ☐ 기타()			통 계 목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필요항목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술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 지원단체명 / 대표자 (회원수) 또는 미확정 (공모대상일 경우 기재)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예 산 액 : 00,000천원 ※ 보조금 지원액을 기재, 자부담 제외
 - ※ 증감 사유 :
- 추진계획 :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작성
 -

□ 공모여부

공모여부	☐ 공모 ☐ 비공모 (해당항목에 ☒ 표시)
비공모사유 (해당항목에 ☒ 표시)	아래의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공모사업은 해당없음	☐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근거 ※ 운영비 : 관련법령 기재 / 사업비 : 관련법령 또는 조례 기재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및 조례	○ 법령(조례)명 : ○ 관련조항 - 지원사업 해당조항만 발췌하여 기재

□ 부서 종합의견 ※ 사업 타당성 또는 필요성, 추진 시 예상되는 성과 등 충실하게 작성

○ <u>권장시책 여부, 유사 중복지원 등 검토</u>
○

□ 심의내용

○ 지원규모(총사업비) ※ 노란색 셀만 작성

(단위:천 원)

구 분	합 계		보 조 금		자 부 담	
26년 본예산	12,000	(100%)	10,000	(83%)	2,000	(17%)
25년 최종예산	8,000	(100%)	7,000	(88%)	1,000	(13%)
비 교 증 감	4,000	(50%)	3,000	(43%)	1,000	(100%)

○ 연도별 보조금 현황 ※ 자부담 제외 보조금만 작성

(단위:천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최종예산			
집 행 액			

○ 주요사업 산출내역

(단위:천 원)

주요사업내용	산출근거	예산액	비 고
계		12,000	
홍보비(현수막) 및 어깨띠	1,900,000원 x 1식 = 1,900,000원	1,900	
중식비	8,000원 x 263명 = 2,100,000원	2,100	
무대, 음향 등 장비 임차료	2,000,000원 x 1식 = 2,000,000원	2,000	
강사료 및 식전행사	2,500,000원 x 1식 = 2,500,000원	2,500	
행사 준비물품	1,500,000원 x 1식 = 1,500,000원	1,500	
기념품	40,000원 x 500명 = 2,000,000원	2,000	자부담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강조사항 : 산출근거 없는 예산은 예산 미반영 원칙

<위치도 또는 사진 등 첨부 : “**자본형성적 사업일 경우**” >

☐ 위치도

☐ 현황사진

2. 신규 행사 · 축제예산 심의서 (국도비포함 신규사업만 해당, 계속사업 일반설명서 사용)

☞ 작성 통계목 : 201-03(행사운영비), 301-11(행사실비지원금), 307-04(민간행사보조/국도비사업)

사 업 명 | — [부기명] 국내외 전문가 및 예술인 팸투어

조 직	문화체육과 예술팀	담 당 자	홍길동 (☎2028)	세부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사업구분	☐ 공약 ☒ 현안 ☐ 지시 ☐ 순방건의 ☐ 기타()			통 계 목	201-03 (행사운영비)

☐ 사업개요 ☞ 필요항목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술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26. 3. ~ 2026. 5.
- 사업량
 - 개최횟수, 장소, 참여인원, 주요 공연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추진계획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작성
 -

☐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재정투자심사 ☒ 신규사업 방침결재

○ 사 업 비

(단위:천원)

구 분	26년도 본예산(A+B)		'25년 최종예산 (A)		요 구 액 (총감, B)	
계	35,000		0		35,000	
재원별	국 비	17,500	국 비	0	국 비	17,500
	도 비	0	도 비	0	도 비	0
	시 비	17,500	시 비	0	시 비	17,500

○ 산출내역

(단위:천 원)

주요사업내용	산출근거	예산액	비 고
계		35,000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공연	공연 300천원 * 10개팀 화합 풍물대잔치 1,000천원	4,000	
역사문화관광도시 공주 홍보	세계유산 홍보관 제작 5,000천원 백제연극 제작 및 공연 5,000천원	10,000	
농특산물 판매 홍보	홍보부스 200천원 * 5개부스	1,000	
15개 시군 홍보관 운영 등 행사장 조성	15개 시군 홍보관운영 300천원 * 30개 포토월 설치 2,000천원 * 1식 가로기, 현수막 등 제작 50천원 * 100개 기타 행사용품 구입 4,000천원	20,000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강조사항 : 산출근거 없는 예산은 예산 미반영 원칙

V.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자료

□ 지방재정관리제도	44
참고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62
참고2)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69
참고3)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78
참고4)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87
참고5)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96
참고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101
참고7)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122
참고8)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운영기준	124
참고9) 내용연수표(차량제외)	126

지방재정관리제도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근거법률의 성격	· 법률에 의해 직접 예산편성 의무발생, 개정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의무발생 ·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되 하위명령에 위임이 가능	· 근거법률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률은 단지 예산편성의 근거에 불과함 · 예산집행을 위해 편의상 정한 집행기준(사업안내 등)은 구속력 없음
지출의무 발생요인	· 법령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법령이 지출의 직접 근거)	·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의무 발생(예산이 지출의 직접 근거)
지출규모 결정요인	·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합하여 지출규모가 결정	·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규모가 결정
예산의 성격	· 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단지 추정치에 불과	· 예산은 한정된 자원의 분야별 할당액으로 구속력 있는 정책 결정과 같음
집행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집행대상자에게 급부청구권이 발생	·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예산과 지출의 관계	·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함(사후적으로 지출규모가 결정됨)	·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출규모 조정(예산과 지출이 거의 일치)
결산	· 의무적 정산(부족시 반영의무 발생)	· 재량적 정산(부족시 사업 축소 가능)

※ 국가의 경우 '24~'28년 기간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6.6%, 재량지출은 연평균 3.4% 증가 전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의무지출

○ 법정 의무

- 법률에서 지출의무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출여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여지가 없는 지출

○ 보조 의무

- (국고보조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한 사업비
-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무지출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를 의무지출 경비로 봄

- (시도보조사업)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이자 의무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지출

2. 재량지출

-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결정

- 계약에 따른 연차 소요(BTL임차료, 채무부담행위 등), 그 외 사업비 등

※ 재량지출로 볼 수 있는 사례

-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지출의무가 구체적·명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
- 법률상 지출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그 지출규모를 상쇄하는 자산(수입)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
(예 시) •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음
- 법률에 지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지출의무가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출의무인 경우
(예 시) • 과오납에 따른 납부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등 각종 법률상 반환금

참고

지방자치단체 의무지출 유형[예시]

○ 법령근거

유 형		예 시
법 정 전 출 금 등	특별회계전출금	-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의료급여법 제25조) -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도시계획세의 10%, 주차장법)
	부담금	-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의 도시개발사업비용 부담(도시개발법 제54조) -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의 산업단지개발비용 부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부담금(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지방직영기업 손실 부담금(지방공기업법 제14조)
	기금전출금	-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2)
손실보상, 수당 등		- 버스노선 손실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 누리과정 경비(유아교육법 제24조) - 지방공무원 봉급(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 공무원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

○ 구속성이 강한 지출

유 형	예 시
행정운을 위한 기본경비 성격	- 예산편성기준에서 구체적인 기준경비를 제시 :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수당 등 관련(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경비, 일·숙직비, 월액여비,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
의회관련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의정활동비 - 지방협의체 부담금(전국·광역단위)

○ 이자상환

유 형	예 시
지방채·예수금 및 관련 이자상환	- 지방채 이자 상환 - 지역기금개발 차입금 이자 상환 -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 -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 예수금 이자 상환

2. 지방재정영향평가

1. 제도개요

- 제도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대 상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유의사항

- 총사업비 (지침 제4조)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단
- 평가시점 (지침 제7조)
 -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기 전 시행
- 절차 (지침 제7조)
 - 재정영향평가 실시(시장)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유치신청, 응모 ➡ 사업 선정 ➡ 투자심사

3. 중기지방재정계획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 필 요 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심사 전 필수 반영 필요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2.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계획기간 : 회계연도부터 5년간(2026년 ~ 2030년)
- 수립절차 : 부서별 사업예산 구조화(사업예산 계획수립) →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제출
- 대상사업 : 세부사업 기준
 - (일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행사축제) 1억원 이상 / (민간단체보조) 3억원 이상
- 실 효 성 : 해당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대상에서 제외(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법·제도의 변경,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 수립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 지방재정투자심사

1. 제도개요

-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2. 대상사업

심사주체	대 상 범 위
사·군·자치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총사업비 3억원이상 60억원 미만 홍보관사업
시·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군·자치구 신규 투자사업 (단, 사·군·자치구 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사·군·자치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3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사·군·자치구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총사업비 6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사·군·자치구 홍보관사업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군·자치구의 신규 투자사업 (단, 사·군·자치구 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사·군·자치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단, 사·군·자치구 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군·자치구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행안부 지정 고시된 기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타당성 조사 이행

3. 중앙(도)투자심사 일정

구 분	의 회	심 사
제 1 차	1. 15.(1 .31.) 까지	3. 31. 까지
제 2 차	4. 15.(4. 30.) 까지	6. 30. 까지
제 3 차	7. 15.(7. 31.) 까지	9. 30. 까지

5. 지방보조금심의 운영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26조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 주요 심의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신고포상금,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 심의시기·방법

- 심의시기 :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운영
- 운영방법 : 개최 통보 → 심의자료 취합(공문 제출)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심의위원 15명 이내 (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 사전심의(예산편성 관련)

- 심의대상 : 자체사업 중 공공단체 보조 및 민간단체 보조 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금(307-0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308-12),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308-09),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403-04)

▶ 제외대상

- 국·도비 보조사업, 수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 목록에 의한 심의 대체 가능사업

-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위원회의 운영)

2. 검토절차



6.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 제132호)
- 필 요 성
 -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로 실효성 높은 행사성 사업 신설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행사·축제사업의 신설 방지

2. 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신규 행사성 사업(행사·공연·축제 등)
 -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11) 등 행사·축제성 사업

※ 단, 정부 승인 국제행사, 투자사업 심사대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인 경우는 사전심사 제외 가능

- 평가주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내용 및 절차 :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 계획수립 → 대상사업 제출(사업부서) → 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예산부서) → 예산안 제출

3. 행정사항

- 전 부서 유사·중복 행사사업 통폐합하여 세출 절감 추진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항목 포함(인센티브 및 페널티 모두 적용)

7. 용역과제 사전심의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7조
- 주요 심의사항
 -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성
 - 용역 사업계획·과업내용·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 점검
 -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심의시기·방법
 - 심의시기 :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운영
 - 운영방법 : 개최 통보 → 심의자료 취합(공문 제출)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심의위원 15명 이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대행)

2. 심의대상

-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
 -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의미(각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도 포함)

▶ 제외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1천만원 미만의 용역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8. 예산의 성과계획서

1. 제도개요

- 제도개념 : 지자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9.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정책사업
 -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추진절차 : 성과계획서 작성(e호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2. 작성방법

- 전략목표 설정 : 실·국 단위별로 1개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구 분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성과관리 체 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 ↑
예산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1~N)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 각각 1:1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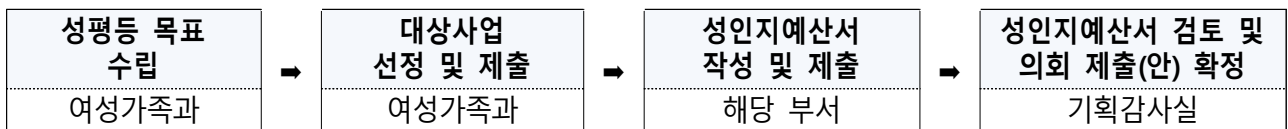
9. 성인지예산서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기금법 제8조의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 대상사업 : 세부사업 기준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제외)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 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 기타사업 :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기타 자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추진절차



2. 작성방법

○ 성인지예산서는 'e-호조시스템'에 입력

※ 'e-호조시스템' 입력 시(사업예산구조화)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임을 표기

작성 부서	작성항목
기획감사실 및 여성가족과	I. 성평등 목표
	II.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국	IV.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V.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자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10. 주요 재정사업평가

1. 제도개요

- 제도개념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평가대상 : 2025회계연도 사업
 -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 평가제외 : 지방보조사업,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등 제외
- 평가기간 : 2026. 4월 ~ 6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를 등급화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연계
 - 등급분류 : 5단계 등급화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미흡 : 예산 10% 이상 삭감원칙 / 매우미흡 : 차년도 예산 미반영

2. 평가지표

단 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 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 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 과 환 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을 위한 사업평가를 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 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 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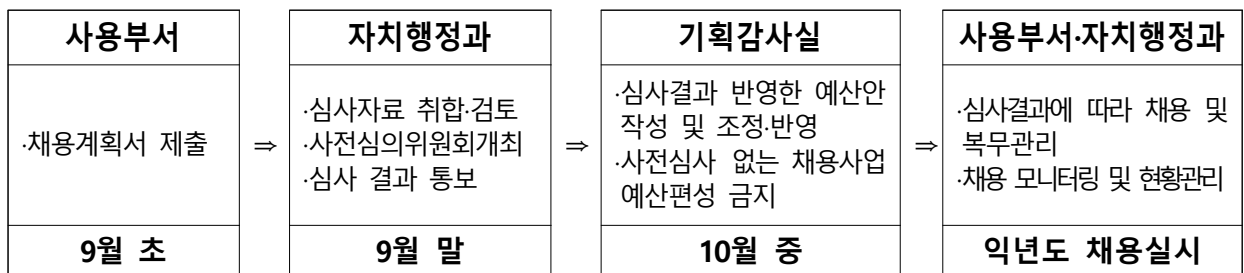
11.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1. 제도개요

- 필요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방지를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채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관계부처합동, '19.12.4.)
 -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 심사대상 : 채용예정인 공주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 심사기간 : 정기(본예산 편성 시), 수시(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 심사내용
 - 비정규직 채용 원칙 부합성, 채용 업무의 타당성 등
 -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인건비 예산구성의 적절성 등

2. 운영절차

- 정기심사(본예산)



- 사전심사 예외 사유(단,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① 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 ②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채용 공고 시 해당 내용 명시한 경우)
 - ③ 연중 수개월에 걸쳐 사업이 완료되며, 총 근로일이 30일 미만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12. 공유재산 심의 · 관리계획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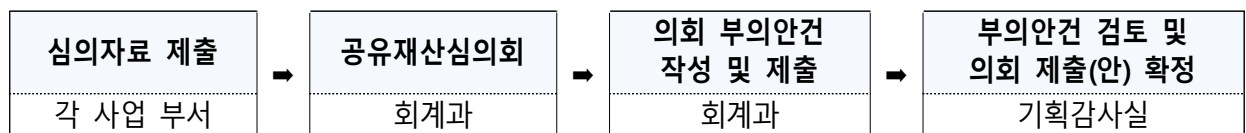
- 심의대상

구 분	내 용	심의 · 의결
공유재산 심의회	· 대장가액 3천만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 (정기분) 분기별 1회 · (수시분) 긴급·중요사항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 공유재산 심의대상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기준 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기준 면적 2천㎡이상 · 기 의회 의결 특한 관리계획의 변경 - 사업목적 또는 위치 변경, 면적 및 기준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정기분) 회계연도 40일 전 · (수시분) 해당연도 정기회 및 임시회

- 심의위원 : 9명(당연직4*, 위촉직5) * 부시장, 자치안전국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2. 운영절차

- 추진절차



- 수립시점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 작성방법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게 된 이유 설명
- 취득계획 : 사업의 위치·기간·사업비 등의 개요, 향후 추진계획
- 부서의견 :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당위성
- 참고자료 : 관련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등 첨부

13. 정보화사업 예비검토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전자정부법 제67조
 - 필요성 :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중복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체계적인 통합관리 추진체계 확립
 - 검토대상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사업
 - 대상사업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재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사업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정보통신 구축 포함)
 - 주된 사업(비정보화분야)의 부수적인 정보화사업(시설비 등)
 - 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 정보시스템은 무상도입이어도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포함

《 제외 대상 》

- ▶ 컴퓨터(PC, 노트북),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 기기 구매
- ▶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한글, 오피스 등) 상용SW 구매
- ▶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2. 운영절차

- ① 기본계획(안) 수립 :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 수립(사업부서)
- ② 예비검토 요청 : 정보서비스의 목적·내용, 서비스의 대상·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 등(사업부서 → 홍보미디어실)
- ③ 자료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경제성 등 검토(홍보미디어실)
- ④ 부서통보 : 검토내용 통보(홍보미디어실 → 사업부서 및 기획감사실)
- ⑤ 기본계획 확정 : 사업부서에서 검토결과를 반영, 사업계획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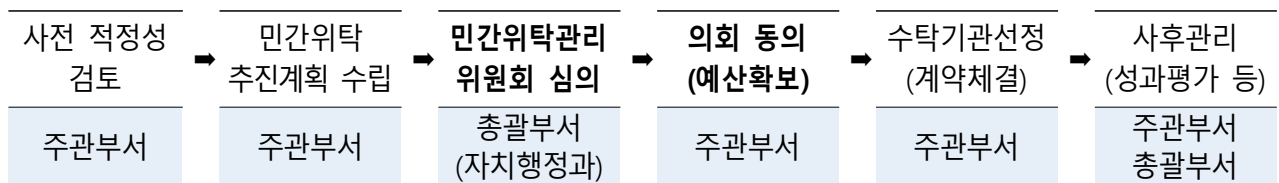
14. 사무의 민간위탁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
- 필요성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을 위탁하여, 공공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 보완
- 대상사업 :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

2. 운영절차

○ 추진절차



○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의

- 심의대상 : 민간위탁 예정 사무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심의기관 :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자치행정과)
- 심의결과 : 원안가결(사업추진), 수정가결(조건이행후 추진), 부결(사업불가)

○ 시의회 동의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결) 통보 후 시의회 동의 절차 추진
-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동시상정 가능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수탁기관선정, 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평균 4~6개월)을 고려하여 위탁사업 추진

15.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

1. 제도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협의 및 조정)
- **협의대상**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사업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 신설 또는 변경 예시

- (신설)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 시에서 동일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 (변경)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예시: ①대상자 선정 소득수준 변경, 연령기준 변경 ②재정부담 수준 변경, ③급여내용의 변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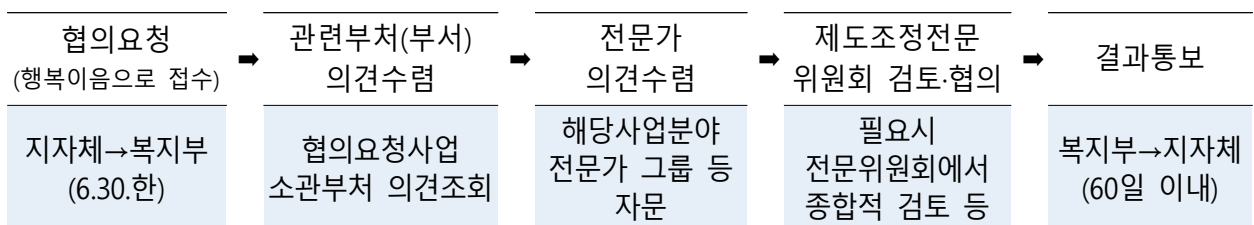
▶ 협의제외 대상

민간재원사업,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기준) 변동에 따른 변경, 단순예산변동, 사회보장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단년도 사업, 협의제도 시행(13.1.27) 이전 사업,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및 축소,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예산편성사업,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된 지자체 의무사업, 지자체간 자원분담비율 변경,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보훈사업 및 피해보상 지원 등,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사업 중 지자체 법정배분사업, 그 외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협의기준

- (사업타당성)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등
- (기존제도와와의 관계) 유사급여 · 중복 서비스 여부, 편중효과 등
- (재정, 전달체계 영향 등) 수혜자 접근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자원조달계획 등
- (기타) 성과관리 계획수립,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등

2. 협의절차



참고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지역자율계정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① 도시형교통모델	50%	· 공공형택시지원 등
		② 수소도시지원	50%	· 수소도시지원
		③ 벽지노선지원	30%	· 벽지노선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④ 혼잡도로 건설	50%	· 혼잡도로 건설
		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70%	· 지방도 건설
		⑥ 버스공영차고지지원	30%	· 버스공영차고지지원
	농식품부	⑦ 반려동물인프라구축	30~40%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⑧ 농촌형교통모델	50%	· 농촌교통지원
		⑨ 친환경농업기반구축	30%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⑩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50%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⑪ 친환경농자재지원	50~100%	· 토양개량제
		⑫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정액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농진청	⑬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50%	·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지원 제외
	문체부	⑭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⑮ 폐산업시설 등 유헬공간 문화재생	50%	· 폐산업시설 등 유헬공간 문화재생
		⑯ 야영장안전 및 활성화 지원	40%, 50%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⑰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정액	·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⑱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50%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⑲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50%	·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⑳ 문화도시 조성	50%	·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산림청	㉑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 임도시설(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㉒ 도시바람길숲 조성	50%	· 도시바람길숲 조성
		㉓ 생활권도시숲조성	50%	·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등
		㉔ 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	50%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친환경목조건축망대
		㉕ 정원도시조성	50%	· 정원도시 조성
	해수부	㉖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70%	· 연안정비 등
	행안부	㉗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조사연구
		㉘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70%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㉙ 접경권발전지원	70%	· 접경권 발전지원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환경부	㉔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㉕ 노후상수도 정비	50~70%	· 노후상수도 정비
		㉖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50%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㉗ 슬레이트관리	50%,70%	·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㉘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50%	· 생태관광센터 조성, 친환경적 에코촌 조성
		㉙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	30%	·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
		㉚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운영	50%	·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
		㉛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50%	· 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
	과기부	㉜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	70%, 80%	·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등
		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50%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㉞ 디지털배움터	70%(80%)	· 디지털배움터운영
	복지부	㉟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50%,70%	· 지역사회서비스 등
		㊱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50%,70%	·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㊲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50%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운영비 지원
		㊳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30~100%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설치비·운영비
		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60~70%	· 보건소 신·증축, 장비비 지원 등
		㊵ 장사시설설치	50~100%	· 봉안당(담) 신축
		㊶ 가족센터 건립	정액	· 가족센터 건립
	여가부	㊷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0%	·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30%,40%	· 지역에너지절약 시설 설치비 보조
	산업부	㊹ 수소생산기지구축	100%	· 수전해 공급인프라,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지원
		㊺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구축	50%	·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
		㊻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50%	·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보급
		㊼ 지식산업센터 건립	70%	·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기부	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60%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㊾ 상권활성화사업	50%	· 상권활성화구역
		㊿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정액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교육부	㉟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50%	·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비 지원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㉞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 지역개발 지원 등
		㉟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40~60%	· 우리동네살리기
			70~80%	· 도시 취약지역 여건개선
	농식품부	㊱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㊲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70~80%	· 농어촌 취약지역 여건개선
	행안부	㊳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지역 지원 계정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구 분	소관	사 업 명
□ 부처직접편성		
▪ 시·도지사는 여타의 국고 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소관 부처에 예산신청 ▪ 부처는 지자체 신청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	교육부 과기부	1.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2.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 어린이집 확충 4. 지역인재육성지원 5. 디지털역량강화교육 6.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7.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8.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R&D) 9.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R&D) 10.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R&D) 11.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지역지원) 12.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 13.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14. 지역 특화 농축산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확산 15. 지역산업 AX 활성화 프로젝트 16. AX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부산) 17. ICT융합제조운영체제개발및실증(R&D) 18.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19. 글로벌제조융합SW개발및실증(R&D) 20.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21.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22. 60Ghz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 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R&D) 23.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LAB 실증단지 조성(R&D) 24.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25.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26.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27.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원 28.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29. 지역디지털인재양성 30. SW융합클러스터2.0 31.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32. 지능형 가상융합기반 재난안전시스템 확산 33.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33.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34.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조성 35.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36.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37.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 38. AI융합 관광 생태계 구축 39. AX실증밸리조성(R&D)

구 분	소관	사 업 명
	행안부	40. 연구개발특구육성(R&D) 41.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42.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사업 43. BTL 전문과학관 지원 44. 국립법인과학관운영 45.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46.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R&D) 47.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48.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49.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R&D) 50.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5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52. 자원봉사활성화지원 53. 지방시대위원회운영 54.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55. 지역발전활성화 56. 접경권발전지원 57.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58.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59.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6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61.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62.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62.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63.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2단계)(R&D) 64. 마을기업육성사업 6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문체부	66.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67.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68. 문화도시 3.0 조성(지역지원) 69. 문화시설 기반 구축(지역지원) 70. 국민문화활동지원 71.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72.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73.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74.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75. 관광자원 기반조성 76.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77. 전통문화체험 지원 78.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79. 지역 의료관광활성화지원 80.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농식품부	81. 배수개선 82. 농기계임대 83.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구 분	소 관	사 업 명
	산업부	84. 귀농귀촌활성화지원(정보화) 85. 친환경농자재지원 86.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87. 지방시대위원회인건비 88. 지방시대위원회지원 89. 인천경제자유구역전시컨벤션센터건립(BTL) 90.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91.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92. 산업단지환경조성 93.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94.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R&D) 95. 지역균형발전지원 96.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97.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9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99.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100. 지역혁신기반플랫폼구축 101. 기회발전특구지원(R&D) 102. 지역혁신생태계선조성기술개발선도사업(R&D) 103.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 104.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105. 지역투자촉진 106. 지역첨단전략산업거점기관지원(R&D) 107. 지역주력산업거점기관지원(R&D) 108.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109. 생활산업경쟁력강화 110.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 및 실증(R&D) 111.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112. 투자유치기반조성 113.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114.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115.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6. 구역청투자유치지원 117. 기타 기반시설 지원 118. 주요기반시설지원
	복지부	119.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2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1.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22. 지역아동센터 지원 123. 어린이집 확충 1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25. 장사시설설치 126. 노인요양시설 확충 127.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구 분	소관	사 업 명
	환경부	128.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2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3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32.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133. 하수관로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 134.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35. 하수관로 정비 136.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137. 지방상수도 스마트(AI) 정수장 도입 사업 138. 녹색환경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139.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고용부	140.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여가부	14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국토부	142.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43. 광역도로 단위사업 144. 혼잡도로 단위사업 145. 국가지원지방도 단위사업 146. 광역철도건설지원 단위사업 147. 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사업(R&D) 148. 지역주도정책연계국토교통혁신기술개발사업(R&D) 149. 광역BRT 구축 150. 환승센터구축지원 151.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152.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진입도로 153.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154.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155. 개발제한구역관리 156.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157. 투자선도지구기반시설지원 158.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159. 장기미집행공원지방채이자지원 160. 방재공원조성지원 161. 기반시설부담금환급및수수료지원 162. 도시재생사업 16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지원) 164. 수소도시지원(지원) 165. 산업단지진입도로 단위사업
	해수부	166. 연안정비 167.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69.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70. 산지유통시설지원 171.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72. 친환경 어구보급 173. 수산어업행정지원 174. 어촌신활력증진

구 분	소관	사 업 명
	중기부	175. 어촌소멸대응지원 176. 청년어촌정착지원 177.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178.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179.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180.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R&D) 181. 창업인프라지원 182. 산학연CollaboR&D(R&D) 18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184. 지역특화산업육성 185.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186.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187. 지역미래유망기업육성(R&D) 188.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189.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190.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191.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식약처	192.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지역지원)
	유산청	193.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194.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 195. 고도 보존 및 육성
	농진청	196.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 보조, 지역지원) 197.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198.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지역지원) 199.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지역지원)
	산림청	200. 임도시설 201. 새만금수목원 조성

참고 2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1단계 전환사업 목록

□ **총괄 : 4개 분야, 13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 **시도 사업**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36	145	
문체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 공립미술관건립지원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 문예회관건립지원 - 문화특화지역조성 - 지방문화원건립(시설비)지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 복합문화시설조성 -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 전통사찰보수정비(세종·제주) - 전통문화진흥지원(지역전통문화시설확충및운영) - 제주태고문화센터건립	1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	- 관광지개발조성 - 문화관광자원개발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국민여가캠핑장조성(기금제외)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 관광안내체계구축 - 탐방로안내체계구축	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문화사업 기반조성	-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지원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 광주공예문화산업육성 - 경기문화창조허브설립운영 -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 작은영화관건립 - 실내영상스튜디오건립 - 전남3대별서정원MR콘텐츠개발보급 -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	9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문체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문화행사 지원	-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비엔날레지원 - 종교문화행사지원 - 문화콘텐츠행사지원	4
	문화예술진흥 기금	예술의 관광자원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1
농식품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 농산물제조·가공지원 - 농산물체험전시지원 - 농촌체험관광지원 - 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 -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 - 6차산업화지원	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업기반정비	- 밭기반정비 - 소규모배수개선 - 시군수리시설개보수 - 원원종및원종생산 - 가축분뇨처리 - 농업경영컨설팅 - 농업인교육훈련 - 대구획경지정리 -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향토산업육성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반려동물 산업육성	- 공설동물장묘시설설치지원 - 반려동물지원센터설치지원 - 반려동물놀이시설조성	3
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지원	- 지역산업마케팅지역산업육성 - 지역산업역량강화인프라구축 - 지역우수기업육성 - 지역기업글로벌라이제이션 - 지역제조업및융복합산업기반육성 - 지역연고자원산업화	6
고용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치단체직업 능력개발지원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여가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청소년시설 확충	- 청소년시설확충	1
환경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확충및관리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소규모수도시설개량 - 식수전용저수지확충 -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제주)	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생태하천복원 사업	- 생태하천복원(기금제외)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연환경보전 및관리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 비산먼지저감사업 - 서식지외보전기관지원(환특제외) - 지역생태계복원	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 생활쓰레기수거선진시스템구축 - 농어촌폐비닐수거지원사업 - 준광역밀폐형클린하우스설치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생태휴식 공간확대	-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 - 어린이생태체험공간조성	2
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중교통지원	-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 물류단지진입도로조성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거점조성 지원	-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하천정비	- 지방하천정비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국제자유도 시기반시설지원	-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 - 영어교육도시제2진입도로	2
해수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 어촌체험관광지원 - 수산물식품특화단지개보수 -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수산물가공 산업육성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해수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	-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어업기반정비	- 지자체관리어항건설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 양식어장관리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지원 - 인공어초 - 수산종묘관리 - 유류피해지역경제활성화 - 해조류부산물재활용 - 멸종위기어종생태계복원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어업인편의시설	1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및수자원 관리	- 지역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 지역마리나시설조성 -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 -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 - 내항여객선운임보조(제주) - 방치선박정리지원(제주)	6
	일반회계	연안관리	- 방치선박정리사업	1
	농어촌 구조개선특별 회계	낙시산업 선진화	- 낙시터환경개선	1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 적조피해예방지원	1
중기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통시장및중소 유통물류기반조성	- 전통시장시설현대화 -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	2
유산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 문화유산관광자원화	1
농진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농촌지도 사업활성화	-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 - 지역특화우수품종보급 - 농업전문인력양성(제주) -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 농가경영개선지원(제주) -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 -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	9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산림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산림경영자원 육성	- 수출용임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 목재이용가공지원 - 나무은행조성및운영 - 임산물관광자원산업화 - 산림서비스증진(제주)	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산림휴양녹색 공간조성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숲길조성·관리 - 산림레포츠시설조성 - 유아숲체험원조성 - 치유의숲조성 - 지방자치단체도시숲조성 - 지방정원조성 -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 지역생태숲조성 - 산림교육센터조성 - 산림복지단지조성 - 수목장림조성 - 공동체정원조성	1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임도시설	- 임도시설(간선임도제외,국유림제외)	1

○ 시군구 사업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3	9	
행안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	1
농식품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 개발	- 마을만들기 - 농촌형공공임대주택 - 농촌다움복원 - 농촌재능나눔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농촌현장포럼	6
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 도시생활환경개선 - 지역역량강화	2

2단계 전환사업 목록

□ 총괄 : 6개 분야, 12개 부처, 41개 세부사업

○ 시도 사업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37	79	
행안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마을기업중간지원기관운영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사무 지원	- 지방이양사무지원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 안전한보행환경조성 - 노인보호구역개선 - 교통사고찾은곳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2-2차)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위험도로 구조개선(2-2차)	- 위험도로구조개선	1
문체부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지자체보조) -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2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역문화 예술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2차)	- 공립박물관 - 공공도서관 - 생활문화센터조성 - 작은도서관조성	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체육진흥 시설지원 (2-2차)	-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 지방체육시설지원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5
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지원(2-2차)	- 주차환경개선지원	1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환경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확충관리 (2-2차)	- 강변여과수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 친환경대체취수원 - 고도정수처리시설_제주 - 친환경대체취수원_제주	6
농식품부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식품소비정책및 건강한식생활확산	- 농식품소비정책강화 (지자체별소비정책강화사업에한정)	1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업농촌사회적 가치확산지원	- 푸드플랜운영지원 (안전품질관리에한정)	1
복지부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 센터지원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 상담전문요원배치 - 가정양육지원	3
	일반회계	공공형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
	국민건강 증진기금	노인건강관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
	국민건강 증진기금	암환자지원	- 암환자지원	1
	일반회계	양로시설 운영지원	- 양로시설운영지원	1
	국민건강 증진기금	모자보건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
	일반회계	노숙인등 복지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1
고용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 자치단체지원 (기초자치단체지원에한정)	1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여가부	일반회계	지역청소년 활동정책진흥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지원	1
해수부	일반회계	해양관광육성	-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 (해양레포츠교육프로그램에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항만 지원	- 지방이양항만지원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특행기관 지방이전운영지원	- 지방관리무역항관리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여객터미널 운영	- 지방관리여객터미널운영	1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서비스 도우미	-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는제외)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산림휴양녹색 공간조성(2-2차)	-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 숲속야영장조성	2
농진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농촌 지도사업활성화 (2-2차)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장비지원에한정)	1
경찰청	일반회계	범죄예방및 생활질서유지 (2-2차)	- 협업치안인프라강화 - 지역사회안전진단및범죄예방활동 - 여성범죄예방인프라강화 - 불법풍속사범단속역량강화 - 유실물업무종합관리운영 - 방범용CCTV운영 - 지하철경찰대등운영및특수지역 경찰활동 - 기타범죄예방활동지원 - 관광경찰대운영	9
		아동청소년보호 및수사활동 (2-2차)	- 여성·청소년보호활동및지원 -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 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 - 가정폭력아동학대등근절 - 위기청소년선도 - 학교폭력예방활동	6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경찰청	일반회계	여성대상범죄 예방및수사활동 (2-2차)	- 가정폭력등통합솔루션팀운영 - 사회적약자대상성폭력피해확인및 예방 - 가정폭력,학대다기관협업체계강화 - 사회적약자범죄전담여청수사팀 역량강화	4
		아동안전지킴이 (2-2차)	- 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등	1
		교통안전 교육홍보(2-2차)	- 교통홍보활동 - 협력단체지원	2
		교통안전활동 (2-2차)	- 교통장비,운영비 - 교통장비,운영비(자본보조) - 기타교통활동지원	3
		교통과학 장비관리 (2-2차)	- 무인단속장비구매 - 무인단속장비운영 - 스쿨존무인단속장비운영 - 음주단속장비구매 - 음주단속장비운영	5

○ 시군구 사업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4	4	
문체부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관광 해설사육성	-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원	1
농식품부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친환경농자재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	1
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무제도 지원	- 사회복무요원인건비	1
고용부	일반회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

참고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5.>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100	
8.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관리	100	
나. 지방관리	5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10. 토양개량사업	70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50	
나. 개별시설	20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肥化)·액체비료화 시설	40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시설)	50	
12. 삭제 <2019. 12. 24.>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70 근해: 100	
14. 농기계임대사업	50	
1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100	
16. 삭제 <2021. 12. 28.>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24. 공동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27. 삭제 <2016.4.28.>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만 해당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31. 하수처리장 확충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60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60	

	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6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60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60	
나. 광역시(군지역)	80	
다. 시·군·구	8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70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70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7. 삭제 <2018. 12. 18.>		
38. 경전철 건설	정액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액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41. 삭제 <2019. 12. 24.>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44. 삭제 <2019. 12. 24.>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100	
나. 기타	50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60	
나. 큰 나무	50	
50. 숲 가꾸기	50	
51. 사망사업	70	
52. 삭제 <2021. 12. 28.>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55. 삭제 <2019. 12. 24.>		
56. 임도시설	70	
57. 산림서비스도우미	50	수목원 코디네이터만 해당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장비 지원은 제외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64. 삭제 <2021. 12. 28.>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50(70)	
나. 경기장	30	
68. 삭제 <2021. 12. 28.>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70. 삭제 <2019. 12. 24.>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72. 삭제 <2019. 12. 24.>		
73.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 연기념물·명승 보수·정비	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77. 한센양로자 지원	5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울: 30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 장제급여	서울: 50 지방: 80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86. 삭제 <2021. 12. 28.>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88.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인 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 (용지매입비 제외)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 지·화장로	70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95. 보육서비스 지원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가. 보육돌봄서비스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 아종합지원센터 설치만 해당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라. 어린이집 지원		
마.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제외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서울: 50 지방: 80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사업비의 3분의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제외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0	
105. 삭제 <2021. 12. 28.>		
106. 삭제 <2021. 12. 28.>		
107. 삭제 <2021. 12. 28.>		
108. 삭제 <2021. 12. 28.>		
10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50	
110. 삭제 <2019. 12. 24.>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60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114. 빗물저장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118. 삭제 <2021. 12. 28.>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참고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1. 5.>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1.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 사이버 가정학습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9. 주요 교육정책 홍보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11.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13.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15.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利差補填)
18. 지역정보화 지원
19. 자전거도로 정비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21. 공공도서관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23. 문화의 집 조성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중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5.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26. 관리책임자대회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29. 조각공원 조성
30. 통영국제음악제(공모사업은 제외한다)
31. 문화학교 운영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35. 노량해전 재현(공모사업은 제외한다)
36. 문화의 거리 조성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공모사업은 제외한다)
38.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41. 공주미술제(공모사업은 제외한다)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5.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6. 농가도우미 지원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8. 농촌 PC 보내기 사업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50.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53. 삭제 <2015.7.24.>
54. 사회복귀시설 운영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56. 공공보건사업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58. 지역봉사사업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60.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6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6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6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0.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71. 삭제 <2023. 1. 17.>
72.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75.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7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은 제외한다)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92. 아동시설 운영
93. 결연기관 운영
94. 입양기관 운영
95. 삭제 <2015.7.24.>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 결식아동 급식

101. 삭제 <2015.7.24.>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4.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105. 사회복지관 운영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08.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무요원이 배치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109. 업무보조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10.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111. 노숙인 시설운영 등 노숙인 보호
112. 쪽방생활자 지원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118. 결연기관 PC 구입비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121.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126. 시·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29.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130. 산업단지 국가유산 조사비
131. 환승주차장 건설
132. 삭제 <2019. 9. 10.>
133. 삭제 <2019. 9. 10.>
134. 삭제 <2019. 9. 10.>
135.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 136. 불가사리 구제(驅除)
- 137. 자영수산물 급식비 지원
- 138. 장보고축제
- 139. 민물고기 첨단양식장 시설
-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 141. 내수면시험장 개수·보수
- 142. 연어 치어(어린물고기) 방류
- 143. 재래어종 치어 방류
-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 145. 수산물 위생안전
-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 148. 국제수산물산업전(부산광역시)
- 149. 양식기반시설
- 150. 마을어장 개발
- 151. 현충시설(顯忠施設)
- 152. 시·도무형유산 공개행사
- 153.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도자연유산 보수·정비
-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 157. 친환경 화장실
-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 161. 보호수(保護樹) 정비
- 162. 임산물 유통·가공
-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 164. 소하천 정비
- 165. 농어업기반 정비
- 166.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 167.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 168.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 169.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 170.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 171. 지방하천 정비

172. 산림경영자원 육성
173. 관광지 개발조성
174.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175.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76.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에 한정한다)
177.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178.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79. 청소년시설 확충
180.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81.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82.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183.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184. 문화특화지역 조성
185.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86. 문예회관 건립 지원
187.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88.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189.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90.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191. 복합문화시설 조성
192. 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193.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194.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195.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196.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197.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198.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99. 작은영화관 건립
200.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201. 지역문화행사 지원
202. 지역대표공연예술제
20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204.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205.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지원
206.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207. 마을만들기
208.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209. 농촌다움 복원
210. 농촌현장포럼
211.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212. 농촌 재능나눔
21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14.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15.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21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17. 생태하천복원(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1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219.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220. 날림 먼지 저감사업
221. 서식지 외 보전기관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222.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22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24. 생태휴식공간 확대
225.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26.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227.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제외한다)
228. 지역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229. 지역 마리나시설 조성
230.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231.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232. 공유수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233.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34.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관련 냉동·냉장시설 지원(클러스터형 사업은 제외한다)
235.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236. 낚시터 환경개선
237.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말한다)
238.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239.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240.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241.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242.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243.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244. 농업인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
245. 농업전문인력 양성(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46. 농가경영개선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47.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248.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49. 숲길조성·관리
250.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251. 유아숲체험원 조성
252. 치유의 숲 조성
253.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254. 지방정원 조성
255.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256. 지역생태숲 조성
257. 산림교육센터 조성
258. 산림복지단지 조성
259. 수목장림 조성
260. 공동체 정원 조성
261.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조성은 제외한다)
262.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으로 한정한다)
26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64. 노인보호구역 개선
26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6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67. 지방이양사무 지원
268. 위험도로구조 개선
26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27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의 지역중심사업으로 한정한다)
27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27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273.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274. 생활문화센터 조성
- 275. 작은도서관 조성
- 276. 체육진흥시설 지원
- 277. 유기질비료 지원
- 278. 푸드플랜 운영 지원(안전품질관리로 한정한다)
- 279.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지방자치단체별 소비정책 강화사업으로 한정한다)
- 28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한정한다)
- 28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 28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283. 암환자 지원
- 28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85.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는 제외한다)
- 286. 상수도시설 확충 관리(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제외한다)
- 28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288.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신중년 사회공헌으로 한정한다)
- 289.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으로 한정한다)
- 290. 주차환경 개선 지원
- 291. 지방이양 항만 지원
- 292.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전 운영 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 293. 여객터미널 운영(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터미널로 한정한다)
- 294. 해양관광 육성(해양레포츠활성화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 295. 자치경찰사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 296.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장비 지원으로 한정한다)
- 297.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제외한다)
- 298.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참고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2. 11. 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자치구	도	시·군
1	119구조장비 확충	100	0	100	0
2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30	70	30	70
3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0	50	50
4	방조제 개·보수	70	30	70	30
5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6	토양개량사업	50	50	50	50
7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8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100	0	100	0
9	농기계임대사업	50	50	50	50
10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50	50	50	50
1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50	50	50	50
12	농산물유통 개선	50	50	50	50
13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00	0	0	100
14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00	0	0	100
15	폐기물 처리시설	70	30	30	70
16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만 해당한다)	100	0	30	70
17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70	30	30	70
18	하수처리장 확충	70	30	50	50
19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0	50	50
20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0	30	30	70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0	70	30	70
2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00	0	100	0
23	경전철 건설	100	0	0	0
24	해양 및 수자원 관리				
	가. 연안정비	30	70	30	70
	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0	50	50	50
25	해양보호구역 관리	50	50	50	50

26	도시철도 건설	100	0	0	0
27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2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30	70	30	70
29	조림사업(造林事業)	30	70	30	70
30	숲 가꾸기	30	70	30	70
31	사방사업	70	30	70	30
32	삭제 <2022. 11. 3.>				
3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3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50	50	50	50
35	임도시설	50	50	50	50
36	산림서비스 증진	70	30	70	30
37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00	0	50	50
38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시설지원만 해당한다)	100	0	0	100
39	삭제 <2022. 11. 3.>				
40	관광자원 개발	50	50	50	50
41	전국체육대회 운영	70	30	70	30
42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한다) 지원	70	30	70	30
43	삭제 <2022. 11. 3.>				
44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30	70	30
45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50	50	50
4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47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가. 시·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100	0	100	0
	나.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0	100	0	100
4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50	50	50	50
49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50	한센양로자 지원	100	0	100	0
51	방과 후 돌봄서비스	50	50	50	50
5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 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5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의 경우	70 30 이상 50	30 70 이하 50	70 30 이상 50	30 70 이하 50
5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00	0	70 80	시30 군20
55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100	0	70	30
56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70	30	70	30
57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의 경우	70 30 이상 50	30 70 이하 50	70 30 이상 50	30 70 이하 50
5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00	0	50	50
59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100	0	70	30
60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50	50	50
61	화장시설·불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100	0	50	50
62	긴급복지지원	50	50	50	50
63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 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 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 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64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30	70	30	70
6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	50	50	50
66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0	0	50	50
67	사회적기업 육성	70	30	70	30
68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0	100	0	100
69	학대아동보호 쉼터 설치 및 운영	100	0	50	50
70	삭제 <2022. 11. 3.>				
71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30	70	30	70
7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100	0	100	0
73	하수관로 정비	70	30	50	50
74	비점오염저감사업	100	0	30	70
75	빗물저장시설 설치	100	0	30	70
76	정신요양시설 운영	100	0	100	0
77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8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79	고도정수처리 시설	100	0	30	70
80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81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100	0	30	70
8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100	0	100	0
83	모자보건 사업	50	50	50	50
84	산림경영계획	30	70	30	70
85	산림조합특화사업	50	50	50	50
86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0	50	50	50
8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00	0	50	50
88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89	어촌종합개발	30	70	30	70

90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91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92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	50	50	50
93	임산물 수출촉진	50	50	50	50
94	전통사찰 보수 정비	50	50	50	50
95	축산물 검사	70	30	70	30
96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100	0	0	100

※ 비교: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 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 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 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와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수업료지급, 장례보조비 지급 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와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7) 아동보호조치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8) 아동보호조치
10)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1)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과 시설에의 입소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도·권고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5) 청소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과 시설에의 입소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7) 시·도 단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 청소년사업계획 수립·시행
	19) 청소년보호 조치
	20) 청소년복지 지원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시·군·자치구 단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 청소년복지 지원 23)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양성평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마. 주민건강증진사업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 계획 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교육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역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3)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과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 조치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아.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2)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墓籍簿) 관리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봉안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3)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5) 분묘의 일제신고	4)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6) 시체운반업 허가	5)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6)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차.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4)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6)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7)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생활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화장실,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 매립장에 가기 전에 임시로 모아 두는 곳)의 설치·유지 관리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못·늪지·보(浞)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3)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1)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3)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4)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통보·지원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 계획·조직·운영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의 생산 및 유통 지원	1)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 성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 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 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 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 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 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 도·감독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官營) 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다. 농업자재의 관리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통 보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 진·연구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 범단지 조성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 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 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 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3) 복합영농 시범사업 용자금 관리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면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과 마을단위 복합영농 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바. 공유림 관리	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5) 특수조림지 관리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施業) 신고 수리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 도벌·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5) 산림병충해 방제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반입 통제
사.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과 낙농 진흥사업	1) 소규모 축산 개발과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와 사료작물재배사업 추진

업	추진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4) 가축개량·증식과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아. 가축전염병 예방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조정 4) 종축장(種畜場) 운영 5) 보호종축의 지정 6) 가축 개량·증식·보호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과 지도·감독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公獸醫)와 가축방역관의 위촉과 지도·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와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와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와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차. 소비자 보호와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소비자 교육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 교육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 · 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 치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 성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카. 중소기업의 육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 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 계 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 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 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 정·추천
타. 지역특화산 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 획 수립·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 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 한 연구 및 지원	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 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시행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 척
파. 우수지역특 산물 개발과 관 광 민 예 품 개발	1)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 계획 작성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 정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4) 우수지역특산물 개발·보 급	1)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 립·시행 2) 우수지역특산물 등의 개발·보 급 3) 지역특산물 전시관 운영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지역특산물 등 생산기술전승자 의 발굴·보호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4)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입	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

	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군계획도로의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군계획도로의 유지·관리
라.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 인정과 폐지·변경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9) 도로유지 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1) 시도·군도·구도관리계획 수립·시행 2) 시도·군도·구도의 노선 인정과 폐지·변경 3) 시도·군도·구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시도·군도·구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계획 수립·통보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와 지도·단속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 구조 개선	1) 농어촌주택 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지도 3)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4)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 개량 기술 보급·지도 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7)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1)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3) 농어촌주택단지 조성 4)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
사. 자연보호활동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1) 지역환경보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6) 자연보호계획 수립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 지도 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 축·관리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 관리 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 · 관리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 리 10) 자연보호 지도·교육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1)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하천의 공사와 유지 관리 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 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 서의 공작물(인공구조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 부지의 교환 및 양 여 8) 하천 감시(자갈채취단속 등)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 비계획 수립·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 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 비사업지구 측량·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 성·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관 리 6) 하천 감시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 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 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 치·운영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 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 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둘 이상 도·시·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한다)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계획 수립·조정 2) 소규모급수시설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1)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2) 소규모급수시설사업장 선정 3) 소규모급수시설공사의 지도 4)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및 수질관리 5)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쇄 결정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1)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등”이라 한다)계획의 결정·고시 2) 도립공원등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등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1)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등”이라 한다)계획의 결정·고시 2) 군립공원등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등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 지, 유원지 등 과 그 휴양시 설의 설치 및 관리	4) 도립공원등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도립공원등의 입장료·사 용료 및 점용료 징수 1)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 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 한다) 3)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 료·사용료·점용료의 징 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군립공원등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 5) 군립공원등 입장료·사용료·점 용료의 징수 1)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 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녹지의 설치 및 관리 4)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 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 우는 제외한다)
파. 관광지, 관광 단지 및 관광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 성계획 수립·집행 2) 관광휴양지의 관리	1) 관광자원 개발·보존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 행 3) 관광휴양지의 관리 4)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 도 감독
하. 지방 궤도사 업의 경영	1)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 운영 3)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평 가 4) 지방 궤도사업에 따른 요 금징수 5)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 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 영	1)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자 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운영(자 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거. 주차장·교 통표지 등 교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 의 수립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 진

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 의 설치지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4) 가로등의 유지·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 ·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 · 집행 2)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 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 부 운영	1) 시·군·자치구 방재계획의 수 립·집행 2) 시·군·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 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 치·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 응체계 수립·운영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 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중 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 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 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 사업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 금·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	1) 지역경제 육성 세부 계획의 수 립·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 제 등의 지원 5)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6)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 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과 그 사업계획 승인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센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시장 개설허가 14) 시장관리자 지정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

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1) 시·도 지정·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이 목에서 “시·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 지정·등록유산의 반출 허가 5)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유산등의 보존·관리 2)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2)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설치·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와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와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다.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1)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설치권장과 지도·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	1)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설치권장과 지도·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운영과 지도·감독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나. 지역의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와 구조 · 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 · 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 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 · 조사와 구조 · 구급 업무 지휘 · 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 · 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 · 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교육 12)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의 지도 · 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 · 허가와 업무의 지도 · 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 · 감독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7. 국제교류 및 협 력에 관한 사무 가. 국제기구 · 행사 · 대회의 유치 · 지원 나. 외국 지방자 치 단체 와 의 교류 · 협력	시 · 도 및 시 · 군 · 자치구에 공통된다. 1) 국제기구 · 행사 · 대회의 유치 · 운영 2) 국제기구 · 행사 · 대회 운영경비의 지원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 2)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행사 유치 · 개최	

참고 7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5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탐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책정기준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hanghang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참고 8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용 도	규 모	배 정 대 상	차 량 관 리·운 행 기 준
승 용 (전 용)	○ 대형승용차	○ 시장 ○ 의회의장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 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 중형승용차	○ 부시장	
승 용 (의전용)	○ 중형승용차	○ 본청 ○ 의회	
승 용 (업무용)	○ 중형승용차	○ 시청 ○ 5급 이상의 사용기관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 소형승용차	○ 사용기관	
	○ 경형승용차		
	○ 쉼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승합용	○ 대형승합차	○ 사용기관	○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
	○ 중형승합차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용 도	규 모	배 정 대 상	차 량 관 리·운 행 기 준
화물용	○ 대형화물차	○ 사용기관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특수용	○ 청소차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트럭트랙터		
	○ 트레일러		
	○ 렉카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참고 9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10
2	10131702	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	8
3	10191703	포충기	7
4	20101601	광업용스크린	11
5	20101706	췌크러셔	11
6	20101707	크러싱플랜트	11
7	20101709	볼밀	11
8	20101710	미분쇄기	11
9	20101711	룩브레이커	7
10	21101501	쟁기	10
11	21101502	쇄토기	10
12	21101503	관리기	10
13	21101504	제초기	10
14	21101506	그레이더또는정지기	9
15	21101508	잔디밭및운동장용롤러	10
16	21101518	토양소독기	9
17	21101590	농업용인양장비	10
18	21101592	경운기	11
19	21101598	배토기	9
20	21101601	파종기	10
21	21101602	이식기	10
22	21101612	종자발아기	9
23	21101701	예취기	9
24	21101702	건초기	9
25	21101703	수확기	10
26	21101704	콤바인	9
27	21101705	탈곡기	10
28	21101706	작물분절기	10
29	21101709	목초결속기	8
30	21101710	수확용건조기	10
31	21101788	곡물이송기	9
32	21101801	분무기	10
33	21101803	살수기	9
34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11
35	21101806	퇴비살포기	10
36	21101897	동력살분무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37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8
38	21101901	착유기	10
39	21101903	가금의부란기와양육기	10
40	21101904	사료배합기	11
41	21101906	계란검사및선별기	8
42	21101915	돼지등지방측정기	10
43	21101982	사료절단기	10
44	21102001	정선기	9
45	2110200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10
46	21102004	정미기및현미기	10
47	21102005	제분기	9
48	21102006	곡물분쇄기	10
49	21102098	선과기	9
50	21102102	압착추출기	9
51	21102202	잡목벌채기	7
52	21102204	벌목톱	8
53	21102206	임업용생장추	10
54	21102299	임업용집재기	10
55	21102399	수경재배장치	8
56	21102402	양잠장비	10
57	22101502	그레이더	11
58	22101505	롤러	10
59	22101525	차륜굴착기	9
60	22101526	궤도굴착기	9
61	22101528	차륜로더	7
62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7
63	22101531	제설기(除雪機)	8
64	22101614	노면절단기	9
65	22101802	플랫폼리프트	6
66	23101511	비금속가공용선반	13
67	23101512	제재기계	13
68	23101513	비금속용밀링머신	12
69	23101514	비금속용플레이닝기계	13
70	23101523	산업용벨트샌더	10
71	23101524	산업용디스크샌더	10
72	23101525	스핀들샌더	9
73	23101528	드럼샌더	10
74	23101537	벨트디스크샌더	10
75	23101580	만능목공기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76	23121506	편직기	13
77	23121507	제직기	13
78	23121519	실험실용방사장치	12
79	23121610	날염기	10
80	23121614	산업용재봉기	13
81	23121616	염색시험기	13
82	23141603	피혁염색기계	9
83	23151502	코팅기	10
84	23151503	압출성형기	10
85	23151504	사출성형기	10
86	23151507	압축성형기	13
87	23151606	시멘트,도자기,유리및유사제품가공기계	10
88	23151610	마이크로피펫제작기	12
89	23151808	과립조제설비	10
90	23151996	종이기록물복원장비	8
91	23152199	산업용절단기	13
92	23152901	포장기계	10
93	23152902	충진또는봉인기계	11
94	23152903	진공포장기	12
95	23152995	라벨기	7
96	23153298	산업용로봇	10
97	23161510	주조기	9
98	23161517	다이캐스팅머신	11
99	23161581	분사기	9
100	23161582	조형기	10
101	23161592	가마	11
102	23161593	고주파유도진공용해로	11
103	23161596	전기로	11
104	23161597	도가니로	13
105	23171670	고속절단기	13
106	23171677	레이저가공기	10
107	23171678	복합공작기계	12
108	23171685	자동화생산시스템	9
109	23171686	전단기	12
110	23171688	초음파가공기	10
111	23172495	절단기	10
112	23172583	만능공구연삭기	12
113	23181501	충진기	11
114	23181506	세척장치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15	23181507	분쇄기	10
116	23181511	음식물성형기	12
117	23181518	식품발효기	10
118	23181604	음식물절단기	9
119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8
120	23191099	파우더혼합기	9
121	23211103	웨이퍼와이어본딩기	8
122	23211106	이온주입기	11
123	23211176	스핀코팅기	11
124	23211177	열산화반응챔버	8
125	23211178	웨이퍼다이본딩기	8
126	23211180	웨이퍼식각기	8
127	23211183	웨이퍼증착적층기	8
128	23211192	진공함침기	13
129	23211194	포토레지스트노광기	8
130	23211198	플라즈마처리기	8
131	23211199	회로기판제작기	10
132	23241402	평면연삭기	13
133	23241407	원통연삭기	13
134	23241502	전해가공기	11
135	23241506	플라스마절단기	12
136	23241509	금속따옴머신	12
137	23241511	나사절삭기	11
138	23241596	방전가공기기	12
139	23241598	자동가스절단기	10
140	23241802	다축드릴링머신	12
141	23241809	탁상드릴링머신	11
142	23241894	CNC드릴링머신	12
143	23241896	레이디얼드릴링머신	12
144	23241898	직립드릴링머신	12
145	23242305	터릿선반	12
146	23242398	선반	13
147	23242403	수직형머시닝센터	12
148	23242501	베드형밀링머신	10
149	23242507	만능밀링머신	12
150	23242509	터릿밀링머신	10
151	23242590	CNC밀링머신	12
152	23242591	공구밀링머신	11
153	23242595	수직밀링머신	13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54	23242596	수평밀링머신	12
155	23242612	금속조각기계	11
156	23251508	철근밴딩머신	11
157	23251602	판금용성형기	12
158	23251782	시트압연기	10
159	23251784	압축공기프레스	12
160	23251785	압출기	11
161	23251788	유압프레스	13
162	23261507	3차원프린터	7
163	23271405	레이저용접기	11
164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13
165	23271486	불활성가스차폐아크용접기	10
166	23271493	이산화탄소가스용접기	12
167	23271496	직류아크용접기	11
168	23271603	납땜인두	8
169	23271707	산소아세틸렌용접기	10
170	23281591	도금장치	9
171	23281601	고주파유도가열기	12
172	23281698	침탄및질화전기로	13
173	23990394	산업용건조기	13
174	23990398	진공증착기	13
175	23990399	건조로	12
176	24101501	카트	8
177	24101503	돌리	9
178	24101504	핸드트럭또는엑세서리	12
179	24101505	팔렛트럭	12
180	24101506	푸시카트	8
181	24101511	다단식운반차	13
182	24101516	동력플랫폼트럭	8
183	24101599	플랫폼트럭	9
184	24101602	호이스트	10
185	24101603	지게차	10
186	24101604	리프트	9
187	24101608	권양기	9
188	24101612	잭	10
189	24101613	블록또는도르래	10
190	24101617	가위승강기또는리프트테이블	8
191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11
192	24101661	자동차리프트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93	24101689	주차관제장치	9
194	24101696	휠체어리프트	8
195	24101709	롤러컨베이어	11
196	24101712	벨트컨베이어	11
197	24101746	이동식컨베이어	10
198	24101749	수직컨베이어	12
199	24102004	보관용선반	10
200	24102006	작업용벤치	13
201	24102298	재활용품압축기	9
202	24111802	공기,가스탱크또는실린더	13
203	24111805	약품탱크	11
204	24111810	저수탱크	9
205	24111816	초저온용기	11
206	24111894	액체질소통	12
207	24111897	온수탱크	10
208	24112401	공구보관용함,상자또는캐비닛	12
209	24112898	일반화물컨테이너	9
210	24112901	나무상자	11
211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10
212	24131503	대형냉장고	10
213	24131602	상업용냉동고	10
214	24131604	냉동건조장비	12
215	24131902	덩어리얼음제조기	9
216	25111520	부표	5
217	25111527	소형보트	7
218	25111597	기동정	7
219	25111601	구명정	5
220	25111603	구조선	9
221	25111698	고무보트	7
222	25111804	카누또는카약	10
223	25111808	요트	6
224	25111899	조정경기정	8
225	25111999	선박모의조종장치	9
226	25131899	무인비행기	4
227	25161507	일반자전거	7
228	25173108	차량용항법장치	7
229	25173813	자동변속기	8
230	25173898	차량엔진용공기청정기	9
231	25174490	차량용운행기록계	6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232	25174491	엔진오일압력계	12
233	25174496	차량용음향영상시스템	8
234	25174892	모래살포기	6
235	25174894	차량차체용적재함	9
236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6
237	25175199	차량용영상기록장치	6
238	25179997	차량용냉방기	7
239	25181717	저상형트레일러	11
240	25181795	농업용트레일러	11
241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8
242	25191509	항공기푸시백또는견인차	9
243	25191510	항공기용지상전원부	9
244	25191522	항공기엔진정비세트	9
245	25191701	차륜평형기	11
246	25191702	차륜정렬기	11
247	25191739	조타장치모의시험기	11
248	25191797	차량세차기	9
249	25191808	브레이크시험기	12
250	25191810	새시동력계	7
251	25191821	엔진모의시험기	10
252	25191822	엔진인젝터시험기	11
253	25191824	엔진튜업시험기	12
254	25191924	엔진종합검사장비	11
255	25191932	자동차종합검사장치	10
256	25201707	항공기자이로	10
257	25202198	항공기가속도계기	11
258	25230529	철도용공기압축기	9
259	26101115	삼상유도전동기	13
260	26101205	서보모터	11
261	26101212	스핀들모터	8
262	26101504	디젤엔진	11
263	26101515	가솔린선외모터	8
264	26101593	가솔린엔진	11
265	26111601	디젤발전기	12
266	26111604	가스또는가솔린발전기	12
267	26111607	태양광발전장치	11
268	26111611	보조발전기	11
269	26111699	태양전지조절기	10
270	26111704	충전장치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271	26111719	배터리시험기	11
272	26111729	자동충전기유닛	7
273	26141702	방사선측정기	12
274	27111511	선재절단기	11
275	27111715	토크렌치	9
276	27111802	수준기	12
277	27111814	검사용거울	7
278	27111822	각폭측정기	11
279	27111826	정밀정반	13
280	27112035	동력전정기	9
281	27112043	수목진단기	10
282	27112046	잔디청소기	8
283	27112701	낙엽청소기	9
284	27112703	전동드릴	11
285	27112704	전동그라인더	10
286	27112706	전동대패	12
287	27112707	핸드라우터	9
288	27112709	전기톱	10
289	27112739	벨트샌더	9
290	27112742	디스크샌더	9
291	27112799	전기절단기	12
292	27112809	공구정리대	11
293	27113201	일반도구키트	9
294	27113295	전문용공구세트	9
295	27113299	항공기용공구세트	9
296	27131605	에어커튼	9
297	30161505	내벽패널	6
298	30171505	금속문	7
299	30181502	비데	7
300	30181504	세면기	8
301	30191501	사다리	10
302	30191898	안전펜스	7
303	30201705	이동식부스	10
304	30201789	패스박스	8
305	30201790	에어샤워	7
306	30201796	조립식구조물	12
307	30222064	자전거보관대	8
308	30231602	이동식화장실	8
309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310	31241501	렌즈	10
311	31242104	옵티컬레이일또는베이스	10
312	31242107	광학실험대	10
313	32101514	증폭기	12
314	32101515	감쇠기	12
315	32101519	검파기	11
316	32101528	변조기	10
317	32101617	스마트카드	7
318	32121616	조정저항기	10
319	32121701	정류기	12
320	32121704	정적변환기	9
321	32131005	집적회로패키지	9
322	32131010	인쇄회로기판	10
323	32131096	복합전자장치	11
324	32141009	광전관	6
325	39101616	자외선램프	10
326	39101699	LED램프	8
327	39111501	형광등기구	7
328	39111504	무대프로젝션또는방송실용조명기기	11
329	39111526	가로등주및부속자재	8
330	39111611	투광조명	6
331	39111706	스트로보또는경고등	9
332	39111708	비상구용발광표지	9
333	39111709	비상조명장치	10
334	39112003	조명스탠드	9
335	39112012	휴대용등또는작업등	7
336	39112102	LED실내조명등	7
337	39121001	배전용변압기	11
338	39121002	전력용변압기	11
339	39121004	전원공급장치	11
340	39121006	파워어댑터또는인버터	10
341	39121007	주파수변환기	11
342	39121008	신호변환기	11
343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8
344	39121026	전력제어용변압기	11
345	39121083	전동발전기	12
346	39121101	분전반	8
347	39121103	배전반	12
348	39121104	전동기제어반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349	39121106	전력감시또는제어장치	12
350	39121107	조명제어장치	10
351	39121198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PLC)	12
352	39121308	아웃렛박스	7
353	39121510	컨트롤스위치(CS)	10
354	39121521	모터시동기	11
355	39121532	무선(RF)스위치	9
356	39121610	서지방지장치	7
357	39121621	피뢰장치및엑세서리	9
358	39121635	전압조정기	13
359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	11
360	39122171	전주	11
361	40101502	배기장치	6
362	40101601	송풍기	10
363	40101602	공기순환기	9
364	40101701	냉방기	10
365	40101708	팬코일유닛	11
366	40101709	공기조화기	10
367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13
368	40101711	터보냉동기	11
369	40101714	흡수식냉온수기	10
370	40101715	항온항습기	10
371	40101716	냉각탑	12
372	40101787	냉난방기	9
373	40101796	냉풍기	8
374	40101801	방열기	9
375	40101802	열교환장치	11
376	40101806	열펌프	9
377	40101808	스토브	6
378	40101811	대류식난방기	6
379	40101825	가정용온수기	8
380	40101826	상업용온수기	6
381	40101834	연소기또는버너	7
382	40101866	온풍난방기	11
383	40101895	자동연소제어기	11
384	40101902	제습기	10
385	40101903	가습기	7
386	40102001	연관보일러	10
387	40102002	수관보일러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388	40102003	전기보일러	13
389	40102004	천연가스동력보일러	9
390	40102007	소형기름보일러	10
391	40102091	입형보일러	12
392	40102092	주철제보일러	11
393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8
394	40141609	제어밸브	12
395	40142201	가스조절기	12
396	40151502	진공펌프	13
397	40151503	원심펌프	12
398	40151505	정량펌프	11
399	40151513	수증펌프	10
400	40151551	기어펌프	11
401	40151566	부스터펌프	10
402	40151597	엔진펌프	6
403	40151599	자동펌프	12
404	40151601	이동식공기압축기	11
405	40151606	왕복압축기	13
406	40151608	회전압축기	13
407	40151610	압축기부품또는액세서리	12
408	40151697	실험실습용압축기	13
409	40161502	워터필터	9
410	40161503	집진기	10
411	40161505	공기여과기	8
412	40161602	공기청정기	7
413	40161605	탈취기	9
414	40161606	공기정화용오존발생기	11
415	40161699	공기살균기	6
416	40161701	원심분리기	11
417	40161799	오일분리기	12
418	41101503	실험실용분무기	10
419	41101504	균질화기기	12
420	41101518	실험실용혼합기및유화기	10
421	41101701	실험실용밀	12
422	41101705	실험실용분쇄기	10
423	41101707	실험실용프레스	13
424	41101708	실험실용연마기및연삭기	12
425	41101797	실험실용선별기	11
426	41101802	엑스레이발생기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427	41101805	자속계	9
428	41101806	자력계	12
429	41101807	전자회절장치	11
430	41101811	전자탐침마이크로분석기	11
431	41101813	엑스선장치제어기	9
432	41102404	실험실용히터	12
433	41102405	히팅맨틀또는테이프	11
434	41102406	실험용가열판	12
435	41102407	보온함	9
436	41102412	열풍기	8
437	41102423	교반가열판	10
438	41102513	곤충관찰장치	7
439	41102601	소형동물용우리	11
440	41102608	동물실험장치	6
441	41102704	엑스레이회절장치	11
442	41102909	조직처리장치	12
443	41102910	조직배양장치	7
444	41102914	초음파분쇄기	10
445	41102916	마이크로톱	13
446	41102923	체세포수측정장치	10
447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11
448	41103006	저온또는액화질소냉동고	11
449	41103011	실험실용일반냉장고또는냉동고	8
450	41103202	실험용세척기	12
451	41103207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9
452	41103301	실험실용액체섬광계수기	10
453	41103303	농도계	11
454	41103311	유체압력계	12
455	41103312	점도계	13
456	41103317	표면장력측정기	12
457	41103324	실험실용조파장치	11
458	41103325	유체흐름가시화장치	12
459	41103326	풍동실험장치	11
460	41103327	유속계	13
461	41103385	농도측정기	11
462	41103386	밀도측정기	11
463	41103392	수로실험장치	12
464	41103406	무균함	12
465	41103415	무균대	12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466	41103417	실내환경측정장치	10
467	41103418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12
468	41103491	항온항습조	12
469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8
470	41103515	실험실용가스발생기	12
471	41103587	공기흐름실험장치	10
472	41103590	실험실용가스캐비닛	9
473	41103701	순환식수조	12
474	41103702	자동온도조절식수조	10
475	41103704	생물학용온도조절조	11
476	41103706	항온수조	12
477	41103712	용액순환기	11
478	41103799	실험실용물통	10
479	41103801	실험용혼합기	12
480	41103802	회전혼합기	10
481	41103805	실험실용진동기	12
482	41103806	자력교반기	13
483	41103810	오버헤드교반기	11
484	41103811	회전식진탕기	12
485	41103812	왕복식진탕기	11
486	41103814	소용돌이식진탕기	11
487	41103817	실험실용반응기	12
488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12
489	41103902	미량냉장원심분리기	12
490	41103903	탁상형원심분리기	11
491	41103904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11
492	41103905	플로어원심분리기	10
493	41103906	냉장플로어원심분리기	11
494	41103907	초고속원심분리기	9
495	41103908	진공원심분리기	11
496	41103909	회전자또는고정자	10
497	41104007	수질시료채취기	11
498	41104008	건본기체추출장치또는수집장치	10
499	41104021	분액수집기	13
500	41104022	시편제작기	12
501	41104098	시료채취기	11
502	41104118	표본채취기	11
503	41104120	침전속도측정용관	11
504	41104202	탈이온또는탈염장비	12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505	41104206	초순수제조장치	12
506	41104207	용수분석기	11
507	41104301	표준발효실험유닛	12
508	41104401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13
509	41104402	강제순환식또는기계대류식범용배양기	10
510	41104404	저온BOD배양기	11
511	41104405	진탕배양기	12
512	41104498	이산화탄소배양기	12
513	41104505	실험용석영오븐단지	10
514	41104507	마이크로웨이브오븐	10
515	41104509	진공오븐	11
516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12
517	41104511	교잡반응기또는배양기	11
518	41104601	실험용박스로	13
519	41104602	프로그래머블박스로	11
520	41104613	고온가압로	11
521	41104701	동결건조기또는리오필라이저	12
522	41104801	플라스크또는증류기유닛	11
523	41104802	이단계증류기	12
524	41104803	실험용증발기	12
525	41104806	실험용추출기	11
526	41104807	지방추출기	9
527	41104808	조섬유추출기	9
528	41104814	실험용열교환응축기	13
529	41104815	킬달질소분해장치	11
530	41104816	진공또는원심농축기	12
531	41104819	세포모음장치	11
532	41104896	용출시험기	10
533	41104911	실험용공기여과시스템	9
534	41104914	보틀탑필터또는여과컵	12
535	41105002	실험실용분급기기	11
536	41105101	실험용진공펌프	12
537	41105102	연동펌프	13
538	41105106	크로마토그래피펌프	10
539	41105314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11
540	41105316	자외선작업함	12
541	41105399	전기영동장치	13
542	41105505	고효율시료검색시스템	8
543	41105517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544	41105521	유전자검출기	10
545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핵산합성도구	12
546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PCR)최적화제품	12
547	41106701	엽면적계	12
548	41106702	광합성측정장치	11
549	41106703	식물생장계	12
550	41106704	엽록소측정기	10
551	41106705	식물생장조절실	10
552	41111502	실험용저울	13
553	41111503	기계식중량계	12
554	41111505	눈금중량계또는눈금저울	13
555	41111506	동물체중계	10
556	41111507	벤치스케일	11
557	41111508	체중계	9
558	41111511	트럭및철도용중량계	10
559	41111513	수분측정용저울	9
560	41111516	중량측정기기액세서리	9
561	41111517	분석저울	12
562	41111519	크레인저울	12
563	41111526	자동선별용저울	11
564	41111601	마이크로미터	12
565	41111605	스트레인게이지	11
566	41111613	거리측정기	11
567	41111614	높이게이지	11
568	41111615	레이저측정장치	13
569	41111618	게이지블록세트	13
570	41111623	두께측정기	11
571	41111669	두께게이지	11
572	41111678	만능측장기	12
573	41111703	실체현미경	13
574	41111704	현미경용조명장치	11
575	41111706	현미경용사진부착장치	12
576	41111707	형상투영기	10
577	41111711	전자현미경	11
578	41111712	역상현미경	9
579	41111713	확대경	10
580	41111715	망원경	11
581	41111716	내시경검사장치	9
582	41111717	쌍안경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583	41111718	금속현미경	12
584	41111720	주사전자현미경(SEM)	12
585	41111721	투과전자현미경(TEM)	9
586	41111722	형광현미경	11
587	41111723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또는레이저주사현미경	9
588	41111724	주사탐침현미경	8
589	41111725	편광현미경	12
590	41111727	투사현미경	13
591	41111735	자동현미경제물대	9
592	41111741	현미경미분간섭차장치	9
593	41111744	현미경용마이크로미터	12
594	41111745	현미경용미세조작기	11
595	41111747	산업용내시경	10
596	41111749	위상차현미경	10
597	41111798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10
598	41111804	초음파검사장치	13
599	41111808	엑스레이콘텐트겐사진검사장치	9
600	41111815	철근탐지기	12
601	41111816	변위측정기	13
602	41111817	식미검정기	8
603	41111905	전자탐침봉	10
604	41111908	그래프기록계	13
605	41111910	멀티펜기기록계	10
606	41111912	생리현상기록계	13
607	41111916	비접촉센서	9
608	41111920	3차원측정기	10
609	41111921	속도감지기	8
610	41111926	근접감지기	7
611	41111938	레벨센서및트랜스미터	8
612	41111939	음향탐지기	11
613	41111942	불투명도,분진또는가시도센서	12
614	41111970	온도감지기	10
615	41111973	미립자계수기	9
616	41111975	자기탐지기	9
617	41112105	온도트랜스미터	8
618	41112108	로드셀	11
619	41112113	기계적에너지변환기	12
620	41112114	온습도트랜스미터	10
621	41112197	선박육분력측정기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622	41112201	열량계	12
623	41112202	열추적장치	10
624	41112204	고온계	10
625	41112205	온도조절기	11
626	41112207	자동기록온도계	10
627	41112210	원격온도계	10
628	41112213	휴대용온도계	9
629	41112228	연소효율측정기	11
630	41112233	녹는점 측정기	12
631	41112234	열류계	9
632	41112301	습도계	8
633	41112302	건습계	11
634	41112303	온습도 측정기	11
635	41112304	수분계	11
636	41112401	깊이 측정기	10
637	41112404	압력조정기	8
638	41112406	진공 측정기	13
639	41112407	수위관리및조절기구	10
640	41112410	압력트랜스미터	10
641	41112411	압력조절기	11
642	41112414	압력검교정장비	8
643	41112416	내압시험기	9
644	41112418	모세관압측정기	10
645	41112422	수압시험기	11
646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11
647	41112501	유량계	10
648	41112502	레오미터	9
649	41112508	가스미터	10
650	41112701	곡물분석기	9
651	41112702	종자계수기	10
652	41112801	속도계	11
653	41112802	회전계	12
654	41112901	방향탐지용컴파스	10
655	41112902	무선통신항해용장비	11
656	41112903	육분의	12
657	41112906	전파표지	10
658	41113009	열차별 분석기	11
659	41113024	액체비중계	10
660	41113027	삼투압 측정기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661	41113029	전기분해반응분석측정장치	8
662	41113031	당도계	11
663	41113037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10
664	41113040	콜로니카운터	11
665	41113041	원소분석기	11
666	41113042	우유분석기	9
667	41113046	점착시험기	10
668	41113048	건뢰도시험기	12
669	41113049	연소분석기	11
670	41113051	산화환원측정기	11
671	41113057	오니농도측정기	12
672	41113091	반응속도측정장치	11
673	41113099	건축자재 방출오염물질 측정장치	11
674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13
675	41113104	인화성가스측정기	10
676	41113105	탄화수소분석및탐지기	11
677	41113108	산화질소분석기	10
678	41113110	산소분석기	10
679	41113111	오존분석기	10
680	41113113	산화황분석기및탐지기	11
681	41113114	열전도율분석기	13
682	41113117	단일가스검출기	10
683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11
684	41113120	일산화탄소측정기	9
685	41113124	물질대사가스분석기	10
686	41113199	대기오염측정기	11
687	41113301	산또는염기분석기	12
688	41113308	전해질분석기	10
689	41113315	유기탄소측정기	10
690	41113319	수질분석기	11
691	41113322	질소, 질산염또는아질산염분석기	12
692	41113326	도료입도측정기	11
693	41113327	필름애플리게이터	11
694	41113328	수은분석기	10
695	41113331	동결용해시험장치	10
696	41113333	계면동전위측정장치	10
697	41113338	BOD측정기	10
698	41113339	COD측정기	10
699	41113380	비표면적 측정장치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700	41113399	유동화시험장치	11
701	41113405	감마선계수기	11
702	41113601	전류계	13
703	41113603	실험용브리지회로	12
704	41113612	접지저항측정기	11
705	41113614	전자기장측정기	12
706	41113619	검류계	11
707	41113621	임피던스측정기	12
708	41113623	절연저항측정기	10
709	41113624	절연시험기	10
710	41113630	멀티미터	11
711	41113631	저항계	12
712	41113632	오실로그래프	11
713	41113633	전위차계	13
714	41113637	전압또는전류측정기	13
715	41113638	오실로스코프	13
716	41113639	가속도계	9
717	41113640	유효전력계	12
718	41113642	회로검사장치	13
719	41113643	수요전력계또는기록계	11
720	41113646	온도교정기또는시뮬레이터	12
721	41113655	발전기시험장치	11
722	41113656	서보시험장치	12
723	41113661	전압조정기시험기	11
724	41113671	콘덴서시험기	10
725	41113672	계전기시험기	11
726	41113674	저항시험장치	12
727	41113675	전류분류기	10
728	41113677	내전압시험기	10
729	41113682	전력시험기	12
730	41113686	클램프테스터	9
731	41113689	종합계측기	11
732	41113692	전압전류계교정장치	10
733	41113693	정전기측정기	11
734	41113695	펄스측정기	11
735	41113697	변환기시험장치	12
736	41113698	제어기시험장치	12
737	41113699	전동기시험장치	12
738	41113702	비교측정기	12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739	41113704	집적회로검사기	12
740	41113705	논리상태검사기	10
741	41113706	반도체검사기	11
742	41113708	전력계	9
743	41113709	변조측정기	11
744	41113710	레벨미터	12
745	41113711	통신망분석장치	11
746	41113718	프로토콜분석기	11
747	41113720	전송량측정기	11
748	41113721	영상신호측정기	10
749	41113722	전자파장해시험기	8
750	41113723	무선장비시험기	10
751	41113725	광파워미터	9
752	41113728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9
753	41113729	증폭기출력계	11
754	41113730	텔레비전시험기	11
755	41113732	증폭기시험기	12
756	41113733	안테나시험기	10
757	41113735	극초단파기기시험기	11
758	41113737	잡음측정기	12
759	41113738	통신선로유지보수용시험기	11
760	41113739	전자파내성시험기(EMS)	10
761	41113777	통신교육용모의장치	9
762	41113783	변복조분석기	11
763	41113794	수신측정기	12
764	41113797	광섬유시험장치	7
765	41113803	전자기의지구물리도구	9
766	41113808	중력계	12
767	41113809	지질탐지기	10
768	41113811	지내력시험기	11
769	41113812	지반마찰시험기	11
770	41113816	압밀시험기	12
771	41113817	토질액성한계시험기	11
772	41113818	평판재하시험기	12
773	41113819	토양분석기	12
774	41113821	토질관입시험기	11
775	41113822	흙지지력비시험기	12
776	41113824	토질투수시험기	10
777	41113827	일축압축시험기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778	41113899	탄성파탐사기	11
779	41113902	용해또는분해검사기	11
780	41113903	입자측정장치	11
781	41113904	경도측정기	11
782	41113905	투과성시험기	10
783	41113909	토양샘플채취장치	11
784	41113996	채니기	9
785	41114001	경사계	10
786	41114106	지진기록장치또는지진계	9
787	41114107	지진계	9
788	41114204	경위의	11
789	41114212	사진판독확대경	12
790	41114213	정밀좌표측정기	10
791	41114215	측고기	11
792	41114220	전경의	12
793	41114294	구적계	12
794	41114401	풍속계	11
795	41114402	기압계	9
796	41114404	라디오존데기구	10
797	41114405	강우량기록계	8
798	41114406	강우또는증발지표관측장비	9
799	41114407	태양복사열지표측정기	10
800	41114409	풍속지표측정장치	8
801	41114410	기상관측장비	9
802	41114412	기상수직분포측정장치	11
803	41114414	기상위성수신장비	10
804	41114415	낙뢰분석장비	11
805	41114417	기상관측부이	7
806	41114418	기상위성수신분석장치	11
807	41114419	저층난류경보장비	9
808	41114423	자동기상관측장비종합검진기	9
809	41114427	풍향계	10
810	41114496	해양측정기기	7
811	41114498	인공강우장비	8
812	41114501	동력계	12
813	41114502	탄력계	10
814	41114503	신장계	10
815	41114505	진원도측정기	11
816	41114508	표면검사장치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817	41114510	토크게이지	11
818	41114511	유연도시험기	11
819	41114514	비틀림진동측정기	11
820	41114516	절삭력측정장치	12
821	41114519	예인전차시스템	10
822	41114521	공기압축기시험기	11
823	41114524	유압(油壓)시험기	11
824	41114528	선박동요측정기	11
825	41114530	접착강도시험기	11
826	41114562	물성시험기	11
827	41114569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12
828	41114580	공압실린더시험장치	10
829	41114586	노화시험기	11
830	41114592	안정도시험기	10
831	41114601	마모시험기	13
832	41114602	압축시험기	13
833	41114603	콘크리트또는시멘트시험기	10
834	41114604	부식시험기	11
835	41114605	틈새또는부식검출기	10
836	41114606	크리프시험기	9
837	41114608	피로시험기	13
838	41114611	경도검사기	13
839	41114612	충격식검사기	13
840	41114614	금속검사기	12
841	41114618	표면거칠기측정장치	10
842	41114619	전단력검사기	12
843	41114621	장력검사기	13
844	41114622	비틀림검사장비	11
845	41114623	굴곡성또는횡성검사기	11
846	41114624	진동성검사기	13
847	41114629	가열변형시험기	11
848	41114630	열충격시험기	11
849	41114631	응력시험기	13
850	41114632	인장강도시험기	13
851	41114633	열팽창시험기	10
852	41114634	에릭슨시험기	12
853	41114636	폴리머사출성형측정기	12
854	41114637	빔시험장치	10
855	41114638	하중시험기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856	41114640	포장도로평탄성측정기	10
857	41114644	공기량측정기	12
858	41114648	유동성시험기	10
859	41114650	몰드	10
860	41114672	아스팔트시험기	10
861	41114674	만능재료시험기	13
862	41114709	실검사기	9
863	41114715	섬유또는 종이공기투과도시험기	11
864	41114722	인열강도(引裂強度)시험기	12
865	41114723	파열강도(破裂強度)시험기	12
866	41115102	측각기	9
867	41115201	전파탐지시스템	9
868	41115203	기상레이더	10
869	41115303	주파수분석기	13
870	41115304	주파수카운터	12
871	41115306	간섭계	11
872	41115307	레이저발생기	12
873	41115309	조도계	13
874	41115311	광도계	13
875	41115313	휴대용굴절계	12
876	41115314	편광계	13
877	41115315	편광기	12
878	41115316	반사계	9
879	41115317	스트로보스코프	10
880	41115318	비색계	13
881	41115320	신호발생기	12
882	41115323	함수발생기	12
883	41115327	광전측정기기	9
884	41115328	파형합성기	10
885	41115329	전파측정장치	9
886	41115330	불투명측정기	9
887	41115331	광택도측정기	11
888	41115332	광파장측정기	10
889	41115333	광자수측정기	11
890	41115334	백색도측정기	11
891	41115335	벡터스코프	11
892	41115336	실험실용자외선등	10
893	41115337	파형측정기	12
894	41115338	휘도측정기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895	41115339	일립소미터	10
896	41115385	형광사검출기	9
897	41115401	형광분광분석기	11
898	41115403	분광계	12
899	41115404	질량분석기	10
900	41115406	분광광도계	12
901	41115407	원자흡광분석기	11
902	41115408	적외선분광기	11
903	41115409	핵자기공명분석기	11
904	41115411	유도결합플라즈마(ICP)분광계	10
905	41115412	분광복사계	10
906	41115413	세포분석기	11
907	41115414	방사선분광분석기(방사선헤중분석기)	11
908	41115415	전자분광분석기(ESCA)	8
909	41115416	전자스핀공명분석기	11
910	41115501	소나	10
911	41115503	음향측정기및데시벨미터	11
912	41115507	음성특성시험기	11
913	41115513	음향발생장치	9
914	41115515	하이드로폰	9
915	41115602	전위차적정기	12
916	41115603	pH측정기	12
917	41115608	이온선택전극	10
918	41115609	전도도측정기	12
919	41115611	용존산소량측정기	11
920	41115613	염분검출기	11
921	41115615	수소이온농도조절기	11
922	41115701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12
923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1
924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1
925	41115715	실험실용주입기	11
926	41115811	DNA서열분석기	10
927	41115821	미생물분석기	10
928	41115823	단백질분석기	12
929	41115832	항생물질검사기	10
930	41116107	화학품질관리, 측정기 또는 표준	9
931	41116303	방화도시험기	10
932	41119905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9
933	41119909	혈액가스분석기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934	41119914	혈액응고시간분석기	9
935	41119917	의료용분광광도계	7
936	41119928	의료용효소분석기	12
937	41119933	혈액상자동분석장치	11
938	41119937	자동염색기구	10
939	41119940	요화학분석기	10
940	41119953	표본가공기	7
941	41119956	의료용세포·조직배양기	9
942	41121502	실험실용희석기	9
943	41121504	수동식단채널공기치환형피펫	11
944	41121509	파스퇴르식또는트랜스퍼피펫	12
945	41121516	디스펜서	12
946	41121808	실험용부렛	11
947	41121811	실험용미량화학키트	12
948	41122203	금속도가니	13
949	41122805	건조용랙	10
950	41123001	단지형데시케이터	11
951	41123002	캐비닛형데시케이터	10
952	41123004	진공데시케이터	8
953	42121592	정액보존용기	12
954	42141801	복합전기치료유닛	8
955	42141804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9
956	4214240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10
957	42142802	혈관압박의복또는지지물	9
958	42143502	비세척장치또는액세서리	10
959	42151501	심미치과용광중합기또는액세서리	9
960	42151704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1
961	42152008	치과용방사선기기	11
962	42152701	치과용교합기또는액세서리	11
963	42161632	혈액투석장치	8
964	42171611	응급처치용들것또는액세서리	8
965	42171802	응급의료용후두경키트	8
966	42172001	응급의료용처치키트	8
967	42172013	응급의료용후송키트	10
968	42172101	심장충격기	6
969	42181602	전자혈압계	9
970	42181605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971	42181701	심전도기	11
972	42181712	심전도장치분석기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973	42181720	부하심전도장치	10
974	42181722	맥파분석기	10
975	42181795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8
976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8
977	42181904	멀티파라미터바이탈사인장치또는엑세서리	10
978	42182005	검안경,이경또는검안검이경세트	10
979	42182299	적외선체온계	4
980	42182310	근전도기	8
981	42182314	의료용바이오피드백장치	10
982	42182401	청력계또는엑세서리	9
983	42182705	체성분분석기	11
984	42182803	범용병상또는테이블중계	10
985	42183015	안과용세극등	8
986	42183029	종합굴절검사기	9
987	42191602	수술실조명또는엑세서리	9
988	42191807	범용간호침상또는엑세서리	9
989	4219190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10
990	42192001	범용검진또는시술용테이블	9
991	42192201	환자운반차또는엑세서리	10
992	42192209	휠체어경사로	10
993	42192210	휠체어	10
994	42192404	의료용카트또는엑세서리	10
995	42192602	약,알약분배기또는엑세서리	8
996	42199098	혈액냉동고	11
997	42199099	혈액.약품냉장고	10
998	42201601	MRI고정설치용장치	8
999	42201712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 초음파검사장치	11
1000	42201799	초음파뇌조영장치	10
1001	42201804	의료용C암방사선기기	9
1002	4220181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9
1003	42201898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11
1004	42201899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10
1005	42201903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10
1006	42203301	무고정틀정위방사선치료장치	9
1007	42203702	의료영상용습식암실또는명실현상기	10
1008	42203705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또는영상표시기	9
1009	42211503	자세교정기	8
1010	42211702	장애인용점자장치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011	42211705	장애인용보청기	5
1012	42211797	약시인용확대장치	9
1013	42222001	범용정맥주입펌프	10
1014	42251502	인지수동기민성지각감각평가또는검사제품	11
1015	42251603	지속수동운동(CPM)장치또는엑세서리	8
1016	42251605	재활또는치료용폐달운동	10
1017	42251616	재활또는치료용전기진동기	8
1018	42251698	범용전기진동기	8
1019	42261509	부검용해부키트	9
1020	42261806	시신냉동고	8
1021	42271602	호흡측정기,그액세서리또는용품	10
1022	42271605	폐기능계량기	10
1023	42271612	폐가스분석기또는감시기	8
1024	42271703	산소혼합기	8
1025	42272209	인공호흡기또는호흡회로	10
1026	42272501	가스마취기	8
1027	42281501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9
1028	42281503	필터멸균기	9
1029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1
1030	42281531	의료용자외선소독기	9
1031	42281596	고압멸균기	12
1032	42281712	초음파세척기	12
1033	42291601	레이저수술용메스,나이프또는나이프핸들	8
1034	42291612	수술용골검자	8
1035	42295104	전기수술,전기소작기기,엑세서리또는관련제품	7
1036	42295112	수술실용시술대,엑세서리또는관련제품	10
1037	42301502	의학교육또는실습용마네킨	10
1038	42301504	의학교육또는실습키트	10
1039	43191501	휴대전화기	4
1040	43191504	유선전화기	8
1041	43191508	디지털전화기	9
1042	43191510	양방향라디오	9
1043	43191511	IP전화기	7
1044	43191513	화상전화기	6
1045	43191514	위성전화기	8
1046	43191516	키폰주장치	11
1047	43191633	키폰전화기	8
1048	43191634	키폰주장치용확장보드	8
1049	43201402	메모리모듈카드	7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050	43201404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8
1051	43201407	주변기기제어카드	5
1052	43201414	하드디스크보안장치	7
1053	43201416	데이터수집보드	8
1054	43201417	멀티미디어용통합보드	8
1055	43201503	중앙처리장치	8
1056	43201513	주기판마더보드	8
1057	43201531	비디오캡처보드	8
1058	43201537	프린트서버	8
1059	43201540	채널변환기	10
1060	43201552	하드웨어전화통신어댑터	7
1061	43201553	송수신기및미디어컨버터	8
1062	43201557	레이드컨트롤러	7
1063	43201614	콘솔익스텐더	8
1064	43201801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8
1065	43201802	하드디스크어레이	6
1066	43201803	하드디스크드라이브	6
1067	43201807	테이프드라이브	8
1068	43201814	전자미디어또는데이터복사기	7
1069	43201817	CD드라이브	7
1070	43201818	DVD드라이브	8
1071	43201826	광디스크어레이	6
1072	43201827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5
1073	43201830	SSD저장장치	6
1074	43201832	주크박스	8
1075	43201833	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	10
1076	43201903	테이프드라이브라이브러리	6
1077	43201999	하드디스크파기장치	6
1078	43202002	공테이프	6
1079	43202005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7
1080	43211501	컴퓨터서버	6
1081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1082	43211504	PDA또는오거나이저	8
1083	43211505	POS터미널	6
1084	43211506	신클라이언트컴퓨터	7
1085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5
1086	43211509	태블릿컴퓨터	5
1087	43211510	메인프레임콘솔또는단순단말기	9
1088	43211512	메인프레임컴퓨터	6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089	43211514	컴퓨터키오스크	6
1090	43211593	일체형컴퓨터	6
1091	43211594	특수목적컴퓨터	5
1092	43211595	멀티스크린컴퓨터	6
1093	43211596	베어본컴퓨터	5
1094	43211598	아날로그컴퓨터	5
1095	43211606	멀티미디어키트	7
1096	43211608	엔코더디코더장비	10
1097	43211699	신호처리기	8
1098	43211702	자기띠판독기및부호기	8
1099	43211706	키보드	6
1100	43211710	무선주파수식별장치	8
1101	43211711	스캐너	6
1102	43211712	그래픽태블릿	7
1103	43211713	터치패드	6
1104	43211714	생체인식장비	8
1105	43211717	광학문자판독장치	10
1106	43211723	전자투표또는개표기	8
1107	43211728	스마트카드단말기	8
1108	43211729	광학마크판독기	10
1109	43211797	도서관리시스템	10
1110	43211798	자료수집장치	10
1111	43211799	화상분석시스템	8
1112	43211901	CRT모니터	7
1113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5
1114	43211903	터치스크린모니터	7
1115	43211906	문자디스플레이	6
1116	43212102	도트매트릭스프린터	7
1117	43212104	잉크젯프린터	5
1118	43212105	레이저프린터	6
1119	43212107	플로터프린터	8
1120	43212110	다기능프린터	6
1121	43212114	디지털이미지프린터	7
1122	43212115	바코드프린터	6
1123	43212116	무선인식태그발행기	7
1124	43212199	프린터제어기	7
1125	43221501	자동안내장치	9
1126	43221504	구내교환시스템(PBX)	11
1127	43221521	원격접속장치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128	43221525	인터넷시스템	8
1129	43221527	도청방지기	8
1130	43221706	라디오안테나	10
1131	43221711	위성접속장비	7
1132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9
1133	43221727	안테나주변기기	10
1134	43221728	레이돔	9
1135	43221729	휴대용안테나	9
1136	43221731	수중통신장비	8
1137	43221788	분배기	7
1138	43221797	유선송신기또는수신기	7
1139	43221810	광다중화장치	6
1140	43221896	광송신기또는수신기	5
1141	43221897	적외선통신장비	10
1142	43222501	방화벽장치	5
1143	43222605	네트워크게이트웨이	6
1144	43222607	캐시엔진장비	6
1145	43222609	네트워크라우터	8
1146	43222610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허브	7
1147	43222611	네트워크채널또는데이터서비스유닛	7
1148	43222612	네트워크스위치	6
1149	43222615	SAN스위치	6
1150	43222619	비디오네트워크장비	5
1151	43222622	서버로드밸런서	5
1152	43222628	모뎀	6
1153	43222640	무선랜엑세스포인트	8
1154	43222642	라우팅스위치	8
1155	43222643	케이블네트워크테스터	9
1156	43222644	네트워크트래픽제어장치	5
1157	43222695	다중통신장비	9
1158	43222696	동보장치	8
1159	43222704	전신교환기	8
1160	43222805	구내교환장비	11
1161	43222817	통신용중계기	9
1162	43222818	배선반	9
1163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8
1164	43222826	반송단국장치	11
1165	43222827	다중장치	8
1166	43222903	통신용탑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167	43223308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9
1168	43232614	카드캡시스템	7
1169	44101501	복사기	6
1170	44101503	다기능복사기	6
1171	44101510	기상FAX	6
1172	44101599	팩스기기	7
1173	44101601	종이절단기및보조용품	11
1174	44101602	종이편칭기또는바인딩기	11
1175	441016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12
1176	44101703	듀플렉서장치	6
1177	44101705	사무기기트레이또는지급장치	8
1178	44101716	천공기	10
1179	44101730	문서자동분류장치	7
1180	44101902	수표발행기	12
1181	44102103	우편물봉합기	9
1182	44102105	수인인명인쇄기	8
1183	44102304	봉인기계	8
1184	44102306	결속기계	10
1185	44102403	카드인쇄기	8
1186	44102405	표지출력기계	9
1187	44102501	지폐계수기	10
1188	44102602	타자기	9
1189	44102604	속기기계	6
1190	44102801	래미네이터	10
1191	44102805	제본천공기	10
1192	44111502	서류정리케이스	9
1193	44111512	책꽂이	9
1194	44111515	서류상자또는서류함	9
1195	44111816	도화기	12
1196	44111891	제도판	11
1197	44111893	면적계	11
1198	44111895	제도기	11
1199	44111901	일정기록판및엑세서리	11
1200	44111902	전자복사칠판및엑세서리	9
1201	44111905	화이트보드	10
1202	44111906	칠판또는엑세서리	10
1203	44111907	게시판또는엑세서리	9
1204	4411191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엑세서리	8
1205	44121511	우편함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206	44121611	제지용편치	11
1207	44121623	기계식편지개봉기	7
1208	45101502	오프셋인쇄기	11
1209	45101504	평판인쇄기	12
1210	45101506	스크린인쇄기	11
1211	45101507	인쇄기	11
1212	45101802	제본용재단기	11
1213	45101804	제본기	11
1214	45101806	정합기	13
1215	45101902	제판기	12
1216	45111603	영사용스크린	10
1217	45111604	슬라이드용프로젝터	11
1218	45111607	오버헤드프로젝터	11
1219	45111608	영화용영사기	12
1220	45111610	실물환등기	12
1221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9
1222	45111620	슬라이드복사기	10
1223	45111697	영사대	10
1224	45111705	구내방송장치	12
1225	45111706	오디오믹서, 증폭기결합	9
1226	45111707	오디오장비커넥터및스테이지박스	9
1227	45111712	테이프복사기	8
1228	45111713	음향분배증폭기	10
1229	45111714	오디오AD변환기	9
1230	45111716	디지털오디오편집기	8
1231	45111721	릴테잎녹음기	11
1232	45111722	카세트덱	11
1233	45111723	하드디스크레코더	7
1234	45111765	스피커제어유닛	10
1235	45111766	구내방송제어기기	10
1236	45111767	리모트앰프	11
1237	45111775	음향합성기	10
1238	45111784	오디오모니터	9
1239	45111802	텔레비전거치대	7
1240	45111803	스캔컨버터	7
1241	45111805	비디오편집기	11
1242	45111810	실물화상기	10
1243	45111811	영상모니터	8
1244	45111814	디지털영상효과기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245	45111815	오디오비디오콘솔	8
1246	45111816	로그발생기	8
1247	45111817	방송용문자발생기	9
1248	45111819	비디오믹서	9
1249	45111820	비디오프로세싱앰프	8
1250	45111821	동기신호발생기	8
1251	45111826	MPEG엔코더	8
1252	45111828	프롬프트	6
1253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7
1254	45111902	영상회의시스템	6
1255	45112002	마이크로필름리더프린터	6
1256	45112099	디지털식필름판독기	11
1257	45121501	스틸카메라	11
1258	45121504	디지털카메라	8
1259	45121505	영화촬영용카메라	12
1260	45121510	항공카메라	9
1261	45121511	고속카메라	8
1262	45121512	수중카메라	7
1263	45121514	복사용카메라	9
1264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9
1265	45121520	웹카메라	6
1266	45121522	적외선카메라	9
1267	45121523	천체사진기	9
1268	45121595	디지털이미지촬영기	9
1269	45121601	카메라플래시또는광원	10
1270	45121602	카메라삼각대	9
1271	45121603	카메라용렌즈또는카메라용필터	9
1272	45121607	카메라설치대또는지지대	10
1273	45121608	카메라조립부품	10
1274	45121609	카메라받침대	9
1275	45121612	카메라테이블	10
1276	45121613	카메라덮개또는커버	9
1277	45121623	카메라컨트롤러	9
1278	45121697	반사경	9
1279	45121701	필름건조기	10
1280	45121704	필름편집기	10
1281	45121705	사진확대기	11
1282	45121709	자동필름현상기	10
1283	45121714	필름리더	6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284	45121801	마이크로필름카메라	11
1285	45131701	슬라이드트레이	9
1286	45141693	인화기구	10
1287	46111702	적외선탐지기	7
1288	46111703	적외선방사기	10
1289	46111705	적외선망원경	8
1290	46151501	바리케이드	9
1291	46151503	방패	8
1292	46151604	음주측정기	6
1293	46151605	무기또는폭발물탐지기	10
1294	46151609	신분증판독기	9
1295	46151699	컴퓨터순찰관리시스템	6
1296	46151706	잠재지문프린트키트	8
1297	46151711	죽흔적채취기	9
1298	46151715	지문인식장비	7
1299	46151716	거짓말탐지기	9
1300	46151797	수사용감식기구	9
1301	46161503	선박신호장비	5
1302	46161504	교통신호등	7
1303	46161516	차량번호판독기	6
1304	46161526	보행자감지기	9
1305	46161579	교통관제시스템	7
1306	46161581	교통량측정기	8
1307	46161588	선박신호조명	6
1308	46161702	구조용에어백	10
1309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8
1310	46161706	에어텐트	9
1311	46161708	구조망	7
1312	46161793	구조용조명등	6
1313	46171506	금고	10
1314	46171603	시간기록계	10
1315	46171604	경보장치	8
1316	46171610	보안용카메라	6
1317	46171612	비디오모니터	6
1318	46171613	가스경보기	8
1319	46171616	레이더탐지기	7
1320	46171619	출입통제시스템	8
1321	46171621	감시용녹화기또는녹음기	6
1322	46171622	영상감시장치	6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323	46171624	엑스레이화물검색기	8
1324	46171625	무선국운영감시기	9
1325	46171626	야간투시경	9
1326	46171630	수위고저용경보기	7
1327	46171634	탐지지	8
1328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9
1329	46171636	모사전송기용보안장비	7
1330	46171669	비대면방역장비	8
1331	46171673	영상분배기	5
1332	46171678	감청장비	8
1333	46171681	도난방지기	7
1334	46171685	무인교통감시장치	6
1335	46171687	보안용금속탐지기	8
1336	46171694	영상신호보상기	7
1337	46181502	방탄조끼	8
1338	46181509	유해물질방어의류	6
1339	46181518	방열복	8
1340	46181528	안전용덧옷	6
1341	46181704	안전헬멧	4
1342	46182003	가스마스크	6
1343	46182004	산소호흡기또는보조용품	7
1344	46182099	방독면,정화장치누출시험기	6
1345	46182401	오염제거기	9
1346	46182497	책소독기	7
1347	46182599	호신장비	6
1348	46191502	열감지기	6
1349	46191510	열상관측장비	8
1350	46191601	소화용기구	8
1351	46191607	소방용호흡기구	6
1352	46191612	등짐펌프	8
1353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7
1354	46191621	소화장비보관함	4
1355	46191683	소방용펌프	7
1356	46201001	구조실습용마네킨	7
1357	47101505	염소처리장비	5
1358	47101511	이온교환장치	11
1359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11
1360	47101513	산소발생기	8
1361	47101514	소형정수장치	10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362	47101516	탁도계	12
1363	47101517	자외선살균기	9
1364	47101521	한외여과장치	10
1365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11
1366	47101529	소각로	10
1367	47101536	슬러지수집기	13
1368	47111502	업소용세탁기	9
1369	47111503	세탁물건조기	7
1370	47111597	세탁물탈수기	8
1371	47111599	스포팅기	7
1372	47121602	진공청소기	7
1373	47121603	바닥광택기	5
1374	47121604	건습식진공청소기	7
1375	47121605	습식바닥청소기	8
1376	47121610	바닥청소기	5
1377	47121612	건식바닥청소기	7
1378	47121697	우산빗물제거기	7
1379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9
1380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8
1381	47131707	핸드드라이어	9
1382	48101505	상업용커피메이커및아이스티메이커	6
1383	4810150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8
1384	48101510	상업용식품온장고	8
1385	48101511	상업용그리들	8
1386	48101517	상업용오븐	8
1387	48101521	상업용레인지	9
1388	48101524	상업용찜통	7
1389	48101529	압력조리기구또는압력튀김기	7
1390	48101530	상업용밥솥	8
1391	48101546	탕약기계	7
1392	48101595	만능조리기	8
1393	48101601	상업용혼합기	9
1394	48101607	상업용주서기	8
1395	48101608	상업용믹서기	7
1396	48101610	상업용필러	9
1397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8
1398	48101710	음수기	6
1399	48101711	냉온수기	7
1400	48101714	온수제조기	6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401	48101799	정수기	7
1402	48101809	상업용곰솔또는국솔	7
1403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6
1404	48101819	손소독기	5
1405	48101894	음식쓰레기처리대	9
1406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9
1407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8
1408	48101915	상업용서빙트레이	11
1409	48102095	상업용조리대	9
1410	48102096	상업용싱크대	10
1411	48102097	배식대	8
1412	48102098	식기및컵회수차	8
1413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10
1414	48102103	냉장진열장	12
1415	48102199	냉동시스템	10
1416	48111001	컵음료자판기	11
1417	48111109	자동구두광택기	6
1418	48111301	티켓발급기	10
1419	48111391	대기자호출시스템	8
1420	49121503	텐트	10
1421	49121603	캠핑용간이침대	8
1422	49141501	부력조절기	6
1423	49141506	습식잠수복	6
1424	49141508	구명총	8
1425	49141510	잠수기	5
1426	49141605	서프보드	8
1427	49141699	수상오토바이	6
1428	49151502	스키	10
1429	49161508	투구기	10
1430	49171501	체조용바또는빔	10
1431	49171508	구름판	10
1432	49181501	당구대	9
1433	49181507	탁구대	10
1434	49181698	사격총	7
1435	49201501	트레드밀	9
1436	49201502	스태퍼	9
1437	49201504	로잉머신	11
1438	49201517	거꾸리	9
1439	49201596	워킹머신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440	49201602	바벨	12
1441	49201603	하체근력강화기	9
1442	49201604	체력단련기구진열대	9
1443	49201605	상체근력강화기	8
1444	49201611	종합운동기구	11
1445	49201697	야외운동기구	5
1446	49211603	골프클럽	9
1447	49211609	골프퍼팅연습장치	10
1448	49211807	체육측정용도구	9
1449	49211808	지방측정용도구	10
1450	49211809	신체측정용도구	10
1451	49211811	에르고미터	10
1452	49211812	몸통굴절측정기	10
1453	49211814	피로도측정기	9
1454	49211815	전신반응측정기	11
1455	49211817	근력측정기	9
1456	49211819	동작분석기	10
1457	49211823	인체측정기	11
1458	49211831	윗몸일으키기측정기	9
1459	49211833	심폐지구력측정기	7
1460	49211890	종합체력진단장비	8
1461	49221502	골대	12
1462	49221503	헤드기어틀제외한안전용품	7
1463	49221506	운동용매트또는패드	9
1464	49221518	네트용지주	11
1465	49221521	운동기구운반차	7
1466	49221582	기타운동경기용구	10
1467	49221584	농구대	12
1468	49241511	퍼걸러	9
1469	52131501	커튼	5
1470	52131602	롤업셰이드	4
1471	52141502	가정용전자레인지	7
1472	52141503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7
1473	52141504	가정용레인지	7
1474	52141505	가정용식기세척기	8
1475	52141525	가정용전기레인지	7
1476	52141553	전기밥솥	7
1477	52141554	김치냉장고	9
1478	52141601	가정용세탁기	7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479	52141604	신발건조기	7
1480	52141612	세탁용탈수기	7
1481	52141614	세탁건조기	7
1482	52141801	가정용재봉기	13
1483	52141804	선풍기	6
1484	52151650	가정용싱크대	10
1485	52152202	식기건조대	11
1486	52152204	가정용조리대	8
1487	52161505	텔레비전	9
1488	52161509	휴대용음향기기	8
1489	52161510	홈스테레오시스템또는홈시어터시스템	9
1490	52161512	스피커	10
1491	52161513	일체형텔레비전비디오카세트레코더	11
1492	52161514	헤드폰	5
1493	52161515	컴팩트디스크재생또는녹음기	9
1494	52161517	이퀄라이저	8
1495	52161518	GPS수신기	9
1496	52161520	마이크로폰	10
1497	52161521	멀티미디어수신기	10
1498	52161522	고주파스캐너	12
1499	52161526	위성수신기	8
1500	52161529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또는레코더	12
1501	52161532	음악반주기	8
1502	52161533	메가폰	8
1503	52161535	디지털보이스레코더	7
1504	52161536	MD플레이어또는레코더	8
1505	52161537	자기저장매체삭제기	9
1506	52161539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7
1507	52161540	비디오스위처	8
1508	52161543	휴대용MP3플레이어	7
150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7
1510	52161547	오디오앰프	10
1511	52161550	개인용비디오녹화기PVR	8
1512	52161551	무선마이크장치	9
1513	52161555	포터블멀티미디어플레이어	5
1514	52161611	마이크스탠드	8
1515	53131702	마사지기	7
1516	55121718	안내판	8
1517	55121903	전광판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518	55121904	광고판	9
1519	55121908	간판대또는스탠드	10
1520	56101502	소파	8
1521	56101507	책장	9
1522	56101508	매트리스	7
1523	56101515	침대	9
1524	56101516	장롱	11
1525	56101519	응접탁자	10
1526	56101520	로커	10
1527	56101529	잡지꽂이	10
1528	56101530	캐비닛	7
1529	56101531	신발장	8
1530	56101537	화장대	9
1531	56101538	찬장	10
1532	56101542	접이식의자	9
1533	56101543	식탁	8
1534	56101544	거울	9
1535	56101588	텔레비전보관장및받침대	10
1536	56101592	청소도구함	10
1537	56101597	서랍형수납장	8
1538	56101601	파라솔	6
1539	56101603	옥외용탁자	9
1540	56101605	옥외용벤치	9
1541	56101606	화분대	9
1542	56101701	크레덴자	11
1543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11
1544	56101703	책상	9
1545	56101705	유리진열장	9
1546	56101706	회의용탁자	10
1547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9
1548	56101715	우편물분류함또는정리함	11
1549	56101791	신문걸이대	13
1550	56101793	보조책상	9
1551	56101795	거치형높이조절책상	9
1552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	8
1553	56111902	산업용작업대	12
1554	56111997	이발용의자	11
1555	56112101	강당,경기장용의자또는특수목적의자	10
1556	56112102	작업용의자	7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557	56112105	라운지용의자	9
1558	56112106	스тол의자	10
1559	56112108	책상용컴비의자	11
1560	56112109	벤치	10
1561	56121001	책운반기	10
1562	56121002	카운터	10
1563	56121004	카드함	10
1564	56121007	공용테이블	10
1565	56121009	경사진열람대	11
1566	56121011	도서관CD또는카세트진열대	10
1567	56121099	이동식서가	10
1568	56121402	이동식스톨테이블	9
1569	56121501	실습대	12
1570	56121505	수강용탁자	9
1571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10
1572	56121508	컴퓨터책상	9
1573	56121597	교단	10
1574	56121598	교탁	11
1575	56121699	유아용탁자	11
1576	56121798	철판보조장	8
1577	56121804	강연대	10
1578	56121902	전시용진열대	11
1579	56121903	수장고용수납장	10
1580	56122001	실험대	12
1581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12
1582	56122004	실험실용싱크대	10
1583	60102798	지각운동학습기구	8
1584	60103799	어학실습실기자재	10
1585	60103915	해부키트또는용품	10
1586	60104489	자연대류및복사실험장치	12
1587	60104509	연료전지	8
1588	60104604	경사로실험장치	9
1589	60104605	마찰실험장치	12
1590	60104607	진자기	12
1591	60104615	역학활주대	12
1592	60104691	힘의평형실험장치	11
1593	60104699	역학실험장치	13
1594	60104718	원심펌프실험장치	11
1595	60104721	관성능률실험장치	11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596	60104775	열펌프실험장치	10
1597	60104777	냉동기실험장치	11
1598	60104780	공기조화실험장치	11
1599	60104787	유압제어실험장치	11
1600	60104796	기초물리실험장치	9
1601	60104798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11
1602	60104807	공명장치	10
1603	60104809	파동장치	12
1604	60104810	분광기	12
1605	60104811	스펙트럼차트	9
1606	60104815	반사및굴절장치	10
1607	60104817	수파투영장치	10
1608	60104824	파동광학실험장치	12
1609	60104825	홀로그래피실험장치	11
1610	60104903	정전기키트	10
1611	60104905	전기데모용보드	9
1612	60104907	휴대용발전기	7
1613	60104908	전자기장치	11
1614	60104909	자기장치	11
1615	60104910	전자석	9
1616	60104923	방전자	6
1617	60104924	패러데이(Faraday)의법칙실험장치	9
1618	60104926	홀(Hall)효과실험장치	9
1619	60104988	전기자시험장치	12
1620	60104994	전동기/발전기원리실험장치	10
1621	60105099	핵물리학실험도구	7
1622	60105910	유아시물레이터및보조품	10
1623	60106101	자동차교육관련자료	10
1624	60106104	전기전자교육자료	11
1625	60106208	의료교육자료	11
1626	60106299	공정제어실험장치	11
1627	60106402	전자공학교육용품	12
1628	60106498	회로실험장치	12
1629	60106499	컴퓨터실험장치	11
1630	60106608	협응동작반응검사기	10
1631	6010939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10
1632	60109797	모의소총	10
1633	60109798	사격장비	8
1634	60109899	실물모형및전시물	6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635	60109999	교육훈련장비	12
1636	60111106	다용도게시판세트	10
1637	60121402	우드섹션액자(額子)	10
1638	60124306	도에용물레	11
1639	60131001	피아노	13
1640	60131003	오르간	13
1641	60131006	신시사이저	12
1642	60131099	디지털피아노	12
1643	60131101	트럼펫	10
1644	60131102	트럼본	10
1645	60131104	색소폰	10
1646	60131108	프렌치호른	9
1647	60131114	튜바	9
1648	60131201	클라리넷	10
1649	60131211	대금(大芻)	8
1650	60131303	기타(Guitar)	9
1651	60131310	가야금	10
1652	60131311	거문고	10
1653	60131312	아쟁(牙箏)	10
1654	60131319	해금(奚金)	8
1655	60131322	양금(洋琴)	9
1656	60131397	콘트라베이스	9
1657	60131405	서양북	10
1658	60131406	실로폰	9
1659	60131411	북	8
1660	60131444	팀파니	9
1661	60131448	마림바	10
1662	60131699	드럼세트	9
1663	60141104	비디오게임기	7
1664	60141195	가상현실(VR)장치	7



II.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1 기준경비

1 기준경비 협의 규정 등 신설

-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 지자체 신설·폐지·통합·분리 등 필요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기준경비 설정

현 행	개 정(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생략)...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생략)...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제4조(기준경비) 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생략)...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기준경비는 인구, 조직 등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증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폐지·통합·분리로 인해 기준경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제1항 제1호·제2호의 기준경비를 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경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 전담조직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 대한 단서 규정 명료화
- 납세자보호관 지급여부 명확화, 특사경활동비 과장까지 확대

현 행	개 정(안)																
[별표 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대상</th></tr> </thead> <tbody> <tr> <td>특사경수사 활동비</td><td>▶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td></tr> <tr> <td>세무활동비</td><td>▶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td></tr> <tr> <td>예산활동비</td><td>▶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td></tr> </tbody> </table>	구분	대상	특사경수사 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세무활동비	▶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예산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별표 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월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대상</th></tr> </thead> <tbody> <tr> <td>특사경수사 활동비</td><td>▶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과장 이하, 시·군·구 과장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 단, 시·도 및 시·군·구 과장의 경우 특사경 지명을 받고 특사경 전담부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로 한정</td></tr> <tr> <td>세무활동비</td><td>▶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 납세자보호관 업무 포함</td></tr> <tr> <td>예산활동비</td><td>▶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td></tr> </tbody> </table>	구분	대상	특사경수사 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과장 이하, 시·군·구 과장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 단, 시·도 및 시·군·구 과장의 경우 특사경 지명을 받고 특사경 전담부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로 한정	세무활동비	▶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 납세자보호관 업무 포함	예산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구분	대상																
특사경수사 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세무활동비	▶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예산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구분	대상																
특사경수사 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과장 이하, 시·군·구 과장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 단, 시·도 및 시·군·구 과장의 경우 특사경 지명을 받고 특사경 전담부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로 한정																
세무활동비	▶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 납세자보호관 업무 포함																
예산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③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총액한도 변경 명시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준수 및 사후조치 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증액하거나 동결하도록 하는 규정 명시

현 행	개 정(안)
[별표 3] 지방보조금 ① 보조금 총액한도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지자체 ~ (중략) ~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신설>	[별표 3] 지방보조금 ①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지자체 ~ (중략) ~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증액하거나 동결 ※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을 모두 준수한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증액 (다만, 평가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사후조치사항 미이행시 5% 한도 증액 불가) ※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을 모두 미준수한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동결 조치

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변경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현 행	개 정(안)
[별표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 기 준 액 : 2025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4년 기준액(143만원) × (1 + 2025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4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생략)	[별표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 기 준 액 : 2026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5년 기준액(147만원) × (1 +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5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생략)

5] 행사 차출 지급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 행사 차출 지급경비를 실비성격으로 구체화하고, 본연의 업무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확화 등 규정 보완

현 행	개 정(안)
[별표 7의1] 행사 차출 지급경비 ① 경비성격 :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행사 차출 경비)	[별표 7의1] 행사 차출 지급경비 ① 경비성격 : 행사·축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 * 해당 행사·축제 관련 예산편성(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이 되어 있는 경우로 지급대상 행사·축제의 범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② 기 준 액 :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table border="1"> <tr> <th>반일 기준(4시간)</th><th>4시간 초과시</th></tr> <tr> <td>6만원</td><td>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td></tr> </table> ※ 시간외 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및 대체 휴무 부여(8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와 병행 불가 ※ 국가 정책적 사무를 위해 지방공무원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③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② 기 준 액 :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table border="1"> <tr> <th>반일 기준(4시간)</th><th>4시간 초과시</th></tr> <tr> <td>6만원</td><td>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td></tr> </table> ※ 본연의 업무로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대체휴무 및 관리업무수당과 병행 불가) ※ 국가 단위 행사를 위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③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 세입 · 세출 예산과목

6 세입과목 중 보조금 반환수입의 '전년도' 용어 명확화

- 보조금 반환수입의 '전년도'를 직전년도와 그 이전연도를 모두 포함하는 '지난연도'로 변경하여 용어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table border="1"> <tr> <th data-bbox="247 1355 419 1422">223 보조금 반환수입</th><th></th></tr> <tr> <td data-bbox="247 1422 419 1624">223-01 시도 비보조금등반환 수입</td><td data-bbox="419 1422 805 1624">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td></tr> <tr> <td data-bbox="247 1624 419 1756">223-02 자체 보조금등반환 수입</td><td data-bbox="419 1624 805 1756">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td></tr> </table>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 비보조금등반환 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 보조금등반환 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table border="1"> <tr> <th data-bbox="853 1355 1026 1422">223 보조금 반환수입</th><th></th></tr> <tr> <td data-bbox="853 1422 1026 1624">223-01 시도 비보조금등반환 수입</td><td data-bbox="1026 1422 1412 1624">1. 시도에서 지난연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td></tr> <tr> <td data-bbox="853 1624 1026 1756">223-02 자체 보조금등반환 수입</td><td data-bbox="1026 1624 1412 1756">1. 시도·시·군·구에서 지난연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td></tr> </table>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 비보조금등반환 수입	1. 시도에서 지난연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 보조금등반환 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지난연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 비보조금등반환 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 보조금등반환 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 비보조금등반환 수입	1. 시도에서 지난연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 보조금등반환 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지난연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7 법정잉여금 편성기준 세분화

- 순세계잉여금 중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특교세 등 사용목적이 분명한 재원이 혼재되어 재원관리를 위해 법정잉여금 통계목 세분화

현 행	개 정(안)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table border="1"> <tr> <th colspan="2">711 잉여금</th></tr> <tr> <td>711-01 순세계 잉여금</td><td>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td></tr> <tr> <td>711-02 법정잉여금</td><td>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td></tr> </table>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 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table border="1"> <tr> <th colspan="2">711 잉여금</th></tr> <tr> <td>711-01 순세계 잉여금</td><td>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td></tr> <tr> <td>711-02 지정재원 잉여금</td><td>1. 지난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td></tr> <tr> <td>711-03 기타 법정잉여금</td><td>1. 기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1-02 제외)</td></tr> </table>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 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지정재원 잉여금	1. 지난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	711-03 기타 법정잉여금	1. 기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1-02 제외)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 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 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지정재원 잉여금	1. 지난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														
711-03 기타 법정잉여금	1. 기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1-02 제외)														

8 사무관리비 내 일반·관리용역비 개념 보완

- 행사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사무관리비 내 일반용역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명시
- 관리용역비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비 예시 추가

현 행	개 정(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table border="1"> <tr> <td rowspan="3">201 일반 운영비</td><td>01. 사무관리비 1~6. (생략)</td></tr> <tr> <td>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td></tr> <tr> <td>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신 설></td></tr> </table>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6. (생략)	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신 설>	<table border="1"> <tr> <td rowspan="3">201 일반 운영비</td><td>01. 사무관리비 1~6. (생략)</td></tr> <tr> <td>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행사 운영비(201-03)로 편성</td></tr> <tr> <td>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예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방 시설 자체점검용역 계약 비용</td></tr> </table>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6. (생략)	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행사 운영비(201-03)로 편성	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예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방 시설 자체점검용역 계약 비용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6. (생략)							
		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신 설>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6. (생략)								
	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행사 운영비(201-03)로 편성								
	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예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방 시설 자체점검용역 계약 비용								

9 행사실비지원금 설정 명확화

- 장시간 진행되는 대규모 재난 훈련 등 ‘훈련’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내용과 통일을 위해 해당 문구와 동일하게 보완 및 실비 명시

※ (회계훈령) 국가(지방)단위 행사, (예편기준) 국가단위 행사

현 행		개 정(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 보전금	11. 행사실비 지원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실비) (생략)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301 일반 보전금	11. 행사실비 지원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 훈련 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실비) (생략) 3. 국가(지방)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실비

10 법정 절차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관련 시설비 설명 보완

- 조정, 소송 등 법정 절차·결과에 따른 보상금(도로·하천용지 보상 등) 증액분을 시설비 목 설정에 명시

현 행		개 정(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 3. 생략 4. 시설비 (생략)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 3. 생략 4. 시설비 (생략)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법정 절차·결과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11 공사·공단 용자금 등 목 설정 명료화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구에 대한 용자 재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요건을 삭제하여 목 설정 명료화

현 행		개 정(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501 용자금	03. 공사·공단 등 용자금	501 용자금	03. 공사·공단 등 용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용자하는 용자금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용자하는 용자금
	04. 시·군·구 용자금		04. 시·군·구 용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시·군·구에 용자하는 용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시·군·구에 용자하는 용자금

12 예비비 변경 제한 명시

- 예비비(801) 편성목 내 통계목 상호 간에 융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명시

※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 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

현 행		개 정(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800 예비비 및 기타	(신설)	800 예비비 및 기타	
	801 예비비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생략)		2. 예비비(801) 편성목 내 통계목 상호 간에는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 일반예비비는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 포함)을 포함한 모든 사업으로 사용가능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예비비 (생략)		01. 일반예비비
	(생략)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생략)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예비비 (생략)
			(생략)

13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철저 명시

- 최근 지자체 이·불용률 증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불용 관리가 필요하여 관련 규정 명시 및 집행을 하위 통계목 안내

현 행	개 정(안)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신 설 >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통계목은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함 ※ 최근 2년간('23~'24) 집행률 하위 통계목(전국 평균) : 의원역량개발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시설비

1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예산편성 제한 명시

- 「근로기준법」개정('25년)으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따른 보조·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 수준 강화 내용 명시

현 행	개 정(안)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2. 예산편성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신 설 >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2. 예산편성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근로기준법」제43조의4에 따라 결정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각종 보조·지원 제한에 따른 예산편성 제한

15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규정 명시

- 회계·기금 상 여유재원은 원칙적으로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하여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명시

현 행	개 정(안)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 신 설 >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원칙적으로 예탁 - 특히, 특별회계·기금 사업 추진 시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최소화

16 재난안전예산 입력항목 변경사항 명시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행 및 국가 재난안전예산 분류 체계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예산' 속성 입력항목 변경사항 명시

현 행	개 정(안)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 (생략) - 예산요구 : 사업부서는 재난안전사업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하고, 안전총괄부서가 입력현황을 확인·점검 가능하도록 예산부서는 협조 *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 속성 표기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 (생략) - 예산요구 : 사업부서는 재난안전사업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하고, 안전총괄부서가 입력현황을 확인·점검 가능하도록 예산부서는 협조 *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 속성 표기 (세부입력항목 : 재난분야(4개), 재난유형(41개), 법적분류(6개), 재난관리단계(3개)) ※ 입력항목 미비시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17 예산의 이월 집행 명시

- 이월액 확정후 집행된 예산은 이월액 정정이 아닌 이월예산의 집행으로 보고 출납폐쇄기한 처리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

현 행	개 정(안)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4. 예산의 이월 ☐ 이월예산의 운영 <신설>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4. 예산의 이월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액 확정후 집행된 예산은 전년도 집행이 아닌 이월예산의 집행으로 처리 - 지방회계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미적용

18 예산안 첨부서류 양식 설정

-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위한 첨부서류 공통양식 마련 및 표준화·시스템화 추진(별첨)

19 예산편성 참고자료 현행화, 기타 용어 정리 등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064 ‘문화재’→‘국가유산’으로 변경, 예산편성 참고자료의 5. 예비비 ‘긴급재해대책’→‘긴급재난대책’으로 변경 등 현행화
- 공기업과목 신설·변경에 따른 내부거래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수정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개정사항

20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개선

-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중 ‘성별 수혜분석’ 사업수혜자의 통계 출처를 추가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3.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 성별 수혜분석 ○ 사업수혜자 * 사업수혜자 명시: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집단 <신설> (생략)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3.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 성별 수혜분석 ○ 사업수혜자 * 통계출처 및 사업수혜자 명시: (예: <u>지역 통계연보</u> 의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집단 · <u>통계청의 국가기초통계,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백서 및 지역 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u> (생략)

5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21 기금의 폐지절차 명확화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된 경우 기금의 관리에 대한 폐지절차 명확화 및 기금이 폐지된 경우 자산 등의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 명시

현 행	개 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② 기본 원칙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생략)...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② 기본 원칙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생략)... ○ 「지방기금법」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금을 폐지 또는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폐지하여야 함 ○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귀속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예시> (경과조치) 폐지되는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에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별 분리 운영 명시

- 여유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계정별 분리하여 편성·운영하는 내용 명시

현 행	개 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② 기본 원칙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생략)...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② 기본 원칙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생략)... ○ 「지방기금법」 제16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함 -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은 그 용도와 재원이 상이하여 계정별로 운용·관리 필요

다. 기금별기금운용계획

□자금운용계획(①자금수지총괄)

지 출 계 획	
항 목	(생략)
합 계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집 행 액						
계 ⑥	비용자 성사업 비	용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다. 기금별기금운용계획

□자금운용계획(①자금수지총괄)

지 출 계 획	
항 목	(생략)
합 계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집 행 액							
계 ⑥	비용자 성사업 비	용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전출금	기타 지출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6. 7. 26. 행정자치부령 제 33호
개정 2008. 3. 4. 행정안전부령 제 1 호
개정 2011. 9. 30. 행정안전부령 제 243호
개정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 1 호
개정 2014. 7. 30. 안전행정부령 제 84호
개정 2014. 11. 28. 행정자치부령 제 5호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 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경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훈령 제 1 호
 개정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 12 호
 개정 2014. 7. 30. 안전행정부훈령 제 48 호
 개정 2015. 7. 21. 행정자치부훈령 제 28 호
 개정 2016. 7. 26. 행정자치부훈령 제 80 호
 개정 2017. 7. 31. 행정안전부훈령 제 2 호
 개정 2018. 7. 30. 행정안전부훈령 제 46 호
 개정 2019. 7. 1. 행정안전부훈령 제 96 호
 개정 2020. 5. 14. 행정안전부훈령 제 142 호
 개정 2020. 7. 21. 행정안전부훈령 제 150 호
 개정 2021. 7. 19. 행정안전부훈령 제 200 호
 개정 2021. 11. 3. 행정안전부훈령 제 214 호
 개정 2022. 7. 22. 행정안전부훈령 제 248 호
 개정 2023. 7. 28. 행정안전부훈령 제 298 호
 개정 2023. 9. 26. 행정안전부훈령 제 307 호
 개정 2023. 11. 7. 행정안전부훈령 제 312 호
 개정 2024. 7. 30. 행정안전부훈령 제 358 호
 개정 2025. 7. 31. 행정안전부훈령 제 404 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훈령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기준경비는 인구, 조직 등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증액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폐지·통합·분리로 인해 기준경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에 제1항 제1호·제2호의 기준경비를 정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경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훈령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등락률(출처 KOSIS, 소비자물가조사)
 - ※ 단, 한도 증가율은 전전전년도 결산기준 대비 전전년도 결산기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액한도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
 - ※ 단, 당해연도에 전년 대비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총액한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의원역량개발비'로 계상
-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 추가 편성 가능
(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 ※ 추가 편성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 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 단, 의회운영의장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의 지역협의체의 회장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
 - ※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 가능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한하여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 추가 편성 가능 (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된 경우
 - ▶ 국제회의 :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 ③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재수단*을 운영

*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4.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원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5. 의원정책개발비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편성
 -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정수×500만원)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총액한도 산정 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시·도 : 3급 이상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 4급 : 본청 국장급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기구의 장
 - ▶ 5급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직속기관의 장
 - ※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 시·군·자치구 : 4급 이상,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 5급 : 본청 국장급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기구의 장
 -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 및 임시조직(T/F 등)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②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일반+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25년~2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24(세종 0.0049)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25년~2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 ※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 + 0.014)
 -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 + 0.003)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적용대상

- 각급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사무기구
- 도의 출장소,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일반시의 구, 시의 출장소
- 소방관서 : 서울 및 광역시·도의 소방본부, 소방서
- 사업소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사업소
- 읍·면·동 : 시·군·자치구의 읍·면·동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25. 10. 1. 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공무직(무기계약),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④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

정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경기도 북부청사, 강원 환동해본부 포함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 읍·면·동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읍·면·동 포함)

정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지급할 금액만큼 기준경비에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음
(단, 법령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목적 이외로 집행할 수 없음)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② 기준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 시·군·자치구의 기준액은 시·도에서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군·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 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26년 경우 : 전전년도(24년도), 전전전년도(23년도), 전전전전년도(22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③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시·도지사	900 (서울 1,025)	10,800 (서울 12,300)
부시장·부지사	700 (서울 900)	8,400 (서울 10,800)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부단체장이 2급인 경우 750	부단체장이 2급인 경우 9,000
	부단체장이 3급인 경우 650	부단체장이 3급인 경우 7,800
	부단체장이 4급인 경우 650	부단체장이 4급인 경우 7,800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	2급 600	2급 7,200
	3급 600	3급 7,200
	4급 400	4급 4,800
1급		
기 관 장	750	9,000
보조기관	700	8,400
2~3급		
기 관 장	650	7,800
보조기관	600	7,200
4급		
기 관 장	400	4,800
보조기관	350	4,200
5급		
기 관 장	150	1,800
보조기관	100	1,200
6급		
기 관 장	100	1,200
보조기관	50	600
직장예비군대대장	150	1,800
직장예비군중대장		
시 . 도	100	1,200
시·군·구	80	960

- 주』 1)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읍·면출장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소속기관의 장 직급이 '4급 또는 5급'이거나 해당 직급에 보직되는 직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5급 기관장은 해당 직급 승진 후 5년 차부터 4급 기준액 적용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 시·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 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읍·면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 시·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 직위에 준하여 지급
 - 보좌기관 중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 2)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편성 가능
 - 5)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 편성 가능
 - 6)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가능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25. 10. 1. 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공무직(무기계약),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월 100,000원	※ 실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지가 다른 지역(읍·면·동)의 경우 분할가능(인원수에 따라 기준액 적용)
정원 10인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20인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인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0인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6. 특정업무경비

-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월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공통필수항목(8종)은 기준액(③)에 따라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 결정
-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출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 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일반+특별)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다만, 증액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 5백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음

※ 산출예시(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이 2억, '23~'25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이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2억 × (1+(0.1×1/2)))

※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에서 세무·예산활동비 제외하고 산정

- 선택항목의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③ 기 준 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ㆍ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
	구조구급활동비	ㆍ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블런스·펌프차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200,000
	방 호 활 동 비	ㆍ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치 안 활 동 비	ㆍ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70,000
	특사경수사활동비	ㆍ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과장 이하, 시·군·구 과장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 단, 시·도 및 시·군·구 과장의 경우 특사경 지명을 받고 특사경 전담부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로 한정	200,000
	아동학대대응활동비	ㆍ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대응공무원	50,000

	세 무 활 동 비	▸ 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 납세자보호관 업무 포함	150,000
	예 산 활 동 비	▸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50,000
선 택 항 목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주』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등(공무직(무기계약),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선택항목 지급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나거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적용으로 비정규직 등(공무직(무기계약),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을 지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예시) 현재 지급대상인 감사담당부서 정원이 2명 증원되었을 경우 또는 비정규직 등을 신규로 1명 추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2)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에,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특사경수사활동비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각각 병급 가능
- 3)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 가능.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
- 4)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직이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대민활동비 지급가능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② 적용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 종류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등

③ 예산편성 원칙

-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보조금 총액한도

-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times$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기준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와 전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증액하거나 동결
 - ※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을 모두 준수한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증액
(다만, 평가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사후조치사항 미이행시 5% 한도 증액 불가)
 - ※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을 모두 미준수한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동결 조치
 -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③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보탬e)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폐지·삭감

-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 폐지·삭감 등 검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 ※ 운용평가 세부기준 개선 및 사업별 상대평가 실시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23.12월)
-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사업 폐지 등 조치
※ (성과평가 미흡 사업)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사업)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경우 사업을 폐지. 다만,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유지 가능
- 집행률 70% 미만인 집행부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검토

□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통폐합

- (유형1) 국고보조사업(기초는 광역보조사업 포함)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예시) 국고장애인상담 프로그램 사업과 지방장애인복지도우미 상담활동비 지원사업(사업내용이 장애인상담 프로그램)이 유사·중복될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
- (유형2)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 (예시) 홍길동 추모사업, 홍길동 탄생 기념 문학사업, 홍길동 기념 음악제 등 유사한 추모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통폐합

□ 신규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강화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별표6)에 따라 사업계획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 제외
※ (기준 예시) 사업계획 12점 미만(총 20점) 또는 사업성과 24점 미만(총 40점)인 경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심의 실시

참고

운용평가 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예시

- **운용평가 기준 준수 (모두 준수) 지자체는 총액한도 증액**
-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을 **모두 준수한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증액**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총액한도
미흡	매우미흡	미흡	매우미흡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총액한도 5% 증액 대상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총액한도 증액 대상 아님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 총액한도 증액 예시 >

지자체	'26년 당초	'26년 최종	'27년 당초	'27년 최종
A	110	115.5	121	121
'25년 총액한도 100	※ 자체 수입 증가율이 10%인 경우 ※ (산식) 100×1.1	※ 기준 준수에 따른 총액한도 5% 증액 ※ (산식) 110×1.05	※ 자체 수입 증가율이 10%인 경우 ※ (산식) 110×1.1	※ 총액한도 증액 대상이 아니므로 '27년 당초 한도 적용
B	110	115.5	121	127.05
'25년 총액한도 100	※ 자체 수입 증가율이 10%인 경우 ※ (산식) 100×1.1	※ 기준 준수에 따른 총액한도 5% 증액 ※ (산식) 110×1.05	※ 자체 수입 증가율이 10%인 경우 ※ (산식) 110×1.1	※ 기준 준수에 따른 총액한도 5% 증액 ※ (산식) 121×1.05

A 지자체 : '25년 기준을 모두(4개) 준수, '26년은 기준 일부만 준수한 지자체

B 지자체 : '25년 및 '26년 운용평가 기준을 모두(각 4개) 준수한 지자체

- **운용평가 기준 미준수 (모두 미준수) 지자체는 총액한도 동결**
-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을 **모두 미준수한 지자체**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동결**
 - ※ 자체수입 증감률이 양수인 경우 전년도 총액한도 수준으로 동결하며, 자체수입 증감률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인 증감률을 적용하여 총액한도 감액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총액한도
미흡	매우미흡	미흡	매우미흡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총액한도 동결 대상
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총액한도 동결 대상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총액한도 동결 대상 아님

< 총액한도 동결 예시 >

지자체	'26년 당초	'26년 최종	'27년 당초	'27년 최종
A	110	100	121	121
'25년 총액한도 100	※ 자체 수입 증가율이 10%인 경우 ※ (산식) 100×1.1	※ 기준 미준수에 따라 총액한도 동결 ※ (산식) 100×1	※ 자체 수입 증가율이 10%인 경우 ※ (산식) 110×1.1	※ 총액한도 증감 대상이 아니므로 '27년 당초 한도 적용
B	110	100	121	110
'25년 총액한도 100	※ 자체 수입 증가율이 10%인 경우 ※ (산식) 100×1.1	※ 기준 미준수에 따라 총액한도 동결 ※ (산식) 100×1	※ 자체 수입 증가율이 10%인 경우 ※ (산식) 110×1.1	※ 기준 미준수에 따라 총액한도 동결 ※ (산식) 110×1

A 지자체 : '25년 기준을 모두 미준수, '26년은 기준 일부만 준수한 지자체

B 지자체 : '25년 및 '26년 운용평가 기준을 모두 미준수한 지자체

별표 4**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별표 5**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담당 또는 수행 공무원 지원 목적 예산편성 가능)
- ② 기 준 액 : 2026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5년 기준액(147만원) × (1 +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5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출산축하 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

별표 6**일·숙직비**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7**교육강사 수당**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별표 7의1

행사 차출 지급경비

- ① 경비성격 : 행사·축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 해당 행사·축제 관련 예산편성(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 시설비)이 되어 있는 경우로 지급대상 행사·축제의 범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② 기 준 액 :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본연의 업무로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대체휴무 및 관리 업무수당과 병행 불가)

※ 국가 단위 행사를 위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 ③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른 수입
		111-02 등록면허세		"
		111-03 주민세		"
		111-04 재산세		"
		111-05 자동차세		"
		111-06 레저세		"
		111-07 담배소비세		"
		111-08 지방소비세		"
		111-09 지방소득세		"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에 따른 수입
		112-02 지방교육세		"
		113 지난연도 수입		
		113-01 지난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1. 도로점용료수입 2. 도로통행료수입
		212-02 하천사용료		1. 하천점용료수입 2. 하천수사용료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1. 하수도점용료수입 2. 하수도사용료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1. 상수도요금수입
		212-05 공유수면사용료		1. 공유수면점용료 2. 공유수면사용료
		212-06 시장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1.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212-08 주차요금수입		1. 「주차장법」 등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212-09 기타사용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관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213-02 폐기물처리 수수료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3. 기타 폐기물 처리 수수료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213-04 보건의료수수료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검사 수수료수입
		213-05 기타 수수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214-02 청산금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214-03 매각 사업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214-04 배당금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214-05 기타 사업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4. 부담금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 위탁비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상 307-05(민간위탁금), 308-11(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2-03(민간위탁사업비), 403-02(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따른 비용(이하 같음)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21-04 불용품 매각대금	1. 시·도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1. 불용품의 매각수입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에서 지난연도 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지난연도 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3-03 위탁비반환수입	1. 위탁사업 반환수입
		224 기타수입		
			224-01 체납처분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224-02 보상금수납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 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224-03 기부금수입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수입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224-04 지적재조사조정금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수입
			224-05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1.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액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의 보전을 위해 시·군에 납입되는 금액
			224-06 위약금	1. 위약금 수입
			224-07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30 지방행정제제·부과금등		
		231 과징금		
			231-01 과징금	1. 과징금 수입
		232 이행강제금		
			232-01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 수입
		233 변상금		
			233-01 변상금	1. 변상금 수입
		234 과태료		
			234-01 차량관련 과태료	1.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징수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
			234-02 기타 과태료	1. 기타 과태료 수입
		235 환수금		
			235-01 부정이익환수금	1.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등을 환수한 수입 1.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수입
		236 부담금		
			236-01 부담금	1. 부담금 수입
		237 범칙금		
			237-01 범칙금	1. 범칙금 수입
		240 지난연도 수입		
			241 지난연도 수입	
			241-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등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수입
			311-02 특별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수입
			311-03 부동산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수입
			311-04 소방안전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수입
		320 지방소멸대응기금		
		321 지방소멸대응기금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	1. 지방소멸대응 기금 수입
		400 조정교부금등		
		410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411-02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420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01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421-02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421-03 시·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 조정 수입(「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 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3 기금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 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 각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2.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 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 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1. 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재특, 토특, 도특)
		611-02	금융기관채	2.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연·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611-03	지방공공 자금채	1. 일반 금융기관(연고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611-04	기타	2. 지역상생발전기금(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융자금
				1. 기타 차입금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612-02	매출공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
		612-03	교부공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발행 하는 지방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11-02 지정재원 잉여금	1. 지난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
			711-03 기타 법정잉여금	1. 기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711-02 제외)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처리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시·도에 반납 예정인 금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1.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 (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 (지방채)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3-04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1. 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715 보조금등 반환금		
			715-0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 국고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국고로 반납할 금액
			715-02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 시·군·구에서 시·도비 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시·도로 반납할 금액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721-02 공사·공단 전입금	1.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1.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21-04 기금전입금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1.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별표 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 분야 54개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3)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10)	120		교통 및 물류(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6	노동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7	보훈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8	주택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9	사회복지 일반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A	보육		141	수자원
	062	관광		08B	가족·여성		142	지역 및 도시
	063	체육		08C	노인		143	산업단지
	064	국가유산		08D	청소년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0		보건(2)		151	기술개발
				091	보건의료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93	식품의약안전		153	과학기술일반
			100		농림해양수산(3)	160		예비비(1)
				101	농업·농촌		161	예비비
				102	임업·산촌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 행정운영경비는 기타(900) 분야로 처리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 의원상해부담금 ■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지방의회 운영 지원 공정한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 징수·조정교부금 ■ 재정·세정업무 등	수입 관리, 재정 운영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 중앙정부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지방채 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 융자 및 출자 ■ 기금회계 예치금	부채 상환 해외채 채무관리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 공유재산(토지등)구입 ■ 자산및물품취득 ■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 지방행정 홍보활동 ■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 자체위탁교육, 해외교육, 능력개발비) ■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지방행정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청사운영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025 재난방재·민방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 민방위관리 ■ 예비군, 사회복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제외)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재해 및 재난 예방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민방위 운영
	026 소방	■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리 및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052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제외)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시·도립전문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대학 교육복지 확충 고등교육 재정 지원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교육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국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포함)평생교육, 장애인 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 예술·국악단등 육성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도시 조성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062 관광	■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 관광지, 유원지 ■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 기타관광진흥 ■ 관광홍보 등 제외)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 축제(061 문화예술)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산업 진흥
	063 체육	■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 체육단체 지원 ■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 각종대회지원 ■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 체육산업 융자 ■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체육산업 육성
	064 국가유산	■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 문화재행정 ■ 문화재(무형포함)관리 ■ 문화재개발 ■ 천연기념물 ■ 유적관리 등	유형문화재 보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 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 지방상수도 개량 ■ 배수지·취수장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 등 ■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상수도·식수 관리 하수도 관리 지하수 관리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2 폐기물	■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청소관리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설치 운영 ■ 분뇨처리 ■ 종합재활용사업 등	폐기물 감량 폐기물 회수 폐기물 자원화 청소관리
	073 대기	■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 공해배출업소지도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 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대기오염 관리 생활공해 관리
	074 자연	■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생태계 보호 자연환경 보호
	075 해양	■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연안환경정비사업 ■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연안환경정비 해양오염 관리
	076 환경보호 일반	■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 생활 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제외)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082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복지회관운영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취약계층 아동 보호 장애인 복지 증진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6 노동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용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용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고용 촉진 및 안정 근로자 복지 증진
	087 보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 제대군인 사회복지지원 ■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 호국영웅 선양사업 ■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 국가유공자 송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088 주택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주거 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
	089 사회복지 일반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8A 보육	■ 아동·보육 관련 업무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지원
	08B 가족·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매매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여성 복지 증진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C 노인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노인 복지 증진
	08D 청소년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090	보건		
	091 보건의료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방역·구호 건강 증진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보건환경연구원운영
	093 식품의약 안전	■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 의약외품, 마약 등	식품·위생 관리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 유기동물 보호	농가 소득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농촌 인력육성 농업 기술개발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102 임업·산촌	■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조림, 사방, 육림 ■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 재해방지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어촌	■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 기타 수산지원 등 제외)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어촌 소득 안정 해양 환경 보전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 유통관리 해양 재해방지 수산 인력 육성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 지원	■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제외)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 지원	■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 외자유치사업 ■ 종합무역센터건립 ■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수출 기반 확대 외국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 고도화	■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 전자상거래 지원	첨단산업 육성 산업진흥 산업구조 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 자전거도로 정비 ■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 건설(142 지역및도시)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시설 관리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23 도시철도	■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 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 운영·관리
	124 해운·항만	■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 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 방파제,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해운·항만시설 확충 해운 물류시설 관리
	125 항공·공항	■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항공수송체계관리 공항이주단지조성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주차질서 확립 대중교통 안전 확보 대중교통 육성 지원 교통행정 개선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하천 정비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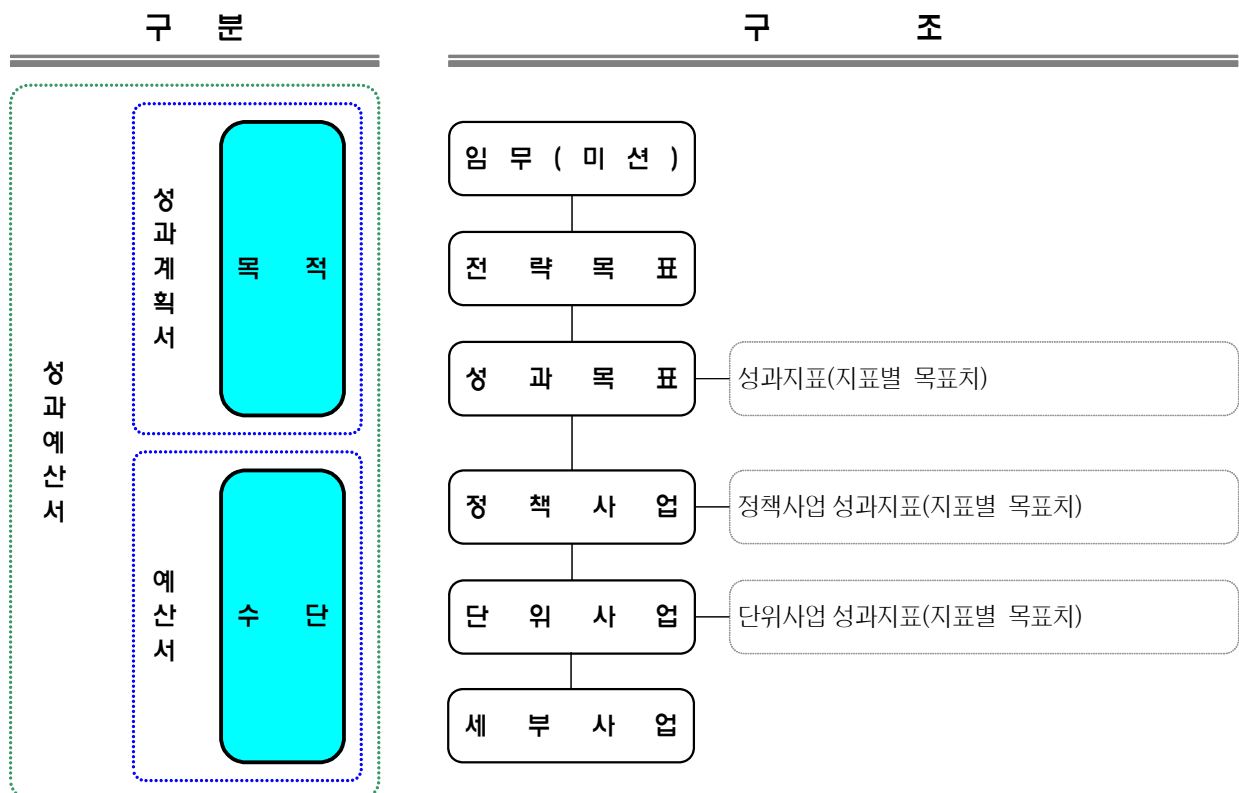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42 지역및도시	■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 도서·벽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응답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주택 건설 및 운영 도시개발 택지개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취약지 개발
	143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 원자력 관련 업무 제외)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과학기술 고도화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제외)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과학문화 육성·지원
	153 과학기술 일반	■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 (인건비, 기본경비) ※ 과오납금, 잡손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1. 기본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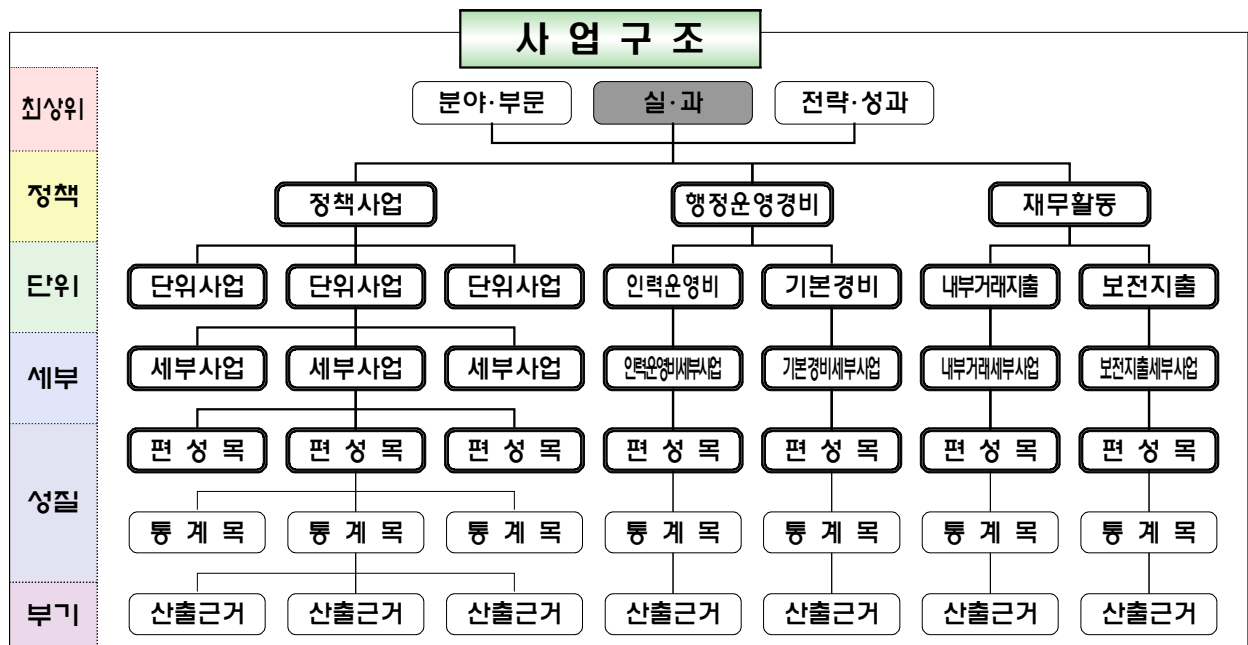
-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사업구조화에 포함



※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다음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구분	주요원칙
정책사업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단위사업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세부사업	-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 -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

2. 정책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 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단일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이 각각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정책사업을 분리

예시

기초생활보장(081)을 위한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이, 관광(062)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 동 관광기능의 사업을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예시

대중교통지원사업(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인 유류비보조사업이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원(대중교통과), 택시운송조합에 대한 지원(교통정책과) 등 2개 부서에서 지원될 경우, 부서가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실·과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실·과 조직만 관련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조 직
해양관광·레저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해양개발과
	동해안해수욕장선진화	해양개발과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기획총괄과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	어업지원과
	청소년해양수련원시설확충	해양개발과



정책사업	조 직
어업인지원어촌개발	해양개발과
어업활동지원	어업지원과

- 과 단위에서 정책사업화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조직간 업무조정(지자체별 정책판단 사항)을 통해 다른 과의 동일 사업목적 정책사업으로 이관 필요

조 직	단위사업
수산개발과	옥외사육장 증축
	내수면어업지원
	내수면개발타당성조사용역



정책사업	조 직
내수면어업시험연구및지원	내수면개발시험장

- 본청과 산하기관에 유사 정책사업이 있는 경우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 읍·면·동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자율 선택하여 정책사업을 설정

방법 1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읍	○○읍·면·동 사업경비	○○읍·면·동 진입도로보수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자체적으로 정책사업 설정 시 분야·부문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되, 읍·면·동의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사업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최소

방법 2 읍·면·동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만 설정하고, 정책사업은 본청에서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통리반장지원경비
○○읍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1개의 정책사업은 다수의 회계 및 기금을 포함할 수도 있음

□ 적정 정책사업 수

- 정책사업 유형화(예시)를 참조,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별로 2~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정책사업 유형화(예시)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 자치단체 실·과별로 정책사업을 배분하되, 실·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예를 들어 유형화된 정책사업에 의하면 1개의 정책사업을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3. 단위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

사회복지과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정책사업	잘 못 된 사 례		잘 된 사 례	
	단 위 사 업	회 계	단 위 사 업	회 계
주민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사업	일반+기타특별	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일반
	2.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2.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
			3.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단위사업들의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

예시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일반회계), 국민주택관리(기타특별회계)라는 2개의 단위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는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으로 운영

□ 적정 단위사업 수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World Bank의 권고)

○ 1개의 단위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 수를 고려

4. 세부사업의 설정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

- 직접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 지원사업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보조하여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 동일 세부사업 내에 직접 및 지원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 되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설정 가능

예시

00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 단위사업 아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사업은 00광역시가 직접 수행하고, '경로당시설 기능 보강'이라는 사업은 자치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국비보조사업(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및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세부사업을 말함
- 자체재원사업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 중앙부처에서 지역민간단체 등으로 국비를 직접지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표시하여 관리

※ 예)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지역전략산업(국가직접지원)”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1:1 설정, 합병불가)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해야 함
 - 다만,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나 하나의 보조사업을 여러 개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 설정이 가능(1:N)

○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정률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의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 하나로 설정 가능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목에 편성한 후 지출원인행위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 지방비 의무부담분 외 추가 지방비 부담분은 ‘추가자체재원’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예 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	1,0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국비	500백만원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시·도비	300백만원 (3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백만원 (추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〇〇문화예술회관 건립	계	1,7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군비 추가분은 부지매입비 및 추가 시설비 등 소요액
		국비	500백만원 (50%)	시설비및부대비	
		시·도비	300백만원 (30%)	시설비및부대비	
			2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시·군비	200백만원 (20%)	시설비및부대비	
			5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예 시

경로당 건립 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경로당 건립	계	50백만원		기존보조율에 의거 편성하는 지원사업
		시·도비	50백만원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경로당 건립	계	152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도비	50백만원 (50%)	시설비및부대비	
		시·군· 구비	50백만원 (50%)	시설비및부대비	
			5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2백만원 (추가)	국내여비	

-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기준인건비 항목(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력운영비 등 세부사업으로 편성

※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정책사업에 편성(기준인건비 항목이 아님)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명을 준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 다만, 자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자체재원 사업에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보조재원 포함사업으로 설정 가능



예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 인건비

보조재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	150백만원		
	병해충방제사업	100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정책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
	병해충방제 예찰원인건비	50백만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 -병해충방제예찰원인건비 또는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보조)

-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국비(또는 시·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조재원이 포함되나 보조여부는 계획에 해당하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으로 설정

세부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사항

상기 기준에 따라 세부사업을 설정한 후, 특정 세부사업이 다음의 목록화·코드화된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구분 관리

-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율설정 가능

사업유형 예시

❖ R&D, 제도혁신, 정보화, 미래대비투자, 국가균형발전, 인적자원개발, 성장동력확충, 읍면동 등

※ 읍면동은 본청에서 읍면동의 사업을 편성했을 경우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회계 정보를 관리

지자체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예시 ①> 지자체 행사·축제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경우

【현 행】

(정책사업) 정책기능 강화
(단위사업) 정책역량강화
(세부사업) 도정홍보
(부기명) 000축제 홍보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개 선】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부기명) 000축제 홍보

< 예시 ②>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부기명 1) 00예술제
(부기명 2) 00연극제
(부기명 3) 0000페스티벌
(부기명 4) 0000기념행사
(부기명 5) 000한마당



【개 선】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1) 00예술제
(세부사업 2) 00연극제
(세부사업 3) 0000페스티벌
(세부사업 4) 0000기념행사
(세부사업 5) 000한마당

□ 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위한 사업 구조화

- 기존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이하 '균특·기타회계'라 함) 편성·운영사업 중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 소관으로 전환된 사업(이하 '전환사업'이라 함)은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전환사업' 임을 표기
-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입력 시, '전환사업' 속성 정보 표기
-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 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한정하여 구성 편성
- 사업명은 기능이양 이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단, 신규사업은 예외)

※ 세부사업 내, 전환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전환사업 예산편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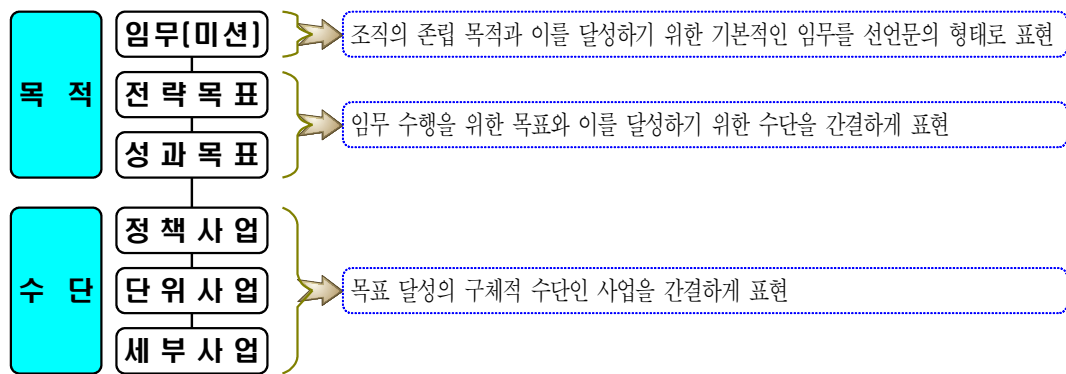
'21년 기준(이양 전)			'23년 기준(이양 후)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 전환사업(2-1)
부기사업	A신중년사회공헌	(국고 보조 사업)	정보관리사업	A신중년사회공헌(전환)	
	B신중년사회공헌*	(자체 사업)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 전환사업
			정보관리사업	B신중년사회공헌(자체)	

* 순수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업

< 사업명칭 부여기준 >

□ 일반적 기준

-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상위 사업은 하위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
-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
-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 (예: ~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원)

□ 사업명칭 부여 사례

- 사업명칭 부여 시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잘못된 사례 (목적+수단)	잘된 사례 (수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하수시설 정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사업구조화

-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구조화(세부사업 설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 사업과 1:1 대응이 되도록 함

※ 해당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 해당사업 신설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기존의 사업과 신설된 사업 모두를 각각 매칭)로 맵핑하거나 1:N(여러 세부사업을 한 개의 국고보조금과 매칭)으로 맵핑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실시
- 중앙부처에서 별도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치단체에서도 공문으로 교부신청 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시스템 상으로 교부신청 등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국고보조금 집행

-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보험료 부담금 등

○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인사과 등 인력운영 및 보수 총괄부서에서 사업구조화 실시

- 해당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내 단위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임 [예: '인력운영비(총괄)']

○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 보조금이 포함된 인력운영비의 사업구조화는 “4.세부사업의 설정” 참고

❖ 통상 특정부서가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개인에게 직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 개인에게 간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 등>

❖ 통상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 상기 내용은 인력운영비 편성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항이며, 자치단체 별로 인력운영비 운영 상황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성목	통계목	기본경비의내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식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되는 것임

※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로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경비(00과)]로 부기하고, 기타 (900)으로 관리 (분야·부문을 가질 수 없음)

6. 재무활동의 설정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비사업)으로 설정

□ 재무활동의 범위

○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통계목 전체

○ 내부거래지출

-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입금
-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내부거래지출	기 타 회 계 전 출 금(701)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 금 전 출 금(702)	기금전출금
	예 탁 금(704)	예탁금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705)	예수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보전지출

- 차입금 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보 전 지 출	차 입 금 이 자 상 환 (31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지방채증권이자 상환, 기타 차입금이자 상환
	차 입 금 원 금 상 환 (6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원금 상환, 차관 상환, 기타 해외채무 상환
	예 치 금 (602)	예치금
	반 환 금 기 타 (802)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 재무활동의 설정

- 각 부서의 분야·부문에 정책사업 수준으로 설정하되,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대표적인 분야·부문에만 설정
-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명칭을 부기 [예: '재무활동(○○과)']

< 혼동하기 쉬운 사업구조화 사항 >

1. 예비비

-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 등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
⇒ '160 예비비' 분야, '161 예비비' 부문에 해당됨
- ▶ 단,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리
⇒ 해당 특별회계가 속한 정책사업의 분야/부분에 해당됨
- ▶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화(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2.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업구조화

- ▶ 당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 ▶ 기관 총액(Ceiling)을 일괄 편성하고 추후 사업공모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부서에서 적정한 정책 혹은 단위사업을 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4. (총무과의) 교육훈련여비

- ▶ 교육훈련 및 파견자의 인건비는 총무과 등에서 교육훈련정책사업 내지는 단위사업으로 관리
- ▶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는 전 실과의 여비가 총무과(혹은 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정책사업 내지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관리

5. (회계과의) 정수물품 구입 풀 비용

- ▶ 전 실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구입비용이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다면 (회계과에서 구입하여 전 실과로 배분 시), 당해 회계과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관리

<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공기업] 사업구조화 절차 >

□ 기본원칙

-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도 사업구조화
 - 향후 예산개요·재정연감 등의 합산작업을 고려하여 사업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요구·조정·확정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실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 사업구조화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관리하고, 예산·회계 운영은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
 - 공기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은 현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함

□ 사업구조화 방안

-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구조화
 - 본청의 실·과·팀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 (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소속기관(상하수도본부 등)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 소속기관별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각각 1개씩을 설정 하고, 1개의 정책사업 아래에 1개의 단위사업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기금의 사업구조화
 -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 (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른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6. 성과상여금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7. 직급보조비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02. 기타직 보수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100	101 인건비	2.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경찰의 보수(성과상여금 포함) 4.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03.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 기본급, 수당(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외 경비성 비용은 별도 편성목 등(201, 202, 203 등) 활용 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다.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상여금 2.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 방법 가.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3.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100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 다.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정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 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아.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취득세 시가인정액 관련 감정평가 비용, 수질 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 발행제 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 1% 이상) 준수 노력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라.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 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4. 피 복 비 가.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회복비)에 계상 라. 현업부서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5. 급 식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3)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4)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5)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공무원 개인에게 급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현금 또는 쿠폰의 지급 등 직접적·개별적으로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구급시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 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지난연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 (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9)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급식비 6. 임 차 료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 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 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공공운영비(201-02,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시설장비 일체에 대해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 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201-01, 관리용역비)로 편성 ※ 예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계약 비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포함)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2) 한국소방안전원 회비(소방기본법 제42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5)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 8) 「지역보건법」제18조의 2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등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자.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공무원책임보험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 료 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다.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라.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4.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공무원(무기계약) 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 공무원 개인에게 급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현금 또는 쿠폰의 지급 등 직접적·개별적으로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05. 공립대학 운영비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 공립대학은 동 규정 준용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시설 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청원 경찰 등)의 국내출장여비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급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도 공무원과 동일 통계목 (202-01~05)으로 편성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편성 여부 및 대상 부서, 월정액을 자율 결정 (월액여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여비를 적용)	
		03.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 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2.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청원 경찰 등)의 국외업무여비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200	203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 등의 경우에도 지급 라. 지방의회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 가능함. 다만,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과로 간주 지급 가능함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200	204 직무수행 경비	01. 직책급여무수행경비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02. 특정업무경비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4. 자치단체별 교섭단체의 의회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만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함 5.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정한 금액 01. 의정활동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수당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03. 의원국내여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2.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04. 의원국외여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2. 편성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 경비에 의함 나.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협조요청, 2019.2.11.) 참고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 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 집행 가능 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경비 4.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 5.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개인 명의를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 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단,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3.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는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 불가 2.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09. 의원정책개발비 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국민연금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포함)	비고
200	206 재료비	01. 재료비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 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 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207 연구개발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 예시) 국고보조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보철구 제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 국고보조사업 예산은(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포함) 모두 301-01 통계목에 편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모두 301-01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포함)	비고
300	301 일반보전금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전 주민 지원 외 복지사업)은 모두 301-02에 편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2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에 편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3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04.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	
		05.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1 일반보전금	06.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방법활동계획을 적용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 4. 방법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07.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 조례에 따라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가. 통장·이장수당 1) 통장·이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 적용 지급 나. 반장보상금 :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08. 민간인 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9.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름 10.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의 보수 - 병역의무자 중 국가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포함)	비고
300	301 일반보전금	11. 행사실비 지원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 훈련 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실비) (급식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예산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국가(지방)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실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2.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3. 사회성과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회성과보상 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14.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01. 민간인 이주보상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과목에 계상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물품(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단체)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가족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304 연금 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03. 의원상해부담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 2. 건강검진을 위한 진단비는 계상할 수 없음 04.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등 3.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4.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6 출연금	※ ▶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3.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회복비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량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1) 단체운영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06. 보험금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08.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9. 운수업계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12. 민간인위탁교육비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교육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포함)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 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조정 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로, 조례에 따라 교육기관에 직접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하여 보조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33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6.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포함)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9.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10.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부담경비 11.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부담하는 부담금 2.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 내에 전출 12.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2. 동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3.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 (예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제반경비 3.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 ※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광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14.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300	309 전출금	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 「공무원연금법」 제75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	
		02. 국제부담금	
	311 차입금 이자상환	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1. 601-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1. 601-02(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1. 601-03(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 601-04(지방채증권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 601-05(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2. 601-06(차관상환)항목의 이자 3. 601-07(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4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법정 절차·결과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에 계상 바. 나~라 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4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 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 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비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 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나 문화재수리를 위한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문화재 수리감리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03. 시설부대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 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400	401 시설비및 부대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8.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 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 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 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 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 관련 법령준수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400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03.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 (예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경상적 경비 외의 제반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400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2.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04.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 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 받은 물품 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입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6.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 상기 적용대상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예산을 시설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일부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400	406 기타자본 이전	01. 기타자본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2. 건설가계정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연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등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07 국외자본이전	01. 국외자본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융자금 (예) 주택개량사업 등	
		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 2.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	
		04. 시·군·구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에 융자하는 융자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500	502 출자금	01. 출자금 1. 용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 (예) 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마.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원금상환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용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1.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6. 차관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원금의 상환 07. 기타 해외채무 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600	602 예치금	01. 일반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02. 의무예치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예치·관리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01. 기타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		
		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01. 기금전출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감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703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01. 시·도 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8항의 경우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제14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 대학설립과 관련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 등 산출 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 요청을 받는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 2. 법정전출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 내에 전출		
				02. 시·도 비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및 시·도 조례에 따라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부담하는 부담금
				2.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에 전출
704 예탁금	01.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계정간의 예탁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700	705 예수금 원리금상환	01. 예수금원금 상환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02. 예수금이자 상환		
		1.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1.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01.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1. 기업회계 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800 예비비및기타	03. 적립금			
	1.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			
	801 예비비	1.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		
		2. 예비비(801) 편성목 내 통계목 상호 간에는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3. 일반예비비는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 포함)을 포함한 모든 사업으로 사용가능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각 회계별로 예산총액 대비 1% 범위 내에서 편성,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 지양, 회계운용 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 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03. 기타 반환금 등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04. 잡손금	
		1. 결손보전 기타잡손금	

1. 일반사항

일 반 회 계

- ▶ 자치단체별로 다음 목차에 의거 편제하되, 시·군·자치구는 본청 예산과 읍·면·동 예산을 구분 편제
- ▶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별 예산서를 별도 편제하고 구 예산서에 동예산을 구분 편제

특 별 회 계

- ▶ 예산체제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제하고, 회계별 순서는 다음에 의하되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지침에 의하여 편제함
- 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③ 주택사업특별회계 ④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⑤ 새마을사업특별회계 ⑥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함

2. 예산 편제

제1권. 예산서

I.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청 방향

I-1. 내년도 재정전망

I-2. 시·도/시·군·구청 방향

II. 예산총칙

III. 예산규모

- Ⅲ-1. 회계별 예산규모
- Ⅲ-2. 세입총괄표
- Ⅲ-3. 세출총괄표(기능별)
- Ⅲ-4. 세출총괄표(조직별)
- Ⅲ-5. 세출총괄표(성질별)

Ⅳ. 세입예산서

Ⅴ. 세출예산서

Ⅵ. 채무부담행위조서

Ⅶ. 계속비사업조서

Ⅷ. 명시이월사업조서

제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 전전년도 결산 기준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 전전년도 결산 기준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전전년도. 7. 1. ~ 전년도. 6.30. 기간 중 통보된 감사 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에 결정된 지방교부세 감액이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1-8. 지방세지출현황

※ 전전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총괄 현황 등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전전년도 결산 기준

2. 세입 ·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사업명세서 작성 가능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6.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8.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9.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20.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2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23.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2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예산 첨부서류 중 특정연도가 미표시된 항목은 2026년도 예산안 기준임

3.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4. 예산서 서식

1. 제1권. 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청 방향)
2. 제1권. 예산서 (Ⅱ. 예산총칙)
3. 제1권. 예산서 (Ⅲ-1. 회계별 예산규모)
4. 제1권. 예산서 (Ⅲ-2. 세입총괄표)
5. 제1권. 예산서 (Ⅲ-3. 세출총괄표(기능별))
6. 제1권. 예산서 (Ⅲ-4. 세출총괄표(조직별))
7. 제1권. 예산서 (Ⅲ-5. 세출총괄표(성질별))
8. 제1권. 예산서 (Ⅳ. 세입예산서)
9. 제1권. 예산서 (Ⅴ. 세출예산서)
10. 제1권. 예산서 (Ⅵ. 채무부담행위조서)
11. 제1권. 예산서 (Ⅶ. 계속비사업조서)
12. 제1권. 예산서 (Ⅷ. 명시이월사업조서)
13. 제2권. 첨부서류 (①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② ...)
14. 참고사항

※ 사업별 설명서 편제 방식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①정책사업설명서 ②단위사업설명서 ③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 제출서류 주요 서식

1. 제1권. 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청 방향)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청 재정운영 방향

Ⅰ-1. 내년도 재정전망

-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Ⅰ-2. 시·도/시·군·구청 재정운영 방향

- 자치단체별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기술

2. 제1권. 예산서(Ⅱ. 예산총칙)

예 산 총 칙

제 1 조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일반회계	계		
특별회계	계		
공기업특별회계			
○ ○ 사 업			
기타특별회계			
○ ○ 사 업			
○ ○ 사 업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3. 제1권. 예산서(Ⅲ-1. 회계별 예산규모)

회 계 별 예 산 규 모							
000년도 본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일	반 회 계		%		%		%
특	별 회 계		%		%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 사 업		%		%		%
	기 타 특 별 회 계		%		%		%
	○ ○ 사 업		%		%		%
	○ ○ 사 업		%		%		%
	○ ○ 사 업		%		%		%
	○ ○ 사 업		%		%		%

4. 제1권. 예산서(Ⅲ-2. 세입총괄표)

세 입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회계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100	지 방 세 수 입		%		%		%
200	세 외 수 입		%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		%
300	지 방 교 부 세		%		%		%
400	조 정 교 부 금 등		%		%		%
500	보 조 금		%		%		%
600	지 방 채		%		%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세입과목 구분(장 · 관 · 항 · 목)에 따라 구분하여 시스템상 출력 가능

5. 제1권. 예산서(Ⅲ-3 세출총괄표(기능별))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기능 별 】

(단위:천원)

분야 · 부문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26 소방		%		%		%
050 교육		%		%		%
051 유아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국가유산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08A 보육		%		%		%
08B 가족·여성		%		%		%
08C 노인		%		%		%
08D 청소년		%		%		%

【 기 능 별 】

(단위:천원)

분야 · 부문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품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치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교통 및 물류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6. 제1권. 예산서(Ⅲ-4. 세출총괄표(조직별))

- 조직별 인쇄 단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운영(실국 또는 실과)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조 직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 보 관 실		%		%		%
	○ ○ 실		%		%		%
	○ ○ 담 당 관 실		%		%		%
	○ ○ 국		%		%		%
	○ ○ 과		%		%		%
직 속 기 관			%		%		%
	○ ○ 처 (원)		%		%		%
	○ ○ 과		%		%		%
사 업 소			%		%		%
	○ ○ 사 업 소		%		%		%
	○ ○ 사 업 소		%		%		%
읍 면 동			%		%		%
	○ ○ 읍 면 동		%		%		%
	○ ○ 읍 면 동		%		%		%
외 청			%		%		%
	○ ○ 실 과		%		%		%

7. 제1권. 예산서(Ⅲ-5. 세출총괄표(성질별))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100 인건비			%		%		%
	101 인건비		%		%		%
200 물건비			%		%		%
	201 일반운영비		%		%		%
	202 여비		%		%		%
	203 업무추진비		%		%		%
	204 직무수행경비		%		%		%
	205 의회비		%		%		%
	206 재료비		%		%		%
	207 연구개발비		%		%		%
300 경상이전			%		%		%
	301 일반보전금		%		%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		%
	303 포상금		%		%		%
	304 연금부담금등		%		%		%
	305 배상금등		%		%		%
	306 출연금		%		%		%
	307 민간이전		%		%		%
	308 자치단체등이전		%		%		%
	309 전출금		%		%		%
	310 국외이전		%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		%
400 자본지출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		%
	402 민간자본이전		%		%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		%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405 자산취득비		%		%		%
	406 기타자본이전		%		%		%
	407 국외자본이전		%		%		%
{		{	}	{	}	{	}

※ 통계목 단위까지 시스템상 출력가능

8. 제1권. 예산서(IV.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장 . 관 . 항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
100 지방세수입					%
	110 지방세				%
	111 보통세				%
	112 목적세				%
	113 지난연도수입				%
200 세외수입					%
	210 경상적세외수입				%
	211 재산임대수입				%
	212 사용료수입				%
	213 수수료수입				%
	214 사업수입				%
}	}	}	}	}	}

9. 제1권. 예산서(V. 세출예산서)

세출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 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0000 [국 00] [시 00]	0000	00	0%
	정책사업	0000 [국 00] [시 00]	0000	00	0%
	재무활동				%
	행정운영경비				%
분야1		0000 [국 00] [시 00]	0000	00	0%
	부문1	0000 [국 00] [시 00]	0000	00	0%
	정책사업1	0000 [국 00] [시 00]	0000	00	0%
		단위사업1(회계명, 일 반회계는 미표시)	0000 [국 00] [시 00]	00	0%
		단위사업2			%
	정책사업2	0000 [국 00] [시 00]	0000	00	0%
		단위사업3	0000 [국 00] [시 00]	00	0%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부문2	0000 [국 00] [시 00]	0000	00	0%
분야2		0000 [국 00] [시 00]	0000	00	0%
∫	∫	∫	∫	∫	∫
기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
					%

※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자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군(군특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대(소멸대응기금)

10. 제1권. 예산서(VI. 채무부담행위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은 자치단체별 자율 표시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액	사유	상환계획
			•사업내용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 }	{ }	{ }	{ }	{ }	{ }	{ }

11. 제1권. 예산서(VII. 계속비사업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 총사업비의 재원구분, 지출액, 지출잔액은 지자체별 자율 표시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Y년도 예산액	Y+1년 예산액	Y+2년 이후 예산액	비고
						예산 액	지출 액	지출 잔액	예산 액	지출 액	지출 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	{ }														

12. 제1권. 예산서(VIII. 명시이월사업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 지자체별 자율 표시 항목이며 「편성목」은 확정조서에만 표시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0000년 이월액	사유
							자치단체자율
{ }	{ }		{ }	{ }	{ }	{ }	{ }

13. 제2권. 첨부서류 (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①-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위원회명(실국명): 부서명:
 장:
 관:
 항:

(단위:천원)

장 · 관 · 항 · 목				예 산 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 증감
총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일반회계] 00,000,000			
			<세무과> 00,000,000			
			*주민세			
			××××× = 00,000,000			
			111-02 등록면허세			
			}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①-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간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단위:천원)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부서	예산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		%		%
○ ○ 실 국			%		%		%
○ ○ 과			%		%		%
			%		%		%
○ ○ 사 업 소			%		%		%
의 회 사 무 처 (국)			%		%		%
○ ○ 과			%		%		%

000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명세서”

부서:

정책:

단위: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부서1					000 [국 0] [시 0]			
	정책사업				000 [국 0] [시 0]			
		단위사업(회계명, 일반회계는 미표시)			000 [국 0] [시 0]			
			세부사업		000 [국 0] [시 0]			
				000 편성목	000 [국 0] [시 0]			
				000 통계목 산출기초 000	000 [국 0]			
				단위사업				
			세부사업					
				000 편성목	000			
				000 통계목 산출기초 0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000 편성목				
				000 통계목 산출기초 000				
	기본경비							
	기본경비							
			000 편성목					
			000 통계목 산출기초 000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						
			000 편성목					
			000 통계목 산출기초 000					

부서:
정책:
단위: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보전지출						
			보전지출					
				000 편성목				
				000 통계목 산출기초 000				
부서2								
}	}	}	}	}	}	}	}	}

※ 편성목 내의 산출기초 및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자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대(소멸대응기금)

※ 산출기초 및 자원구분 표시는 자치단체 선택사항임

< 작성시 참고자료 >

①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제방식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

- (사례1) 정책·단위사업 설명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해당 단위사업들을 한 묶음으로 하여 편제하며 세부사업은 정책·단위사업과 별도로 분권
- (사례2)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를 한 묶음으로 편제 등
- (사례3)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 중 자치단체에서 판단한 주요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제 등

※ 다만, 사업설명서 편제시 앞부분에 사업목록을 첨부하여 설명서의 이해도 제고

② 정책사업명 아래 박스의 회계표시 : 일반회계 - 일반,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 기타

③ 정책사업의 경우에만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행정운영 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음

④ 단위사업내역의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대(소멸대응기금)

⑤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예산총계·시·도비 예산액

정책사업 : ○○-○○

○○정책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 사업목적

○

□ 기대효과

○

□ 단위사업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 율
계				000 〔국00〕			%
인사관리	일반			000 〔국00〕			△ %
교육고시업무	기타특별						%
							%
}	}	}	}	}	}	}	}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 산 총 계				%
국 고 보 조 금				%
균 특 보 조 금				%
기 금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세				%
시 · 도 비				%
시 · 군 · 구 비				%
지 방 채				%
기 타 (예 산 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 · 군 · 구 비)				%
채 무 부 담				%
민 자				%
재 정 용 자 금				%
기 타				%

단위사업 : ○○-○○

○○단위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직접/지원 (광역)	자체/보조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 산 총 계				%
국 고 보 조 금				%
균 특 보 조 금				%
기 금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세				%
시 · 도 비				%
시 · 군 · 구 비				%
지 방 채				%
기 타 (예 산 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 무 부 담				%
민 자				%
재 정 용 자 금				%
기 타				%

※ 작성시 참고사항

- 단위사업명 아래 박스의 회계표시 : 일반회계-일반, 공기업특별회계-공기업, 기타특별회계-기타
- 재원별 작성시 구분
 - 시·도 : 시·도비·시·도의 자체재원,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군·구비
 - 시·군·구 : 시·도비 - 광역단체의 지원금, 시·군·구비 - 시·군·구의 자체재원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 · 예산총계 · 시·도비 예산액
- 세부사업내역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대(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실국 ○○과팀	담 당 : ㉔ 부서 직급 성명
기 능 : ○○분야 ○○부문	㉕ 부서 직급 성명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직접수행, 자치단체·민간 보조, 출연(출자), 용자 등
-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용자조건, Matching 여부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 산 총 계				%
국 고 보 조 금				%
균 특 보 조 금				%
기 금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세				%
시 · 도 비				%
시 · 군 · 구 비				%
지 방 채				%
기 타 (예 산 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채 무 부 담				%
민 자				%
재 정 용 자 금				%
기 타				%

□ 산출근거

(단위: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000 국) 000 지) 000 시) 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000	000	000	00%
○ 순환도로건설 홍보책자 제작 10,000×100권×2회 =	국) 000 지) 000 시) 000			
}	}	}	}	
401-01 시설비				
}	}	}	}	}

※ 작성시 참고사항

○ 재원별 작성시 구분

- 시·도 : 시·도비 - 시·도의 자체재원,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
군·구비

- 시·군·구 : 시·도비 - 광역단체의 지원금, 시·군·구비 - 시·군·구의 자체재원

○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라고 표시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 · 예산총계 · 시·도비 예산액

○ 산출근거내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대(소멸대응기금)

○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은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임

예산안 첨부서류 서식

1 규격화 대상 첨부서류[E호조 연계]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 00.00%

(단위: 백만원, %)

지방세 (A)	세외수입 (B)	자체수입 (C=A+B)	전체세입예산액 (D)	재정자립도 (C/D*100)

※ 일반회계 기준, 지방교육세 제외

1-1-2. 재정자주도 : 00.00%

(단위: 백만원, %)

지방세 (A)	세외수입 (B)	지방교부세 (C)	조정교부금등 (D)	전체세입예산액 (E)	재정자주도 [(A+B+C+D)/E *100]

※ 일반회계 기준, 지방교육세 제외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 00.00%

(단위: 백만원,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A/B*100)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 자체 00.00%, 보조 00.00%

(단위: 백만원, %)

자체사업예산액 (A)	자체사업비율 (A/C*100)	보조사업예산액 (B)	보조사업비율 (B/C*100)	전체예산액 (C)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00.00%

(단위: 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A/B*100)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1-1-6. 예비비 확보율 : 00.00%

(단위: 백만원, %)

예비비분야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예비비 확보율 (A/B*100)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1-1-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00.00%

(단위: 백만원, %)

지방세 (A)	세외수입 (B)	자체수입 (C=A+B)	인건비 (D)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 (D/C*100)

※ 일반회계 기준

1-2. 통합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자치단체	공사 . 공단	출자 . 출연	내부거래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전전년도 결산 기준, 계는 내부거래 제외한 순계 기준

1-3. 우발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자치단체	공사 . 공단	출자 . 출연	내부거래
보증채무부담행위					
금융기관 차입금					
자산유동화 증권					
예산외의무부담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협약					
기타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전전년도 결산 기준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산액	의무지출				재량지출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예산액						
비율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감사내용	처분내용	처리결과

※ 전전년도 7.1. ~ 전년도 6.30. 기간 중 통보된 감사 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단위: 백만원)

감사 연도	심사 연도	제목	최종 감액금액	최종심의결과 내용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에 결정된 지방교부세 감액이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단위: %)

분 야	재정분석지표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유형평균	전국평균
재 정 건 전 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 비율				
	⋮				

1-8. 지방세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비과세 . 감면액			지방세 징수액 (B)	비과세 . 감면율 [A/(A+B)*100]
계(A)	비과세액	감면액		

※ 전전년도 결산 기준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예편기준)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전전년도 결산 기준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기간
				기투자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이후	
BTL								
BTO								

※ 전전년도 결산 기준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 순이익	경영 평가등급
직 영								
공 사								
공 단								

※ 전전년도 결산 기준 / 경영평가 등급은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채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전전년도 결산 기준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단위: 백만원)

세출(주는 회계·기금)		예산액	세입(받는 회계·기금)	
회계·기금	예산과목	0,000	회계·기금	예산과목
aa기금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aa특별회계	예탁금		bb기금	예수금수입
aa기금			bb기금	
aa특별회계			bb특별회계	

※ 회계와 기금간 이전 및 회계외 기금 상호간 이전 / 전입·전출 및 예수·예탁 포함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단위: 백만원)

예산/ 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		평가등급	지출구조 조정
		전년도	당해연도		

2 규격화 대상 첨부서류(E호조 미연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작성 지침」 서식과 동일

1. 지역통합재정 총괄 규모

1-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당초예산 (A)	2025년 당초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총 계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에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1-2.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구성비	예 산				기 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계	지자체 소관	교육청 소관
합 계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에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1-3. 전년대비 증감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당초예산 (A)	2025년 당초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교육비특별회계				
기 금					
	일반지자체 기금				
	교육청 기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에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1-4. 세출성질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 중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교육비 특별 회계	기금		
합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 출자출연기관에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

2-1. 규모

2-1-1.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당초예산 (A)	2025년 당초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총 계				
시·도, 시·군·구				
교육청				

2-1-2.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예 산				기 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계	지자체소관	교육청소관
합 계									
시·도, 시·군·구									
교육청									

2-2. 세입자원별 규모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당초예산	구성비(%)	2025년 당초예산	구성비(%)
총 계					
자체수입					
지자체	지 방 세				
	세외수입				
교육청	수업료 등 자체수입				
이전수입					
지자체	지방교부세				
	보 조 금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지자체	지 방 채				
교육청	지방교육채				
기 타					
지자체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교육청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구성비는 상단 셀의 총계 대비 비중을 기재

2-3. 세출성질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예 산				기 금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교육비 특별 회계	계	지자체 소관	교육청 소관
합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2-4. 세출기능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예 산				기 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계	지자체소관	교육청소관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등									

3. 공사·공단 분야

(문의 : 공기업지원과 _____, ____-____-____)

3-1.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당초예산 (A)	2025년 당초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총 계				
공 사				
공 단				

3-2. 재정현황

(`23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A+B)	부채(A)	자본(B)	자본대비 부채비율 (A/B)
계					
공사	소계				
	〇〇공사				
	：				
공단	소계				
	〇〇공단				
	：				

3-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소계	사업 수입	지원금	외부 차입	기타 수입	소계	사업비	부채 상환	기타	예비비
계											
공사	소계										
	OO공사										
	:										
공단	소계										
	OO공단										
	:										

- ※ 1)사업수입 : 주요사업수익 및 대행사업비
 2)지원금 :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지원금 세부 내역> 참조
 3)외부차입 : 공사채, 공단채, 보증금 등
 4)기타수입 :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등
 5)기타 : 이자지급, 법인세 등

<지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공기업명	계	국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공공기관 등)
소계				
OO공사				
OO공단				
:				

- ※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

3-4. 세출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구성비	예산	
			공사	공단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¹⁾				

※ 기타 : 이익정산금, 반환금, 배당금, 법인세 등

4.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문의 : 공기업지원과 ____ / ____-____-____)

4-1.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당초예산 (A)	2025년 당초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
총 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4-2. 재정현황

(`23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A+B)	부채(A)	자본(B)	자본대비 부채비율 (A/B)
계					
출 자	소계				
	기관명				
	:				
출 연	소계				
	기관명				
	:				

※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4-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소계	사업수입 ¹⁾	지원금 ²⁾	외부차입 ³⁾	기타수입 ⁴⁾	소계	사업비	부채상환	기타 ⁵⁾	예비비
계											
출 자	소계										
	기관명										
	:										
출 연	소계										
	기관명										
	:										

※ 1) 사업수입: 정부, 지자체 위탁 및 대행 사업으로 인한 수입 포함

2) 지원금: 정부,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3) 외부차입: 사채, 보증금 등

4) 기타수입: 영업외수입,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등

5) 기타: 이자지급, 법인세 등

※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지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공기업명	계	국가 지원금 ⁶⁾	지자체 지원금 ⁷⁾	기타 지원금 (공공기관 등)
소계				
OO출자기관				
OO출연기관				
:				

6) 국가에서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

7)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

4-4. 지출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구성비	예산	
			출자기관	출연기관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¹⁾				

※ 1) 기타 : 이익정산금, 반환금, 배당금, 법인세 등
 ※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 작성기준일 : 2024. 12. 31.현재

□ 지방공사 · 공단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원			소재지
				계	정규직	기타	
합계							
공사	소계						
	〇〇공사						
	⋮						
공단	소계						
	〇〇공단						
	⋮						

□ 출자 · 출연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원			소재지
				계	정규직	기타	
합계							
출자	소계						
	〇〇기관						
	⋮						
출연	소계						
	〇〇기관						
	⋮						

※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포함하여 작성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세부 서식(□, ○)은 변경·보완 가능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분석(서식 표 작성 포함)은 반드시 작성

1

2024년 지방세입(자체자원) 실적 평가

[1] 총 괄

☐ (지방세)

○ (실적)

○ (평가)

☐ (세외수입)

○ (실적)

○ (평가)

[2] 지방세입(자체자원) 항목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년 예산		'24년 결산액 (C)	당초예산 대비		추경 대비	
	당초 (A)	추경 (B)		증감액 (C-A)	비율	증감액 (C-B)	비율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3]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원인

☐ (지방세)

○

○

☐ (세외수입)

○

○

[1] 총 괄☐ (지방세)☐ (실적)☐ (분석)☐ (세외수입)☐ (실적)☐ (분석)**[2] 지방세입 항목별 추계치**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년 결산액 (A)	'25년 당초예산 (B)	'25년 전망액 (C)	'24년 결산 대비		'25년 예산 대비	
				증감액 (C-A)	비율	증감액 (C-B)	비율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1] 분석방법 및 전제

☐ 지방세

○ (분석방법)

< 지방세 항목별 설명변수 >

구분	설명변수
취득세	(예) 토지가격, 주택매매가격 등
(중략)	

☐ 세외수입

○ (분석방법)

< 세외수입 항목별 설명변수 >

구분	설명변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행정제재부과금 등	

[2] 지방세입 재원별 전망

- (총괄)
- (평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C)	당초예산 대비		추경 대비	
	당초 (A)	추경 (B)		증감액 (C-A)	비율	증감액 (C-B)	비율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3] 재원별 추계근거

☐ 지방세

○

☐ 세외수입

○

4

기타 참고사항

○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구 분		시기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예산편성	요 구	전년 9월	○	○	○	○	○	○	○
	확 정	전년12월	○	○	○	○	○	내부관리	내부관리
예산배정계획	요 구	전년12월	○	○	○	○	○	○	
	확 정	당해 1월	○	○	○	○	○	내부관리	
예산배정	요 구	수시	○	○	○	○	○	○	
	확 정	정기·수시	○	○	○	○	○	내부관리	
예산재배정	요 구	수시	○	○	○	○	○	○	
	확 정	수시	○	○	○	○	○	내부관리	
예산이용	요 구	사유발생시		○	○	○	○	○	
	확 정	사유발생시		○	○	○	○	내부관리	
예산전용	요 구	사유발생시		범위내	○	○	○	○	
	확 정	사유발생시		범위내	○	○	○	내부관리	
변경사용	요 구	사유발생시			범위내	○	○	○	
	확 정	사유발생시			범위내	○	○	내부관리	
예산이체	요 구	사유발생시	○	○	○	○	○	○	
	확 정	사유발생시	○	○	○	○	내부관리		
예산이월	요 구	사유발생시	○	○	○	○	○	○	
	확 정	사유발생시	○	○	○	○	○	내부관리	

1. 예산편성

□ 정 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 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세입재원과 세출사업 간 연계성이 적거나, 연례적으로 이·불용이 과다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통·폐합
- ※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통계목은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함

※ 최근 2년간('23~'24) 집행률 하위 통계목(전국 평균) : 의원역량개발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시설비

○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금액·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결정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각종 보조·지원 제한에 따른 예산편성 제한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편성 가능

<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결 관련 대법원 판결 (2012 추 176, '13.5.23)>

- ①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 ② 시우회 등의 추진사업으로 시정일반에 관한 정책개발 등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고, 조례안에 정한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 ③ 조례안이 정한 각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 ④ 서울시 시우회 등의 구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적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 ⑤ 서울시 시우회 등이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에서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함.

□ 예산의 성과관리

○ 기본원칙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안 작성 기준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참조
 - *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
 - *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 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성과지표 등을 마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마련
-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
- 평가는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이전인 7월까지 완료하고, 예산요구·편성시 평가 결과가 우수 이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또는 감액 추진
 - 다만, 우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운영방법 >

-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사업부서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사업관리카드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 예산의 성과계획서 : 조직의 미션, 실국단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
 - ※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지방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 의무
- ▶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요구하되, 보조금등 특정재원의 경우 보조기관, 보조사업명, 세출사업명을 연계하여 제출
- ▶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 ※ 데이터기반 예산운용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요구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데이터이용단위)에 매핑하여 연계·관리(예시 : 지방보조금 등)
- ▶ 보조금부담조서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예산조정 : 예산부서가 예산요구내용을 산출근거까지 조정
- 심의·확정 :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확정

□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원칙적으로 예탁
 - 특히, 특별회계·기금 사업 추진 시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최소화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

-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함
 - ※ 개도국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수원국 국민 현지 초청연수, 개도국 기술전수, 개도국 유학생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기여금, 분담금 등
- 국제개발협력으로 분류된 사업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초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함
 - ※ 기초 → 광역 →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국조실 순으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함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 적용사업의 예산편성 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지방경비부담규칙」 별표에 적용되는 사업*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여야 함
 - * 적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부담률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지방경비부담규칙」 제3조에 따라 기준부담률 조정신청 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대상확정 : 안전총괄부서는 재난안전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예산요구 : 사업부서는 재난안전사업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 하고, 안전총괄부서가 입력현황을 확인·점검 가능하도록 예산부서는 협조
 - *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 속성 표기
(세부입력항목 : 재난분야(4개), 재난유형(41개), 법적분류(6개), 재난관리단계(3개))
※ 입력항목 미비시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투자우선순위 : 안전총괄부서는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통보
 - 예산(안) 통보 : 예산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 의회 제출(안)을 안전총괄부서에 통보

□ 시설비 사업 관련 예산편성사항

- 시설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절차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가 능한 예산을 편성함
- 소규모사업이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예산배정

□ 정 의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 예산배정계획 수립

- 수립절차 :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 ⇒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예산부서) ⇒ 확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계획 요구

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 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 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 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후 확정

❖ 배정 유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 : 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 배정단위 :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 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 예산수시배정

- 운영절차 : 세출예산집행계획 수정 및 수시배정 요구(사업부서) ⇒ 세출 예산배정계획 조정(예산부서) ⇒ 수시배정 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배정 요구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되었으나 사유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 단위로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배정 통보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수시 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예산 재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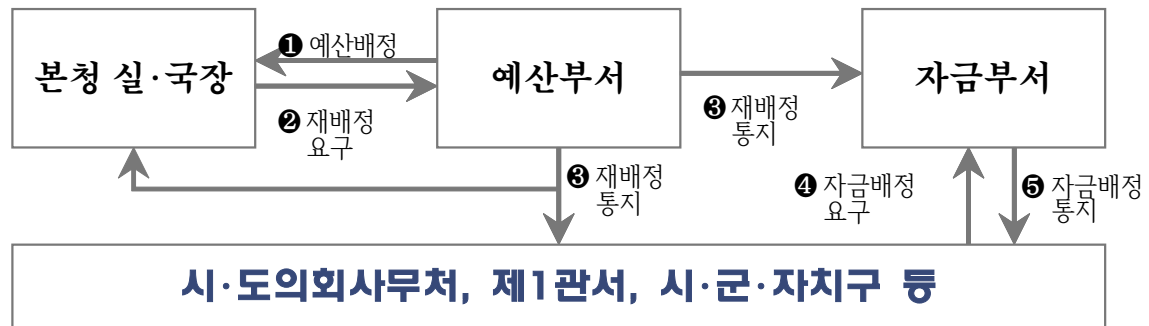
-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시·도 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에 한함),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지방회계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용어정리 자금배정과 자금재배정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재배정에 따른 지출시 자금재배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나타나지 않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며, 자금배정이 올바른 용어임

※ 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예산재배정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예산배정이 이뤄져야함

- 재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재배정절차 : 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 부서에 통지



- 재배정계획수립 : 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요구 : 재배정계획에 의거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통계목단위로 받을 기관과 재배정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재배정통보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예산재배정 이후 자금배정

자금배정 요구 : 예산을 재배정 받은 관서는 지출결의 후 자금부서에 자금배정을 요구(e-호조시스템에서 지출결의 시 자동 자금배정요구를 설정하면 편리)

자금배정 통지 : 자금부서는 요구된 자금배정사항을 승인하여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지출한도액을 통보

※ 다만, 본청 실·국장이 자금배정을 기 받은 경우에는 자금부서에서 자금배정을 감액 후, 예산재배정 받은 관서의 자금배정요구에 따라 승인·통지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이용

- 개념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 이용단위 : 정책사업 간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예시) :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 예산의 전용

○ 개념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 전용범위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 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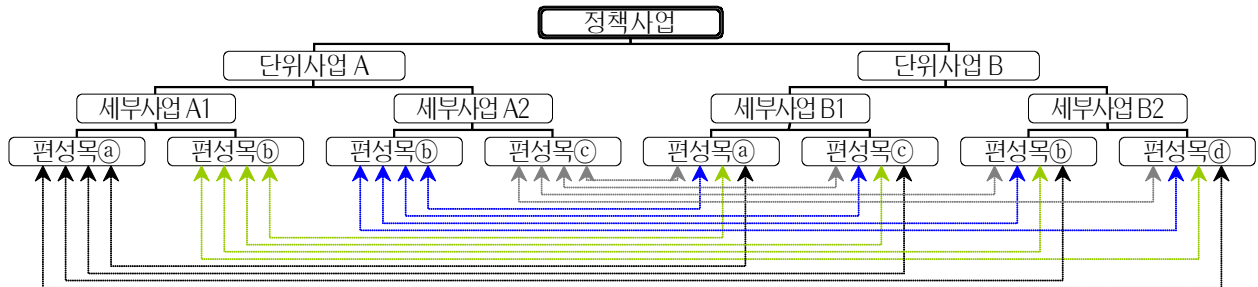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사업의 다른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전용된 예산이라도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전용 가능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예산의 변경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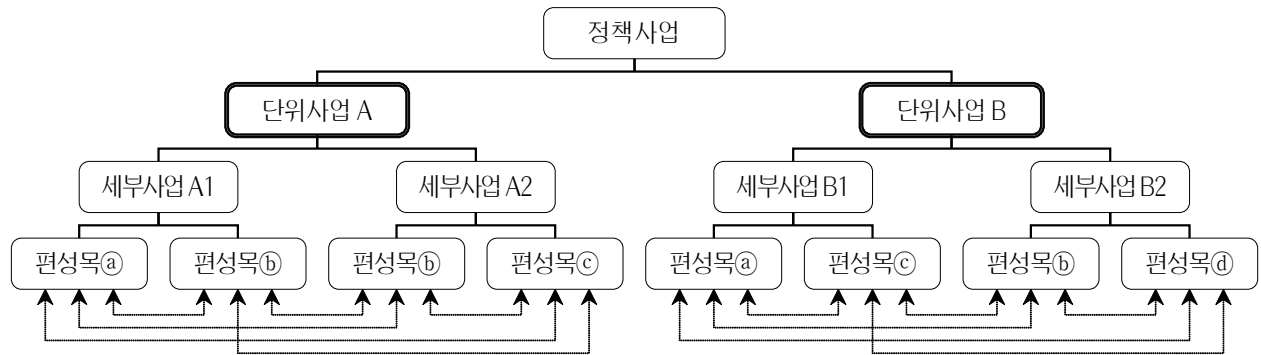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 (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 불가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 예산의 이체

○ **개 념**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세입예산은 장·관·항·목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체개념이 아니라 조직정보를 변경하는 차원임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 가능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이체범위** : 예산을 이체받은 조직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 재이체가 가능하고, 이월 및 이·전용된 예산현액도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된 예산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전용, 변경사용도 가능함

- 조직변경 조례(안)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예산이체
 - ▶ 조직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서 편제 후 조직변경에 맞게 이체하는 것이 원칙
 - ▶ 다만,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부대의견 등)시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

▶ 조직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서 편제 후
조직변경에 맞게 이체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부대의견 등)시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 ▶ 또한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도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 ▶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사업을 사용(내용의 변경 가능)
 - ▶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예시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 기존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당초 A부서의 단위·세부사업은 B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분야·부문은 동일)
- 다만,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기가 사업의 성격상 어려우면 B부서에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함

예시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신설된 B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A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최소 세부사업 단위)이 B부서로 이체되는 경우, 이체되는 사업의 일부가 A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체가 확정된 시점에는 이체받은 B부서에서 관리함
 - ※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경우, A부서가 2개 이상의 A,B부서로 나누어지는 경우 A부서에서 기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A부서에서 관리함

다만, A부서가 폐지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직무권한이 B부서로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까지 관리

※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이체요구 :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체내역 제출

○ 이체 예산의 추경예산 편성방법

- 이체는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사업의 기정액은 그 관리부서가 이동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존속)
- 이체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 및 감액이 가능
 - ▶ 이체된 예산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액처리 후 사업구조화 재설정도 가능함
- **편성방법**
 - ▶ 사업예산의 증감

① 부서의 일부 사업이 신설된 부서로 옮겨진 경우

- 이체해 준 부서의 이체한 사업은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 이체받은 부서는 이체사업의 경우 이체전 예산편성액을 기정액으로 표기
-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이체해 준 부서는 이체후 잔액이 기정액으로 표기되고 이체받은 부서는 받은 금액이 기정액으로 표기

② 부서가 없어진 경우

- 예산서에 부서가 표기되지 않음

③ 부서의 명칭이 바뀐 경우

-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서에 표기
- 바뀌기 전의 부서의 소속 사업들이 바뀐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기

▶ 조직별 총괄표 및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이체예산 설명 방법

- 사업의 증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조직별 총괄표에 주석으로 표기하거나 별첨 참조문서로 제출(자치단체 선택사항)
- 별첨문서 예시

《 예산 이체 내역서 》

(단위 : 원)

조직	사업			예산액	이 체 액		이체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증	감	
A	1111			1000	-1000		0
B	1111			0	1000		1000
.....							
A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100	-50		50
B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0	50		50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예산이체에 따른 자금·지출 처리방법 >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조직이 바뀌어도 장-관-항-세항-목이 변경되지 않아 자금·지출에 변화가 없었으나, 사업예산제도하에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의 위치가 바뀌므로 이에 따른 자금·지출도 변화됨

□ 예산이체의 개념

기본원칙

- 이체단위 : 정책·단위·세부사업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분할·합병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정책·단위사업의 예산액은 세부사업의 합으로 구성
 - 세부사업 관점에서는 이체후(관리부서 변동) 예산액은 불변
 - ※ 추경시 이체사업을 증감하려면 이체내역서를 첨부 한 후 이체된 예산을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현.
- 사업승계 원칙 : 조직 분할·합병시 기배정 및 기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관리부서 지정

이체방법 : 3가지 유형

-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 기존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둘째, 다른 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신설(신규사업 처리)
 - 셋째,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으로 옮기는 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이체
-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둘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다른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잔액을 승계 조직의 동일 사업으로 이체
 - 셋째, 다른 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 이체 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 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 자금·지출 처리방안

- ① 지출완료 금액, 지출중 금액, 잔액 모두 이체받은 부서에서 관리
 - 결산은 결산시점의 조직·사업별로 이루어지며, 지출부 등은 화면 또는 출력물에서 기존조직의 표시를 보여주도록 함
 - ② 예산이체 처리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동시에 이체처리
 - 예산부서에서 이체 전 자금·지출부서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이체처리
- ※ 예산재배정에 의한 지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체처리

정책 · 단위 · 세부사업의 사업이체

- 예산이체 3가지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사업이체 처리됨
- ※ 일상경비, 재배정의 경우도 교부받은 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체처리
- 지출원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행위번호 등 기존에 이루어진 지출 내용은 중복되더라도 변경 없이 이체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금액이체

-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 기존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 승계조직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지출내역과 지출중인 내역은 그대로 남겨둠
 - 신설된 부서는 신규 구조화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금액이체
-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사업의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처리 하여 금액 이체
 -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 이체 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 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4. 예산의 이월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 ▶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액 확정후 집행된 예산은 전년도 집행이 아닌 이월예산의 집행으로 처리
 - 지방회계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미적용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으로 관리
 - ※ 보조사업의 경우 1:1 설정, 분리·합병 불가
 - 다만,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조화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가능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경우 이월 가능.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적용여부는 자체 결정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 사용 가능

사 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사업 [시설비 및부대비(401) 10억원 : 시설비(401-01) 8억원, 감리비(401-02) 2억원]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할 경우 시설비및부대비(401) 편성목내에서 통계목간 조정을 통해 예산사용이 가능하며, 예산의 변경사용에 준하여 처리

- 이월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할 수 없고, 예산의 이·전용도 불가능하므로, 예산부서는 이월액 확정시 향후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판단
- 계속비사업은 예산 집행상황과 이월예상액을 고려하여 연간부담액 변경 등 검토

5. 채무부담행위

□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기정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세출예산 확보 없이 당해 연도 내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다음연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

□ 방 법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 총칙,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기재(사업명, 채무부담행위액, 익년도 이후 지출예정액, 채무부담행위사유 등 명시)
-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범위 내인 경우에 의회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행위 가능

6. 사업예산 운용 관련 질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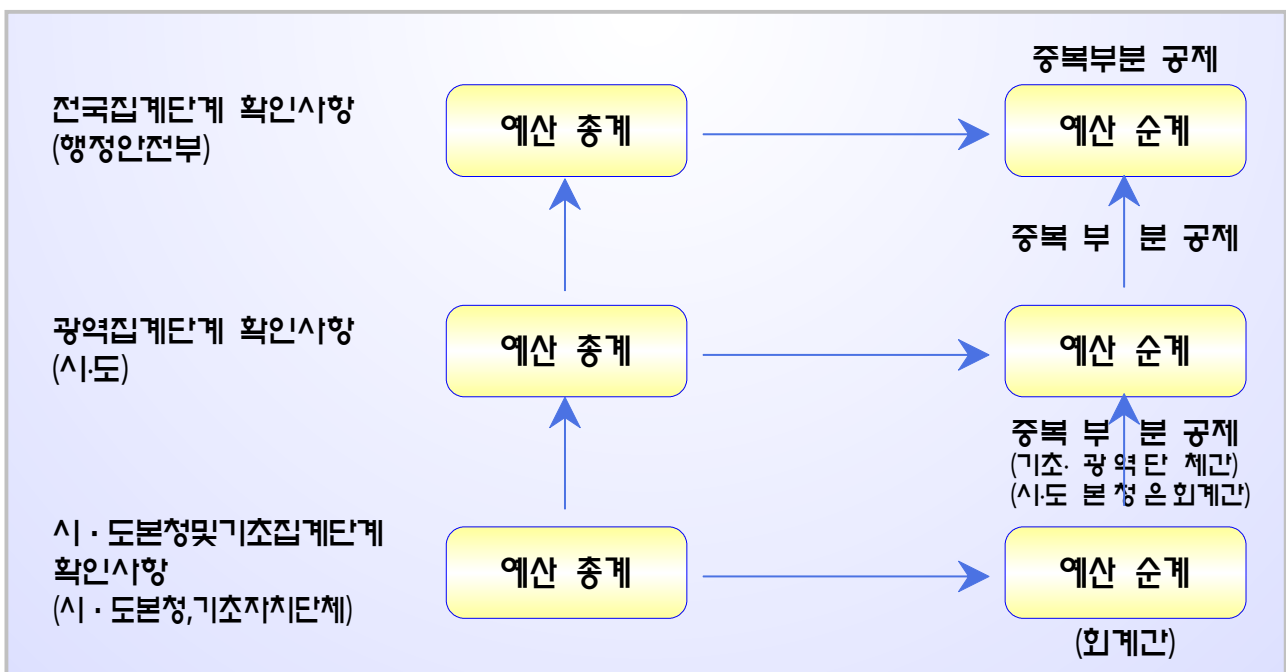
- (1차) 지방예산운용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 기관(시·군·구→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로 하되,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예산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1.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① 순계 개념의 정의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 계상된 부분의 공제 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분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중복부분의 발생은 예산편성시 한 자치단체에서 복수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거래에 의한 것임
-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전국규모를 파악·분석하는 데는 순계 개념을,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 개념을 사용함이 유용하고 관행화되어 있음

순계처리 단계별 도식표



② 순계처리과목 예산편성원칙

○ 내부거래처리 : 자치단체내의 회계 간 중복계상부분의 처리

-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세입·세출 중복부분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 외부거래처리 : 광역과 기초단체 및 단체상호간 중복계상의 처리

- 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상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반드시 일치할 수 없으나 상호 협조하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 고려사항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전체를 망라하여 내부·외부거래 대응과목체계에 부합 하도록 『세출 ⇒ 세입』 예산편성

③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시 상대회계 반드시 등록

○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3개유형)

세입	세출	비고
① 전입금	전출금	시·도, 시·군·구공통
② 예수금	예탁금	시·도, 시·군·구공통
③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예수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

외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 간 예산거래금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편성

○ 외부거래 세입·세출예산편성 대응과목(6개 유형)

세 입			세 출		
① 보 조 금	조 반 금	금 입	보 조 금	조 반 금	금 출
② 보 조 금	조 반 금	수 입	보 조 금	조 반 금	수 출
③ 융 자	자 금	수 입	융 자	자 금	수 출
④ 융 자	자 금	수 입	융 자	자 금	수 출
(융 자 금 이 자 수 입)			(융 자 금 이 자 수 출)		
⑤ 교 부	부 담	금	교 부	부 담	금
⑥ 부	담	금	부	담	금

※ 융자금은 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하는 금액을 말함

4 외부거래의 순계처리방법

○ 내부거래는 원칙상 일치하며 외부거래는 주는 단체와 받는 단체가 서로 다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순계자동전산처리를 위하여 다음요령에 따라 유보과목을 두어 상호 수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함

순계예산 작성시 외부거래 처리방법

시·도와 시·군·구 거래 내역	A유형	B유형
보조금중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한 세출금액	100억원	130억원
보조금중 시·도 지원금액의 시·군·구 세입금액	130억원	100억원

A 유형

시·도		시·군·구	
세입	세출	세입	세출
300	200	중복 130	200
	중복 100	70	
30 (세입유보)	30 (중복)		

⇒ 순계 : 400
⇒ 시·도의 세입에 30억원을 “세입유보”로 정리

B 유형

시·도		시·군·구	
세입	세출	세입	세출
300	170	100	200
	중복 130	중복 100	
		30 (중복)	30 (세출유보)

⇒ 순계 : 400
⇒ 시·군·구의 세출에 30억원을 “세출유보”로 정리

※ [내부거래]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구 분	세출 또는 지출(주는회계)		세입 또는 수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①전입· 전출금	일반/기타 기 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613-01 빗물처리부담금 672-01 일반회계전입금 672-02 타특별회계경상적전입금 672-03 일반회계지원금 672-04 타특별회계지원금 171-01 일반회계자본적전입금 173-02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74-01 타회계보조금수입 175-01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	일반/기타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01-11 이익정산금		721-04 기 금 전 입 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2-01 기 금 전 출 금 →	기 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01-11 이익정산금		721-04 기 금 전 입 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317-00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672-02 타특별회계경상적전입금
		321-00 공기업특별회계간경상적전출금		171-02 타특별회계자본적전입금
		702-00 공기업특별회계간자본적전출금		
②예탁 예수금	일반/기타/기금	704-01 예 탁 금 →	일반/기타/기금	722-01 예수금수입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4-01 예 탁 금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22-01 예수금수입
		공 기 업 과 목		
		704-00 예 탁 금		
	지역개발기금	704-01 예 탁 금 →	일반/기타 공기업	722-02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공 기 업 과 목 142-01 시·도지역개발기금단기차입금 152-01 시·도지역개발기금장기차입금

구 분	세출 또는 지출(주는회계)			세입 또는 수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③예탁 예수금상환	일반/특별 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특별 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공 기 업 과 목	
					114-01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71-03	예탁금이자수입
	일반/기타 공기업	705-03	사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지역개발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4	사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공 기 업 과 목				
		601-08	사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311-08	사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 [외부거래]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구 분	세출 또는 지출(주는회계)				세입 또는 수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①보조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511-01	국고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511-03	기 금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공 기 업 과 목	
		공 기 업 과 목				공 기 업 과 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73-01	국고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3-01	국고보조금수입
						673-02	시·도비보조금
						173-03	시도비보조금수입
②시·도 보조금반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일반/기타 /기금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수입
		공 기 업 과 목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③융자금 수입·지출	기금 (시·도)	501-04	시·군·구 융자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공 기 업 과 목				공 기 업 과 목	
		142-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단기차입금			152-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장기차입금
④융자금 회수·상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	기금 (시·도)	713-04	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공 기 업 과 목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 입금원금상환				

구 분	세출 또는 지출(주는회계)		세입 또는 수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⑤교부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2 징수교부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215-01 징수교부금수입
		308-03 자치구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05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06 시·군기타재원조정비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03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421-01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02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03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입
⑥부담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공 기 업 과 목		공 기 업 과 목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175-02 타자치단체공사부담금수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 법정경비는 개별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업무에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II.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
2. 예산운용 실무
3.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 경비
4.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1.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제1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예산요구서) ① 제1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관재업무담당과장(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도 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처(국·과)장,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도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

제5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 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서식>

예 산 원 부

연도 회계 살·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연월일	예산과목		적 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액
	편성 목	통계 목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 월	예산·변경 ·전용	예비비 사 용	예산·이용 ·이체	수입대 체경비	합계	배정	재배 정	본청 집행	

<참고서식>

세출예산정리부

연도 회계 살·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통계목	일자	원인번호	적요	채권자	예산현액 ①	예산배정액 ②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일상 경비	일상 경비외	계 ③	예산현액대 (①-③)	예산배정대 (②-③)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참고서식>

사 고 이 월 요 구 서

(단위: 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예산액	지 원 출 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 사유	완 예 연월일	공 정 일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계	국고 보조	도비			

<참고서식>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 : 원)

분 구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 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통계 목			예산 액	집행 액	이월 액	예산 액	집행 액	이월 액	예산 액	집행 액	이월 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참고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단위: 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연도계속비 예산현황			지 출 액		잔 액	다 연 이 월 액	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예 산 계상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 금액	금후지출 소요액			○ 보조금	시·도비	기타	

<참고서식>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통지)서

실·국 과

(단위:원)

[illegible]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

〈기재요령〉

-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참고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 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 요 액 ③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액 ③-①-②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과 목	통 계 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

국장

〈기재요령〉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2. 예산운용 실무

1 예산 일반

□ 예산의 종류

- 일반적인 예산분류기준으로는 회계의 성질, 성립시기, 예산의 성립 여부 등이 있음

가. 회계의 성질별 분류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함
-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념에 있어서는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함

2)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함
-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①공기업을 운영할 때, ②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며, 지방 공기업법이 적용됨
 - 기타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회계와 구분 정리하는 회계임

<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

제 목	국 가	지방자치단체
1.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국가의 경우와 동일
2. 예산편성규정 (기준경비 등)	기획재정부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7월 31일까지)
3. 예산심의 확정	국 회	지방의회
4. 특별회계 설치	법 른	조 례
5. 예산의 과목구분	법정(국가재정법)	법정(지방재정법)
6. 예산의 전용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2016회계연도부터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해야 함(「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나.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1) 본 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광역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42조)

2)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재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 (「지방자치법」 제142조)

3) 성립전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 (「지방재정법」 제45조)

4)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 취소 ·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구의 경우 '△△년도에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보상금 39백 만원 등 17건 90 백만 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하였음

□ 예산의 원칙

가. 공개의 원칙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를 목적으로 함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를 목적으로 함
- (예산 및 결산 내용의 고시)
 -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4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공유재산 현재액 등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정하는 항목 및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40조)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 지출 등이 있음

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37조)
-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이 있음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7조)
-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마.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이 있음

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사.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예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 예산 용어해설 >

세 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 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 반 회 계 예 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 별 회 계 예 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본 예 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 정 예 산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 가 경 정 예 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준 예 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 계 예 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 계 예 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채 무 부 담 행 위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기 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 계 잉 여 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원
예 산 과 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 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 시 차 입 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회계법 제24조)
명 시 이 월 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사 고 이 월 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계 속 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난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회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회계법 제27조)
지난연도 지출	지난 회계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지방회계법 제37조)

< 사업예산용어 해설 >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품목예산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 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예 산 구 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기 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분 야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 문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 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사 업 구 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정 책 사 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단 위 사 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세 부 사 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행정운영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기 본 경 비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재 무 활 동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내부거래지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전출금' 등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보 전 지 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하며, '차입금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직 접 사 업	지원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사업이라 하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지 원 사 업	직접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이라 하며, 직접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자 체 재 원	보조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동 재원을 자체재원이라 하며,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을 자체재원사업이라 함
보 조 재 원	자체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동 재원을 보조재원이라 함.
품 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목 그 룹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는 바,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됨
편 성 목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통 계 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재 정 계 획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계획을 말함
투자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조 정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심 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심 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확 정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지 급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 출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사업관리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정책사업 유형화	지자체 사업구조 설정의 편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사업 비교 목적을 위해 정책사업 설정 사례를 제시한 것을 말하며, 유형화는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표준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예 산 안	지자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예 산 서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2 세입예산의 추계

□ 지방예산의 자원

가. 세입예산의 의의

-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함

나. 지방세입예산의 종류 및 분류

- 종류 : 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지방교부세 등 ④조정교부금 ⑤보조금 ⑥지방채 ⑦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
- 분류 :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 지방세 >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임
-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보통세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충족을 위하여, 목적세는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세목임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난연도 수입(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 세외수입 >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서비스에 수반하여 생기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하거나,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며 크게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으로 구분됨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 지난연도 수입(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외수입)

< 이전수입 >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 지방채 >

- 증서차입채(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는 기채로 정부자금채, 금융기관채, 지방공공자금채 등이 있음
- 증권발행채(지방채증권) :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하여 교부하는 기채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있음

□ 세입예산의 추계

-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수익자부담금의 적용, 국가 이전재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가. 지방세 추계

① 지방세 추계 방식

지방세 등을 추정하는 세수추계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단순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단순추계방식

- 단순추계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단일의 세율구조(과세객체의 등가성)를 갖고 있는 경우, 과세객체의 수량(물건수) 증가에 따라 세수가 변동되는 세목을 추계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증감된 수량에 기준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나타내는 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

-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다양한 세수구조를 갖고 있어(과세객체의 비등가성) 지방세수입액이 과세물건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않고 과세표준액, 세율구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기초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
- 세수탄력성은 과세객체의 변화에 따른 예측세수변화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과세객체의 변화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변화(과표탄력성)와 과세표준액의 변화에 대한 부과액의 변화(부과액탄력성)로 산정됨

시계열에 의한 방식

- 시계열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거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방식. 여기에는 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비선형 모델에 의한 방식, 지수함수에 의한 방식, 이차함수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② 지방세 추계 시 고려사항

-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 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이 검토 되어야 하는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므로 진도비 및 시계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
 - 경제성장률, 부동산거래량, 자동차등록대수,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 물건의 증감추이
 - 제도의 폐지 연도별 차등부과, 세율인상(하), 새로운 세목 신설 등
 - ※ 진도비 : 적용이 간편하고, 단순하면서도 예측결과의 오차가 비교적 적은 방법으로 납기가 정해졌거나 시기별(계절적)수요가 규칙적인 세목에 활용
 - 시계열 : 변수 간의 계열상관을 이용하여 순환변동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기전망, 소비형태, 정부정책 관련 세목

< 지방세 추계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

예산과목		검토(예시)사항	비고
보통세	취득세	- 공시지가 상승률 - 주택가격 평균신장률 - 부동산경기(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및 자동차 등록사항 등	
	등록면허세	- 부동산거래신장률 - 세액신장률 - 각종인 · 허가, 신고, 등록 등 추이분석	
	재산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율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 국제유가변동, 국내경기 상황 - 주행세율 등락, 영업용차량증감비율 등	
	레저세	마사회 등 업체의 예상매출액 증감률	
	담배소비세	- 세액증가율 및 소비신장율 분석 - 흡연인구증감률	
	주민세	- 주민등록세대수, 개인사업자수, 법인사업자수 - 재산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득세	- 국내총생산(GDP, GRDP), 경제성장률 - 종업원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장률 - 경제성장률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 대규모공동주택 사용승인, 주택 신 · 증축 - 대형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신축면적 등 적용	
	지방교육세	해당세목(7개세목) 세율적용	
지년연도수입		당해연도 징수목표액(체납액 심층분석필요)	

나. 세외수입의 추계

- 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경상적세외수입)과 공공부분 내부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으로 발생되므로 일정시점(예 : 전년도 6월말 또는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편성년도 징수액 전망

< 세외수입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

세 입 과 목		검 토 사 항	비 고
세 외 수입	재산임대수입	유무상 임대재산, 유휴재산 및 임대 가능 재산 검토	
	사용료,수수료, 사업수입	- 현실화계획 - 각종 징수조례 등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 신규발생수입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법정요율 적용 -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 전체세입규모 전망 - 공공채 금리등 은행금리 전망	
	재산매각수입	-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 도시계획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검토	
	기타수입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항목 계상 필요	
	지난연도수입	채납액 심층 분석 필요	

3 예산 편성

□ 예산편성의 의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예산과정 중에서도 특히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됨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

-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 ▶ 재정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 지양
-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준수

□ 예산의 편성절차

가.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① 자치단체 예산(안)편성 : 9~11월(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 내시 : 9.15.까지(중앙 각 부처)

② 예산(안) 의회제출

- 시·도 : 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 시·군·자치구 : 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 시·도 : 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 시·군·자치구 : 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④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 : 의결 후 3일 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 받은 즉시

(보고 : 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

-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 : 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 성과계획서 :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 세출예산요구 :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 보조금부담조서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기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이행 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 (예: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완료 공문 등)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다.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예)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예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 분	주요내용			
협의요청 사업명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 예산조정의 요령 >

단 계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③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 ④ 법령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
2단계	⑤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⑥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 ⑧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 ⑩ 금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단계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1]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
-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행정운영경비 조정시 기준 >

-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
- 기본경비의 설정 기준 마련
- 전시성·소모성,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절감의 지속 추진

2] 사업예산

-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 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 사업예산 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육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3]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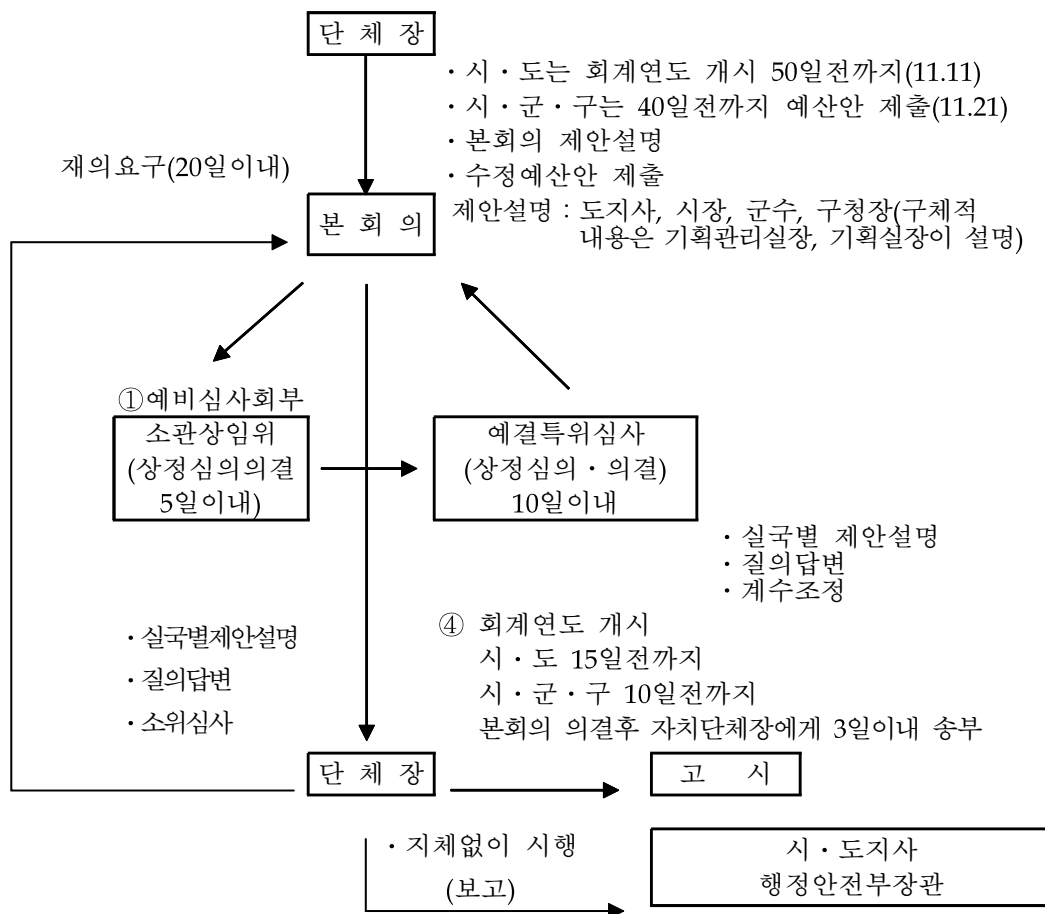
-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재원 범위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자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 조정의 중심과제가 됨
-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배분되어야 할 것임

라. 예산안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부서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자료를 준비

<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



마. 예산안 의회제출

의회제출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 전전년도 결산 기준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 전전년도 결산 기준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전전년도. 7. 1. ~ 전년도. 6.30. 기간 중 통보된 감사 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에 결정된 지방교부세 감액이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1-8. 지방세지출현황
※ 전전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전전년도 결산 기준

-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사업명세서 작성 가능
-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 6.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 7. 성인지 예산서
- 8. 성과계획서
-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 10. 명시이월 명세서
-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 14. 「지방재정법」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16.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8.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9.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20.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2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23.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2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예산 첨부서류 중 특정연도가 미표시된 항목은 2025년도 예산안 기준임

바. 예산안 의회 심의 · 의결

1) 제출시한

- 시 · 도 :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전년 11월 11일)
- 시 · 군 · 구 :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전년 11월 21일)

2) 의결시한

- 시 · 도 :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전년 12월 16일)
- 시 · 군 · 구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전년 12월 21일)

3] 예산안 제안 설명

-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
- 제안 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함
- 의장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기일을 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시·군·구의 경우 기획감사실장 또는 국·과장) 예산안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국별(또는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소관별 예산심의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를 조정·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심사결과 계수조정·정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제안설명에 포함할 사항 >

- 당해 자치단체의 시·도/시·군·구청 방침 및 중점 투자방향
- 익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 개요 (세입규모 및 내역)
 - 세출예산 개요 (중점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예산심의 시 유의사항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음.
 - 단,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 불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5) 본회의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고,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부분별로 부의 의결할 수 있음
-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6) 예산의 이송

-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확정
-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0000년도 세입예산요구서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요 구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사 업 개 요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0000년도 세출예산요구서

(단위: 천원)

실·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요구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실과명1						000 [국0 시0]		
	정책사업1					000 [국0 시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0]		
				세부사업1		000 [국0 시0]		
					000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000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000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000 인건비 산출기초			
					000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000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000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000 차입금원금상환			
실과명2								
}	}	}	}	}	}	}	}	}

□ 계속비사업조서

계 속 비 사 업 조 서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 업비	전년도 이전			전년도			당 연 해 도 예 산 액	다 음 년 도 예 산 액	다 음 년 도 이 후 예 산 액	비 고
						예 산 액	지 출 액	지 출 잔 액	예 산 액	지 출 액	지 출 잔 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														

□ 채무부담행위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은 자치단체별 자율 표시

채 무 부 담 행 위 조 서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 행 위 액	사유	상환계획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	}	}	}	}	}	}

□ 공유재산조서

(단위 : 천 원)

종 별	적 요	구 분	전년도말현재		당해연도말(추정)		다음년도말(추정)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총 계	계	계							
		토지							
		건물							
기 관 별	계								
	본 청	토지 건물 ○○							
	○○관서	토지 건물 ○○							
	○○관서								
	○○관서								
보 존 재 산		토지 건물 ○○							
일 반 재 산		토지 건물 ○○							

□ 0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

(단위 : 천원)

과 목 (관)	세입예산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증감사유
						증	감	

(단위 : 천원)

[기재요령]

- 402 -

□ 지방채조서

(단위 : 천원)

[illegible]

사. 예산의 확정

예산의 고시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
- 다만, 이송된 예산내용 중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음.
- 확정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하여 배부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배부(편제 포함)
 - ※ 편제방식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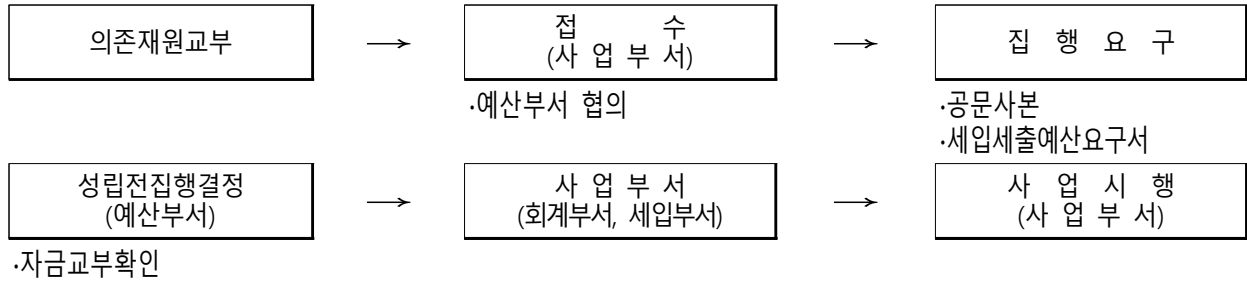
아. 성립전 예산집행(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계속비의 경우 >

-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더라도 성립전에 사용할 수 없음 ('99. 7. 22 행자부 질의 회신)
-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99. 7. 24 행자부 질의회신)

※ 절 차



자.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재정법 제46조]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한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은 지방의회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정으로서
- 예산의 불성립에서 오는 행정의 마비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제 도 연 혁 >

◇ 가예산제도 :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56. 2. 13)

- ▶ 지방의회 의결을 못하였을 때, 1월 이내 가예산의 의결을 얻어 집행(구법 제160조)

◇ 준예산제도 :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60. 11. 1)

- ▶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구법 제160조)

1. 공무원의 봉급, 사무처리 필요한 기본경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전년도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현행

- ▶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기준

- 집행시기 :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 집행규모 : 전년도 예산(추경예산 포함)에 준함

대상 경비

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현상유지와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가. 인건비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나.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내 일반수용비·운영수당·급식비·임차료, 공공
운영비 내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다. 여 비 : 국내여비, 월액여비

라.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마.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특정업무경비

바. 의회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사.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기관·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②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 가. 일반보전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입영장정지원비,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
- 나. 이주및재해보상금 :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다. 배상금등 : 배상금 등
- 라. 연금부담금 등 :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 마. 민간이전 : 의료및회복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 바.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비

집행절차

① 경비집행계획 수립

- 대상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관련 규정 에서 정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 실·국(과)별로 법정경비 지출계획 취합
 -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경비여부를 판단 집행계획에 반영
- 당해연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추경예산 포함), 당해연도 준예산액이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
 - 당해연도 예산안, 당해연도 준예산액은 그 산출근거를 표시

② 경비의 집행

-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규정한 경비의 지출은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지방재정법」 제46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산의 배정과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

③ 경비집행 결과처리

-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된 경비는 성립된 예산에 포함됨. 따라서 집행된 경비는 정상적으로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장부 등에 정리

자치단체 조치사항

- ①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한 법정경비의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후 집행
- ② 집행기한에 대한 법적제한이 없으므로 법정경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통하여 집행

①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지방재정법」 제46조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서식 : ○○○○년도 ○○(자치단체명) 준예산

(단위:천원)

실·과	정책 사업	단위사 업	회계	세부 사업	당해연도 예산안		당해연도 준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실과명1						000[국0 시0]		000[국0 시0]	
	정책사업1					000 [국0 시0]		000 [국0 시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0]		000 [국0 시0]	
				세부사업1		000 [국0 시0]		000 [국0 시0]	
					000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000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000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000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000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000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000 인건비 산출기초		000 인건비 산출기초		
					000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000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000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000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000 일반운영비		000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000 기금전출금		000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000 차입금원금상환		000 차입금원금상환		
실과명2									
}	}	}	}	}	}	}	}	}	}

4 예산 집행

□ 예산의 배정

가. 의 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 절차를 취하게 됨.

나.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 수립절차 :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 ⇒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 (예산부서) ⇒ 확정 (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계획요구 : 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변경 :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 후 확정
 - 배정유보 : 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다.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 : 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 배정단위 :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라. 예산수시배정

- 운영절차 : 세출예산집행계획수정 및 수시배정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배정 계획조정 (예산부서) ⇒ 수시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배정요구 :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되었으나 사유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배정통보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마. 예산 재배정

- 의의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시·도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에 한함),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재배정절차 : 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재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재배정계획수립 : 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요구 : 재배정계획에 의거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통계목 단위로 받을 기관과 재배정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재배정통보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바. 배정예산의 집행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 세출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법령이나 조례상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비상재해복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이자부담 절감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감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함

수입의 확정이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하며 비상 재해 시는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음.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

□ 예산의 변동

가. 예산의 이월

1) 예산이월의 의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2) 이월의 종류

i)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실 무 사 례 >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년도 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다음다음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하여 다음다음다음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ii)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인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실 무 사 례 >

<사고이월 부적정>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백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군에서 '△△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iii)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 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

i)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액 확정후 집행된 예산은 전년도 집행이 아닌 이월예산의 집행으로 처리
- 지방회계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미적용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집행 후 그 회계년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결산은 1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성격상 이월예산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도 결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ii)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사업 부서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 이월요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각기 별지로서 구분하여 작성

예산 부서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 과장에 대하여,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봄

세입 부서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자금이월이 수반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집행연도에 기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징수절차를 취함
 - 이 경우 세입과목은 이월하는 연도의 예산과목으로 하며, 세입징수 결의서와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징수부에는 이월세입임을 표시
- (예) 미차입자금의 이월에 의하여 기채한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방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결산 시에는 지방채수입으로 분류 처리함

회계 부서

- 이월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 회계장부를 이월하는 연도 및 이월받는 연도에 있어서 각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음
 - 다만, 이월 받는 연도의 회계장부상 배정 표시란에는 이월예산의 배정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월하는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은 계약체결 등의 지출원인행위시에 작성하고 경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될 때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
-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새로운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하되, 서식의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과 서식의 오른쪽란(지출 관련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경리관 및 지출원 등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부등기”란의 일자는 다시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iii)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음

○ 재이월 문제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 이월예산의 전용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 지출 승인된 예비비의 이월

-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사용 하여도 무방

나. 예산의 이 · 전용, 변경, 이체

1)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2] 예산의 전용[지방재정법 제49조]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범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

참고

❖ 목그룹 : 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보전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과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함
- 예산의 이·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함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음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 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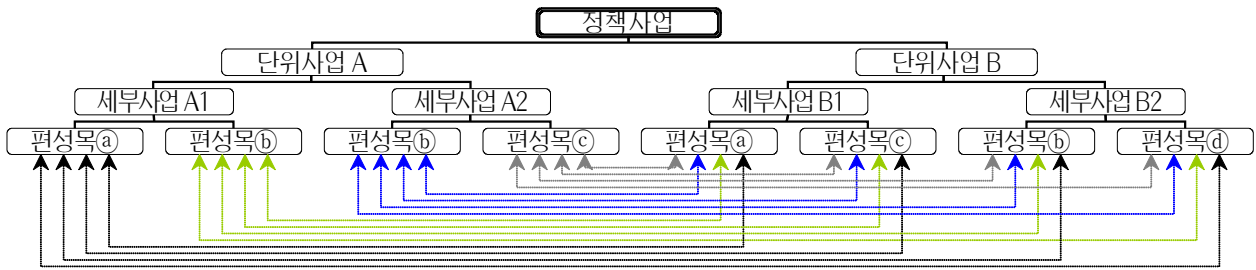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사업의 다른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전용된 예산이라도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전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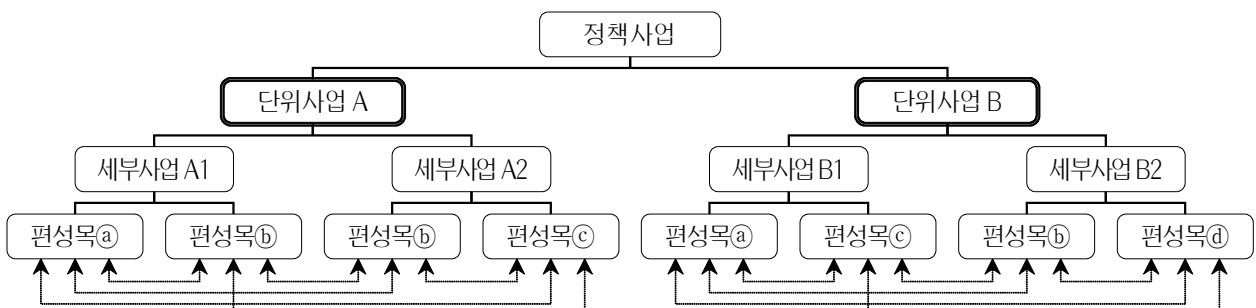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3)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 불가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 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4) 예산의 이체[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세입예산은 장·관·항·목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체개념이 아니라 조직정보를 변경하는 차원임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 가능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사업을 사용(명칭과 내용의 변경 가능)
 -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 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이체요구 :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체내역 제출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 용 범 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 구 권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 인 권 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채무부담행위라 함

○ 채무부담행위의 실질적 의미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을 제외하고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 형식적 의미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와 같이 예산의 한 구성요소로서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을 말함

○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44조제5항)

-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익년도 이후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예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물론, 세출예산에 의한 일반적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보통 그 지출의 원인행위로서 채무의 부담이 선행되는 것이나, 세출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경비의 지출권한이 부여되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은 예산회계 관계법 규정에 의거, 당연히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채무 부담 행위로서 의회의 의결 불요

※ 채무부담행위 유형은 수 개년에 걸치는 건설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등과 같은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본래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주종을 이룸(예 : 종합 경기장 건설에 따르는 경비)

-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출의무 부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익년도 이후에 그 이행의 책임이 부과되는 의무부담만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4조제4항)
- 그러므로, 지출을 요하는 연도에는 다시 그 소요경비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나 채무 부담행위에 의하여 이미 채무부담이 된 금액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동 금액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는 없음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재원조달수준으로 이용하려할 때에는 의회가 예산심의 시 집행부의 통제와 견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채무부담행위의 예시 >

○○년도에 총 300억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 공사의 경우, 250억원은 당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당해연도 가용재원 판단상 부득이 계상 못하고 공사만 시행하고(즉 외상공사), 그 대금은 익년도 세입중에서 지출하는 예산회계 제도로써 그 채무액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예산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경우 50억원은 채무부담행위액이 됨

※ 채무부담 시는 채무부담 할 금액의 지출연도 가용재원 판단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5 예 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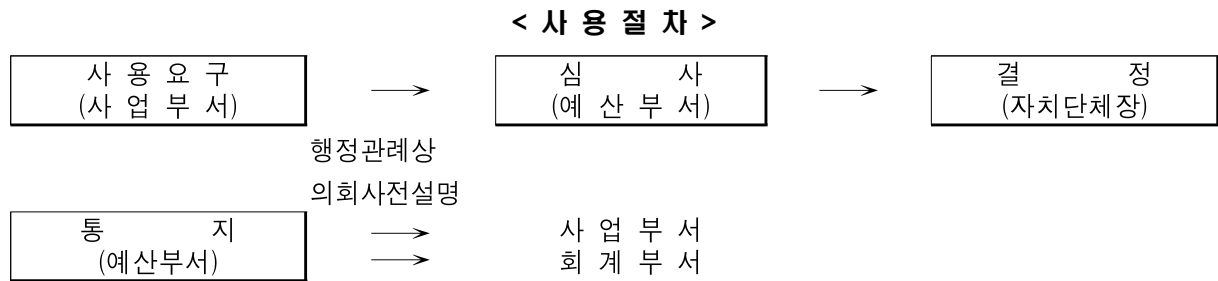
가. 의 의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나.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필요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 제43조)

- ①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 ②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음
(단, **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

라.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3.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 예산편성 참고용 자료이며, 정확한 자료는 관련 법령 등 확인 필요

봉 급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5183호, 2025. 1. 3.)
- **내 용**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5. 1. 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		149,692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45,378
시장·군수 및 자치구 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27,153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7,233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8,725

비고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45,378천원,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7,233천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08,725천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연봉은 117,233천원으로 한다.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7,233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8,725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27,153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7,233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08,725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1,384천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5. 1. 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28,989	85,983
2급(상당) 공무원	119,212	79,436
3급(상당) 공무원	110,826	74,448
4급(상당) 공무원	101,384	58,928
5급(상당) 공무원	89,797	40,675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6,112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5,193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83,594천원으로 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97,685	40,675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19,821	40,675
지도관 공무원	110,783	40,675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자치경무관 공무원	110,826	74,448
자치총경 공무원	101,384	61,134
자치경정 공무원	83,594	42,021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67,307

6급(상당)	83,677	55,756
7급(상당)	68,388	48,572
8급(상당)	59,996	42,798
9급(상당)	52,82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5,942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7,224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9,296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8,106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0,629	51,513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9,174	39,891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95,942
가급(2급 상당)		87,224
가급(3급 상당)		79,296
가급(4급 상당)		68,106
나급(5급 상당)	90,629	51,513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4] <신설 2021. 1. 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등급·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8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5. 1.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498,600	4,049,900	3,653,800	3,131,600	2,798,500	2,308,700	2,173,600	2,028,200	2,000,900
2	4,656,300	4,200,100	3,789,000	3,259,400	2,911,500	2,416,100	2,237,100	2,067,600	2,017,000
3	4,818,000	4,352,400	3,928,200	3,389,400	3,029,000	2,526,800	2,307,500	2,112,500	2,039,500
4	4,983,300	4,506,000	4,068,400	3,522,400	3,151,000	2,640,000	2,385,500	2,163,100	2,068,300
5	5,152,700	4,661,900	4,210,900	3,657,200	3,276,200	2,756,600	2,480,300	2,228,500	2,104,000
6	5,324,100	4,817,900	4,354,800	3,793,400	3,403,900	2,876,400	2,591,900	2,331,300	2,146,800
7	5,498,000	4,976,000	4,500,500	3,930,700	3,533,600	2,996,600	2,704,100	2,434,400	2,197,300
8	5,673,300	5,133,900	4,646,400	4,068,700	3,664,900	3,117,100	2,817,200	2,533,700	2,287,400
9	5,851,300	5,292,900	4,793,600	4,207,200	3,796,700	3,238,000	2,924,700	2,628,300	2,373,600
10	6,030,200	5,451,700	4,940,700	4,345,600	3,929,300	3,351,400	3,027,300	2,717,900	2,456,700
11	6,208,700	5,611,300	5,088,100	4,485,100	4,053,400	3,458,900	3,124,100	2,804,500	2,535,700
12	6,393,300	5,776,400	5,240,800	4,616,500	4,172,900	3,564,800	3,219,200	2,889,200	2,614,400
13	6,578,900	5,942,500	5,382,800	4,739,200	4,286,400	3,664,400	3,309,500	2,970,500	2,689,800
14	6,765,000	6,092,900	5,514,600	4,853,900	4,392,200	3,758,500	3,395,700	3,048,400	2,763,100
15	6,927,600	6,231,500	5,636,100	4,961,800	4,492,200	3,848,900	3,478,200	3,123,100	2,833,100
16	7,072,100	6,358,500	5,749,300	5,063,700	4,586,300	3,933,600	3,556,100	3,195,300	2,900,800
17	7,200,100	6,475,400	5,854,500	5,158,200	4,674,800	4,014,400	3,631,000	3,262,600	2,967,000
18	7,314,100	6,582,300	5,952,400	5,246,500	4,758,300	4,090,900	3,702,500	3,327,800	3,028,500
19	7,416,200	6,681,100	6,042,800	5,329,000	4,837,000	4,163,400	3,770,000	3,390,600	3,089,200
20	7,507,800	6,771,100	6,127,600	5,406,100	4,910,800	4,231,500	3,834,200	3,450,300	3,146,900
21	7,592,100	6,853,500	6,206,100	5,478,100	4,980,200	4,297,200	3,895,500	3,507,400	3,201,400
22	7,667,200	6,929,100	6,278,700	5,545,600	5,045,400	4,358,900	3,953,200	3,562,200	3,253,700
23	7,730,800	6,998,200	6,345,700	5,609,100	5,106,900	4,416,700	4,009,300	3,614,300	3,303,600
24		7,054,800	6,408,500	5,668,900	5,164,400	4,472,000	4,062,300	3,664,600	3,351,500
25		7,108,800	6,459,700	5,723,500	5,218,800	4,524,400	4,112,600	3,712,400	3,397,100
26			6,508,900	5,769,900	5,270,000	4,574,000	4,160,900	3,758,700	3,438,400
27			6,554,400	5,812,500	5,312,500	4,621,100	4,201,600	3,797,300	3,474,000
28				5,853,400	5,353,300	4,660,600	4,239,600	3,834,500	3,508,200
29					5,390,800	4,697,500	4,276,400	3,869,700	3,541,200
30					5,427,200	4,734,100	4,311,500	3,903,700	3,573,300
31						4,767,900	4,344,400	3,936,800	3,604,900
32						4,799,8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5. 1. 3.>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798,500	2,173,600	2,000,900
2		2,931,200	2,248,900	2,016,900
3		3,064,300	2,332,400	2,039,400
4		3,198,500	2,424,800	2,068,600
5		3,335,200	2,526,900	2,104,800
6		3,468,800	2,643,400	2,148,300
7		3,598,300	2,761,400	2,206,000
8		3,729,200	2,876,200	2,296,800
9		3,861,300	2,976,600	2,385,100
10		3,995,900	3,075,400	2,471,800
11		4,115,700	3,172,500	2,551,200
12		4,232,000	3,259,200	2,621,400
13		4,335,800	3,346,800	2,695,500
14		4,442,800	3,423,200	2,770,900
15		4,554,900	3,499,500	2,843,300
16		4,639,900	3,578,500	2,912,400
17		4,724,100	3,657,800	2,973,700
18		4,799,000	3,729,100	3,036,300
19		4,878,100	3,795,400	3,100,000
20		4,951,900	3,866,000	3,164,800
21		5,031,000	3,937,700	3,226,000
22		5,106,500	4,000,600	3,288,800
23		5,185,600	4,066,400	3,346,300
24		5,267,100	4,135,100	3,407,900
25		5,346,600	4,198,300	3,463,800
26		5,432,000	4,261,500	3,524,500
27		5,514,800	4,327,800	3,582,200
28		5,595,600	4,394,500	3,634,000
29		5,679,800	4,456,500	3,684,800
30		5,759,100	4,518,000	3,732,800
31		5,840,500	4,579,400	3,777,100
32		5,924,400	4,640,500	3,819,500
33		6,007,300	4,702,900	3,859,600
34		6,089,900	4,762,200	3,899,200
35		6,172,100	4,823,700	3,941,100
36		6,254,400	4,880,700	3,982,300
37		6,337,300	4,937,300	4,023,400
38		6,420,500	4,994,100	4,064,400
39		6,501,900		
40		6,554,4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개정 2025. 1. 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739,200	4,409,200	4,026,800	3,496,600	3,020,400	2,481,500	2,319,000	2,078,100	2,000,900
2	4,896,900	4,559,400	4,162,000	3,624,400	3,133,400	2,588,800	2,349,400	2,121,600	2,021,700
3	5,058,600	4,711,700	4,301,200	3,754,400	3,250,900	2,699,500	2,415,700	2,178,100	2,052,700
4	5,223,900	4,865,300	4,441,400	3,887,400	3,372,900	2,812,700	2,509,900	2,248,500	2,094,400
5	5,393,300	5,021,200	4,583,900	4,022,200	3,498,100	2,929,300	2,618,900	2,334,100	2,147,300
6	5,564,700	5,177,200	4,727,800	4,158,400	3,625,800	3,049,100	2,730,400	2,436,900	2,212,200
7	5,738,600	5,335,300	4,873,500	4,295,700	3,755,500	3,169,200	2,842,600	2,540,000	2,290,200
8	5,913,900	5,493,200	5,019,400	4,433,700	3,886,800	3,289,800	2,955,700	2,639,300	2,380,100
9	6,091,900	5,652,200	5,166,600	4,572,200	4,018,600	3,410,700	3,063,100	2,733,800	2,466,500
10	6,270,800	5,811,000	5,313,700	4,710,600	4,151,200	3,524,100	3,165,800	2,823,400	2,549,400
11	6,449,300	5,970,600	5,461,100	4,850,100	4,275,300	3,631,700	3,262,600	2,910,100	2,628,500
12	6,633,900	6,135,700	5,613,800	4,981,500	4,394,800	3,737,600	3,357,700	2,994,700	2,707,300
13	6,819,500	6,301,800	5,755,800	5,104,200	4,508,300	3,837,200	3,447,900	3,076,100	2,782,600
14	7,005,600	6,452,200	5,887,600	5,218,900	4,614,100	3,931,200	3,534,200	3,153,900	2,855,700
15	7,168,200	6,590,800	6,009,100	5,326,800	4,714,100	4,021,600	3,616,600	3,228,600	2,925,700
16	7,312,700	6,717,800	6,122,300	5,428,700	4,808,200	4,106,300	3,694,600	3,300,800	2,993,600
17	7,440,700	6,834,700	6,227,500	5,523,200	4,896,700	4,187,200	3,769,500	3,368,100	3,059,700
18	7,554,700	6,941,600	6,325,400	5,611,500	4,980,200	4,263,600	3,841,100	3,433,400	3,121,400
19	7,656,800	7,040,400	6,415,800	5,694,000	5,058,900	4,336,100	3,908,500	3,496,100	3,181,900
20	7,748,400	7,130,400	6,500,600	5,771,100	5,132,700	4,404,300	3,972,700	3,555,900	3,239,800
21	7,832,700	7,212,800	6,579,100	5,843,100	5,202,100	4,469,800	4,034,000	3,612,900	3,294,100
22	7,907,800	7,288,400	6,651,700	5,910,600	5,267,300	4,531,600	4,091,800	3,667,700	3,346,500
23	7,971,400	7,357,500	6,718,700	5,974,100	5,328,800	4,589,500	4,147,800	3,719,800	3,396,200
24		7,414,100	6,781,500	6,033,900	5,386,300	4,644,700	4,200,900	3,770,200	3,444,300
25		7,468,100	6,832,700	6,088,500	5,440,700	4,697,100	4,251,100	3,818,000	3,489,900
26			6,881,900	6,134,900	5,491,900	4,746,800	4,299,400	3,864,300	3,531,000
27			6,927,400	6,177,500	5,534,400	4,793,800	4,340,100	3,902,900	3,566,800
28				6,218,400	5,575,200	4,833,400	4,378,100	3,940,100	3,601,000
29					5,612,700	4,870,300	4,414,800	3,975,200	3,634,000
30					5,649,100	4,906,800	4,450,000	4,009,300	3,666,100
31						4,940,600	4,483,000	4,042,300	3,697,600
32						4,972,4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개정 2025. 1. 3.>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계급	연구관	연구사
1	2,798,500	2,173,600
2	2,935,700	2,261,300
3	3,072,600	2,357,500
4	3,209,700	2,462,900
5	3,346,300	2,593,500
6	3,544,200	2,721,000
7	3,741,300	2,848,800
8	3,938,100	2,976,500
9	4,134,100	3,103,300
10	4,330,000	3,230,300
11	4,504,500	3,325,900
12	4,678,800	3,421,500
13	4,850,800	3,517,600
14	5,024,200	3,613,300
15	5,195,900	3,708,700
16	5,363,200	3,784,900
17	5,529,700	3,860,400
18	5,696,700	3,936,800
19	5,861,800	4,012,100
20	6,027,400	4,088,100
21	6,165,300	4,161,200
22	6,302,200	4,234,900
23	6,439,600	4,308,300
24	6,576,300	4,381,500
25	6,713,400	4,454,400
26	6,828,000	4,505,000
27	6,944,000	4,555,400
28	7,059,000	4,606,100
29	7,173,300	4,654,900
30	7,288,200	4,705,200
31	7,377,000	4,755,400
32	7,466,000	4,799,300
33		4,843,400
34		4,886,600
35		4,930,100
36		4,970,6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개정 2025. 1. 3.>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798,500	2,028,200
2	2,934,000	2,104,500
3	3,068,900	2,188,500
4	3,204,400	2,280,800
5	3,337,800	2,382,300
6	3,515,500	2,498,300
7	3,693,200	2,614,800
8	3,871,400	2,730,400
9	4,048,500	2,846,300
10	4,224,500	2,961,700
11	4,383,900	3,061,200
12	4,542,200	3,160,200
13	4,700,600	3,258,700
14	4,858,200	3,356,800
15	5,014,700	3,453,700
16	5,152,800	3,541,200
17	5,293,000	3,628,400
18	5,431,900	3,714,800
19	5,569,500	3,801,000
20	5,706,800	3,887,600
21	5,829,200	3,967,800
22	5,952,200	4,048,500
23	6,074,400	4,128,200
24	6,196,500	4,208,000
25	6,318,800	4,287,300
26	6,425,800	4,347,200
27	6,532,000	4,407,900
28	6,638,900	4,468,600
29	6,744,700	4,529,000
30	6,852,300	4,588,400
31	6,924,200	4,640,500
32	6,996,900	4,685,900
33		4,731,400
34		4,776,500
35		4,821,800
36		4,864,0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개정 2025. 1. 3.>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739,200	4,409,200	4,026,800	3,496,600	3,020,400	2,607,300	2,352,400	2,319,000	2,078,100	2,000,900
2	4,896,900	4,559,400	4,162,000	3,624,400	3,133,400	2,719,500	2,439,600	2,349,400	2,121,600	2,031,100
3	5,058,600	4,711,700	4,301,200	3,754,400	3,250,900	2,833,800	2,550,700	2,415,700	2,178,100	2,070,500
4	5,223,900	4,865,300	4,441,400	3,887,400	3,372,900	2,951,600	2,664,900	2,509,900	2,248,500	2,119,500
5	5,393,300	5,021,200	4,583,900	4,022,200	3,498,100	3,071,200	2,782,100	2,618,900	2,334,100	2,178,700
6	5,564,700	5,177,200	4,727,800	4,158,400	3,625,800	3,193,700	2,900,300	2,730,400	2,436,900	2,248,900
7	5,738,600	5,335,300	4,873,500	4,295,700	3,755,500	3,318,900	3,019,700	2,842,600	2,540,000	2,331,000
8	5,913,900	5,493,200	5,019,400	4,433,700	3,886,800	3,445,100	3,139,100	2,955,700	2,639,300	2,420,900
9	6,091,900	5,652,200	5,166,600	4,572,200	4,018,600	3,572,600	3,259,200	3,063,100	2,733,800	2,507,300
10	6,270,800	5,811,000	5,313,700	4,710,600	4,151,200	3,691,600	3,372,700	3,165,800	2,823,400	2,590,200
11	6,449,300	5,970,600	5,461,100	4,850,100	4,275,300	3,804,400	3,479,000	3,262,600	2,910,100	2,669,500
12	6,633,900	6,135,700	5,613,800	4,981,500	4,394,800	3,914,200	3,584,000	3,357,700	2,994,700	2,747,900
13	6,819,500	6,301,800	5,755,800	5,104,200	4,508,300	4,017,800	3,683,500	3,447,900	3,076,100	2,823,400
14	7,005,600	6,452,200	5,887,600	5,218,900	4,614,100	4,116,900	3,776,900	3,534,200	3,153,900	2,896,700
15	7,168,200	6,590,800	6,009,100	5,326,800	4,714,100	4,209,700	3,867,300	3,616,600	3,228,600	2,966,700
16	7,312,700	6,717,800	6,122,300	5,428,700	4,808,200	4,299,000	3,951,800	3,694,600	3,300,800	3,034,400
17	7,440,700	6,834,700	6,227,500	5,523,200	4,896,700	4,382,000	4,032,600	3,769,500	3,368,100	3,100,600
18	7,554,700	6,941,600	6,325,400	5,611,500	4,980,200	4,461,900	4,108,900	3,841,100	3,433,400	3,162,300
19	7,656,800	7,040,400	6,415,800	5,694,000	5,058,900	4,536,600	4,181,500	3,908,500	3,496,100	3,222,900
20	7,748,400	7,130,400	6,500,600	5,771,100	5,132,700	4,607,500	4,250,500	3,972,700	3,555,900	3,280,600
21	7,832,700	7,212,800	6,579,100	5,843,100	5,202,100	4,674,300	4,316,100	4,034,000	3,612,900	3,334,900
22	7,907,800	7,288,400	6,651,700	5,910,600	5,267,300	4,738,800	4,378,000	4,091,800	3,667,700	3,387,400
23	7,971,400	7,357,500	6,718,700	5,974,100	5,328,800	4,798,000	4,436,700	4,147,800	3,719,800	3,437,300
24		7,414,100	6,781,500	6,033,900	5,386,300	4,855,300	4,493,000	4,200,900	3,770,200	3,485,200
25		7,468,100	6,832,700	6,088,500	5,440,700	4,909,300	4,546,600	4,251,100	3,818,000	3,530,600
26			6,881,900	6,134,900	5,491,900	4,960,400	4,595,700	4,299,400	3,864,300	3,572,100
27			6,927,400	6,177,500	5,534,400	5,008,000	4,637,700	4,340,100	3,902,900	3,607,600
28				6,218,400	5,575,200	5,048,900	4,678,200	4,378,100	3,940,100	3,641,800
29					5,612,700	5,086,800	4,716,400	4,414,800	3,975,200	3,674,800
30					5,649,100	5,123,900	4,752,300	4,450,000	4,009,300	3,707,100
31						5,158,100	4,786,800	4,483,000	4,042,300	3,738,400
32						5,190,8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2.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5. 2. 25.>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299,000	21	4,523,200
2	2,371,300	22	4,662,300
3	2,444,200	23	4,843,600
4	2,516,400	24	5,024,400
5	2,589,300	25	5,205,300
6	2,669,100	26	5,385,800
7	2,748,700	27	5,566,300
8	2,828,700	28	5,746,900
9	2,948,700	29	5,884,300
10	3,068,700	30	6,021,800
11	3,188,900	31	6,159,100
12	3,308,400	32	6,296,500
13	3,427,700	33	6,434,000
14	3,547,100		
15	3,687,100		
16	3,827,000		
17	3,966,300		
18	4,105,600		
19	4,245,600		
20	4,384,2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삭제 <2022. 11. 8.>

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127,800원

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293,500원

2.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1,4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2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2,000,900	-	-	-
2	2,031,100	-	-	-
3	2,070,500	-	-	-
4	2,119,500	-	-	-
5	2,178,700	-	-	-
6	2,248,900	-	-	-
7	2,331,000	-	-	-
8	2,420,900	-	-	-
9	2,507,300	-	-	-
10	2,590,200	-	-	-
11	2,669,500	-	-	-
12	2,747,900	-	-	-
13	2,823,400	3,014,600	-	-
14	2,896,700	3,090,800	-	-
15	2,966,700	3,164,000	-	-
16	3,034,400	3,234,800	-	-
17	3,100,600	3,300,700	-	-
18	3,162,300	3,364,700	-	-
19	3,222,900	3,426,200	3,830,300	-
20	3,280,600	3,484,800	3,893,200	-
21	3,334,900	3,540,600	3,953,300	-
22	3,387,400	3,594,300	4,010,000	-
23	3,437,300	3,645,400	4,064,800	-
24	3,485,200	3,694,800	4,116,900	4,403,100
25	3,530,600	3,741,600	4,166,100	4,455,700
26	3,572,100	3,787,000	4,213,400	4,503,800
27	3,607,600	3,824,800	4,253,300	4,544,900
28	3,641,800	3,861,300	4,290,500	4,584,600
29	3,674,800	3,895,700	4,326,500	4,622,100
30	3,707,100	3,929,100	4,361,000	4,657,300
31	3,738,400	3,961,500	4,393,300	4,691,100

상여수당

가. 대우공무원수당

○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

※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별표 4] 참조

○ **내 용**

대 상	월 액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의 가산금(예산의 범위안에서) *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	월봉급액의 4.1% 월 100,000원

[별표 4] <개정 2021.1.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1. 1. 5.>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수당 전액

나. 정근수당

○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참조

○ **내 용** :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지급

○ **지급기준** : 연 2회 지급

[별표 2] <개정 2025. 1. 3.>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전 공무원)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 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80,000원	
20년 미만		
10년 이상	60,000원	
15년 미만		
5년 이상	50,000원	
10년 미만		
5년 미만	30,000원	

※ 비 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계보전수당

가.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정 2025.1.3.>

※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별표 5] 참조

대 상	월 액	비 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해당자	부양가족 1인당 － 배우자 : 40,000원 －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5만원 나. 둘째 자녀 : 월 8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2만원 － 기타가족 : 20,000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 이나,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함.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비고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함)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음) 및 만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미만의 형제자매 *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영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나. 육아휴직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개정 2025.1.3.>

※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참조

대 상	지 급 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해당자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특수지근무수당

○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정 2019.1.8.>

(단위 : 원)

대 상	월 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당자	특지 월 60,000 갑지 월 50,000 을지 월 40,000 병지 월 30,000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별표 7]에 따름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제12조제2항관련)

※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별표 7]에 따름
[별표 10] <개정 2021.1.5.>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특지 : 39점 이상 ●갑지 : 31점 이상 38점 이하 ●을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병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이하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 비고

-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 점 기 준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특지 : 31점 이상 ●갑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을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병지 : 14점 이하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입·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 건 소 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 건 지 소 (진 료 소 포 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 료 시 설 없는 경우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 지 로 부 터 선 로 를 연 결 하 는 이용 하는 경우	농 어 촌 발 전 특 별 조 치 법 에 의 한 자 발 전 시 설 을 이용 하는 경우	자 력 에 의 한 자 가 발 전 시 설 을 이용 하는 경우	전 기 시 설 없는 경우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 역 상 수 도 사용	간 이 상 수 도 사용	우 물 사용	상 시 급 수 지원		
사. 당해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 류 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 류 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 류 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 류 가 있는 경우	5종류 전 부 없는 경우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자. 당해 도서의 차량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 학교 및 초 등 학 교 가 있는 경우	초 등 학 교 가 있는 경우	초 등 학 교 의 분 교 가 있는 경우	학 교 가 없는 경우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및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특지	비무장지대
갑지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을지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병지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특수근무수당

가. 위험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7] <개정 2016.1.12.>

등 별	월지급액
갑 중	60,000원
을 중	50,000원
병 중	40,000원

※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 8] 참조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개정 2025. 1. 3.>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부문	갑 중	을 중	병 중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고기 잡이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관광여객선·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 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라. 교육행정기관에서 통학 및 교육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개항 단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 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씨가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기르기)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땅파기)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落磐: 갭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짐)·갱붕괴(坑崩壞)·낙사상(落死傷: 떨어져 죽거나 다침)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삭제 <2020. 3. 10>			
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나. 특수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5. 6. 2.>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1. 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20. 3. 10.>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마.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급·7급: 월 10,000원 이하 (2)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구멍뚫기(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50,000원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1) 지급상한액: 월 10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월 3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지급액) 1) 5급 이상: 월 50,000원 2) 6급 및 7급: 월 30,000원 3) 8급 이하: 월 20,000원
	교육 및 연구 분야 3. 연구 업무 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 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 이상: 월 60,000원 2) 6급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 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 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 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 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1)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사 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라목 해당하는 사람이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 에 대 한 보 전 수 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 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 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 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 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 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 연구관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 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 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 장비 취급 분야	6. 삭제 <202 0. 3. 10.>	
	7. 합정 근무수 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 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 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

			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특수 행정 분야	8. 장려 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

		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400,000원

직위 수
당

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
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
기관과 의회 간 소속을 달
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
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
는 경력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
하는 경력직공무원

2급	300,000원
3급	200,000원
4급	100,000원
5급 이하	50,000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
회의 의장을 달리하여 임용(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
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집
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지방자
치단체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
람에 대해서는 월 6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란 가목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
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계급	월 지급 상한액
1급·2급	600,000원
3급	400,000원
4급	300,000원
5급 이하	150,000원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

	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 자유구 역청업 무수당 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 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 장이 정한다.
11. 특수 직무수 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 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 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회의 의장은 민원의 종류와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30,000원 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 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3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 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 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 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라. 삭제 <2020. 3. 10.>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	(지급액)

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2) 4급: 월 100,000원 이하 3) 5급: 월 80,000원 이하 4) 6급: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	월 50,000원 이하

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 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차.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1급 상당 이하 공무원(정원의 24퍼센트 범위 내)	1) 월 지급 상한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지급대상</th><th>월 지급 상한액</th></tr> </thead> <tbody> <tr> <td>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td><td>300,000</td></tr> <tr> <td>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td><td>200,000</td></tr> <tr> <td>5급(상당) 공무원</td><td>150,000</td></tr> <tr> <td>6급(상당) 이하 공무원</td><td>100,000</td></tr> </tbody> </table>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	300,000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200,000	5급(상당) 공무원	150,000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	300,000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200,000										
5급(상당) 공무원	150,000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										
카.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 무원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12. 우 수 대 민 공 무 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 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 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 상근무 수당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 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 는 공무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 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 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 난안전상황실,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에 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21. 3. 30.>	1) 지급액: 1일 8,000원(월 120,0 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 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초과근무수당 등

가.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별표 12] <개정 2020.3.10.>

구 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 · 과장 · 담당관 · 사업소장 · 출장소장 또는 읍 · 면 · 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 방 공 무 원	· 소방정 이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별표 13] 참조)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 처장 · 기획연구실장 · 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 ·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교육연구관

나. 초과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1.24),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별표 6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 지방전문경력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 5급(상당)이하 (일반직 5급 중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전체(5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전체(교육장, 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제외 ○ 전체(4급상당 이상, 연봉등급 1호부터 4호 까지·과장급 5호 해당자 및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제외) ○ 전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1.24),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5급	15,510	5,170	124,680
	6급	13,229	4,410	106,343
	7급	11,950	3,983	96,059
	8급	10,729	3,576	86,241
	9급	10,579	3,526	85,040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15,773	5,258	126,793
	나군	12,523	4,174	100,666
	다군	10,986	3,662	88,311
연구직	연구관	15,545	5,182	124,959
	연구사	12,751	4,250	102,500
지도직	지도관	15,282	5,094	122,843
	지도사 21호봉 이상	12,474	4,158	100,276
	지도사 20호봉 이하	11,691	3,897	93,977
교육전문직원 (교육감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15,749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 이상	14,742		
	20 ~ 29호봉	13,733		
	19호봉 이하	12,363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가.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

나. 성과상여금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

[별표 2의2] <개정 2021.1.5.>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비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별표 2의3] <개정 2020.3.10.>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삭제 <2020. 3. 10.>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장급 또는 기관직보 장학관 및 연구관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보직 장학관 및 연구관	직위 가장 및 연구관	장학사 및 연구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1급 20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2급 20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 월봉급액을 말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평가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창안상여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 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

[별표 5] <개정 2007.1.12>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 : 500만원 미만

※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별표 1] <개정 2019.12.24.>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60}{2}\right]$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

[별표 2] <개정 2018.9.18>

장애등급	가산 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 비고 : 장애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별표 3] <개정 2024. 1. 2.>

구분	적용대상	산 정 기 준
환수금	1.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66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
	3. 법 제66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비보상 등

가. 정액급식비

-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지급기준액 : 월 140,000원

나.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다. 연가보상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영 제18조의5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방법 :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
- 지 급 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6월 30일 기준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12월 31일 기준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30일 기준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라. 직급보조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개정 2025. 1. 3.>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80,000원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75,000원

비고

-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거나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

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 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 구실장·교양과정부 장, 장학관·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 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 기제공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 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 (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 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 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 의정활동비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내 용** :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
-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2023.12.14.) >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나. 월정수당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내 용**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지급기준**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을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다. 의원여비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내 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

○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여비

(국가기준 참고)

○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등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지급표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국외여비

가.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개정 2021.11.30.>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국외 여비 지급표 <개정 2021.5.25.>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7. 농산물 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나. 국내이전비 <개정 2017.1.31>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 특별자치도 제외)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다. 국외이전비 <개정 2017.1.31>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라. 준비금 : 실비 정산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마. 국외훈련비 :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4.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 예산편성 참고용 자료(2026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 발췌)이며, 정확한 자료는 관련 법령 등 확인 필요

1. 국외 항공요금 (2024. 3. 현재, 개인 / 인천(ICN))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일본	도쿄	1,486,300	1,083,800	669,900
	사카카	1,233,400	899,400	554,300
	후쿠오카	975,700	711,400	436,500
	삿포로	1,699,800	1,239,400	767,500
	나고야	1,345,700	981,100	605,600
	니가타	1,444,700	1,053,400	650,900
	고베	1,275,200	929,900	573,400
	오사카	1,054,700	769,100	472,600
	오кина와	1,619,700	1,181,000	730,900
	가고시마	1,145,700	835,400	514,200
	아오모리	1,615,200	1,177,700	728,800
	오카야마	1,133,400	826,500	508,600
	센다이	1,268,600	1,157,000	715,400
	미야자키	954,300	869,000	535,800
중국	북경	1,334,000	1,012,000	723,000
	상해	1,263,500	958,600	684,000
	심양	1,119,500	849,200	604,600
	청도	1,039,500	788,500	560,400
	청두 (성도)	1,640,400	1,555,400	1,118,200
	정저우	1,433,500	1,087,500	781,200
	창사	1,714,800	1,300,900	933,000
	대련	1,014,800	769,800	546,800
	광저우	1,911,300	1,449,800	1,041,400
	지난	1,239,500	940,300	670,800
	무단장	1,321,000	1,002,100	715,800
	심천	1,951,800	1,480,600	1,063,800
	통시 (황산)	1,390,000	1,054,500	752,400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천진	1,242,500	942,500	672,400
	위해	1,013,300	768,700	546,000
	우한	1,628,000	1,235,100	885,200
	하문	1,714,800	1,300,900	933,000
	서안	1,774,300	1,346,000	965,800
	연길	1,201,800	911,700	650,000
	우루무치	2,421,300	1,836,800	1,322,800
	쿤밍	2,158,800	1,637,700	1,178,000
	허페이이	1,618,700	1,210,000	870,000
	선전	1,951,800	1,480,600	1,063,800
	항저우	1,529,500	1,174,000	801,200
	난징	1,500,000	1,043,000	746,000
	옌청	1,315,500	1,245,900	884,900
	옌타이	810,600	768,700	546,000
	충칭	1,598,800	1,516,300	1,089,600
	구이린	1,615,600	1,532,100	1,101,200
	장춘	955,400	906,000	645,800
	하얼빈	1,056,800	1,002,100	715,800
	하이커우		2,008,500	1,377,800
	장자제 (장가계)	2,523,000	2,102,500	1,501,800
몽골	울란바타르	2,080,000	1,603,200	1,071,000
타이완	타이베이	1,297,300	1,139,800	626,600
홍콩	홍콩	2,078,600	1,525,400	944,600
마카오	마카오	2,078,500	1,525,300	944,600
필리핀	마닐라	2,078,500	1,525,300	944,600
	세부	2,320,300	1,738,000	1,092,000
	클라크 필드	2,079,000	1,526,000	944,600
태국	방콕	3,003,000	2,202,000	1,377,600
	푸켓	3,160,300	2,760,600	1,451,400
	치앙마이	3,160,300	2,681,800	1,451,400
베트남	다낭	2,857,500	2,044,100	1,275,600
	나트랑	3,143,200	2,248,400	1,403,100
	호치민	2,857,600	2,044,200	1,275,600
	하노이	2,857,500	2,322,800	1,275,600
	푸꾸옥	3,733,300	2,699,700	1,548,000
캄보디아	프놈펜	2,934,500	2,151,900	1,345,200
	씨엵립			1,320,000
미얀마	양곤	3,234,300	2,440,900	1,531,000
싱가폴	싱가포르	3,291,000	2,413,200	1,512,60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291,000	2,413,200	1,512,600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745,400	2,746,200	1,725,200
	덴파사르	3,745,300	3,120,500	1,725,200
스리랑카	콜롬보	4,780,400	3,414,500	2,050,000
몰디브	말레	5,736,500	4,097,400	2,667,100
네팔	카트만두	4,149,000	2,931,500	2,236,000
인도	뭄바이	4,269,000	3,414,500	2,293,000
	델리	4,149,000	3,245,300	2,177,000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6,961,700	4,405,500	3,472,500
	케언즈			1,900,000
팔라우	팔라우	2,735,800	2,007,500	1,243,400
피지	난디	4,620,800	3,624,400	2,484,200
뉴질랜드	오클랜드	7,218,400	5,145,000	3,569,600
미국	호놀룰루	8,661,700	5,792,800	3,066,200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10,667,400	7,447,000	3,492,200
	라스베이거스	11,033,900	7,755,700	3,656,100
	뉴욕 보스턴 워싱턴 아틀란타	12,824,400	9,022,200	4,769,000
	시카고 달라스	12,591,900	8,729,400	4,605,700
	괌	1,695,000	1,237,300	837,800
	사이판	1,567,000	1,430,000	880,000
캐나다	토론토	12,428,400	9,207,900	4,749,700
	밴쿠버	10,667,400	7,447,000	3,492,20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5,149,100	3,767,000	2,440,700
이스라엘	텔아비브	8,446,900	5,344,800	3,008,900
프랑스	파리	11,660,300	7,438,200	3,488,500
영국	런던	11,660,300	7,438,200	3,488,5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095,300	6,180,100	3,020,200
독일	프랑크푸르트	11,660,300	7,438,200	3,488,500
이탈리아	로마	10,095,300	7,022,800	3,020,200
	베네치아		7,323,000	3,020,000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오스트리아	비엔나	10,095,300	6,180,100	3,020,200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12,243,400	8,517,200	3,488,500
체코	프라하	10,095,300	6,180,100	3,020,200
터키	이스탄불	12,756,500	7,702,100	3,764,700
스위스	취리히	11,660,300	7,138,200	3,488,500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0,318,500	6,468,900	3,158,600
	블라디보스톡	2,075,000	1,737,800	962,000
	이르쿠츠크	2,946,000	2,168,800	1,378,000
	하바로프스크			900,00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4,462,300	3,715,800	2,061,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3,234,600	2,693,800	1,864,800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11,660,300	7,138,200	3,488,500

※ 상기 국외 항공요금은 노선별로 국적사 상한 금액에 해당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국토교통부 고시 2024-865호, 공간정보제도과)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605,000	620,000	635,000
	T / S	1 점		1,091,000	1,120,000	1,154,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 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104,000	106,000	131,000
	T / S	배 각 법	1 점	112,000	115,000	138,000
		방위각법	1 점	102,000	104,000	130,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26,000원	26,001원 51,000원	51,001원 170,000원	170,001원 1,710,000원	1,700,001원 8,530,000원	8,530,001원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5,000	237,000	279,000	363,000	418,000	446,000	47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5,000	297,000	350,000	455,000	525,000	560,000	59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9,000	229,000	270,000	351,000	405,000	432,000	459,000
경계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9,000	363,000	427,000	555,000	640,000	683,000	726,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72,000	451,000	531,000	690,000	796,000	850,000	903,000
	수치	1필지	300	257,000	312,000	367,000	477,000	550,000	587,000	624,000
지적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6,000	213,000	251,000	326,000	376,000	402,000	42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0,000	268,000	315,000	409,000	472,000	504,000	53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9,000	206,000	242,000	315,000	363,000	387,000	411,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9,000	363,000	427,000	555,000	640,000	683,000	726,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72,000	451,000	531,000	690,000	796,000	850,000	903,000
	수치	1필지	300	257,000	312,000	367,000	477,000	550,000	587,000	624,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 (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26,000	600,000	673,000
		임야	1 필지	5,000	534,000	711,000	797,000
	수 치		1 필지	1,500	407,000	574,000	649,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509,000	718,000	812,000
	수 치		1 필지	1,500	528,000	744,000	837,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67,000	518,000	584,000
		임야	1 필지	5,000	460,000	611,000	683,000
	수 치		1 필지	1,500	390,000	555,000	623,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분할후)	1,500	257,000	342,000	385,000
		임야	1 필지 (분할후)	5,000	326,000	404,000	451,000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지구계·지구내		1점		74,000	95,000	110,000
	●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4,000	69,000	78,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5,000	78,000	85,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62,000	82,000	88,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2,000	66,000	72,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4,000	75,000	85,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6,000	73,000	81,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98.4	919.5	994.9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3.9	75.8	77.9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76.2	385.2	397.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3.9	75.6	78.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승공급시설 사업,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85%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단,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는 측량지구 면적이 5,000㎡이하인 경우 5,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며,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48,000	398,000	450,000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5,000	108,000
		임야		105,000	108,000
	수 치		74,000	77,000	78,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508.1	520.8	535.4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72.7	74.4	76.8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 적 삼 각 점	1점	336,000	345,000	355,000
	지 적 도 근 점	1점	16,000	16,000	16,000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 지 · 수 치	1필지	30,000	45,000	50,000
	임 야		42,000	54,000	58,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 산 화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216,000	222,000	229,000
		임 야			238,000	243,000	250,000
측량결과도 전 산 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46,000	47,000	48,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개별지적(전산) 자료정비	토 지 · 수 치		1필지	필지	27,000	27,000	28,000
	임 야				35,000	36,000	37,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 야			10,000	10,000	10,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7,000	17,000	18,000
		임 야			18,000	18,000	19,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35,000	138,000	141,000
		임 야			170,000	172,000	178,000
	수 치				93,000	95,000	98,000
	●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 면 작 성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 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 서 작 성	전 필 조 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1.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2. 경계점표지(목재, 철못1호, 2호, 3호)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3.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4. 2025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5.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한다. 끝.

3. 감정평가수수료(2025.3.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34호, 부동산평가과)

가. 평가수수료

-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기준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평 가 가 액	요 율
5천만원까지	25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25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745,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1,195,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4,395,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7,895,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31,895,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56,89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36,89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26,895,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1조원 초과	306,895,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나. 실 비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여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1만원으로 하고,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원
-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
- 기타실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픈넷, 2025년 3월 기준)

(단위 : 원/ℓ)

구 분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보통휘발유	실내등유	자동차용 경유
서울	1747.0	1574.3	1625.3
부산	1669.6	1444.8	1531.4
대구	1654.5	1376.2	1517.6
인천	1666.6	1386.6	1534.4
광주	1676.7	1448.6	1548.8
대전	1661.5	1386.7	1541.4
울산	1664.6	1428.3	1528.4
경기	1681.8	1375.5	1546.2
강원	1711.8	1281.8	1579.6
충북	1700.1	1293.5	1565.2
충남	1694.1	1292.5	1561.3
전북	1680.4	1280.9	1549.7
전남	1704.9	1299.9	1569.6
경북	1686.8	1306.2	1545.6
경남	1677.7	1336.8	1545.9
제주	1751.8	1332.6	1614.5
세종	1683.2	1344.2	1560.0
전국	1688.9	1332.88	1555.03

* 2011.7.1. 보일러등유제품 규격 폐지

5.공공요금

가.급수및하수도사용료

(1) 수도요금표(1개월기준,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9078호,2025.3.27.일부개정)

수도계량기구경별기본요금		사용요금(원/㎡)				
구경 (mm)	요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없음	390	480	580
20	3,000					
25	5,200	욕탕용	0~500	400	440	500
32	9,400		500초과	440		
40	16,000					
50	25,000					
65	38,900	공공용	0~300	920	폐지 (일반용으로 통합)	
75	52,300		300초과	1,04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200	277,000		300초과	1,04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400이상	615,000					

(2)하수도사용료요율표(1개월기준,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9013호,2023.12.29,일부개정)

(가)하수도사용료요율표(1개월기준)

구분 업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하수도사용업종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수도조례」 별표1에 따른 가정용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수도조례」 별표1에 따른 욕탕용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별표1에 따른 일반용해당업종

나.시·도별도시가스요금표(2025.4.1.기준)(사)한국도시가스협회제공)

(‘12.7월부터요금단위가부피단위(원/㎥)에서열량단위(원/MJ)로변경)

(단위:원/MJ,부가세별도)

용도구분		주택 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1			일반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 (소형열병합)			열병합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연료 전지용
지역	(공급 회사)	기본 요금	취사용	주택 난방	중앙 난방	취사 전용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열전용 (1)	열전용 (2)	열전용 (3)	
도매요금 ('25.04.01.)			20.8495	20.8495	20.8495	20.8495	22.4527	19.0904	19.0904	19.0904	19.0904	19.0904	19.0904	21.9678	13.3084	20.8306	20.3179	20.3179	20.3179	18.8657	18.8657	18.8657	18.8657	18.8657	18.8657	20.8495	21.5632	21.5632	17.5398
서울 특별시	(서울 5사)	1,250.00	22.2954	22.2954	22.2954		24.1641	21.8035	21.8035	21.8035	20.8018	20.8018	20.8018	23.6792	14.5322	22.5420	21.3287	21.3287	21.3287	19.7756	19.7756	19.7756	19.7756	19.7756	19.7756	22.2954	23.2746	22.7112	18.4497
경기도	(삼천리웨)	1,200.00	22.5593	22.5258	22.5258		24.3696	22.0192	22.0192	22.0192	21.0073	21.0073	21.0073	23.8847	14.5543	22.7475	21.5732	21.5732	21.5732	20.1210	20.1210	20.1210	20.1210	20.1210	20.1210	22.2741	22.9878	22.9878	18.3948
인천 광역시	(인천외)	1,000.00	22.5084	22.5084	22.5084		24.3689	22.2635	22.2635	22.2635	21.0066	21.0066	21.0066	23.8840	14.4932	22.7468	21.2546	21.2546	21.2546	20.0505	20.0505	20.0505	20.2133	20.2133	20.2133	22.5084		22.9108	18.2410
부산시	(부산)	900.00	23.2186	23.2186	23.2186	23.2186	25.6700	22.3534	22.3534	22.3534	21.2852	21.2852	21.2852	25.1851	15.8780	24.0479	21.4260	21.4260	21.4260	20.8240	20.8240	20.8240	19.8457	19.8457	19.8457	21.8295	22.5432	22.5432	18.3489
대구시	(대성)	(개)900 (취1,490)	23.5050	23.5050	23.4688		25.9727	22.6104	22.6104	22.6104	22.6104	22.6104	22.6104	25.4878	15.5384	24.3506	21.6243	21.6243	21.6243	21.4850	21.4850	21.4850	21.4850	21.4850	21.4850	23.5050	24.1826	24.1826	18.3186
광주시	(해양)	750.00	21.9646	23.1708	23.1708		24.7092	21.9245	21.9245	21.9245	21.0330	21.0330	21.0330	24.2243	14.3367	23.0871	21.3118	21.3118	21.3118	19.5667	19.5667	19.5667	19.5667	19.5667	19.5667	23.1708	23.9058	23.9058	17.8916
대전시	(충남)	850.00	22.5002	23.9186	23.9186	23.9186	27.2161	23.1050	23.1050	23.1050	22.5884	22.5884	22.5884	26.7312	15.5516	25.5940	21.9450	21.9450	21.9450	21.5542	21.5542	21.5542	21.0969	21.0969	21.0969	23.9186	24.7829	24.7829	18.0822
울산시	(경동)	778.00	22.7607	22.7607	22.8274		24.6308	21.2892	21.2892	21.2892	20.6847	20.6847	20.6847	24.1459	14.1303	23.0087	20.9068	20.9068	20.9068	20.2850	20.2850	20.2850							18.1334
세종시	(충부)	(취)2,533 (개·중)820	22.1650	24.1343	23.7096	24.3349	26.2843	23.5549	23.5549	23.5549	22.9220	22.9220	22.9220	25.7994	15.4489	24.6622	22.4584	22.4584	22.4584								24.2216	24.2216	18.2075
강원 춘천시	(강원)	1,150.00	24.1221	24.1221	24.4397		26.2642	22.7931	22.7931	22.7931	22.8690	22.8690	22.8690	25.7793	16.5041	24.6421	22.7910	22.7910	22.7910	22.5262	22.5262	22.5262	22.5262	22.5262	22.5262				18.4035
강원 원주시	(참빛 원주)	1,150.00	23.4348	23.4348	23.6488		25.6932	21.9892	21.9892	21.9892	21.9771	21.9771	21.9771	25.2083	15.8718	24.0711	22.2315	22.2315	22.2315	21.7482	21.7482	21.7482	21.7482	21.7482	21.7482				18.2401
강원 영동지역	(참빛 영동, 속초)	1,150.00	25.0337	25.0337	24.8967		26.4693	23.2451	23.2451	23.2451	22.7764	22.7764	22.7764	26.1225	16.9296	24.9853	23.9997	23.9997	23.9997										
평창	(명성)	1,150.00	24.6592	24.6592			26.9582	23.3894	23.3894	23.3894	23.2509	23.2509	23.2509	26.4733	17.0658	25.3361				23.1146	23.1146	23.1146							
충북 청주시	(충청 ES)	1,050	23.4509	23.2208	22.8748		25.8610	21.7573	21.7573	21.7573	21.7573	21.7573	21.7573	24.1891	15.5297	23.0519	22.4461	22.4461	22.4461	21.3996	21.3996	21.3996				24.0971	24.0971	18.4779	
충북 충주시	(참빛충북)	1,050	23.8443	23.5906	23.4775		25.3016	22.3480	22.3480	22.3480	22.3480	22.3480	22.3480	23.8513	15.1919	22.7141	22.1741	22.1741	22.1741	22.0165	22.0165	22.0165				24.7140	24.7140	18.3101	
충남 천안시	(충부)	820.00	24.0160	24.0160	23.6419		26.8439	23.6073	23.6073	23.6073	22.9668	22.9668	22.9668	26.3590	15.7615	25.2218	22.7710	22.7710	22.7710	20.1913	20.1913	20.1913				24.6099	24.6099	18.2152	
충남 서산시	(서해)	(취)2,400 (개·중)820	23.8071	23.8071	23.3615	22.4669	26.5617	22.9019	22.9019	22.9019	22.9019	22.9019	22.9019	26.0768	15.2560	24.9396	21.8880	21.8880	21.8880	19.8226	19.8226	19.8226	19.7441	19.7441	19.7441	24.1031	24.1031	18.0166	
전북 전주시	(전북)	750.00	22.9779	22.7274	22.7274		24.9264	21.5641	21.5641	21.5641	21.5641	21.5641	21.5641	24.4415	14.6807	23.3043	21.6410	21.6410	21.6410	20.9377	20.9377	20.9377	20.9377	20.9377	20.9377	23.6352	23.6352	18.1898	
전북	(군산)	750.00	23.4000	23.4000	23.4000		25.7145	22.3522	22.3522	22.3522	22.3522	22.3522	22.3522	25.2296	15.1284	24.0924	21.5629	21.5629	21.5629	21.6421	21.6421	21.6421	19.4953	19.4953	19.4953	24.2032	24.2032	18.1694	

용도구분		주택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1			일반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 (소형열병합)			열병합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연료 전지용
지역	(공급 회사)	기본 요금	취사용	주택 난방	중양 난방	취사 전용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열전용 (1)	열전용 (2)	열전용 (3)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ES)	(취1,315) (개750)	24.3681	24.3681	24.3681		27.1290	23.7667	23.7667	23.7667	23.7667	23.7667	23.7667	26.6441	17.4765	25.5069	21.9429	21.9429	21.9429	23.1095	23.1095	23.1095	19.6441	19.6441	19.6441		25.3901	25.3901	18.3182
전남 목포시	(목포)	870.00	23.9447	23.9447	23.9447		26.7930	23.9839	23.9839	23.9839	23.3568	23.3568	23.3568	26.3081	15.4456	25.1709	21.6028	21.6028	21.6028										18.1411
전남 순천시	(전남)	870.00	23.9772	23.9772	23.9772		26.9126	23.2255	23.2255	23.2255	23.0757	23.0757	23.0757	26.4277	15.7294	25.2905	22.5021	22.5021	22.5021										18.1475
전남 여수시	(대화)	870.00	22.9782	22.9782	22.9782		24.9663	21.6625	21.6625	21.6625	21.6625	21.6625	21.6625	24.4814	15.0205	23.3442	20.9594	20.9594	20.9594	21.0619	21.0619	21.0619	21.0619	21.0619	21.0619		23.7594	23.7594	17.9972
전남 나주시	(해양)	870.00	24.3031	24.3031	24.3031		27.3670	24.3179	24.3179	24.3179	23.1103	23.1103	23.1103	26.8821	15.6032	25.7449	22.7455	22.7455	22.7455	21.3245	21.3245	21.3245	21.3245	21.3245	21.3245		25.4161	25.4161	18.1188
경북 구미시	(영남 ES)	750.00	23.5725	23.5725	23.5725	23.5725	25.6864	22.3087	22.3087	22.3087	22.3087	22.3087	22.3087	25.2015	15.4967	24.0643	22.0641	22.0641	22.0641	21.9811	21.9811	21.9811	21.0769	21.0769	21.0769	23.5725	23.1899		18.3351
경북 포항시	(영남 ES)	750.00	23.4590	23.4590	23.4590		25.6907	22.3459	22.3459	22.3459	22.3459	22.3459	22.3459	25.2058	15.4556	24.0686	22.1337	22.1337	22.1337	21.8569	21.8569	21.8569					24.5544	24.5544	18.2955
경북 경주시	(서라벌)	750.00	23.3373	23.3373	23.3373		25.3122	21.9296	21.9296	21.9296	21.9296	21.9296	21.9296	24.8273	14.9917	23.6901	21.7187	21.7187	21.7187										18.2176
경북 안동시	(대성청 정E)	750.00	24.2958	24.2958	24.2958		26.3845	22.3094	22.3094	22.3094	22.3094	22.3094	22.3094	25.8996	16.1206	24.7624	22.4198	22.4198	22.4198	21.5141	21.5141	21.5141							
경남 창원시	(경남)	(취지)1,700 (개)850	24.0996	24.0996	24.0996	24.0996	26.0207	22.6043	22.6043	22.6043	22.0302	22.0302	22.0302	25.5358	15.8444	24.3986	22.0108	22.0108	22.0108	21.4718	21.4718	21.4718						23.4329	18.3224
경남 진주시	(지에스 이)	(취)1,100 (지)1,700 (개)1,100	24.7097	24.7097	24.7097	24.7097	27.5389	24.6569	24.6569	24.6569	23.7368	23.7368	23.7368	27.0540	16.9214	25.9168	23.3610	23.3610	23.3610	22.5197	22.5197	22.5197	19.6143	19.6143	19.6143				18.4545
경남 양산시	(경동)	(지)1,700 (취·개)850	23.7388	23.7388	23.7388	23.7388	25.6164	22.2157	22.2157	22.2157	21.6795	21.6795	21.6795	25.1315	15.5263	23.9943	21.5957	21.5957	21.5957									23.0372	18.3409

- *)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 :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적용(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기본요금 : 주택용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기준, (취)취사전용 (개)개별난방 (중)중양난방
- *) 계절구분 : ①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5~9월(5개월) ▷기타월 : 4월, 10~11월(3개월) /
②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6~9월(4개월) ▶기타월 : 4~5월, 10~11월(4개월)
- *) 열전용구분 : (1)-공동주택, 열전용 (2)-공동주택외, 열전용 (3) : 집단에너지 (열전용 1,2,3의 구분은 용도명이 아니고 구분 편의상 붙여진 것임)
<참고> 열전용(1)의 요금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소규모 자가 열전용 보일러 시설의 요금은 주택난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 *) 취사/자가열 전용은 대전만 자가열전용이며 이외 지역은 취사전용임
- ※ 위 요금표는 도시가스회사별로 소매요금 조정시기가 달라 기준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구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요금현황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전기요금(2025.4.1.적용,한국전력공사제공,부가가치세별도,전력산업기반기금별도)

(1)일반용전력

(가)일반용전력(갑) I : 계약전력300kW미만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저압		6,160	132.4	91.9	119.0
고 압 A	선 택 I	7,170	142.6	98.6	130.3
	선 택 II	8,230	138.6	94.3	125.0
고 압 B	선 택 I	7,170	140.5	97.5	127.3
	선 택 II	8,230	135.2	92.2	122.0

※국가·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사무실은대부분일반용전력에해당

※저압:표준전압220V~380V,고압A:3,300~66,000V,고압B:154,000V이상

(나)일반용전력(갑) II : 계약전력300kW미만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간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 I	7,170	경부하	89.4	89.4	98.1
			중간부하	140.6	96.8	128.5
			최대부하	163.1	108.1	143.3
	선택 II	8,230	경부하	84.1	84.1	92.8
			중간부하	135.3	91.5	123.2
			최대부하	157.8	102.8	138.0
고 압 B	선택 I	7,170	경부하	88.8	88.8	97.8
			중간부하	137.4	94.7	125.1
			최대부하	153.8	100.1	139.3
	선택 II	8,230	경부하	83.5	83.5	92.5
			중간부하	132.1	89.4	119.8
			최대부하	148.5	94.8	134.0

※대상:시간대별구분계량기가설치된고객

(다)일반용전력(을) : 계약전력300kW이상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간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7,220	경부하	92.8	92.8	99.8
			중간부하	145.7	115.3	145.9
			최대부하	227.8	146.0	203.4
	선택Ⅱ	8,320	경부하	87.3	87.3	94.3
			중간부하	140.2	109.8	140.4
			최대부하	222.3	140.5	197.9
	선택Ⅲ	9,810	경부하	86.4	86.4	93.7
			중간부하	139.6	108.5	139.8
			최대부하	209.9	132.2	186.7
고 압 B	선택Ⅰ	6,630	경부하	95.9	95.9	102.9
			중간부하	148.2	118.2	148.2
			최대부하	229.4	148.5	204.4
	선택Ⅱ	7,380	경부하	92.1	92.1	99.1
			중간부하	144.4	114.4	144.4
			최대부하	225.6	144.7	200.6
	선택Ⅲ	8,190	경부하	90.4	90.4	97.5
			중간부하	142.7	112.8	142.7
			최대부하	224.0	143.1	198.9

※저압:표준전압220V~380V,고압A:3,300~66,000V,고압B:154,000V이상

(2)산업용전력

(가)산업용전력(갑)Ⅰ : 계약전력300kW미만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저압		5,550	116.2	94.4	114.5
고 압 A	선 택 Ⅰ	6,490	124.8	101.1	124.7
	선 택 Ⅱ	7,470	120.0	96.5	118.2
고 압 B	선 택 Ⅰ	6,000	123.6	100.0	123.2
	선 택 Ⅱ	6,900	118.9	95.4	117.1

※저압:표준전압220V~380V,고압A:3,300~66,000V,고압B:154,000V이상

(나)산업용전력(갑)Ⅱ : 계약전력300kW미만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간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490	경부하	95.7	95.7	103.1
			중간부하	121.5	100.5	120.0
			최대부하	155.0	119.7	149.4
	선택Ⅱ	7,470	경부하	90.8	90.8	98.2
			중간부하	116.6	95.6	115.1
			최대부하	150.1	114.8	144.5
고 압 B	선택Ⅰ	6,000	경부하	92.5	92.5	99.7
			중간부하	120.1	99.1	117.7
			최대부하	153.9	117.9	146.4
	선택Ⅱ	6,900	경부하	88.0	88.0	95.2
			중간부하	115.6	94.6	113.2
			최대부하	149.4	113.4	141.9

※대상:시간대별구분계량기가설치된고객

(다)산업용전력(을):계약전력300kW이상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간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압 A	선택 I	7,220	경부하	116.4	116.4	123.4
			중간부하	169.3	138.9	169.5
			최대부하	251.4	169.6	227.0
	선택 II	8,320	경부하	110.9	110.9	117.9
			중간부하	163.8	133.4	164.0
			최대부하	245.9	164.1	221.5
	선택 III	9,810	경부하	110.0	110.0	117.3
			중간부하	163.2	132.1	163.4
			최대부하	233.5	155.8	210.3
고압 B	선택 I	6,630	경부하	126.3	126.3	133.3
			중간부하	178.6	148.6	178.6
			최대부하	259.8	178.9	234.8
	선택 II	7,380	경부하	122.5	122.5	129.5
			중간부하	174.8	144.8	174.8
			최대부하	256.0	175.1	231.0
	선택 III	8,190	경부하	120.8	120.8	127.9
			중간부하	173.1	143.2	173.1
			최대부하	254.4	173.5	229.3
고압 C	선택 I	6,590	경부하	125.8	125.8	132.7
			중간부하	178.7	148.7	178.3
			최대부하	259.6	179.1	234.9
	선택 II	7,520	경부하	121.1	121.1	128.0
			중간부하	174.0	144.0	173.6
			최대부하	254.9	174.4	230.2
	선택 III	8,090	경부하	120.0	120.0	126.9
			중간부하	172.9	142.9	172.5
			최대부하	253.8	173.3	229.1

※ 저압:표준전압220V~380V,고압A:3,300~66,000V,고압B:154,000V이상,고압C:345,000V이상

(3)심야전력

(단위:원/kWh)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 I
겨울철:103.5,기타계절:82.1 (월최저요금:20kWh에해당하는요금)	겨울철:89.0,기타계절:71.9 (월최저요금:20kWh에해당하는요금)

심야전력(을) II			
7,160원×	기타시간사용전력량	심야시간	겨울철 : 89.0 기타계절 : 71.9
	월간총사용전력량	기타시간	115.1
월최저요금:kW당710원			

※겨울철 : 11월~익년2월,기타계절:3~10월

※심야시간:22:00~08:00,기타시간:08:00~22:00

(4)교육용전력

*유아·초·중·고·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인정교육시설(부속병원제외),도서관법에의한도서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의한박물관·미술관,과학관육성법에의한과학관에적용

(가)교육용전력(갑) : 계약전력1,000kW미만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저압		5,230	123.6	86.4	110.8
고 압 A	선 택 I	5,550	123.3	86.5	109.3
	선 택 II	6,370	118.8	82.1	104.8
고 압 B	선 택 I	5,550	122.6	86.1	108.5
	선 택 II	6,370	118.1	81.6	104.0

(나)교육용전력(을) : 계약전력1,000kW이상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간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압 A	선택 I	6,090	경부하	76.5	76.5	80.5
			중간부하	121.2	90.9	119.7
			최대부하	187.1	111.4	158.4
	선택 II	6,980	경부하	72.0	72.0	76.0
			중간부하	116.7	86.4	115.2
			최대부하	182.6	106.9	153.9
고압 B	선택 I	6,090	경부하	75.0	75.0	78.8
			중간부하	118.5	89.2	116.8
			최대부하	181.4	109.0	154.1
	선택 II	6,980	경부하	70.5	70.5	74.3
			중간부하	114.0	84.7	112.3
			최대부하	176.9	104.5	149.6

(5)농사용전력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갑		360	48.3	
을	저압A	1,150	65.9	
	고압A·B	1,210	여름철	68.6
			봄·가을철	68.6
			겨울철	68.6

(6)가로등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갑 (정액등)	W당47.2 (월최저요금1,220원)	
을 (종량등)	6,290	112.6

라.국내우편요금

(1)통상우편물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10호,2023.4.1.시행)

구분	중량	보통우편요금
규격우편물	5g까지	400원
	5g초과25g까지	430원
	25g초과50g까지	45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520원
	50g초과1kg까지	50g마다120원가산
	1kg초과2kg까지	200g마다120원가산
	2kg초과6kg까지	1Kg마다400원가산

(2)정기간행물우편요금의기본감액률(우정사업본부고시제2020-32호,2020.7.1.시행)

요금감액대상			요금감액률*	비고
종별	간별			
등록	신문	일간	62%	주3회이상발행하여발송하는정기간행물
	신문/잡지	주간	59%	월4회이상발행하여발송하는정기간행물 · 단,월4회미만발행하여발송하는격주간신문등은잡지(월간)감액률적용
	잡지	월간	50%	월1회이상발행하여발송하는정기간행물
미등록	일간/주간/월간		37%	잡지법제2조제1호나목·라목에의한정기간행물 신문법제9조제1항단서조항및동법시행령제7조제1호에의한신문 잡지법제15조제1항단서조항및동법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의한잡지 잡지법제16조제1항단서조항및동법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에의한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

*신문법제9조및잡지법제15조,제16조에의거등록관청에등록및신고하지아니하는정기간행물중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정기간행물은그간별에따라신문또는잡지에해당하는감액률을적용함

(3)소포우편물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11호,2023.4.1.시행)

(가)창구접수등기소포

(단위:원)

구분		80cm이하	80~100cm		100~120cm				120~160cm
		3kg이하	3~5kg	5~7kg	7~10kg	10~15kg	15~20kg	20~25kg	25~30kg
익일배달		4,000	4,500	5,000	6,000	7,000	8,000	10,000	12,000
제주	익일배달	6,500	7,000	7,500	8,500	9,500	10,500	12,500	14,500
	D+2일배달	4,000	4,500	5,000	6,000	7,000	8,000	10,000	12,000

(나)창구접수일반소포

(단위:원)

구분	80cm이하	80~100cm		100~120cm				120~160cm
	3kg이하	3~5kg	5~7kg	7~10kg	10~15kg	15~20kg	20~25kg	25~30kg
D+3일배달	2,700	3,200	3,700	4,700	5,700	6,700	8,700	10,700

(다)방문접수(부가가치세포함)

(단위:원)

구분		5kg이하 (80cm이하)	5~10kg (80~100cm)	10~20kg (100~120cm)	20~30kg (120~160cm)
익일배달		5,000	8,000	10,000	13,000
제주	익일배달	7,500	10,500	12,500	15,500
	D+2일배달	5,000	8,000	10,000	13,000

(라)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전제로취급지역에만함)

구분	착불소포	안심소포
수수료 (1개당)	500원	1,000원+손해배상한도액 초과시10만원마다500원

※ 당일특급은'23.4.1일자로서비스종료

※배달증명,환부수수료는국내통상우편에관한수수료적용

<이용시유의사항>

- 1.중량은최대30kg이하이며,크기(가로,세로,높이의합)는최대160cm이하임.다만,한변의최대길이는100cm이내에한하여취급함
- 2.일반소포는등기소포와달리기록취급이되지않으므로분실시손해배상이되지않음
- 3.중량/크기중큰값을기준으로다음단계의요금을적용함
- 4.도서지역등특정지역의배달소요기간은위내용과다를수있음
- 5.제주지역(익일배달)은항공기운송여건에따라지역마다감시간이상이함

(마)소포우편물의감액률(우정사업본부고시제2021-19호,2021.6.1.시행)

구분		3%	5%	10%	15%	비고
창구접수	요금즉납	1~2개	3개이상	10개이상	50개이상	우체국쇼핑특 산물20%
	요금후납	-	70개이상	100개이상	130개이상	
방문접수	개당500원감액(접수정보입력,사전결제,픽업장소지정시)					
분할접수(신설)	중량20kg초과소포1개를2개로분할하여 접수할경우(△2,000원)감액 *동일시간대,동일발송인,동일수취인이고,분할한소포1개의무게는10kg을초과할것					

※감액대상:창구접수(등기소포)·방문접수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제외)

※창구접수감액은접수정보(주소록등)을고객이사전에제공(모바일·인터넷우체국등)시에만적용

(단,2021.7.1.시행되는우체국쇼핑특산물은중복감액불가)

(4)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10호,2023.4.1.시행)

종별		단위	수수료액	비고		
등기		1통	2,100원	우편요금에가산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2.취급한도액 ① 통화등기 :10원이상100만원이하 ② 물품등기 :10원이상300만원이하 ③ 유가증권등기 : 10원 이상 2,000만원 이하		
		5만원초과 매5만원까지마다	500원			
선택등기		1통	2,100원	우편요금에가산		
내용증명		등본최초1매	1,300원	1.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2.등본내용증명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3.발송후내용증명 등본열람청구: 내용증명수수료의반액		
		등본1매초과마다	650원			
배달 증명	발송시	1통	1,600원	왕복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발송후	1통	1,600원	우편수령 시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특별송달		1통	2,000원	왕복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사설우체통의수집		1일수집연거리 100m까지마다	5,000원	연액		
국내특급 (익일특급)		1통	1,00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선거우편물특수취급		1통	2,00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등기우편물의반환		1통	등기수수료			
우편물반송정보제공		1통	30원			
민원우편(우편)		1통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 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부담		해당우편요금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모사전송(FAX)우편		최초1매	500원	복사비(우체국복사기이용시) :1매당50원		
		추가1매마다	200원			
전자우편등이용에관한수수료						
구분			규격	수수료	비고	
전자 우편	봉합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1매	A4	9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최대6매까지접수)
			1매초과마다	A4	30원	
		칼라	기본1매	A4	28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최대6매까지접수)
			1매초과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기본1매	A4	2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최대6매까지접수)
			1매초과마다	A4	10원	

마.국제우편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0호,2020.12.15.시행)

(1)항공통상우편요금

(가)항공서간

세계단일요금	480원

(나)항공엽서

세계단일요금	430원

(다)항공서신

중량 단계(g)	지역별요금(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까지	570	610	700	720
20 "	610	690	780	850
30 "	690	840	1,010	1,090
40 "	830	990	1,240	1,390
50 "	960	1,120	1,470	1,710
60 "	1,110	1,270	1,710	2,000
70 "	1,250	1,410	1,930	2,310
80 "	1,400	1,570	2,160	2,620
90 "	1,540	1,710	2,400	2,920
100 "	1,740	1,860	2,630	3,220
150 "	2,280	2,730	3,590	4,570
200 "	2,820	3,590	4,570	5,910
250 "	3,360	4,470	5,540	7,380
300 "	3,910	5,340	6,520	8,850
350 "	4,450	6,210	7,480	10,310
400 "	4,990	7,080	8,460	11,770
450 "	5,530	7,960	9,430	13,240
500 "	6,070	8,830	10,410	14,590
550 "	6,630	9,700	11,370	15,920
600 "	7,170	10,570	12,350	17,280
650 "	7,710	11,450	13,320	18,610
700 "	8,250	12,310	14,300	19,950
750 "	8,790	13,190	15,260	21,310
800 "	9,340	14,060	16,240	22,640
850 "	9,880	14,940	17,210	23,980
900 "	10,420	15,790	18,190	25,330
950 "	10,960	16,670	19,150	26,670
1,000 "	11,440	17,550	20,130	28,030
1,050 "	11,910	18,260	21,100	29,120

중량 단계(g)	지역별요금(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100 "	12,400	19,000	22,080	30,220
1,150 "	12,890	19,730	23,040	31,310
1,200 "	13,370	20,450	24,020	32,400
1,250 "	13,840	21,180	24,990	33,520
1,300 "	14,330	21,900	25,970	34,610
1,350 "	14,820	22,630	26,930	35,710
1,400 "	15,290	23,360	27,910	36,800
1,450 "	15,770	24,080	28,870	37,920
1,500 "	16,260	24,810	29,860	39,010
1,550 "	16,750	25,540	30,820	40,110
1,600 "	17,210	26,270	31,800	41,200
1,650 "	17,700	27,000	32,760	42,300
1,700 "	18,190	27,720	33,750	43,410
1,750 "	18,680	28,450	34,720	44,510
1,800 "	19,140	29,170	35,690	45,600
1,850 "	19,630	29,900	36,650	46,700
1,900 "	20,120	30,620	37,640	47,810
1,950 "	20,600	31,340	38,610	48,910
2,000 "	21,080	32,080	39,580	50,000

(라)항공인쇄물

중량 단계(g)	지역별요금(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0까지	460	520	640	700
40 "	640	700	820	930
60 "	820	870	1,050	1,280
80 "	990	1,050	1,280	1,630
100 "	1,180	1,230	1,520	1,990
120 "	1,350	1,400	1,760	2,350
140 "	1,520	1,580	1,990	2,690
160 "	1,700	1,760	2,230	3,050
180 "	1,880	1,930	2,470	3,400
200 "	2,050	2,110	2,690	3,760
300 "	2,640	3,000	3,530	5,290
400 "	3,220	3,870	4,710	7,060
500 "	3,820	4,760	5,880	8,830
600 "	4,400	5,640	7,060	10,590
700 "	4,990	6,530	8,240	12,360
800 "	5,590	7,410	9,410	14,120
900 "	6,170	8,290	13,540	15,890
1,000 "	7,350	9,170	14,950	17,660
1,200 "	7,940	10,940	17,780	21,190

중량 단계(g)	지역별요금(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400 "	8,520	12,700	20,600	24,720
1,600 "	9,120	14,470	23,420	28,250
1,800 "	9,700	16,240	26,250	31,790
2,000 "	10,290	18,000	29,190	35,320
2,200 "	10,880	19,770	32,010	38,850
2,400 "	11,470	21,540	34,840	42,380
2,600 "	12,060	23,300	37,670	45,920
2,800 "	12,650	25,070	40,490	49,450
3,000 "	13,240	26,830	43,320	52,980
3,200 "	13,820	28,600	46,140	56,510
3,400 "	14,420	30,370	48,970	60,040
3,600 "	15,000	32,130	51,920	63,580
3,800 "	15,590	33,900	54,750	67,110
4,000 "	16,180	35,670	57,560	70,640
4,200 "	16,770	37,430	60,390	74,170
4,400 "	17,350	39,200	63,220	77,710
4,600 "	17,950	40,960	66,050	81,240
4,800 "	18,530	42,730	68,880	84,770
5,000 "	19,120	44,500	71,820	88,300
※캐나다,아일랜드는2kg까지만접수가능				

(마)항공소형포장물

중량 단계(g)	지역별요금(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미국
100까지	4,460	5,020	5,120	5,450	8,410
200 "	4,990	5,740	6,130	6,580	9,420
300 "	5,520	6,460	7,140	7,710	10,430
400 "	6,050	7,180	8,150	8,840	11,440
500 "	7,130	8,630	10,200	11,140	13,490
600 "	7,840	9,220	11,150	12,550	14,440
700 "	8,550	9,810	12,100	13,960	15,390
800 "	9,260	10,400	13,050	15,370	16,340
900 "	9,970	10,990	14,000	16,780	17,290
1,000 "	10,680	11,540	14,940	18,230	18,230
1,100 "	11,380	13,040	16,840	19,630	20,130
1,200 "	12,080	13,940	18,140	21,030	21,430
1,300 "	12,780	14,840	19,440	22,430	22,730
1,400 "	13,480	15,740	20,740	23,830	24,030
1,500 "	14,180	16,490	21,620	24,910	24,910
1,600 "	14,880	17,590	22,920	26,910	26,210
1,700 "	15,580	19,290	23,920	28,910	28,110
1,800 "	16,280	20,990	24,920	30,910	30,010

중량 단계(g)	지역별요금(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미국
1,900 "	16,980	22,690	25,920	32,910	31,910
2,000 "	17,680	24,390	26,920	34,910	33,810

(2)항공소포우편요금

중량단계 (kg)	항공소포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0.5 까지	18,500	28,000	23,000	17,000	25,000	19,500	17,000	17,000
1.0 "	21,000	32,000	27,000	19,500	27,000	23,000	19,000	20,000
1.5 "	24,500	36,000	31,000	21,000	29,000	26,500	20,500	23,000
2.0 "	28,500	40,000	35,000	23,500	31,000	29,500	22,000	25,000
2.5 "	32,500	43,000	39,000	25,000	33,000	33,000	23,500	26,500
3.0 "	36,500	49,500	43,000	27,500	34,000	36,500	25,000	28,000
3.5 "	40,000	55,500	47,000	29,000	36,000	40,000	26,500	30,000
4.0 "	44,000	62,000	51,000	31,000	37,000	43,500	28,000	32,000
4.5 "	48,000	68,000	55,000	33,000	38,000	47,000	29,500	33,500
5.0 "	52,000	74,500	59,000	35,000	39,000	50,000	31,000	35,500
5.5 "	56,000	80,500	63,000	37,000	40,500	53,500	32,500	37,500
6.0 "	60,000	86,500	67,000	39,000	43,000	57,000	34,000	39,500
6.5 "	64,000	93,000	71,500	41,000	46,000	60,500	35,500	41,500
7.0 "	68,000	99,000	75,000	43,000	48,500	64,000	37,000	43,000
7.5 "	72,000	105,000	79,500	44,500	51,000	67,500	38,500	45,000
8.0 "	75,500	111,500	83,500	46,000	53,500	70,500	40,000	47,000
8.5 "	79,500	117,500	87,500	47,500	56,000	74,000	41,500	49,000
9.0 "	83,500	124,000	91,500	49,000	58,500	77,500	43,500	51,000
9.5 "	87,500	130,000	95,500	50,500	61,000	81,000	44,500	52,500
10.0 "	91,500	136,000	99,500	52,000	64,000	84,500	46,000	54,500
10.5 "	95,500	142,500	103,500	53,500	66,500	88,000	47,500	56,500
11.0 "	99,500	148,500	107,500	55,000	69,000	91,000	49,500	58,500
11.5 "	103,000	155,000	111,500	56,500	71,500	94,500	51,000	60,000
12.0 "	107,000	161,000	115,500	58,000	74,000	98,000	52,500	62,000
12.5 "	111,000	167,000	119,500	59,500	76,500	101,500	54,000	64,000
13.0 "	115,000	173,500	123,500	61,000	79,500	105,000	55,500	66,000
13.5 "	119,000	179,500	127,500	62,500	82,000	108,000	57,000	68,000
14.0 "	123,000	186,000	131,500	64,000	84,500	111,500	58,500	70,000
14.5 "	127,000	192,000	136,000	65,500	87,000	115,000	60,000	71,500
15.0 "	130,500	198,500	139,500	67,000	89,500	118,500	61,500	73,500
15.5 "	134,500	204,500	143,500	68,500	92,000	122,000	63,000	75,500
16.0 "	138,500	210,500	147,500	70,000	95,000	125,000	64,500	77,500
16.5 "	142,500	217,000	151,500	71,500	97,500	128,500	66,000	79,000
17.0 "	146,500	223,000	156,000	73,000	100,000	132,000	67,500	81,000

중량단계 (kg)	항공소포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17.5 "	150,500	229,500	159,500	74,500	102,500	135,500	69,000	83,000
18.0 "	154,500	235,500	163,500	76,000	105,000	139,000	70,500	85,000
18.5 "	158,500	241,500	167,500	77,500	107,500	142,000	72,000	87,000
19.0 "	162,000	248,000	172,000	79,000	110,500	145,500	73,500	89,000
19.5 "	166,000	254,000	176,000	80,500	113,000	149,000	75,000	90,500
20.0 "	170,000	260,500	180,000	82,000	115,500	152,500	76,500	92,500

중량단계 (kg)	항공소포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0.5 까지	17,000	16,000	19,500	16,000	26,500	16,500	19,500	14,000
1.0 "	18,000	19,000	23,500	19,000	31,500	18,000	23,000	16,000
1.5 "	19,500	21,500	27,000	21,500	36,000	19,500	26,500	18,000
2.0 "	21,000	24,500	30,000	24,500	41,000	21,000	30,000	20,000
2.5 "	22,500	25,000	33,500	25,500	45,500	25,500	33,500	20,500
3.0 "	23,500	27,300	37,000	27,000	50,000	26,000	37,000	22,000
3.5 "	25,000	29,600	40,500	28,500	55,000	26,500	40,500	23,500
4.0 "	26,000	31,900	44,000	30,000	59,500	27,000	44,000	25,000
4.5 "	27,500	34,200	47,500	31,500	64,000	28,500	47,000	26,500
5.0 "	28,500	36,500	51,000	33,000	69,000	30,000	50,500	28,000
5.5 "	30,000	38,800	54,500	34,500	73,500	31,500	54,000	29,500
6.0 "	31,500	41,100	58,000	36,000	78,500	33,000	57,500	31,000
6.5 "	32,500	43,400	61,500	37,500	83,000	34,500	61,000	32,500
7.0 "	34,000	45,700	65,000	39,000	87,500	36,000	64,500	34,000
7.5 "	35,000	48,000	68,500	40,500	92,500	37,500	68,000	35,500
8.0 "	36,500	50,300	72,000	42,000	97,000	39,000	71,500	37,000
8.5 "	38,000	52,600	75,500	43,500	102,000	40,500	75,000	38,500
9.0 "	39,000	54,900	79,000	45,000	106,500	42,000	78,500	40,000
9.5 "	40,500	57,200	82,500	46,500	111,000	43,500	81,500	41,500
10.0 "	42,000	59,500	86,000	48,000	116,000	44,500	85,000	43,000
10.5 "	43,000	61,800	89,500	49,500	120,500	46,000	88,500	44,500
11.0 "	44,500	64,100	92,500	51,000	125,000	48,000	92,000	46,000
11.5 "	46,000	66,400	96,000	52,500	129,500	49,500	95,500	47,500
12.0 "	47,000	68,700	99,500	54,000	134,500	50,500	99,000	49,000
12.5 "	48,500	71,000	103,000	55,500	139,000	52,500	102,500	50,500
13.0 "	50,000	73,300	106,500	57,000	144,000	53,500	106,000	52,000
13.5 "	51,000	75,600	110,000	58,500	148,500	55,000	109,500	53,500
14.0 "	52,500	77,900	113,500	60,000	153,000	56,500	113,000	55,000
14.5 "	54,000	80,200	117,000	61,500	158,000	58,000	116,500	56,500
15.0 "	55,000	82,500	120,500	63,000	162,500	59,500	119,500	58,000
15.5 "	56,500	84,800	124,000	64,500	167,000	61,000	123,000	59,500
16.0 "	57,500	87,100	127,500	66,000	172,000	62,500	126,500	61,000

중량단계 (kg)	항공소포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16.5 "	59,000	89,400	131,000	67,500	176,500	64,000	130,000	62,500
17.0 "	60,500	91,700	134,500	69,000	181,000	65,500	133,500	64,000
17.5 "	61,500	94,000	138,000	70,500	186,000	67,000	137,000	65,500
18.0 "	63,000	96,300	141,500	72,000	190,500	68,500	140,000	67,000
18.5 "	64,500	98,600	144,500	73,500	195,500	70,000	143,500	68,500
19.0 "	65,500	100,900	148,500	75,000	200,000	71,500	147,000	70,000
19.5 "	67,000	103,200	151,500	76,500	205,000	73,000	150,500	71,500
20.0 "	68,000	105,500	155,000	78,000	209,500	74,500	154,000	73,000

중량단계 (kg)	항공소포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0.5 까지	17,000	26,000	23,500	12,500	13,500	18,000	20,500	22,000
1.0 "	20,000	30,500	28,000	14,000	15,500	21,500	24,500	27,500
1.5 "	23,000	32,000	31,000	15,500	17,000	24,500	28,000	33,500
2.0 "	25,500	34,000	37,000	17,000	19,000	27,500	31,500	39,000
2.5 "	26,000	35,500	42,500	18,500	21,000	31,000	35,000	45,500
3.0 "	27,500	37,000	48,000	20,500	23,000	34,000	39,000	52,000
3.5 "	29,000	40,500	54,000	22,000	24,500	37,000	42,500	58,500
4.0 "	30,500	44,000	59,500	24,000	27,000	40,000	46,000	65,000
4.5 "	32,000	47,500	65,500	26,000	28,500	43,500	49,500	71,500
5.0 "	33,500	51,000	71,000	28,000	30,500	46,500	53,500	78,000
5.5 "	35,000	54,500	77,000	30,000	32,500	49,500	57,000	84,500
6.0 "	36,500	58,000	82,500	31,500	34,500	53,000	60,500	91,000
6.5 "	38,000	61,500	88,000	33,500	36,500	56,000	64,500	97,500
7.0 "	39,500	65,000	94,000	35,500	38,500	59,000	68,000	104,500
7.5 "	41,000	68,500	99,500	37,500	40,500	62,000	71,500	110,500
8.0 "	42,500	72,000	105,500	39,000	42,000	65,500	75,000	117,500
8.5 "	44,500	75,500	111,000	41,000	44,000	68,500	78,500	124,000
9.0 "	46,500	79,000	117,000	43,000	46,000	71,500	82,500	130,500
9.5 "	48,500	82,500	122,500	45,000	48,000	74,500	86,000	137,000
10.0 "	50,500	86,000	128,000	47,000	50,000	78,000	89,500	143,500
10.5 "	52,500	89,500	134,000	48,500	52,000	81,000	93,500	150,000
11.0 "	54,500	93,000	139,500	50,500	54,000	84,000	97,000	156,500
11.5 "	56,500	96,500	145,500	52,500	56,000	87,500	100,500	163,000
12.0 "	58,500	100,000	151,000	54,500	57,500	90,500	104,000	169,500
12.5 "	60,500	103,500	157,000	56,000	59,500	93,500	108,000	176,000
13.0 "	62,500	107,000	162,500	58,000	61,500	97,000	111,500	182,500
13.5 "	64,500	110,500	168,500	60,000	63,500	100,000	115,000	189,000
14.0 "	66,500	114,000	174,000	62,000	65,500	103,000	118,500	195,500
14.5 "	68,500	117,500	179,500	63,500	67,500	106,000	122,500	202,000

중량단계 (kg)	항공소포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5.0 "	70,500	121,000	185,500	65,500	69,000	109,500	126,000	209,000
15.5 "	72,500	124,500	191,000	67,500	71,500	112,500	129,500	215,000
16.0 "	74,500	128,000	197,000	69,500	73,000	115,500	133,000	221,500
16.5 "	76,500	131,500	202,500	71,500	75,000	119,000	136,500	228,500
17.0 "	78,500	135,000	208,500	73,000	77,000	122,000	140,500	235,000
17.5 "	80,500	138,500	214,000	75,000	79,000	125,000	144,000	241,500
18.0 "	82,500	142,000	219,500	77,000	81,000	128,000	147,500	248,000
18.5 "	84,500	145,500	225,500	79,000	83,000	131,500	151,000	254,500
19.0 "	86,500	149,000	231,000	80,500	85,000	134,500	155,000	261,000
19.5 "	88,500	152,500	237,000	82,500	86,500	137,500	158,500	267,500
20.0 "	90,500	156,000	242,500	84,500	88,500	140,500	162,000	274,000

(3)K-Packet

중량 단계(g)	K-Packet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100까지	4,670	5,410	5,540	4,680	5,510	5,450	4,160
200까지	6,080	7,030	7,240	5,920	7,180	7,100	5,250
300까지	7,500	8,660	8,920	7,140	8,850	8,770	6,340
400까지	8,920	10,280	10,610	8,370	10,530	10,420	7,420
500까지	10,360	11,900	12,310	9,620	12,220	12,090	8,540
600까지	11,460	13,380	13,620	10,600	13,520	13,390	9,410
700까지	12,560	14,870	14,930	11,580	14,820	14,670	10,280
800까지	13,660	16,350	16,240	12,570	16,120	15,950	11,140
900까지	14,770	17,840	17,560	13,540	17,420	17,250	12,010
1,000까지	15,890	19,340	18,890	14,530	18,750	18,550	12,890
1,100까지	16,910	21,310	20,780	15,400	19,710	19,560	13,660
1,200까지	17,930	23,270	22,670	16,260	20,670	20,560	14,430
1,300까지	18,950	25,240	24,560	17,130	21,630	21,570	15,200
1,400까지	19,970	27,210	26,460	17,990	22,590	22,580	15,960
1,500까지	20,990	29,160	28,340	18,900	23,550	23,590	16,770
1,600까지	22,010	30,920	29,430	19,410	24,510	24,590	17,230
1,700까지	23,030	32,690	30,520	19,940	25,470	25,600	17,690
1,800까지	24,050	34,450	31,620	20,460	26,430	26,610	18,150
1,900까지	25,070	36,210	32,710	20,970	27,390	27,610	18,610
2,000까지	26,090	37,970	33,800	21,520	28,350	28,620	19,100

중량 단계(g)	K-Packet요금(원)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100까지	4,680	4,550	4,880	4,560	4,480	5,510	4,710
200까지	5,800	5,730	6,040	5,950	5,550	7,180	5,830
300까지	6,910	6,930	7,210	7,330	6,620	8,850	6,960
400까지	8,030	8,120	8,380	8,720	7,690	10,530	8,090
500까지	9,150	9,340	9,540	10,120	8,760	12,230	9,210
600까지	10,210	10,290	10,650	11,200	9,770	13,530	10,280
700까지	11,270	11,240	11,750	12,270	10,790	14,830	11,340
800까지	12,330	12,190	12,860	13,350	11,800	16,130	12,410
900까지	13,390	13,130	13,960	14,430	12,820	17,430	13,480
1,000까지	14,450	14,090	15,070	15,520	13,830	18,760	14,540
1,100까지	15,650	14,930	15,950	17,080	14,980	20,630	15,750
1,200까지	16,850	15,770	16,830	18,630	16,130	22,510	16,960
1,300까지	17,500	16,610	17,710	20,190	17,270	24,390	17,160
1,400까지	18,210	17,450	18,590	21,750	18,420	26,270	18,000
1,500까지	18,930	18,330	19,470	23,290	19,580	28,140	18,500
1,600까지	19,640	18,840	20,350	24,680	20,460	29,810	19,500
1,700까지	20,360	19,340	21,230	26,070	21,340	31,490	20,000
1,800까지	21,070	19,840	22,110	27,450	22,220	33,170	21,000
1,900까지	21,790	20,350	22,990	28,840	23,100	34,840	22,000
2,000까지	22,500	20,880	23,870	30,260	23,980	36,560	23,000

중량단계(g)	K-Packet요금(원)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00까지	5,430	4,330	4,620	5,170	8,090	5,090
200까지	7,080	5,460	5,720	6,740	8,980	5,860
300까지	8,730	6,590	6,830	8,300	11,060	6,620
400까지	10,380	7,720	7,930	9,870	13,170	7,380
500까지	12,060	8,880	9,040	11,470	15,280	8,140
600까지	13,340	9,790	10,090	12,690	16,910	8,910
700까지	14,620	10,690	11,130	13,910	18,530	9,670
800까지	15,900	11,590	12,180	15,120	20,160	10,430
900까지	17,180	12,500	13,220	16,340	21,780	11,190
1,000까지	18,490	13,410	14,270	17,590	23,430	11,950
1,100까지	19,630	14,210	15,460	19,090	25,780	12,720
1,200까지	20,770	15,000	16,640	20,590	28,130	13,480
1,300까지	21,910	15,800	17,370	22,090	30,480	14,240
1,400까지	23,050	16,600	18,100	23,590	32,810	14,740
1,500까지	24,190	17,450	18,830	25,090	35,160	15,240
1,600까지	25,330	17,920	19,570	26,590	37,270	15,740
1,700까지	26,470	18,400	20,300	28,090	39,350	16,240
1,800까지	27,310	18,880	21,000	29,590	41,440	16,740
1,900까지	28,270	19,350	21,800	31,090	43,530	17,240
2,000까지	29,170	19,870	22,500	32,590	45,690	17,740

(4)특급우편(EMS)요금

(가)서류

중량단계 (kg)	특급우편서류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0.3 까지	20,500	28,500	26,500	20,000	23,500	28,000	19,000	15,500
0.5 "	22,500	30,500	28,500	22,000	25,500	30,000	21,000	17,500
0.75 "	25,500	33,500	30,500	23,500	27,500	32,500	22,000	18,500
1.0 "	28,500	36,500	32,500	25,000	29,000	34,500	23,000	19,500
1.25 "	31,500	39,500	34,500	26,500	31,000	36,500	24,000	21,000
1.5 "	34,500	43,000	36,500	28,500	32,500	38,500	25,000	22,000
1.75 "	38,000	46,000	39,000	30,000	34,500	40,500	26,000	23,000
2.0 "	41,000	49,000	41,000	31,000	36,000	43,000	27,000	24,0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서류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0.3 까지	20,000	14,000	21,000	15,000	30,000	12,500	26,000	15,000
0.5 "	22,000	16,000	23,000	17,000	32,000	14,500	28,000	17,000
0.75 "	23,000	17,500	25,500	18,000	35,000	16,000	30,000	17,500
1.0 "	24,000	19,000	27,500	19,000	38,000	17,500	32,000	18,500
1.25 "	26,000	20,500	30,000	20,000	41,000	19,000	34,500	19,500
1.5 "	27,000	22,000	32,000	21,500	44,000	20,500	36,500	20,500
1.75 "	29,500	23,500	34,500	22,500	47,500	22,000	39,000	21,000
2.0 "	31,500	25,000	37,000	23,500	50,500	23,500	41,000	22,0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서류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0.3 까지	15,000	30,500	24,000	15,000	18,000	18,000	28,000	30,500
0.5 "	17,000	32,500	26,000	17,000	20,000	20,000	30,000	32,500
0.75 "	18,500	34,500	29,500	17,500	21,000	21,500	32,000	35,500
1.0 "	19,500	36,500	33,000	18,500	22,000	23,000	34,000	38,500
1.25 "	20,500	38,500	36,500	19,500	23,000	24,500	36,000	41,500
1.5 "	21,500	40,500	40,000	20,500	24,000	26,000	38,000	44,500
1.75 "	22,500	42,000	43,500	21,000	25,000	27,500	40,000	47,500
2.0 "	23,500	44,000	47,000	22,000	26,000	29,000	42,000	50,500

(나)비서류

중량단계 (kg)	특급우편비서류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0.5 까지	23,000	32,000	29,000	23,500	26,000	30,500	22,500	19,000
0.75 "	26,000	35,000	31,000	25,000	28,000	33,000	23,500	20,000
1.0 "	29,000	38,000	33,000	26,500	29,500	35,000	24,500	21,000
1.25 "	32,000	41,000	35,000	28,000	31,500	37,000	25,500	22,500
1.5 "	35,000	44,500	37,000	30,000	33,000	39,000	26,500	23,500
1.75 "	38,500	47,500	39,500	31,500	35,000	41,000	27,500	24,500
2.0 "	41,500	50,500	41,500	32,500	36,500	43,500	28,500	25,5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비서류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2.5 "	46,500	56,500	45,500	34,000	40,000	47,000	30,000	27,500
3.0 "	51,000	62,000	49,000	35,500	43,000	50,500	31,500	30,000
3.5 "	56,000	68,000	53,000	37,000	46,500	54,000	33,000	32,000
4.0 "	60,500	74,000	57,000	39,000	50,000	58,000	34,500	34,000
4.5 "	65,500	79,500	60,500	40,500	53,000	61,500	35,500	36,000
5.0 "	70,000	87,500	64,500	42,000	56,500	65,000	37,000	38,000
5.5 "	75,000	95,500	68,500	44,000	59,500	68,500	38,500	40,000
6.0 "	80,000	103,500	72,000	45,500	63,000	72,500	40,000	42,000
6.5 "	84,500	111,500	76,500	47,000	66,000	76,000	41,500	44,000
7.0 "	89,500	119,500	80,500	48,500	70,500	80,000	43,000	46,000
7.5 "	94,000	128,000	84,500	50,500	75,000	84,500	44,500	48,000
8.0 "	99,000	136,000	89,000	52,000	79,500	88,500	46,000	50,000
8.5 "	104,000	144,000	93,000	53,500	84,000	93,000	48,000	52,000
9.0 "	108,500	152,000	97,500	55,500	88,500	97,000	50,000	54,000
9.5 "	113,500	160,000	101,500	57,000	93,000	101,000	52,000	56,000
10.0 "	118,000	168,000	105,500	58,500	97,500	105,500	54,000	58,500
10.5 "	123,000	176,000	110,000	60,000	101,500	109,500	56,000	61,500
11.0 "	127,500	184,000	114,000	62,000	106,000	114,000	58,000	64,000
11.5 "	132,500	192,000	118,500	63,500	110,500	118,000	60,000	67,000
12.0 "	137,500	200,000	122,500	65,000	115,000	122,500	62,000	69,500
12.5 "	142,000	208,000	126,500	67,000	119,500	126,500	64,000	72,000
13.0 "	147,000	216,000	131,000	68,500	124,000	130,500	66,000	75,000
13.5 "	151,500	224,000	135,000	70,000	128,500	135,000	68,000	77,500
14.0 "	156,500	232,000	139,500	72,000	133,000	139,000	70,000	80,500
14.5 "	161,500	240,000	143,500	73,500	137,500	143,500	72,000	83,000
15.0 "	166,000	248,000	148,000	75,000	141,500	147,500	74,000	86,000
15.5 "	171,000	256,000	152,000	76,500	146,000	152,000	76,000	88,500
16.0 "	175,500	264,000	156,000	78,500	150,500	156,000	77,500	91,500
16.5 "	180,500	272,000	160,500	80,500	155,000	160,500	79,500	94,000
17.0 "	185,000	280,000	164,500	82,500	159,500	164,500	81,500	97,000
17.5 "	190,000	288,000	169,000	84,500	164,000	168,500	83,500	99,500
18.0 "	195,000	296,000	173,000	86,500	168,500	173,000	85,500	102,000
18.5 "	199,500	304,500	177,000	88,500	173,000	177,000	87,500	105,000
19.0 "	204,500	312,500	181,500	90,000	177,500	181,500	89,500	107,500
19.5 "	209,000	320,500	185,500	92,000	181,500	185,500	91,500	110,500
20.0 "	214,000	328,500	190,000	94,000	186,000	190,000	93,500	113,000
20.5 "	219,000	336,500	194,000	96,000	190,500	194,000	95,500	116,000
21.0 "	223,500	344,500	198,000	98,000	195,000	198,000	97,500	118,500
21.5 "	228,500	352,500	202,500	100,000	199,500	202,500	99,500	121,500
22.0 "	233,000	360,500	206,500	102,000	204,000	206,500	101,500	124,000
22.5 "	238,000	368,500	211,000	103,500	208,500	211,000	103,500	126,500
23.0 "	243,000	376,500	215,000	105,500	213,000	215,000	105,500	129,500
23.5 "	247,500	384,500	219,000	107,500	217,500	219,500	107,500	132,000
24.0 "	252,500	392,500	223,500	109,500	221,500	223,500	109,500	135,000
24.5 "	257,000	400,500	227,500	111,500	226,000	228,000	111,500	137,500
25.0 "	262,000	408,500	232,000	113,500	230,500	232,000	113,500	140,500
25.5 "	266,500	416,500	236,000	115,500	235,000	236,000	115,500	143,000
26.0 "	271,500	424,500	240,000	117,000	239,500	240,500	117,000	146,000
26.5 "	276,500	432,500	244,500	119,000	244,000	244,500	119,000	148,500
27.0 "	281,000	440,500	248,500	121,000	248,500	249,000	121,000	151,5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비서류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27.5 "	286,000	448,500	253,000	123,000	253,000	253,000	123,000	154,000
28.0 "	290,500	456,500	257,000	125,000	257,500	257,500	125,000	156,500
28.5 "	295,500	464,500	261,500	127,000	261,500	261,500	127,000	159,500
29.0 "	300,500	472,500	265,500	129,000	266,000	265,500	129,000	162,000
29.5 "	305,000	481,000	269,500	130,500	270,500	270,000	131,000	165,000
30.0 "	310,000	489,000	274,000	132,500	275,000	274,000	133,000	167,5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비서류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0.5 까지	23,500	17,500	23,500	18,500	32,500	15,000	28,500	17,500
0.75 "	24,500	19,000	26,000	19,500	35,500	16,500	30,500	18,000
1.0 "	25,500	20,500	28,000	20,500	38,500	18,000	32,500	19,000
1.25 "	27,500	22,000	30,500	21,500	41,500	19,500	35,000	20,000
1.5 "	28,500	23,500	32,500	23,000	44,500	21,000	37,000	21,000
1.75 "	31,000	25,000	35,000	24,000	48,000	22,500	39,500	21,500
2.0 "	33,000	26,500	37,500	25,000	51,000	24,000	41,500	22,500
2.5 "	34,500	29,000	41,500	26,500	56,000	26,000	45,500	24,000
3.0 "	36,500	31,500	45,500	28,500	60,500	28,500	49,500	25,500
3.5 "	38,000	34,000	50,000	30,000	65,500	30,500	53,500	27,000
4.0 "	40,000	36,500	54,000	32,000	70,500	33,000	57,500	28,500
4.5 "	41,500	39,000	58,500	33,500	75,500	35,500	62,000	29,500
5.0 "	43,000	41,500	62,500	35,500	80,500	37,500	66,500	31,000
5.5 "	45,000	44,000	67,000	37,000	85,000	40,000	71,000	32,500
6.0 "	46,500	46,500	71,000	39,000	90,000	42,500	75,500	34,000
6.5 "	48,500	49,000	75,500	40,500	95,000	44,500	80,000	36,000
7.0 "	50,000	51,500	80,000	42,500	100,000	47,000	84,500	37,500
7.5 "	51,500	54,500	84,000	44,500	104,500	49,500	88,500	39,500
8.0 "	53,500	57,000	88,500	46,500	109,500	51,500	93,000	41,500
8.5 "	55,000	60,000	93,000	48,500	114,500	54,000	97,500	43,500
9.0 "	57,000	63,000	97,500	50,500	119,500	56,500	102,000	45,500
9.5 "	58,500	66,000	101,500	53,000	124,500	58,500	106,500	47,000
10.0 "	60,000	68,500	106,000	55,000	128,500	61,000	111,000	49,000
10.5 "	62,000	71,500	110,500	57,000	132,500	63,500	115,000	51,000
11.0 "	63,500	74,500	115,000	59,000	137,000	65,500	119,500	53,000
11.5 "	65,500	77,500	119,000	61,500	141,000	68,000	124,000	54,500
12.0 "	67,000	80,000	123,500	63,500	145,000	70,500	128,500	56,500
12.5 "	69,000	83,000	128,000	65,500	149,500	72,500	133,000	58,500
13.0 "	70,500	86,000	132,000	67,500	153,500	75,000	137,500	60,500
13.5 "	71,500	89,000	136,500	69,500	157,500	77,500	142,000	62,500
14.0 "	73,500	92,000	141,000	72,000	161,500	79,500	146,000	64,000
14.5 "	75,000	94,500	145,500	74,000	166,000	82,000	150,500	66,000
15.0 "	76,500	97,500	149,500	76,000	170,000	84,500	155,000	68,000
15.5 "	78,000	100,500	154,000	78,000	174,000	86,500	159,500	70,000
16.0 "	79,500	103,500	158,500	80,500	178,500	89,000	164,000	72,000
16.5 "	81,000	106,000	163,000	82,500	182,500	91,000	168,500	73,500
17.0 "	82,500	109,000	167,000	84,500	186,500	93,500	172,500	75,500
17.5 "	84,000	112,000	171,500	86,500	191,000	96,000	177,000	77,500
18.0 "	85,500	115,000	176,000	88,500	195,000	98,000	181,500	79,500
18.5 "	87,000	117,500	180,500	91,000	199,000	100,500	186,000	81,500
19.0 "	88,500	120,500	184,500	93,000	203,500	103,000	190,500	83,0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비서류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19.5 "	90,000	123,500	189,000	95,000	207,500	105,000	195,000	85,000
20.0 "	91,500	126,500	193,500	97,000	211,500	107,500	199,500	87,000
20.5 "	93,000	129,500	197,500	99,000	215,500	110,000	203,500	89,000
21.0 "	94,500	132,000	202,000	101,500	220,000	112,000	208,000	91,000
21.5 "	96,000	135,000	206,500	103,500	224,000	114,500	212,500	92,500
22.0 "	97,500	138,000	211,000	105,500	228,000	117,000	217,000	94,500
22.5 "	99,000	141,000	215,000	107,500	232,500	119,000	221,500	96,500
23.0 "	100,500	143,500	219,500	110,000	236,500	121,500	226,000	98,500
23.5 "	102,000	146,500	224,000	112,000	240,500	124,000	230,000	100,000
24.0 "	103,500	149,500	228,500	114,000	245,000	126,000	234,500	102,000
24.5 "	105,000	152,500	232,500	116,000	249,000	128,500	239,000	104,000
25.0 "	106,500	155,000	237,000	118,000	253,000	131,000	243,500	106,000
25.5 "	108,000	158,000	241,500	120,500	257,500	133,000	248,000	108,000
26.0 "	109,500	161,000	246,000	122,500	261,500	135,500	252,500	109,500
26.5 "	111,000	164,000	250,000	124,500	265,500	138,000	257,000	111,500
27.0 "	112,500	167,000	254,500	126,500	269,500	140,000	261,000	113,500
27.5 "	114,000	169,500	259,000	129,000	274,000	142,500	265,500	115,500
28.0 "	115,500	172,500	263,000	131,000	278,000	145,000	270,000	117,500
28.5 "	117,000	175,500	267,500	133,000	282,000	147,000	274,500	119,000
29.0 "	118,500	178,500	272,000	135,000	286,500	149,500	279,000	121,000
29.5 "	120,000	181,000	276,500	137,000	290,500	151,500	283,500	123,000
30.0 "	121,500	184,000	280,500	139,500	294,500	154,000	287,500	125,0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비서류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0.5 까지	18,500	33,000	26,500	17,500	20,500	20,500	30,500	33,000
0.75 "	20,000	35,000	30,000	18,000	21,500	22,000	32,500	36,000
1.0 "	21,000	37,000	33,500	19,000	22,500	23,500	34,500	39,000
1.25 "	22,000	39,000	37,000	20,000	23,500	25,000	36,500	42,000
1.5 "	23,000	41,000	40,500	21,000	24,500	26,500	38,500	45,000
1.75 "	24,000	42,500	44,000	21,500	25,500	28,000	40,500	48,000
2.0 "	25,000	44,500	47,500	22,500	26,500	29,500	42,500	51,000
2.5 "	27,000	48,000	54,500	24,000	28,500	32,000	46,500	56,500
3.0 "	29,000	51,500	61,000	25,500	30,500	35,000	50,000	62,000
3.5 "	31,000	55,000	68,000	27,000	32,000	37,500	54,000	69,500
4.0 "	33,000	58,500	74,500	28,500	34,000	40,500	58,000	77,000
4.5 "	34,500	62,000	81,500	29,500	36,000	43,000	61,500	85,000
5.0 "	36,500	65,500	88,000	31,000	38,000	46,000	65,500	92,500
5.5 "	38,500	68,500	95,000	32,500	39,500	48,500	69,000	100,000
6.0 "	40,500	72,000	102,000	34,000	41,500	51,000	73,000	107,500
6.5 "	42,500	76,500	108,500	36,000	43,500	54,000	78,000	115,000
7.0 "	44,000	80,500	115,500	37,500	45,500	56,500	83,000	123,000
7.5 "	46,000	84,500	122,000	39,500	48,000	59,500	88,000	130,500
8.0 "	48,500	89,000	129,000	41,500	50,500	61,000	93,000	138,000
8.5 "	51,000	93,000	135,500	43,500	52,500	66,000	97,500	145,500
9.0 "	53,000	97,500	142,500	45,500	55,000	70,500	102,500	153,000
9.5 "	55,500	101,500	149,500	47,000	57,500	75,500	107,500	160,500
10.0 "	58,000	105,500	156,000	49,000	60,000	80,500	112,500	168,500
10.5 "	60,500	110,000	163,000	51,000	62,000	85,000	117,500	176,000
11.0 "	63,000	114,000	169,500	53,000	64,500	90,000	122,500	183,5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비서류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1.5 "	65,000	118,000	176,500	54,500	67,000	95,000	127,500	191,000
12.0 "	67,500	122,500	183,500	56,500	69,000	99,500	132,500	198,500
12.5 "	70,000	126,500	190,000	58,500	71,500	104,500	137,500	206,000
13.0 "	72,500	131,000	197,000	60,500	74,000	109,000	142,500	214,000
13.5 "	74,500	135,000	203,500	62,500	76,000	114,000	147,500	221,500
14.0 "	77,000	139,000	210,500	64,000	78,500	119,000	152,500	229,000
14.5 "	79,500	143,500	217,000	66,000	81,000	123,500	157,500	236,500
15.0 "	82,000	147,500	224,000	68,000	83,000	128,500	162,000	244,000
15.5 "	84,000	151,500	231,000	70,000	85,500	133,500	167,000	252,000
16.0 "	86,500	156,000	237,500	72,000	88,000	138,000	172,000	259,500
16.5 "	89,000	160,000	244,500	73,500	90,000	143,000	177,000	267,000
17.0 "	91,500	164,500	251,000	75,500	92,500	148,000	182,000	274,500
17.5 "	94,000	168,500	258,000	77,500	95,000	152,500	187,000	282,000
18.0 "	96,000	172,500	264,500	79,500	97,000	157,500	192,000	289,500
18.5 "	98,500	177,000	271,500	81,500	99,500	162,000	197,000	297,500
19.0 "	101,000	181,000	278,500	83,000	102,000	167,000	202,000	305,000
19.5 "	103,500	185,000	285,000	85,000	104,500	172,000	207,000	312,500
20.0 "	105,500	189,500	292,000	87,000	106,500	176,500	212,000	320,000
20.5 "	108,000	193,500	298,500	89,000	109,000	181,500	217,000	327,500
21.0 "	110,500	198,000	305,500	91,000	111,500	186,500	221,500	335,500
21.5 "	113,000	202,000	312,000	92,500	113,500	191,000	226,500	343,000
22.0 "	115,500	206,000	319,000	94,500	116,000	196,000	231,500	350,500
22.5 "	117,500	210,500	326,000	96,500	118,500	200,500	236,500	358,000
23.0 "	120,000	214,500	332,500	98,500	120,500	205,500	241,500	365,500
23.5 "	122,500	218,500	339,500	100,000	123,000	210,500	246,500	373,000
24.0 "	125,000	223,000	346,000	102,000	125,500	215,000	251,500	381,000
24.5 "	127,000	227,000	353,000	104,000	127,500	220,000	256,500	388,500
25.0 "	129,500	231,500	360,000	106,000	130,000	225,000	261,500	396,000
25.5 "	132,000	235,500	366,500	108,000	132,500	229,500	266,500	403,500
26.0 "	134,500	239,500	373,500	109,500	134,500	234,500	271,500	411,000
26.5 "	136,500	244,000	380,000	111,500	137,000	239,500	276,500	418,500
27.0 "	139,000	248,000	387,000	113,500	139,500	244,000	281,500	426,500
27.5 "	141,500	252,000	393,500	115,500	141,500	249,000	286,000	434,000
28.0 "	144,000	256,500	400,500	117,500	144,000	253,500	291,000	441,500
28.5 "	146,500	260,500	407,500	119,000	146,500	258,500	296,000	449,000
29.0 "	148,500	265,000	414,000	121,000	149,000	263,500	301,000	456,500
29.5 "	151,000	269,000	421,000	123,000	151,000	268,000	306,000	464,500
30.0 "	153,500	273,000	427,500	125,000	153,500	273,000	311,000	472,000

※항공통상국제우편요금적용지역별국가

구분	국명
1지역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2지역	동남아시아:방글라데시,브루나이,미얀마,캄보디아,동티모르,인도네시아, 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몽골등
3지역	북미:미국본토(하와이,알래스카포함),캐나다등 서구라파:벨기에,덴마크,핀란드,프랑스본토,독일,영국본토,그리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본토, 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위스,스웨덴,오스트리아등 동구라파:러시아,루마니아,폴란드,헝가리,체코,구소련연방등 중동:바레인,이란,이라크,이스라엘,요르단,터키,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시리아등 대양주:호주,뉴질랜드본토,파푸아뉴기니,괌,사이판등 아시아:아프가니스탄,인도,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등
4지역	아프리카:이집트,케냐,리비아등 중남미:멕시코,파나마,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페루등 서인도제도:쿠바,아이티,도미니카등 남태평양:피지,키리바티,솔로몬제도,사모아등

※항공소포,특급우편(EMS)적용지역별국가

구분	국명
국가별 (20국)	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 뉴질랜드,필리핀,러시아,싱가포르,스페인,대만,태국,영국미국,베트남
1지역	마카오,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몽골
2지역	방글라데시,브루나이,인도,네팔,스리랑카,몰디브,부탄
3지역	서구라파:벨기에,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위스,스웨덴,오스트리아등 동구라파:루마니아,폴란드,헝가리,체코,구소련연방등 중동:바레인,이란,이라크,이스라엘,요르단,터키,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시리아등 대양주:파푸아뉴기니,괌,사이판등 아시아:아프가니스탄등
4지역	아프리카:이집트,케냐,리비아등 중남미:멕시코,파나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페루등 서인도제도:쿠바,아이티,도미니카공화국등 남태평양:피지,키리바티,솔로몬제도,사모아등

바.전신전화요금(2025.1.31.기준,K통신사제공)

(1) 시내·시외전화요금(상세내용은시내전화이용약관('25.1.)참고)

(가)설치비:전화1대당27,500원(부가세포함)

(나)기본료(월)

(부가세포함)

급지별	일반형
6급지이하	3,300원
7급지	4,400원
8급지이상	5,720원

※ 6급지이하: 시설수5만회선이하,7급지: 시설수50,001~10만회선

8급지이상: 100,001회선이상지역

※설비비부담형전화는'01.4.15일부터폐지

※가입비납입형전화는'20.7.1일부터폐지

(다)통화료

(부가세포함)

구분	평상	할인	특별할인
○ 시내전화에걸때	42.9원/180초	42.9원/258초	-
	평일08:00~21:00 공휴일-	평일00:00~08:00 21:00~24:00 공휴일00:00~24:00	
○ 시내전화에서070인터넷전화에걸때	53.9원/180초		
○ 시내전화에서시내번호를사용하는인터넷전화에걸때	시내전화에걸때요금과동일		
○ 시외전화에걸때	1대역 42.9원/180초 2대역 15.95원/10초 평일08:00~24:00 공휴일-	1대역 42.9원/200초 2대역 14.41원/10초 평일06:00~08:00 공휴일06:00~24:00	1대역 42.9원/258초 2대역 11.22원/10초 평일00:00~06:00 공휴일00:00~06:00
○ 이동전화에걸때	15.95원/10초 평일08:00~21:00 공휴일-	15.037원/10초 평일06:00~08:00 21:00~24:00 공휴일06:00~24:00	14.157원/10초 평일00:00~06:00 공휴일00:00~06:00

※1대역:인접통화권및30km이내,2대역:31km이상

(2)국제전화요금(001기준,상세내용은국제전화이용약관('25.2.)참고)

(단위 : 원/초,부가세포함)

대역	국가및지역명	표준요금
1	미국,캐나다,하와이,알래스카,일본,싱가포르,홍콩,대만	15.84
2	중국,필리핀,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인도,말레이시아,몽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미얀마,네팔,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파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	24.31
3	호주,피지,파푸아뉴기니,동티모르,미국령사모아,팔라우,솔로몬제도,미크로네시아,사모아,마셜제도,키리바시,뉴칼레도니아,나우루,통가,바누아투,쿡제도,투발루,노퍽섬,생피에르미클롱,안타티카,니우에,월리스푸투나,독일,러시아,팜,사이판,라오스,마카오,영국,프랑스,아랍에미리트,이탈리아,뉴질랜드,네덜란드,이란,스페인,노르웨이,스위스,멕시코,터키,그리스,브라질,덴마크,오스트리아,스웨덴,남아프리카공화국,쿠바,쿠웨이트,벨기에,이집트,카타르,나이지리아,이스라엘,폴란드,키르기스스탄,가나,체코,아르헨티나,알제리,오만,아일랜드,에티오피아,페루,핀란드,요르단,칠레,모로코,케냐,과테말라,앙골라,헝가리,콜롬비아,슬로바키아,루마니아,이라크,세네갈,에콰도르,바레인,우크라이나,튀니지,르완다,브루나이,코트디부아르,리비아,푸에르토리코,탄자니아,포르투갈,키프로스,파라과이,우간다,기니,시리아,우루과이,모잠비크,파나마,베네수엘라,볼리비아,수단,적도기니,불가리아,짐바브웨,투르크메니스탄,룩셈부르크,도미니카공화국,콩고,포클랜드제도,카메룬,레바논,아르메니아,시에라리온,말리,콩고민주공화국,니카라과,아제르바이잔,마케도니아,벨라루스,슬로베니아,코스타리카,알바니아,크로아티아,아프가니스탄,자메이카,세르비아,몰디브,보츠와나,모리셔스,기니비사우,가봉,마다가스카르,온두라스,부룬디,아이티,토고,잠비아,라이베리아,베냉,엘살바도르,말라위,모나코,남수단,에스토니아,타지키스탄,아이슬란드,라트비아,부르키나파소,조지아,스와질랜드,예멘,모리타니,몰타,지부티,부탄,케이맨제도,리투아니아,세이셸,차드,에리트리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감비아,트리니다드토바고,몰도바,프랑스령폴리네시아,지브롤터,수리남,나미비아,벨리즈,그레나다,바하마,레위니옹,터크스케이커스제도,미국령버진제도,프랑스령기아나,아루바,과들루프,가이아나,세인트키츠네비스,레소토,버뮤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팔레스타인,리히텐슈타인,네덜란드령앤티리스,니제르,앵귈라,안도라,코모로,카보베르데,어센션,바베이도스,앤티가바부다,소말리아,도미니카,세인트헬레나,세인트루시아,마르티니크,산마리노,영국령버진제도,그린란드,페로제도,디에고 가르시아,마데이라제도,마요트,아조레스제도,몬트세랫,상투메프린시페,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코코스제도,크리스마스섬,코소보,신트마르틴,몬테네그로,토켈라우,카나리제도,세우타,서사하라,발레아레스제도,바티칸시티	21.56

(3)전용회선서비스요금(상세내용은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22.11)참고)

※ 단, 약정조건에따른요금절감여부를확인할것

(가) 시내/시외요금

(단위:원,부가세포함)

속도	장기전용(월액)						
	시내	시외					
		10Km이내	30Km이내	50Km이내	100Km이내	200Km이내	201km초과
50bps~9.6Kbps (2선식)	60,720	154,570	270,330	377,520	596,240	676,230	757,940
50bps~9.6Kbps (4선식)	91,340	154,570	270,330	377,520	596,240	676,230	757,940
56/64Kbps	175,340	297,330	519,860	725,890	1,146,640	1,300,530	1,457,610
128Kbps	193,930	315,260	556,270	776,930	1,238,490	1,517,230	1,700,490
256Kbps	329,340	540,540	953,700	1,331,880	2,123,220	2,601,060	2,915,220
512Kbps	457,930	765,710	1,351,020	1,886,830	3,007,840	3,684,780	4,129,840
1.024Mbps	628,760	1,016,180	1,793,000	2,503,930	3,991,680	4,889,940	5,480,640
1.544Mbps	785,950	1,270,280	2,241,250	3,129,940	4,989,600	6,112,480	6,850,800
2.048Mbps	997,920	1,693,670	2,988,260	4,173,180	6,652,800	8,150,010	9,134,400
4Mbps	1,319,450	2,151,380	3,795,000	5,300,680	8,449,100	10,347,040	11,597,520
6Mbps	1,706,100	2,781,900	4,907,100	6,854,100	10,925,200	13,379,300	14,996,300
8Mbps	2,198,350	3,584,790	6,322,470	8,829,700	14,074,610	17,235,900	19,319,520
10Mbps	2,466,200	4,021,600	7,092,800	9,905,500	15,789,400	19,335,800	21,673,300
20Mbps	3,494,700	5,362,500	9,458,900	13,207,700	21,051,800	25,781,800	28,897,000
30Mbps	4,317,500	6,703,400	11,823,900	16,509,900	26,316,400	32,227,800	36,121,800
45Mbps	5,844,300	9,727,300	17,155,600	23,955,800	38,183,200	46,762,100	52,411,700
100Mbps	8,328,100	12,067,000	21,281,700	29,719,800	47,368,200	58,011,800	65,019,900
155Mbps	11,690,800	17,108,300	30,169,700	42,128,900	67,149,500	82,234,900	92,170,100
1Gbps	14,191,100	21,596,300	38,085,300	53,182,800	84,767,100	103,811,400	116,352,500
2.5Gbps	20,166,300	30,488,700	53,768,000	75,080,500	119,672,300	146,557,400	164,263,000
10Gbps	28,794,700	41,356,920	72,933,680	101,843,610	162,331,340	198,799,750	222,816,990
100Gbps	115,178,800	165,427,680	291,734,740	407,374,440	568,159,700	695,799,140	779,859,460

(나)장치비

(부가세포함)

대상품목및규격	요금			비고
	신규	설변(이전)		
		구내	구외	
아날로그라디오 방송회선,저속도회 선,중속도회선	61,600원/ 회선	11,000원/1단측	30,800원/1단측	4선식기준, 라디오방송 회선은양방향 기준
고속도회선 (128K~2.048M)	220,000원/ 회선	55,000원/1단측	110,000원/1단측	
초고속회선 (~40Mbps까지)	1,100,000원/ 회선	165,000원/1단측	550,000원/1단측	
초고속회선 (45Mbps이상)	2,134,000원/ 회선	319,000원/1단측	1,067,000원/1단측	

※서비스신규청약,설변,규격변경청구등에대한설치또는이전에소요되는비용

(다)장비임대료

(부가세포함)

구분	장기전용(월액)	비고
56/64kbps이하	4,400원/1대당	백업기능등이추가된특수회선종 단장치는실비적용
128kbps~1.024M	8,800원/1대당	

※통신사에서제공하는종단장치의사용에대한대가로납입하는요금

6.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재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5.5.) 기준>

가. 건설부문 효율

(단위 : %)

구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 감리비 ¹⁾	시설 부대비 ²⁾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5천만원까지	3.35	3.18	3.42	3.28	6.42	6.01	6.72	6.85	6.27	3.02	1.08
1억원까지	3.19	3.02	3.26	3.12	6.09	5.68	6.39	6.51	5.93	2.85	0.90
2억원까지	2.69	2.52	2.77	2.63	5.11	4.70	5.41	5.53	4.95	2.26	0.72
3억원까지	2.53	2.36	2.61	2.47	4.78	4.36	5.07	5.20	4.62	2.06	0.72
5억원까지	2.36	2.19	2.44	2.30	4.46	4.04	4.75	4.88	4.30	1.89	0.72
10억원까지	2.17	2.00	2.25	2.11	4.07	3.66	4.37	4.49	3.91	1.66	0.63
20억원까지	1.97	1.84	2.03	1.92	3.71	3.39	3.96	4.07	3.56	1.53	0.36
30억원까지	1.88	1.77	1.93	1.83	3.54	3.27	3.77	3.87	3.39	1.48	0.36
50억원까지	1.80	1.71	1.84	1.76	3.41	3.20	3.61	3.70	3.26	1.45	0.27
100억원까지	1.71	1.65	1.74	1.68	3.24	3.09	3.41	3.49	3.10	1.41	0.25
200억원까지	1.61	1.57	1.64	1.58	3.06	2.98	3.21	3.28	2.94	1.37	0.23
300억원까지	1.57	1.54	1.60	1.55	3.01	2.95	3.14	3.20	2.88	1.35	0.23
500억원까지	1.50	1.48	1.52	1.48	2.90	2.88	3.02	3.08	2.78	1.33	0.23
1,000억원까지	1.45	1.45	1.47	1.44	2.79	2.81	2.89	2.94	2.68	1.30	0.23
2,000억원까지	1.39	1.40	1.41	1.39	2.70	2.75	2.79	2.83	2.60	1.28	0.21
3,000억원까지	1.37	1.38	1.38	1.36	2.64	2.70	2.71	2.75	2.54	1.25	0.19
5,000억원까지	1.32	1.34	1.33	1.31	2.58	2.67	2.65	2.69	2.49	1.23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시

【기본설계요율】

도로=5.20×(공사비)^{-0.051}, 철도=4.49×(공사비)^{-0.045},
항만=5.53×(공사비)^{-0.053}, 상수도=4.92×(공사비)^{-0.049}

【실시설계요율】

도로=8.23×(공사비)^{-0.043}, 철도=6.49×(공사비)^{-0.033},
항만=9.41×(공사비)^{-0.047}, 상수도=10.08×(공사비)^{-0.049}, 하천=7.50×(공사비)^{-0.041}

【공사감리요율】 3.4816×(공사비)^{-0.0386}-0.00084

【시설부대비】 28.3833×(공사비)^{-0.1895}-0.00223 적용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르며,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분야의 설계비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준용한다.

2]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

부대비 기준요율의 50%를 가산한다. ('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나. 통신부문 요율

(단위 : %)

구분 공사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 감리비 ¹⁾	시설 부대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천만원까지	3.73	4.10	4.28	4.40	11.19	12.32	12.84	13.20	2.70	1.08
1억원까지	3.50	3.85	4.01	4.13	10.52	11.58	12.08	12.42	2.53	0.90
2억원까지	2.79	3.07	3.20	3.29	8.36	9.21	9.60	9.87	2.02	0.72
3억원까지	2.54	2.80	2.92	3.00	7.63	8.40	8.76	9.01	1.84	0.72
5억원까지	2.31	2.55	2.66	2.73	6.91	7.61	7.94	8.16	1.68	0.72
10억원까지	2.04	2.25	2.34	2.41	6.11	6.73	7.02	7.21	1.48	0.63
20억원까지	1.89	2.08	2.16	2.23	5.61	6.18	6.44	6.62	1.36	0.36
30억원까지	1.81	2.00	2.08	2.14	5.42	5.97	6.22	6.40	1.31	0.36
50억원까지	1.78	1.96	2.04	2.10	5.33	5.87	6.12	6.29	1.29	0.27
100억원까지	1.72	1.90	1.98	2.03	5.19	5.72	5.96	6.13	1.25	0.25
200억원까지	1.68	1.85	1.92	1.98	5.04	5.55	5.78	5.95	1.22	0.23
300억원까지	1.66	1.83	1.90	1.96	5.00	5.51	5.74	5.90	1.21	0.23
500억원까지	1.64	1.81	1.88	1.94	4.89	5.39	5.61	5.77	1.18	0.23
1,000억원까지	1.60	1.77	1.84	1.89	4.83	5.32	5.54	5.70	1.16	0.23
2,000억원까지	1.59	1.74	1.82	1.87	4.74	5.21	5.44	5.59	1.14	0.21
3,000억원까지	1.57	1.72	1.80	1.85	4.66	5.12	5.34	5.49	1.13	0.19
5,000억원까지	1.55	1.70	1.78	1.83	4.60	5.06	5.28	5.43	1.11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시

【기본설계요율】

1그룹=3.76×(공사비)^{-0.033}, 2그룹=4.72×(공사비)^{-0.038},
3그룹=5.51×(공사비)^{-0.042}, 4그룹=5.82×(공사비)^{-0.043},

【실시설계요율】

1그룹=13.87×(공사비)^{-0.041}, 2그룹=17.46×(공사비)^{-0.046},
3그룹=19.75×(공사비)^{-0.049}, 4그룹=20.87×(공사비)^{-0.050},

【공사감리요율】 2.3088×(공사비)^{-0.0271}-0.00262,

【시설부대비요율】 28.3833×(공사비)^{-0.1895}-0.00223 적용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 참고 : 통신부문 공사의 그룹별 구분 기준

구 분	대분류	세부공사
그룹 1	방송설비	방송국설비공사
그룹 2	통신설비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그룹 3	통신설비	선로설비공사 별정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정보설비	정보매체설비공사
	기타설비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그룹 4	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정보설비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항공(항행,보안,전산) 및 항만통신설비공사
	유시티설비공사	유시티설비공사

다. 산업플랜트부문 효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12	8.01
1 억 원 까 지	2.91	7.46
2 억 원 까 지	2.76	7.06
3 억 원 까 지	2.60	6.66
5 억 원 까 지	2.47	6.32
10 억 원 까 지	2.30	5.89
20 억 원 까 지	2.18	5.58
30 억 원 까 지	2.05	5.26
50 억 원 까 지	1.95	4.99
100 억 원 까 지	1.81	4.65
200 억 원 까 지	1.72	4.41
300 억 원 까 지	1.62	4.16
500 억 원 까 지	1.54	3.94
1,000 억 원 까 지	1.43	3.67
2,000 억 원 까 지	1.36	3.48
3,000 억 원 까 지	1.28	3.28
5,000 억 원 까 지	1.21	3.11

※ 5,000억원 초과외 경우

$$\text{기본설계요율} = (19.2151 \times (\text{공사비})^{-0.1025}), \text{실시설계요율} = (49.2703 \times (\text{공사비})^{-0.1025})$$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라. 전기부문 효율

□ 설계비

공사비 요율	요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2,000만원까지	3.79	11.38
3,000만원까지	3.07	9.19
5,000만원까지	2.14	6.42
1억원까지	2.01	6.01
2억원까지	1.60	4.80
3억원까지	1.46	4.38
5억원까지	1.33	3.97
10억원까지	1.17	3.51
20억원까지	1.08	3.22
30억원까지	1.04	3.11
50억원까지	1.02	3.06
100억원까지	0.99	2.98
200억원까지	0.96	2.89
300억원까지	0.95	2.87
500억원까지	0.94	2.81
1,000억원까지	0.92	2.77
2,000억원까지	0.91	2.72
3,000억원까지	0.90	2.67
5,000억원까지	0.89	2.64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 전기공사감리비 효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7	0.18	0.20
0.1	0.28	0.31	0.34
0.2	0.48	0.53	0.59
0.3	0.66	0.73	0.80
0.4	0.82	0.90	1.0
0.5	1.0	1.1	1.2
0.6	1.1	1.2	1.4
0.7	1.3	1.4	1.5
0.8	1.4	1.5	1.7
0.9	1.5	1.7	1.9
1	1.7	1.8	2.0
2	2.8	3.1	3.4
3	3.9	4.3	4.7
4	4.8	5.3	5.9
5	5.7	6.3	7.0
6	6.6	7.3	8.0
7	7.4	8.2	9.0
8	8.2	9.1	10.0
9	9.0	10.0	11.0
10	9.7	10.8	11.9
20	16.6	18.4	20.3
30	22.6	25.2	27.7
40	28.3	31.4	34.5
50	33.5	37.3	41.0
70	43.4	48.3	53.1
100	57.2	63.5	69.9
200	97.4	108.2	119.0
300	133.0	147.8	162.6
400	166.0	184.4	202.9
500	197.0	218.9	240.8

※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2일임

※ 위 표의 효율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 위 기준효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효율을 따른다.

마. 건축부문 효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1 종(단순)				제 2 종(보통)				제 3종(복잡)			
	도서 의양	도서의 양			감 리	도서의 양			감리	도서의 양			감리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까지		10.22	8.51	6.81	2.02	11.41	9.51	7.61	2.24	12.55	10.46	8.36	2.46
1억원까지		9.38	7.82	6.25	1.90	10.43	8.69	6.95	2.11	11.48	9.56	7.65	2.32
2억원까지		8.16	6.80	5.44	1.51	9.08	7.57	6.05	1.68	9.99	8.33	6.66	1.85
3억원까지		7.08	5.90	4.72	1.39	7.88	6.57	5.26	1.54	8.68	7.23	5.78	1.70
5억원까지		6.46	5.38	4.30	1.29	7.18	5.98	4.79	1.43	7.90	6.58	5.26	1.57
10억원까지		5.75	4.79	3.83	1.11	6.39	5.32	4.26	1.23	7.03	5.86	4.68	1.35
20억원까지		5.09	4.24	3.40	1.02	5.66	4.72	3.77	1.13	6.22	5.19	4.15	1.24
30억원까지		4.84	4.03	3.23	0.98	5.38	4.48	3.58	1.09	5.91	4.93	3.94	1.20
50억원까지		4.68	3.90	3.12	0.96	5.20	4.33	3.46	1.07	5.72	4.76	3.81	1.18
100억원까지		4.56	3.80	3.04	0.94	5.07	4.22	3.38	1.04	5.58	4.65	3.72	1.14
200억원까지		4.43	3.69	2.96	0.91	4.92	4.10	3.28	1.01	5.42	4.51	3.61	1.11
300억원까지		4.36	3.63	2.91	0.90	4.84	4.03	3.23	1.00	5.32	4.44	3.55	1.10
500억원까지		4.30	3.58	2.87	0.88	4.77	3.98	3.18	0.98	5.25	4.38	3.50	1.08
1,000억원까지		4.21	3.50	2.80	0.87	4.68	3.90	3.12	0.97	5.14	4.29	3.43	1.07
2,000억원까지		4.14	3.45	2.76	0.86	4.60	3.84	3.07	0.95	5.06	4.22	3.38	1.05
3,000억원까지		4.10	3.42	2.73	0.85	4.55	3.79	3.03	0.94	5.01	4.17	3.34	1.03
5,000억원까지		4.03	3.36	2.69	0.84	4.48	3.73	2.99	0.93	4.93	4.11	3.28	1.02

※ 동 효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효율임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효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효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효율 적용

※ 위 기준효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효율을 따른다.

※ 참고 : 건축공사의 종별 구분 기준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사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11.75	13.10	14.44	신규 구간 추가
70	10.49	11.65	12.81	신규 구간 추가
100	9.66	10.73	11.80	
200	7.34	8.14	8.97	
300	6.24	6.92	7.62	
400	5.48	6.09	6.70	
500	4.96	5.52	6.07	
700	4.38	4.87	5.35	
1,000	3.93	4.36	4.79	
1,500	3.44	3.82	4.21	
2,000	3.11	3.45	3.79	
3,000	2.73	3.03	3.32	
5,000	2.32	2.57	2.82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5,000억 초과인 경우 개선요율은 단순= $42,064.2419 \times (\text{공사비})^{-0.364}$, 보통= $46,597.0266 \times (\text{공사비})^{-0.364}$, 복잡= $52,525.8586 \times (\text{공사비})^{-0.365}$ 적용

※ 위 기준요율은 '26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25년도 이전 발주 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 '22.5.1 이전 계약된 계속사업은 전면책임감리사업장 중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동 지침 시행일 이후 잔여공사기간에 대해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0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를 자율조정 하되, 계약건당 조정한도는 별도로 정한다.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 간선하수구거 600mm이상 하수구거 400mm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 폐수 처리장 · 배수 및 양수 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 등 교육 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운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주: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 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 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

-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 다. 설계요강의 결정
- 라. 설계지침의 작성
-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 다. 설계요강의 결정
- 라. 설계지침의 작성
-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 가. 시공계획의 검토
- 나. 공정표의 검토
-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2026년도

공주시 예산편성 방향 및 세부지침

2025년 8월 20일 편집(예산팀)

2025년 8월 20일 게시(예산팀)

발행 : 공주시 기획감사실(예산팀)

TEL : (041) 840 - 2029

FAX : (041) 840 - 3705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